연구보고 2019-03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김나영·황선영·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03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연구책임자 **김 나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황 선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03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 02)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98-5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영아는 발달 측면에서 유아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영아 양육에 대한 연구는 유아의 그것과는 분명히 구별될 필요가 있으나,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유아와 통합되어 영유아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영아 양육 가구의 정책 수요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는 영아 양육지원 정책수립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본 연구를 통하여 영아 양육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아 양육정책의 종합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용 자료 활용 및 다양한 방법의 실태 조사를 통하여 영아 가구의 양육지원 수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인 영아 양육지원 정책을 제시한 바, 향후 정부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지속적인 영아 양육지원 정책 수립에 토대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본 보고서의 자료 수집을 위해 도움을 주신 영아 자녀의 부모님들, 관련 기관 관계자 분들, 보고서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자문 및 검토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19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Ⅰ.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2. 연구내용 ····· 24
3. 연구방법 ····· 25
4. 연구의 체계 ····· 26

Ⅱ. 선행연구 29
1.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특성 ····· 31
2. 영아 양육형태 수요 특성 ····· 36
3. 시사점 ····· 42

Ⅲ.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45
1. 비용 지원 정책 ····· 47
2.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 59
3. 시간지원정책 ····· 66

Ⅳ. 영아 양육 실태조사 분석 77
1. 전국보육실태조사(2015, 2018) ····· 79
2. 시간정책 실태조사 ····· 121
3. 소결 ····· 131

Ⅴ. 영아 양육지원 수요조사 135
1. 조사개요 ····· 137
2. 분석 결과 ····· 140
3. 분석 ····· 237
4. 소결 ····· 244

Ⅵ. 영아 양육 심층면담 249
1. 영아 부모 면담 ····· 251
2. 육아종합지원센터 면담 ····· 281
3. 소결 ····· 284

Ⅶ. 결론 및 제언 287
1.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 ····· 293
2. 정책 부문별 ····· 293
3. 근로유형별 ····· 301
4. 종합적 정책 방안 ····· 304

참고문헌 309

Abstract 319

부록 321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 ····· 321
부록 2. 조사결과 부표 ····· 349
부록 3. 각 지역 간략(일부) 예산서 ····· 377

표 목차

〈표 Ⅰ-3-1〉 심층면담 ····· 26
〈표 Ⅰ-4-1〉 연구수행 체계 ····· 27
〈표 Ⅰ-2-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양육유형 ····· 39
〈표 Ⅰ-2-2〉 영아 양육형태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 40
〈표 Ⅰ-2-3〉 정책수단에 따른 양육형태의 조합 ····· 41
〈표 Ⅲ-1-1〉 영유아보육료 단가(2019) ····· 47
〈표 Ⅲ-1-2〉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황 ····· 47
〈표 Ⅲ-1-3〉 연령별 양육수당(2019) ····· 48
〈표 Ⅲ-1-4〉 가정양육수당 지급 현황 ····· 48
〈표 Ⅲ-1-5〉 아동수당 연혁 ····· 49
〈표 Ⅲ-1-6〉 아동수당 신청·지급 현황(2018년 9~11월 누적치) ····· 49
〈표 Ⅲ-1-7〉 아동수당 신청·지급 현황(2019) ····· 49
〈표 Ⅲ-1-8〉 비용 지원 정책 ····· 50
〈표 Ⅲ-1-9〉 시간제 보육운영 현황 ····· 54
〈표 Ⅲ-1-10〉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현황 ····· 54
〈표 Ⅲ-1-11〉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추이 ····· 55
〈표 Ⅲ-1-12〉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 55
〈표 Ⅲ-1-13〉 아이돌봄서비스 양성교육기관 현황 ····· 55
〈표 Ⅲ-1-1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누적 수혜자 수(2016년 5월 기준) ··· 55
〈표 Ⅲ-1-15〉 연령별 성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 56
〈표 Ⅲ-1-16〉 2019년 1~2분기 백신별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 현황 ····· 56
〈표 Ⅲ-1-17〉 2018년 건강보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 이용 현황 (만 5세 이하) ····· 57
〈표 Ⅲ-1-18〉 장애아 및 다문화 보육료 지원 현황(2018년말 기준) ····· 57
〈표 Ⅲ-1-19〉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 ····· 58
〈표 Ⅲ-1-20〉 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 ····· 58
〈표 Ⅲ-1-21〉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경험(2018년) ··· 59
〈표 Ⅲ-1-22〉 해산급여 이용 현황 ····· 59

〈표 Ⅲ-2-1〉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 60
〈표 Ⅲ-2-2〉 월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현황 추이(2018) ····· 63
〈표 Ⅲ-2-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019년 5월말 기준) ····· 63
〈표 Ⅲ-2-4〉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수 ····· 64
〈표 Ⅲ-2-5〉 연도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64
〈표 Ⅲ-2-6〉 연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64
〈표 Ⅲ-2-7〉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이용자 수 및 지급 현황(2018) 64
〈표 Ⅲ-2-8〉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수혜자 현황 ····· 65
〈표 Ⅲ-2-9〉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운영 및 이용현황 ····· 65
〈표 Ⅲ-2-1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누적) ····· 66
〈표 Ⅲ-3-1〉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 67
〈표 Ⅲ-3-2〉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 ····· 68
〈표 Ⅲ-3-3〉 출산 휴가 이용 현황 ····· 69
〈표 Ⅲ-3-4〉 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 70
〈표 Ⅲ-3-5〉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사용현황 ····· 71
〈표 Ⅲ-3-6〉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 72
〈표 Ⅲ-3-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가 추이 ····· 73
〈표 Ⅲ-3-8〉 유연근무제의 유형 ····· 73
〈표 Ⅳ-1-1〉 영아자녀를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2015, 2018) ··· 80
〈표 Ⅳ-1-2〉 영아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2015) ····· 81
〈표 Ⅳ-1-3〉 영아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2018) ····· 83
〈표 Ⅳ-1-4〉 영아가구의 육아 관련 정보 및 조언을 얻는 경로(2015) ····· 84
〈표 Ⅳ-1-5〉 연령별 가장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2015, 2018) ····· 84
〈표 Ⅳ-1-6〉 영아가구 미취업모의 미취업 이유/취업 계획(2015, 2018) ····· 85
〈표 Ⅳ-1-7〉 영아가구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2015, 2018) ·· 86
〈표 Ⅳ-1-8〉 영아가구의 모 취업중단 여부, 중단 시기 및 중단 사유(2015) ··· 87
〈표 Ⅳ-1-9〉 영아가구 부모의 취업중단 여부, 중단 시기 및 중단 사유(2018) ··· 88
〈표 Ⅳ-1-10〉 영아가구 최초 이용기관 및 기관 이용 이유(2015, 2018) ····· 89
〈표 Ⅳ-1-11〉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구의 맞벌이 특성, 기관유형,
기관이용 중단 사유(2015) ····· 90
〈표 Ⅳ-1-12〉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구의 맞벌이 특성, 기관이용 중단 경험,
중단 사유(2018) ····· 91

〈표 Ⅳ-1-13〉 영아가구의 연령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등원시간 제외)(2015) ····· 92
〈표 Ⅳ-1-14〉 영유아가구의 이용기관 및 모 취업여부별 기관 이용시간 (등·하원시간 미포함)(2018) ····· 92
〈표 Ⅳ-1-15〉 영아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초과 이용 횟수(2015, 2018) ·· 93
〈표 Ⅳ-1-16〉 영아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시작 시각/종료 시각(2015) ··· 94
〈표 Ⅳ-1-17〉 영유아 부모의 이용기관별 희망 등·하원시각(2018) ····· 95
〈표 Ⅳ-1-18〉 영아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2015) ····· 96
〈표 Ⅳ-1-19〉 영유아가구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 (등·하원 시간 미포함)(2018) ····· 96
〈표 Ⅳ-1-20〉 영유아가구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 -실제 이용시간 차이(2018) ····· 97
〈표 Ⅳ-1-21〉 영아가구의 긴급상황 시 주된 돌봄제공자(2015) ····· 98
〈표 Ⅳ-1-22〉 영아가구의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2018) ···· 99
〈표 Ⅳ-1-23〉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구 중 돌볼 사람이 있을 경우 가정양육 의향 (2015, 2018) ····· 100
〈표 Ⅳ-1-24〉 어린이집 이용 영아부모의 가정양육수당 관련 의견(2015, 2018) ··· 101
〈표 Ⅳ-1-25〉 영아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전 대기경험 및 신청방식/대기 기간 (2015, 2018) ····· 101
〈표 Ⅳ-1-26〉 영아가구의 입소대기 신청기관(2015, 2018) ····· 102
〈표 Ⅳ-1-27〉 입소대기관리시스템 불만족 시 개선 사항(2015, 2018) ····· 103
〈표 Ⅳ-1-28〉 영아가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 분포 (2015, 2018) ····· 104
〈표 Ⅳ-1-29〉 영아가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2015, 2018) ····· 105
〈표 Ⅳ-1-30〉 영아가구 혈연 양육지원자 및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2015, 2018) ····· 106
〈표 Ⅳ-1-31〉 영아가구 혈연 양육지원자 이용 시간대(2015, 2018) ····· 107
〈표 Ⅳ-1-32〉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영아의 혈연 양육지원자와 기관 등 병행 이용 여부(2015, 2018) ····· 108
〈표 Ⅳ-1-33〉 영아가구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2015, 2018) ····· 108
〈표 Ⅳ-1-34〉 영아가구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이용 여부 (2015, 2018) ····· 109

〈표 Ⅳ-1-35〉 영아가구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대 및 주당 이용시간 (2015, 2018) ····· 110
〈표 Ⅳ-1-36〉 영유아가구 비용 지원 정책의 만족도(2015, 2018) ····· 110
〈표 Ⅳ-1-37〉 영아가구 보육료·교육비/가정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불만족 이유 (2018) ····· 111
〈표 Ⅳ-1-38〉 영아가구가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 (2015, 2018) ····· 112
〈표 Ⅳ-1-39〉 영아가구의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2015) ···· 112
〈표 Ⅳ-1-40〉 영아가구의 시간제보육반 인지/이용 경험 및 이용 주기(2015, 2018) ··· 113
〈표 Ⅳ-1-41〉 영아가구의 제 특성별 취약보육의 필요성(2015) ····· 114
〈표 Ⅳ-1-42〉 제 특성별 취약보육의 필요성(2018) ····· 115
〈표 Ⅳ-1-43〉 상관관계: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모델1) ····· 117
〈표 Ⅳ-1-44〉 상관관계: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모델2) ····· 117
〈표 Ⅳ-1-45〉 로짓분석결과: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 ····· 118
〈표 Ⅳ-1-46〉 상관관계: 기관보육 이용 경험(모델1) ····· 119
〈표 Ⅳ-1-47〉 상관관계: 기관보육 이용 경험(모델2) ····· 119
〈표 Ⅳ-1-48〉 로짓분석결과: 기관보육 이용 경험 ····· 120
〈표 Ⅳ-2-1〉 주된 양육 방식 ····· 121
〈표 Ⅳ-2-2〉 이용 중인 기관 유형 ····· 122
〈표 Ⅳ-2-3〉 기관유형별 어린이집 수/이용아동 수(2009/2012-2018) ····· 123
〈표 Ⅳ-2-4〉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이유 ····· 124
〈표 Ⅳ-2-5〉 시간정책의 양육에의 도움 정도 ····· 126
〈표 Ⅳ-2-6〉 출산 및 육아휴직제 총 이용 기간 ····· 127
〈표 Ⅳ-2-7〉 출산 및 육아휴직제 필요성 ····· 127
〈표 Ⅳ-2-8〉 (과거 직장포함)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여부 ····· 128
〈표 Ⅳ-2-9〉 유연근무제 이용 주요 이유 ····· 130
〈표 Ⅳ-2-10〉 유연근무제 이용과 자녀돌봄 시간 변화 ····· 130
〈표 Ⅳ-2-11〉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 131
〈표 Ⅴ-1-1〉 주요 설문조사 내용 ····· 137
〈표 Ⅴ-1-2〉 조사 응답자 특성 ····· 140
〈표 Ⅴ-2-1〉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 모 근무형태 ····· 142
〈표 Ⅴ-2-2〉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 평일 출퇴근 시각 및 근무시간 ··· 143

〈표 Ⅴ-2-3〉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 주당 근무일수 및 월 평균 10시간 초과 근무 일수 ····· 144
〈표 Ⅴ-2-4〉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 긴급 상황 시 자녀돌봄 방법 (중복응답) ····· 144
〈표 Ⅴ-2-5〉 부홑벌이 가구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모 퇴직 경험 : 최초 퇴직 시기(중복응답) ····· 146
〈표 Ⅴ-2-6〉 부홑벌이 가구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퇴직 경험 : 주된 이유(1순위) ····· 147
〈표 Ⅴ-2-7〉 만 0세 양육 가구 주 양육 실태 및 선호 형태 차이 ····· 149
〈표 Ⅴ-2-8〉 만 0세 자녀 양육가구 주 양육 실태 ····· 150
〈표 Ⅴ-2-9〉 만 0세 자녀 양육가구 주 양육 선호 형태 ····· 152
〈표 Ⅴ-2-10〉 만 1세 양육 가구 주 양육 실태 및 선호 형태 차이 ····· 154
〈표 Ⅴ-2-11〉 만 1세 양육 가구 주 양육 실태 ····· 156
〈표 Ⅴ-2-12〉 만 1세 양육가구 주 양육 선호형태 ····· 158
〈표 Ⅴ-2-13〉 만 2세 양육가구 주 양육 실태 및 선호 형태 차이 ····· 160
〈표 Ⅴ-2-14〉 만 2세 양육가구 주 양육 실태 ····· 161
〈표 Ⅴ-2-15〉 만 2세 양육가구 선호 주 양육형태 ····· 163
〈표 Ⅴ-2-16〉 부모 직접 돌봄 주 양육 형태 선호 이유-1순위 ····· 165
〈표 Ⅴ-2-17〉 부모 직접돌봄 주 양육형태 선택유형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 167
〈표 Ⅴ-2-18〉 부모 직접돌봄 주 양육형태 선택유형 가정양육수당 적정금액 ··· 168
〈표 Ⅴ-2-19〉 부모 직접돌봄 주 양육형태 선택유형 보조양육 이용 이유 ····· 170
〈표 Ⅴ-2-20〉 부모 직접돌봄 주 양육형태 선택유형 주 양육형태에 대한 만족도 ··· 171
〈표 Ⅴ-2-21〉 어린이집을 주 양육 형태 선택 유형 어린이집 선호이유-1순위 ····· 173
〈표 Ⅴ-2-22〉 어린이집 주 양육 형태 선택_보조양육형태 이용 이유 ····· 175
〈표 Ⅴ-2-23〉 어린이집 주 양육 형태 선택_보조양육형태 이용시간과 빈도 ·· 176
〈표 Ⅴ-2-24〉 어린이집 주 양육 형태 선택_양육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 중단의사 ····· 177
〈표 Ⅴ-2-25〉 어린이집 주 양육 형태 선택_양육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 중단 가능 한 양육수당 금액 ····· 179
〈표 Ⅴ-2-26〉 어린이집 주 양육 형태 선택_주 양육형태에 대한 만족도 ····· 180
〈표 Ⅴ-2-27〉 아동수당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 182
〈표 Ⅴ-2-28〉 영유아보육료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 184
〈표 Ⅴ-2-29〉 가정양육수당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 185

〈표 Ⅴ-2-30〉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 187
〈표 Ⅴ-2-31〉 시간제보육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 189
〈표 Ⅴ-2-3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 191
〈표 Ⅴ-2-33〉 비용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1순위 ····· 193
〈표 Ⅴ-2-34〉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포함)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 195
〈표 Ⅴ-2-35〉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 196
〈표 Ⅴ-2-36〉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 198
〈표 Ⅴ-2-37〉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 200
〈표 Ⅴ-2-38〉 서비스 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1순위 ····· 201
〈표 Ⅴ-2-39〉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주로 이용한 서비스(중복응답) ····· 203
〈표 Ⅴ-2-40〉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하지 않은 이유 ····· 205
〈표 Ⅴ-2-41〉 부모교육 필요성의 동의정도 ····· 207
〈표 Ⅴ-2-42〉 부모교육 제공 기관 선호 ····· 208
〈표 Ⅴ-2-43〉 부모교육 제공 시간대 선호 ····· 210
〈표 Ⅴ-2-44〉 출산전후휴가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 212
〈표 Ⅴ-2-45〉 배우자 출산휴가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 214
〈표 Ⅴ-2-46〉 육아휴직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 216
〈표 Ⅴ-2-47〉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 218
〈표 Ⅴ-2-4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 220
〈표 Ⅴ-2-49〉 가족돌봄휴직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 221
〈표 Ⅴ-2-50〉 유연근무제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 223
〈표 Ⅴ-2-51〉 이용한 유연근무제 유형 ····· 225
〈표 Ⅴ-2-52〉 시간외 근로금지,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허용 정책 이용 여부 및 이용자 만족도 ····· 226
〈표 Ⅴ-2-53〉 영아자녀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간 지원 정책 1순위 ··· 226
〈표 Ⅴ-2-54〉 영아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 충분성 ····· 228
〈표 Ⅴ-2-55〉 영아 양육을 위한 정부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범주 ···· 230
〈표 Ⅴ-2-56〉 영아 양육을 위한 정부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1순위 ··· 231
〈표 Ⅴ-2-57〉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확대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 의향 ···· 232
〈표 Ⅴ-2-58〉 확대된 정부 재정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정책 1순위 ··· 234
〈표 Ⅴ-3-1〉 로짓모델 분석변수 ····· 238
〈표 Ⅴ-3-2〉 양육형태 만족도 상관관계 ····· 239
〈표 Ⅴ-3-3〉 양육형태 만족도 분석 결과 ····· 240

〈표 Ⅴ-3-4〉 로짓모델 분석변수 ····· 241
〈표 Ⅴ-3-5〉 양육형태 일치여부 상관관계 ····· 243
〈표 Ⅴ-3-6〉 양육형태 일치여부 분석 결과 ····· 244
〈표 Ⅵ-1-1〉 영아 부모 면담대상자 배경 ····· 251
〈표 Ⅵ-2-1〉 육아종합지원센터 면담대상자 배경 ····· 281
〈표 Ⅶ-2-1〉 영아지원 지역 선정 지표 ····· 300
〈표 Ⅶ-2-2〉 정책부문별 정책개선 방향 ····· 301
〈표 Ⅶ-3-1〉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방향 ····· 303
〈표 Ⅶ-4-1〉 영아 연령 및 가구 특성에 대한 정책 중요도 ····· 304
〈표 Ⅶ-4-2〉 영아 연령 및 가구근로형태별 세부 정책방안 ····· 308

그림 목차

[그림 Ⅲ-3-1] 출산 휴가 휴가자수 및 지원금액 추이 ····· 69
[그림 Ⅲ-3-2] 육아휴직 성별 이용자수 추이 ····· 70
[그림 Ⅲ-3-3]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과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 71
[그림 Ⅲ-3-4] 육아휴직 성별 급여 지원 추이 ····· 72
[그림 Ⅶ-3-1] 수요자 근로유형별 분류 ····· 302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Ⅴ-1〉 지난 3개월 월평균 비용(1):
식비, 주거, 기기, 피복, 의료, 교육, 여가 ····· 349
〈부록 표 Ⅴ-2〉 지난 3개월 월평균 비용(2):
교통, 통신, 개인유지, 금융상품, 이전지출, 기타 ····· 350
〈부록 표 Ⅴ-3〉 영아 자녀양육 월평균 비용:
피복, 의료, 교육, 여가, 금융상품 ····· 352
〈부록 표 Ⅴ-4〉 월 가구지출 대비 자녀양육비 평균비율:
피복, 의료, 교육, 여가, 금융상품 ····· 354
〈부록 표 Ⅴ-5〉 양육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1순위) ····· 356
〈부록 표 Ⅴ-6〉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 ···· 357
〈부록 표 Ⅴ-7〉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국공립 보육기관 확대의 필요성 ···· 358
〈부록 표 Ⅴ-8〉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의 필요성 ···· 359
〈부록 표 Ⅴ-9〉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보육지원 서비스 질 제고의 필요성 ·· 360
〈부록 표 Ⅴ-10〉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양육비 경감을 위한 비용의 필요성 ··· 361
〈부록 표 Ⅴ-11〉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 ····· 362
〈부록 표 Ⅴ-12〉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남성의 양육참여 확대의 필요성 ····· 363
〈부록 표 Ⅴ-13〉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자녀 양육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 ····· 364
〈부록 표 Ⅴ-14〉 자녀의 주+보조 양육형태(중복응답) ····· 365
〈부록 표 Ⅴ-15〉 자녀의 연령별 선호하는 주+보조 양육형태: 만0세(중복응답) ···· 366
〈부록 표 Ⅴ-16〉 자녀의 연령별 선호하는 주+보조 양육형태: 만1세(중복응답) ··· 367
〈부록 표 Ⅴ-17〉 자녀의 연령별 선호하는 주+보조 양육형태: 만2세(중복응답) ··· 368
〈부록 표 Ⅶ-1〉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1,2(1) ····· 369
〈부록 표 Ⅶ-2〉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1,2(2) ····· 370
〈부록 표 Ⅶ-3〉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3,4(1) ····· 371
〈부록 표 Ⅶ-4〉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3,4(2) ····· 372
〈부록 표 Ⅶ-5〉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5,6(1) ····· 373
〈부록 표 Ⅶ-6〉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5,6(2) ····· 374

〈부록 표 Ⅷ-7〉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7,8(1) …… 375
〈부록 표 Ⅷ-8〉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7,8(2) …… 376
〈부록 표 Ⅷ-9〉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건소(지방 N시) …… 377
〈부록 표 Ⅷ-10〉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건소(서울시 K구) …… 379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영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서비스 확대와 가정 내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영아 기관보육 활성화와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정책 방향이 상충됨
- 영아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시행 주체가 다양하여 각 사업별 적정 규모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필요함
- 개별성, 정합성, 통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이뤄져야 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의 혼재 속에서 영아 양육 지원에 대한 수요자들의 명확한 욕구를 분석하고 종합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음

나. 연구내용

□ 첫째, 영아 양육지원 실태 및 정책 활용 제고, 영아 양육지원의 정책 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을 정책특성별로 검토하여 정책 기조 전반을 파악하고, 각 사업별 주요 대상 및 지원내용의 현황을 파악함

□ 셋째, 영아를 둔 가구의 양육지원 수요를 분석하여 대상별로 차별화된 욕구를 규명함

□ 넷째, 영아 부모의 가정양육과 기관보육에 대한 의견을 심층면담을 통하여 파악하고 분석함

□ 다섯째, 영아 양육지원 정책 전반의 방향성 및 핵심 전략과 대상별 주요과제를 제시하고, 영아 양육지원의 전반의 방향성, 주요 전략, 주요 사업 부문별 주요

대상과 각 대상별 세부 양육지원 내용 및 개선과제를 제시함

다. 연구방법

□ 국내 영아보육 및 지원 정책의 연혁 및 현황을 파악하고 영아기 보육지원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정리함

□ 전국보육실태조사(2015, 2018)와 시간정책 실태조사 등의 선행 육아지원 관련 연구에서 영아 양육 관련 항목을 정리하여 제시함

□ 영아 양육 가구특성별, 이용 양육서비스별, 거주지역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 전반에 대해 조사함

□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전업모와 취업모를 포함한 영아부모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가구특성별 차별화된 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과 수요에 대해 조사하고, 가정 및 기관 양육(지원)에 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분석함

□ 영아 양육지원의 방향 및 전략, 대상별 세부 지원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실시함

라. 연구의 체계

□ 첫째, 문헌연구와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과 수요를 분석함

□ 둘째, 설문조사 및 애로사항과 수요에 대한 심층면담을 하여 양육자들의 영아 양육 실태 및 수요를 분석함

□ 셋째,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심층면담과 정책연구를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

2. 선행연구

가.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특성

□ 최상설·홍경준(2012)은 영아는 유아와 통합된 영유아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기에 따로 분리하여 진행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36개월 미만의 영아는 유아와 발달이

나 돌봄 측면에서 질적으로 달라 유아와 분명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봄

□ 영아기는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기의 전반적 발달이 형성되는 기간

- 이경하·서소정(2012)은 이 기간 동안 형성되는 발달상황이 그 이후 영아가 직면하는 환경에 차별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차별화된 환경에 대한 발달이 다시 그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봄.
- 이미화 외(2014)는 이 시기의 발달은 이후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추후 대인 관계 및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함.

□ 돌봄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장수정(2012)과 김은정(2015)에 따르면 행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돌봄 대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살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음

- 영아기는 양육자의 전일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에, 수면 부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권경숙, 2008; 김종훈 외, 2013)가 있고 심지어는 정서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양육자들도 많음.

□ 산모의 산후 우울증은 영아에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방경숙, 2011) 이 시기의 양육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함.

□ 김진미(2014)는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함

나. 영아 양육형태 수요 특성

□ 이미화·민정원·엄지원 외(2013)는 만0~3세 연령별 적절한 양육자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만0세 부모 99.5%, 만1세는 부모 90.6%, 만2세는 어린이집 58.3%, 부모 44.5%로 나타났으며, 만3세는 어린이집/유치원 88.4%, 부모 15.7%로 나타남.

- 이정원 외(2017)에서도 만0-2세 영아기는 어린이집보다 가정양육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나타남

□ 최상설·홍경준(2012), 김진미(2014)에 의하면 영아의 양육 수요는 특정한 선호와 별개로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자 개인과 가구의 조건이 어떻게 조합되느

냐에 따라 다양한 양육 형태가 나타난다고 함

- Kremer(2006)은 양육 유형을 크게 전일제 모성 돌봄, 부모분담 돌봄, 세대간 돌봄, 대리모 돌봄, 전문가 돌봄으로 분류함

□ 전상민(2011)은 주양육자의 연령, 교육수준, 고용 상태 등이 양육 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취업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함

다. 시사점

□ 영아기 때 누가 어떻게 양육하는가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으며 성인중심의 양육지원정책보다는 영아발달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영아 중심으로 정책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봄

3.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가. 비용 지원 정책

□ 2019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의 보육료 지원을 보면, 종일반의 경우 만0세 454천원, 만1세 400천원, 만2세 331천원을 지원하고 맞춤반의 경우 각각 354천원, 311천원, 258천원 지원함.

□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2019년 도시 기준 0-11개월 200천원, 12-23개월 150천원, 그리고 24-35개월 100천원 지원함.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0세에서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2019년 4월 231만 명에게 지급되었음

□ 그 외 가정에서 양육하더라도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지원,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 여성가족부(2018)에서 시행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돌봄 장소, 장난감 및 도서 이용, 교류 기회, 품앗이 활동 연계 등을 제공

- 2018년 상반기 328,361명이 사용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종합서비스를 지원하며, 상담, 일시보육, 장남감·도서·교재·교구 대여, 놀이공간 등을 제공

- 2019년 5월말 기준, 중앙센터 1개, 시도센터 18개, 시군구 센터 86개 등이 설치·운영중 임.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

-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151개소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 시간지원정책

□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정책은 임신 및 출산 관련 휴가와 육아 관련 휴가·휴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임신 및 출산 관련 휴가에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음.
- 육아관련 휴가·휴직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음

□ 출산전후 및 육아 휴직제도는 도입 이후 지속적인 이용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아직은 여성 이용자에 비해 남성 이용자 수가 적음

-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지원금액 또한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2007년 132,412만원에서 2017년 242,598만원으로 83.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육아휴직의 경우 2007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18년 기준 남성 이용자수(17,622명)는 여성(81,577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에 도입되었고, 매해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018년 3,820명으로 육아기 부모의 수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지만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외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4. 영아 양육 실태조사 분석

가. 전국보육실태조사(2015, 2018)

□ 2015년과 2018년 영아자녀를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0세의 경우 모가 각각 81.8%와 76.8%를 차지하였으며, 1세의 경우 47%와 40.8%, 2세의 경우 35.7%와 37.5%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0세와 1세의 영아의 경우 2015년에서 2018년으로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0세의 경우 9.1% → 11.5%로 1세의 경우 38.3% → 48.5%로 증가하였으나 2세의 경우 59.1% → 56.3%로 감소

□ 평일에 아동을 돌보는 시간대의 경우 2015년, 2018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0세의 경우 모든 시간대에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세아의 경우 0세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급격히 늘었으며, 그 비율은 2세아에서 더욱 높아짐.

- 2015년의 경우 0세는 모든 시간대에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75%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오전 8시 30분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는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90%대를 보이며 오전 9시 31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10%이상을 보임
- 2015년 1세아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31분부터 오후 4시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비율이 0세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았고 이외의 시간에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음.

- 2015년 2세아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 비율이 최대 88.3%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이용 전후에 부모가 영아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높아짐
- 2018년의 경우 2015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2015년보다 이른 시각인 오전 9시 01분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나. 시간정책 실태조사

□ 영유아가구의 주된 양육방식에서 '어린이집'이 4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조부모/친인척'이 3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관유형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이용률이 45.0%, 국공립 어린이집 14.9%, 가정어린이집 11.4%, 사립 유치원 11.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이유(복수응답)를 보면, 46.1%가 '기관 이용 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하였고, 41.2%의 응답자가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라고 응답함

□ 유연근무제와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가 '(매우)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5.5%를 차지하였으며,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남

□ 출산전후휴가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만 0세의 경우 70.4%, 만 1세의 경우 64.2%로 다른 연령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만 0세의 경우 64.2%, 만 1세의 경우 63.6%로 다른 연령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

□ 자녀연령이 만 2세인 경우, 단시간 근로제도 이용경험이 높게(31.9%) 나타났고, 자녀 아버지(16.3%) 보다 자녀 어머니(31.8%)의 이용경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기관/공기업 종사자의 이용경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남녀 및 자녀연령에 따른 이용경험 비중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여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하였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 '예'라고 응답한 비중이 67.1%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 어머니(63.4%) 보다 자녀 아버지의 경우(70.8%)에 있어서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5. 영아 양육지원 수요조사

가. 조사개요

□ 영아 양육 부모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문조사와 전국보육실태조사 설문문항 등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함

- 부모취업여부, 이용 양육서비스 형태, 요구 및 개선 항목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세부항목으로 부모취업여부는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 이용 양육서비스 형태는 기관, 가정 내 양육, 개인양육서비스 등으로 분류함

□ 영아(만 0세~만 3세) 자녀를 둔 양육자 1,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은 가정 내 여성의 고용특성에 따라 가구와 양육형태의 특성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양육모에 한정하였음

□ 표본은 영아의 연령별로 표본을 균등할당 후 지역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모집

나. 분석 결과

□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의 양육모 근무형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주간에 근무하는 비율이 69.8%,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비율이 11.4%, 출퇴근은 하되, 정해진 시간 없이 유연근무를 한다는 비율 8.2%로 나타남.

- 근무형태의 비율은 모 고용형태·근무형태·사업장형태에 따라 특징이 다름.
- 평일 출퇴근 시각과 근무시간 또한 정규직 임금근로자(9시간 7분)와 전일제 근로자(9시간 10분)가 평균적으로 가장 장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7시간 30분)와 시간제 근로자(6시간 50분)가 평균적으로 가장 단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주,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평균 8시간대로 비슷하게 나타남.
- 주당 근무일수의 경우, 주 5일 근무가 96.4%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 4일 근로자가 1.9%로 나타남
-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반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가를 쓰거나(76.2%) 자녀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보는(61.6%)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거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 등 제도를 통한 돌봄을 선택하는 비율은 각각 4.1%와 7.5%로 낮았음

□ 부 홑벌이 가구에서, 임신했을 때의 퇴직경험이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산 및 출산 휴가 사용 직후 퇴직했다는 비율이 21.5%로 높게 나타남

-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퇴직에 대한 주요 이유 1순위도 직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어렵기 때문 37.1%,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6.9%, 직장일보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는 비율도 24.1%로 높게 나타남

□ 만 0세 자녀에 대한 주양육 실태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58.7%, 어린이집을 통해 주로 양육하는 비율이 29.3%, 조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6.6%로 나타남.

- 만 0세 영아에 대한 주 양육실태는 모의 취업상태, 모의 고용형태, 모 근무형태. 모 사업장 형태 등 고용변수에 따라 양육 형태에 대한 차이가 나타남
- 주 양육 선호 형태의 경우도 주 양육 실태와 마찬가지로 모의 고용상황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남

□ 만 1세의 경우 만 0세와 비교하여 부모가 직접 돌보는 양육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짐

- 어린이집 이용이 48.1%로 가장 높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41.7%로 나타남.
- 이러한 유형 간 차이는 자녀수와 모의 고용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 양육 선호형태의 경우 어린이집을 주로 양육형태로 선택하는 실태와는 달리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만 2세의 경우, 만 0세와 만 1세보다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어린이집: 62.4%, 부모가 직접 돌봄: 28.8%)

- 양육 실태에서 어린이집을 통해 대리 양육을 하는 비율이 79.5%로 높음.
- 선호하는 주 양육 유형은 어린이집을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이유 1순위 선택 설문에서는 영아시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응답이 7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0.8%,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5.8%로 나타남.

□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택한 양육자의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57.9%, 보통 27.6%로 나타남.

- 가정양육수당의 적정금액으로 3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비율이 77.2%, 20만원~25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비율이 17.6%로 나타남.

□ 영아 자녀를 돌볼 때 부모가 직접 돌보는 주 양육형태를 선택한 사람들이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61.9%였음.

-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양육형태로 선택한 그룹의 양육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46.2%로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0%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응답자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 1순위는 직장에 복귀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가 31.0%, 육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7.0%, 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은 16.6%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응답자가 어린이집 이외의 보조 양육형태를 병행하는 비율은 92.7%로 높게 나타남.
- 보조 양육형태의 주중 평균 이용시간은 13.3시간으로 나타났고 평균 이용 빈도는 3.2회로 응답
- 응답자들에게 양육 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물었을 때 양육수당 인상과는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을 하겠다는 비율이 69.9%로 높게 나타남.
- 양육수당이 30만 원 이상이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이 88.6%로 가장 많았음.
-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46.8%로 나타남

□ 비용지원정책에서 아동수당 97.1%, 영유아보육료 68.5%로 높게 나타났고,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와는 다르게 이용자와 미이용자

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아이돌봄서비스 92.6%, 시간제보육 89.9%, 시간연장형 보육료 76.1%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는 각각 아동수당 54.2%, 영유아보육료 69.9%, 가정양육수당 46.6%, 아이돌봄서비스 39.8%, 시간제보육 46.1%, 시간연장형 보육료 63.3%로 나타남.
-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1순위는 아동수당(38.7%), 2순위는 영유아보육료(21.2%)로 나타남.

□ 서비스지원정책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41.7%, 건강가정지원센터 9.4%, 부모교육 프로그램 14.4%, 공동육아나눔터 6.1%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는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 64.4%, 건강가정지원센터 56.8%, 부모교육 프로그램 51.0%, 공동육아나눔터 60.5%로 나타남
-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1순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 도서관 포함), 건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순으로 나타남

□ 시간지원정책에서 출산전후휴가 42.4%, 배우자 출산휴가 34.2%, 육아휴직 34.8%,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1.0%, 가족돌봄휴직 1.2%, 유연근무제 11.4%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는 각각 출산전후휴가 63.6%, 배우자 출산휴가 39.0%, 육아휴직 61.6%,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68.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61.7%, 가족돌봄휴직 64.7%, 유연근무제 67.5%로 나타남

□ 비용 지원 정책을 제외한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및 시간 지원 정책의 경우 이용률이 낮으나 이용한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86.9%로 나타났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주/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 경우 지원이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0.3%와 97%로 높게 나타남.
- 정부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범주는 비용 지원 정책이 46.7%, 시간 정책이 35.4%로 나타났고 모 근무형태와 사업장 형태별 차이가 나타남.
- 응답자들에게 추가 납세 의향을 물어본 결과 긍정적 응답이 58.7%, 부정적

응답이 41.3%로 나타났고, 재정의 투입에는 국공립 확충 등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 22.7%, 가정양육 수당 인상 21.8%, 어린이집 인적 환경 개선 9.2% 등으로 나타남

다.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함

- 현재 이용하는 양육형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양육형태 만족도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보통/약간 만족/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자료를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으로 분석함.
- 현재 양육형태와 선호하는 양육형태 일치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와 선호 양육형태 일치 여부 자료를 사용하여 로짓 분석을 실시함.

□ 순서화 로짓모델 분석 결과, 월 평균 수입, 추가세금 지불 여부, 자녀수는 양육형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선호 양육형태 일치 여부와 자녀월령, 최종학력(모) 대졸 등의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취업상태(모), 월 평균 수입, 최종학력(모) 대학원 이상 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로짓모델로 분석한 결과 자녀월령과 최종학력(모) 대졸인 경우는 양육형태 일치 여부에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상태(모)와 월 평균 수입은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6. 영아 양육 심층면담

가. 영아 부모 면담

□ 육아전문가를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산전 및 부모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아버지 육아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아버지 육아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며 육아 관련 지식 또한 현저히 부족하므로 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 줄 장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

미 등 돌봄서비스 개선,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을 요구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순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영아 어머니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육아 배려 문화 정착이 필요함.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면담

□ 시간제 보육을 아동 중심적 시각으로 재편하고 개선할 필요를 제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상시 보조인력을 관리하고 대체 교사 휴게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제고해야 함.

7. 결론 및 제언

가.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

□ 첫째, 영아양육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양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영아기는 다른 연령과는 차별되는 성장의 특성을 지닌 시기이므로 무엇보다도 정책 수요자(양육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되 정책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함

나. 정책 부문별

□ 비용지원의 경우, 정책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정책을 적절하게 선별하여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모든 비용(현물)지원정책의 지급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정책의 만족도나 효과가 낮은 현재의 비용지원 정책을 선별하여 통합 및 폐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다수의 보편적 비용지원 정책을 소득기준 혹은 취약계층 대상 등의 차별적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 특히 출산장려금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운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지원의 경우, 정책의 다양화 혹은 확대보다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질 향상 그리고 입소대기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 내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일부 정리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난감 및 도서대여 제공 장소 수와 제공 물품 확대를 위해서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주민센터와 지역 정보문화도서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끝내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맞벌이 가구의 입소대기 기간과 직장복귀 시일 등을 고려하여 입소대기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아울러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임박한 입소대기 맞벌이 가구에는 해당 서비스를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휴가 및 휴직지원 정책에서,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가구에 한하여 **'긴급조퇴(결근)'**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연 3~4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력유지와 돌봄시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인지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보다 활성화해야 함
- 과거보다 남성들의 육아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바, 이들의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남성들의 육아관련 휴가·휴직사용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향후 일정시점까지는 남성의 이들 제도 활용을 보다 더 강제할 필요가 있음

□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방문(부모)교육프로그램 시행을 제안함

-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편방문교육서비스를 공공사업의 성격으로 별도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영아 전문 병원이나 응급실의 경우 지역별 구축에의 격차가 큰 서비스로 나타났는데, 영아기의 경우 응급실 등의 이용이 빈번하므로 의료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라도 국비 혹은 광역시·도비를 편성해 지원이 필요한 기초지방자치단체부터 지원하여 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 부모의 양육을 지역차이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 근로유형별

□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필요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정책 수요자들의 유형을 취업여부, 육아지원서비스 기관 이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각각의 유형에 요구되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 유형1(맞벌이 가구/자녀 어머니 전일제 임금근로자/기관이용자)은 근로시간만큼의 기관보육이 제공되지 않아 보조양육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보육시간의 연장 혹은 추가적인 보조양육서비스 비용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유형2(맞벌이 가구/자녀 어머니 전일제 임금근로자/기관 미이용자)는 맞벌이 전일제 임금근로자이지만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의 양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지원이 필요함.
- 유형 3(맞벌이 가구/자녀 어머니 시간제 임금근로자/기관이용자)과 유형 4(맞벌이 가구/자녀 어머니 시간제 임금근로자/기관 미이용자)는 맞벌이 (모) 시간제 임금근로자로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정책의 사용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점진적으로라도 이들 집단에 대한 육아관련 휴가·휴직사용을 확대하여 부모 직접돌봄에 대한 선택권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유형5(맞벌이 가구/자녀 어머니 비임금근로자/기관이용자), 유형 6(맞벌이 가구/자녀 어머니 비임금근로자/기관 미이용자), 유형 7((부)홑벌이 가구/기관이용자), 유형8((부)홑벌이 가구/기관 미이용자)의 경우, 자녀 어머니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형태의 경제활동 참여자이거나 미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아버지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형6과 유형8의 경우 기관 외, 특히 가정 내 돌봄을 할 경우 양육자가 부정기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기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일시보육지원이 필요함.

라. 종합적 정책 방안

□ 앞서 살펴본 정책의 중요 방향성을 1) 자녀의 연령, 2) 가구특성, 3) 정책부문 등의 기준으로 아래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함.

□ 만 0세의 경우 '부모직접 돌봄 강화'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하여 정책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만1~2세의 경우 '다양한 양육지원 수요 포용'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함.

□ 공통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국공립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외에 영아기 양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의 차원에서 '영아수당(가칭)'을 신설하여 비용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 해소 방안, 통합양육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부처에서 구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자녀연령 및 가구근로유형별 세부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부모의 직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만 0세의 경우, 육아휴직의 사용을 보다 강화하고,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두어 반드시 일정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함.

□ 맞벌이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육아휴직 등의 제도 이용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 지원을 위한 시간정책 이용 대상자 확대를 통한 제도사용의 보편화를 달성해야 함.

□ 맞벌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등의 시간정책 활용도 제고하여 양육의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직접 돌봄을 할 경우 '영아기 특별 추가 양육수당' 지급 등을 통한 소득보전이 필요함.

□ 홑벌이 가구의 경우 특히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만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다양한 양육지원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맞벌이 전일제 임금근로가구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시간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긴급조퇴(결근)'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연 3~4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음.
-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맞벌이 가구임에도 보육서비스 기관의 입소대기가 길어질 경우 단기간에 한해서라도 보육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
- 근로시간과 보육서비스 기관이용 시간 차이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개별 가구의 보조양육서비스 활용 비용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I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연구의 체계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기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성장과 발달의 속도가 빠르며 인간 발달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로 신체·인지·정서 등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심순희·김수영, 2015; 이영환·오미연, 2006). 이 시기는 유아기나 아동기에 비해 신체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시기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일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관보육이용이 주를 이루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에 비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직접 돌봄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다. 맞벌이 영아 양육 가구의 경우에도 직접 돌봄에 대한 선호가 높아 해당 가구의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자녀의 직접 돌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이진숙·최인선, 2014).

이에 정부는 영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서비스 확대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먼저 정부는 여성의 노동권과 아동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아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5년에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고(여성가족부, 2006)[1], 이후 보육료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2012년부터는 영아를 포함하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 내 양육 지원의 경우, 정부는 2009년부터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기관 미이용 가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시간제 보육사업, 각종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가정양육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2].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양육자의 직접 돌봄권 확보를 위해 출산 및 육아휴가·휴직제도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영아에 대한 양육지원에 있어 지난 10여 년간의 정책 기조 변화의 핵심

1) 여성가족부(2006). 새싹 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 계획(2006-2010).
2)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내용은 기관보육 지원 확대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동시에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영아 양육지원 정책은 기관보육, 가정 내 보육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가정 내 양육지원(가정양육수당,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시간제 보육 포함),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영아 양육 정책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다양성은 정책 수요자의 차별화된 욕구를 반영한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다양성이 차별화된 수요에 대한 적합한 자원 제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수요를 섬세하게 파악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정책의 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할 경우, 적재적소에 자원이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정책 전반의 효과나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7)에도 영아 기관보육의 경우는 최근 현황 및 수요에 맞추어 대상 및 지원 범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영아 기관보육 활성화와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정책 방향이 상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아 보육 활성화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관을 통해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은 부모의 직접 돌봄권이 제한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아동의 돌봄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가정 내 양육지원의 경우 부모의 직접 돌봄권과 영아의 돌봄권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정 내 양육지원의 경우 자녀의 돌봄을 전담할 주 양육자가 반드시 가정 내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주 양육자의 노동권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두 제도에 관한 양육자들의 면밀한 수요를 파악하여 그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가 상충되지 않도록 제도의 설계가 다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두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다르므로 해당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여 각 서비스의 주요 대상 및 적정 공급 수준 및 시기를 명료화하여 사업별 상충효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영아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시행 주체가 다양하여 사업별 적정 규모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는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망라하여 기획되고 집행되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현행 영아 양육지원은 보건복지부(영아 기관보육, 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 가정양육

수당 등)와 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수당 및 출산 키트 제공 등 개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주체의 다양성과 사업의 다양성이 동시에 교차 될 때 정책 수요자들은 정책 인지 및 사용에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이는 결국 자원의 투입 대비 효과가 저하되는 비효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 제도의 공급 방식은 해당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정책 수요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영아 대상 정책은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정책의 개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정책 간의 정합성과 통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개별성, 정합성, 통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면밀한 수요 파악에서 이뤄져야 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 수요의 파악은 특정 시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영아와 양육자의 전 생애주기별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한다. 가령, 영아 양육시기에는 비용 지원과 더불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돌봄 선호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의 가구를 위하여 효율적인 기관보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아 양육을 지원함은 물론 자녀양육 방식의 선택권 보장에도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배경 하에 현재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의 혼재 속에서 영아 양육 지원에 대한 수요자들의 명확한 욕구를 분석하고 종합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지원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상별로 차별화된 욕구에 주목하여 영아 양육지원의 방향 및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심층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요자들의 명확한 수요 욕구를 분석하고 지원 목표와 대상을 명료화하는 과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세부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을 정책 특성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하고, 영아를 둔 다양한 가구의 양육지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조사는 가구특성별(맞벌이 여부, 소득수준),

자녀 연(월)령별, 이용 양육서비스별, 거주지역 등의 다양한 수요자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 가구별 각 자녀의 연(월)령별 선호하는 양육형태와 실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양육 형태를 비교하고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수요자의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은 보다 더 정책수혜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도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심층면담조사를 통하여 영아 부모의 가정양육과 기관보육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아울러 설문조사에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취약계층(농어촌지역, 한부모 가구 등)의 영아 양육지원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하여 본 연구는 ▲영아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을 명료화하고, ▲영아 양육에 부합하는 지원 다각화 전략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 보육지원의 내실을 기하여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반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양육지원 실태 및 정책 활용 제고 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영아 양육지원의 정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영아 양육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목표의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을 정책특성별로 검토하여 정책 기조 전반을 파악하고, 각 사업별 주요 대상 및 지원내용의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영아를 둔 가구의 양육지원 수요를 분석하여 대상별로 차별화된 욕구를 규명한다. 영아 양육 가구특성별(맞벌이 여부, 소득수준), 자녀 연(월)령별, 이용 양육서비스별, 거주지역별로 양육 실태 및 요구, 영아 대상 양육지원 제도 및 사업의 인지, 수혜 여부, 도움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요구를 파악하여 수요자 특성별 자녀 양육의 특성 및 애로사항과 차별화된 수요를 분석한다.

넷째,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권 및 효율적 양육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 부모의 가정양육과 기관보육에 대한 의견을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렴하고 분석한다.

다섯째, 영아 양육지원 정책 전반의 방향성 및 핵심 전략과 대상별 주요과제를 제시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영아 양육지원의 전반의 방향성, 주요 전략, 종합적 접근 차원에서 주요 사업 부문별 주요대상과 각 대상별 세부 양육지원 내용 및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수집·분석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하여 국내 영아보육 및 지원 정책의 연혁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영아기 보육지원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을 하여 전국의 총 1,400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영아 양육 가구특성별(맞벌이 여부, 소득수준), 이용 양육서비스별, 거주지역별로 영아 자녀의 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 영아 양육지원 제도 및 사업의 인지도, 수혜 현황, 도움 정도 인식 및 만족도, 개선 요구, 연령별 지원 방식 등 수요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 심층면담조사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집중 분석을 위하여 심층면담을 총 4회 실시한다. 0, 1, 2세아 각각의 연령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전업모와 취업모를 포함하여 영아부모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가구특성별 차별화된 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과 수요를 조사하고, 가정 및 기관 양육(지원)에 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분석한다.

〈표 Ⅰ-3-1〉 심층면담

구분	시기	면담대상	면담내용	특성	지역
1차	2019. 5	영아 어머니 3인	영아 양육의 현황, 어려움, 지원정책 수요파악 및 개선요구	취업모(육아휴직), 전업모, 전업모(학생)	경기도(도시)
2차	2019. 6	영아 어머니 2인	영아 양육의 현황, 어려움, 지원정책 수요파악 및 개선요구	취업모 (육아휴직)	서울
3차	2019. 9	영아 어머니 2인	영아 양육의 현황, 어려움, 지원정책 수요파악 및 개선요구	취업모(육아휴직), 취업모	경기도(읍면)
4차	2019. 9	영아 아버지 1인	영아 양육의 현황, 어려움, 지원정책 수요파악 및 개선요구	맞벌이	지방(도시)

주: 상세한 면담대상 정보는 심층면담 분석 장에서 확인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학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영아 양육지원의 방향 및 전략, 대상별 세부 지원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4. 연구의 체계

해당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될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Ⅰ-4-1〉 연구수행 체계

연구내용	연구방법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과 수요 분석	① 문헌연구 - 선행연구를 통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특성 검토 - 선행연구를 통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 검토 - 선행연구를 통한 영아 양유형태의 다양성과 영향요인 검토 - 양육지원 정책 전반을 특성별로 검토 ② 자료수집 및 분석 - 보육실태 조사(2015년, 2018년) 중 영아 부문 조사만 별도로 분석
▼	
양육자들의 영아 양육실태 및 수요 분석	① 설문조사 - 영아 양육 가구특성별(지역별, 소득수준별, 가족구성형태별, 고용상태별 등) 자녀 월령별 선호 양육형태 및 실제 양육형태에 대한 조사 - 양육서비스별, 거주지역별로 영아 자녀의 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 영아 양육지원 제도 및 사업의 인지도, 수혜 현황, 도움정도 인식 및 만족도, 개선 요구, 연령별 지원 방식 등 수요 전반에 대해 조사 ② 심층면담 - 영아자녀 연령, 지역특성, 맞벌이 여부 등의 고용상태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집중 분석을 위하여 심층면담조사 - 가구특성별 차별화된 양육 실태 및 애로상항과 수요에 대해 조사하고, 가정 및 기관 양육(지원)에 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분석
▼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	① 심층면담 - 영아 양육 가구특성별(지역별, 소득수준별, 가족구성형태별, 고용상태별 등)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면접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방정부, 지방정부 보건소 등 정책 집행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집행현황 및 개선사항 심층 면접 ②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Ⅱ

선행연구

01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특성
02 영아 양육형태 수요 특성
03 시사점

Ⅱ.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영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아 양육지원 정책이 유아나 아동기의 양육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영아 양육 형태에 대한 정책 수요 특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영아 정책 수요가 왜 다양화 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해본다. 마지막으로 영아 양육의 다양한 선택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영아 양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특성

가.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중요성

영아는 유아와 통합한 '영유아'로 연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아만 별도로 분리하여 진행한 연구의 수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36개월 미만의 영아는 유아와 발달이나 돌봄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르므로 영아의 양육은 유아와 분명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최상설·홍경준, 2012). 먼저 영아의 발달 측면보면 영아기는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기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 발달이 형성되는 기간이다(이미화·엄지원·정주영, 2014). 이 기간 동안 형성된 발달상황이 이후 영아가 직면하는 환경에 차별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와 같은 차별화된 환경에 대한 발달이 다시 그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경하·서소정, 2012). 특히, 이 시기의 영아는 자신을 돌보는 주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상(像)을 만들고 타인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나간다. 이렇게 영아기에 형성된 관계는 추후 대인 관계 뿐 아니라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미화 외, 2014).

이처럼 영아기에 강조되는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중요성은 영아기 돌봄의 특성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아기에 생활 전반에 걸친 중요한 발달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돌봄의 관점에서 달리 표현하면 이 시기의 영아는 누군가의 돌봄을 전일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돌봄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행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돌봄 대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살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라 규정될 수 있다(장수정, 2012; 김은정, 2015). 이러한 행위에는 음식을 먹이고 청결을 유지하는 생존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발달을 돕고 역량을 배양하는 영역까지 포함된다(Tronto, 2014). 이 시기의 영아는 먹고, 자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부터 시작해 배변활동까지도 양육자의 시간과 품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 뿐 아니라 이 시기의 영아는 잡고 일어서기, 걷기 등의 신체적 활동 뿐 아니라 말하기, 듣기의 언어적 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해당 영역 발달을 위한 양육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아는 유아나 아동에 비해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이며 양육자의 전일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

해당 시기는 양육 대상자뿐 아니라 양육자에게도 큰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많은 양육자들은 생애 처음으로 아이를 돌보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시기이다. 이 같은 양육 특성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다자녀 가구들은 먼저 태어난 자녀들을 돌보면서 전일적 돌봄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 소모의 강도도 배가된다(권경숙, 2008; 황성온·황지온, 2015). 특히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은 수유 시간이 짧은 특징이 있어 양육자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모유 혹은 분유 수유 방식, 아이의 긴급한 질병의 대처 방법, 자녀의 발달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시기이기도 하다(권경숙, 2008; 김종훈·이지영·성지현, 2013). 양육자들의 전일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이니 만큼 자녀와 분리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고립감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양육자들도 많다(김종훈 외, 2013). 특히, 영아기의 경우 산후 우울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기도하다. 아시아권의 산후 우울증은 서구와는 달리 문제의 중요성이 평가절하되어왔다는 평가이다. 그에 반해, 우울증으로 인한 영아에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이 시기에 양육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시사한다(방경숙, 2011).

따라서 영아기 양육정책 지원은 영아의 발달과 돌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진미, 2014). 따라서 영아기 시기의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은 영아뿐 아니라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세심히 이뤄져야 한다.

나.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방향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방향의 큰 흐름은 정부가 발표한 보육 중장기 발전 방향과 큰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013~2017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된 이미화·여종일·엄지원(2012: 15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이념은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나 보호자의 배경에 따른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 보육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보육정책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더불어 자녀양육의 최적임자로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강화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시설보육 중심의 지원에서 동등한 수준의 가정 내 양육 지원으로까지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큰 기조 하에 영아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2012년 실시된 0~2세 영아와 만 5세를 위한 공통과정(누리과정)에서 무상보육 지원에서 먼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영아기의 보육 서비스 정책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가 이뤄졌다. 영아기는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발달의 개인격차가 크므로 이시기에 경험하는 보육의 질이 영유아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 2013: 192). 따라서 영아보육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성인중심과 어린이집 중심 접근을 탈피하여 영아 중심의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이미화 외, 2013: 192). 한편, 영아 시설보육은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맞벌이, 취약가족 등의 종일보육 실수요자가 가구여건과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도록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시설 보육의 질은 교사 대 영아 비율, 교사 학력이나 경력 등의 구조적 측면과 발달에 적합한 활동, 따뜻하고 민감한 보육, 보육교사의 상호작용 등의 과정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

였다(이미화 외, 2013: 192).

유해미·이규림·이민경(2016)은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특성 파악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효과 측면에서 영아보육 위주인 가정어린이집의 이용·운영 실태 및 개선 요구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보육통계시스템 통계 및 설문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향 및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설문 대상은 두 그룹으로, 그룹1은 전국지역의 영아반 이용 중인 가정어린이집 이용부모 960명, 그룹2는 전국지역의 가정어린이집 원장 총 106명이 대상이었다. 또한 서울지역의 영아전담 1개소, 기관규모 및 정부지원 여부별 4개소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 규명 및 개선요구를 파악하고,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의 운영 방향 및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화 외(2013)은 영아반 이용부모 400명, 어린이집 원장 271명, 보육교사 422명을 대상으로 영아보육 운영 및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영아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영아보육의 질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영아보육 관련 변인과 질 관련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와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해외 선진국의 영아보육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아보육 운영 및 실태와 요구의 분석을 통해 질 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영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제안한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209)는 무상보육정책 시행으로 불필요한 기관이용을 유발한 측면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양육형태 선호에 따라 기관이용과 가정 내 양육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관과 양육환경에 배치되지 않는 양육형태 선택을 위하여 다양한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과 서비스 질 보장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정원 외, 2012: 209). 또한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 모취업률이 매우 낮으나 과거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2.9%에 불과하며, 취업을 중단한 이유가 가사·육아·일의 양립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을 감안할 때 가정 내 양육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가정양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이정원 외,

2012: 209). 특히, 영아기 자녀를 직접 돌보고자 할 경우 일과 가정 중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정원 외, 2012: 210). 더불어 양육에 대한 부모역량과 양육의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지원 강화를 중요한 방향으로 선택했는데, 부모조사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가구는 '육아의 보람과 기쁨,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나타났다(이정원 외, 2012: 210).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7: 251)는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도출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한 결과, 양육지원 정책이 부모의 어려움 해소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영유아'로 지원 관점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이는 부모의 편의가 아닌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과연 영유아기 시기에 아이들이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영유아가 누리는 돌봄의 수준이 정책의 목표 수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권미경 외, 2017: 251). 한편 영유아 부모들의 응답에서도 양육의 중요성은 높지만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인지하며 스스로의 양육 역량감 또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의 양육 가치 회복을 중요한 방향이라고 지적하였다(권미경 외, 2017: 252). 또한 영아가정은 조사결과 정보와 양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집단으로 파악되어, 영아 부모역량강화 방안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권미경 외, 2017: 270). 이를 위해 거점형 영아 양육지원 센터 모형 개발, 가정방문형 육아서포터즈 사업 확대(영아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발달에 맞는 안내와 놀이지도) 등을 제안하였다(권미경 외, 2017: 270-272).

마지막으로 영아 양육 지원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권에 대해 강조한 연구들이다.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이정원·이윤진·김희수, 2017: 210)에서는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으로 양육형태를 대별하여 부모의 선호나 조건에 맞춰 양육형태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가치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그간의 보육정책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영향요인과 적합환경을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한 연령에서는 가급적 가정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관이용 경험이 아동발달에 유익한 연령에서는 기관이용을 촉진하는 지원체계의 설계를 뜻하는 것이다(이정원 외, 2017: 210-211). 이를 위해서는 일하는 부모의 근로시간과 복무형태의 조정

이 필요하며, 적절이용시간 내 기관이용 격려, 육아지원체계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도 더불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이정원 외, 2017: 211). 부모들이 영아기 가정양육이 적절하다고 인식함에도 부모 직접양육, 개인대리양육자를 통한 가정양육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가구는 보육서비스의 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유일한 양육방법 선택이 어린이집 이용인 가정을 위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영아보육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이정원 외, 2017: 214). 이를 위해 영아발달을 고려한 영아보육시설 표준모형이 개발되어야 하며, 국공립영아보육시설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이정원 외, 2017: 214-215).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유해미·배윤진·김문정, 2014: 192)는 맞벌이 가구의 특성상 자녀돌봄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므로, 근무시간 동안 자녀양육을 대신할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특히 어린자녀의 경우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일가정양립 정책은 서비스 지원과 시간지원으로 대별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직장문화상 시간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이런 경우 서비스 지원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지만 장시간 노동에 따른 장시간 보육이 아동 권리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주지하며, 보육의 질이 낮을 시엔 만족할만한 선택지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유해미 외, 2014: 192-193). 따라서 노동환경 개선을 간과한 채 서비스개선만을 치중할 경우 영유아와 부모의 욕구와 무관하게 노동시간의 요구에 치중되는 방식으로 양육지원정책이 호도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유해미 외, 2014: 193). 이에 기관보육 지원 위주의 현행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모의 돌봄권을 주목하여 일가정양립이 용이한 노동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았다(유해미 외, 2014: 193). 더불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시간지원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시간지원 확대 시에는 여성고용률이나 성별 임금격차 등의 젠더 효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유해미 외, 2014: 193).

2. 영아 양육형태 수요 특성

가. 영아에게 적절한 양육형태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

영아의 양육형태에 대한 수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영아의 연령별 적절한

양육자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보육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을 위하여 수행된 이미화 외(2013: 83)에서는 만0~3세 연령별 적절한 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모인식을 조사[3]하였는데, 만0세 양육자는 부모가 99.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만1세는 부모 90.6%, 어린이집 9.1%, 만2세는 어린이집 58.3%, 부모 44.5%로 나타났고, 만3세는 어린이집/유치원 88.4%, 부모 15.7%로 나타나 만 0~1세는 부모가, 만2세는 기관과 부모가, 만3세 이상은 기관 이용을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같은 영아여도 만0~1세와 2세의 적절한 양육자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정원 외(2017: 136-137)에서는 보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0-2세 영아기는 어린이집 이용보다는 가정양육 권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4]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바람직한 양육형태에 대해 가정양육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만0세는 99.1%, 만1세 87.0%, 만2세 44.6%, 만3세 16.1%였고, 기관이용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만1세 13.0%, 만2세 55.4%, 만3세 83.9%로 나타났다(이정원 외, 2017:137-138). 이는 이미화 외(2013)와 비슷한 경향으로 영아기에서 0~1세는 부모가, 2세부터는 기관이용을 적절한 양육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아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영아의 연(월)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영아의 발달특성과 연계된 전일적 돌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영아라 하더라도 아이의 연(월)령에 따라 선호하는 주 양육의 형태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부모의 직접 돌봄에서 기관으로 옮겨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영아의 성장에 따라 양육자의 선호가 가변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유연한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모가 인식한 영유아기 연령별 적절한 양육자 응답결과(이미화 외, 2013)

	부모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양육자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만0세아	99.5	1.1	0.0	0.3	0.3	0.0	(379)
만1세아	90.6	4.2	0.0	0.3	9.1	0.0	(384)
만2세아	44.5	2.9	0.8	0.5	58.3	0.0	(384)
만3세아	15.7	1.6	0.0	0.3	70.6	17.8	(381)

주: 중복응답 문항
자료: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83.

4) 다소 바람직함 36%, 매우 바람직함 27%를 합한 수

나. 영아 양육형태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영향요인

영아의 경우 영아의 연(월)령별로 다소 간 차이가 나지만 영아 양육에 대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직접 돌봄 선호”, “전일적 돌봄 필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구의 상황이 이러한 양육 형태의 선호를 뒷받침해줄 수 없다.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선호하는 양육형태는 분명 존재하지만 양육자 개인과 가구가 갖는 제약 조건으로 인해 다른 양육 형태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양육자의 연령, 취업, 고용상태와 가구의 소득수준, 가족구조 등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양육 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제약 조건에 해당된다. 영아의 양육 수요는 특정한 선호와는 별개로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자 개인과 가구의 조건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육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최상설·홍경준, 2012; 김진미, 2014).

그렇다면 다양한 양육 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Kremer(2006)은 양육 유형을 크게 전일제 모성 돌봄(full-time mother care), 부모분담 돌봄(parental sharing care), 세대 간 돌봄(intergenerational care), 대리모 돌봄(surrogate mother care), 전문가 돌봄(professional care)로 분류한 바 있다. 전일제 모성 돌봄은 주 양육자인 모가 전일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며 부모분담은 부모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대 간 돌봄은 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고 대리모 돌봄은 베이비시터, 친척 및 이웃 등에 의한 돌봄을 말한다. 전문가 돌봄은 보육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 의해서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이다(Kremer, 2006; 김윤정·문순영, 2009). Kremer의 이 같은 유형은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차용되어왔던 거시적인 체제와 비교해 좀 더 돌봄이라는 실질적인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 Esping-Andersen(1999)이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주창한 돌봄의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과 가족수당, 소득공제액 수준을 사용한 바 있다(Esping-Andersen, 1999; 류연규, 2007 재인용). 이러한 분류는 돌봄이라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국가 시장으로 대변되는 돌봄 정책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이에 반해 Kremer는 돌봄이라는 행위 자체를 누가어디서 수행하며 그 돌봄은 돌봄 대상자(영유아, 아동)에게 충분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Kremer(2006)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양육의 주체와 장소를 기준으로 양육유형을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명하는 용어는 연구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크게 직접 양육과 대리양육으로 대분하고, 대리 양육은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시설을 통한 기관 대리 양육과 보모(베이비시터), 이웃, 조부모·친인척 등과 같은 개인 대리양육으로 세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전상민, 2011; 최상설·홍경준, 2012; 김진미, 2014; 최상설, 2018).

〈표 Ⅰ-2-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양육유형

연구자(연도)	내 용
Esping-Andersen (1999)	•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 가족수당과 소득공제액
Kremer(2006)	• 전일제 모성 돌봄(full-time mother care) • 부모분담 돌봄(parental sharing care) • 세대 간 돌봄(intergenerational care), • 대리모 돌봄(surrogate mother care) • 전문가 돌봄(professional care)
전상민(2011)	•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민간) • 개인대리양육자 - 혈연보육서비스(부모, 친인척 등이 제공) - 비혈연보육서비스(정부, 비영리단체, 영리기업 등에서 제공)
최상설·홍경준(2012)	• 직접양육 • 대리양육 - 시설양육 : 미인증 시설양육, 인증 시설양육 - 개인대리양육 : 무급 개인대리양육, 유급개인대리양육
김진미(2014)	• 어머니 주양육 • 개인대리양육 • 보육시설(어린이집) • 개인대리양육과 보육시설 모두 이용
최상설(2018)	• 가정내 돌봄 • 어린이집 돌봄

자료: Esping-Andersen(1999); Kremer(2006); 전상민(2011); 최상설·홍경준(2012); 김진미(2014); 최상설(2018) 각 연구를 참고하여 재정리

다음으로 양육자들이 양육 형태를 선택할 때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주양육자의 연령, 교육수준, 고용 상태 등이 양육 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취업 상태의 경우 양육형태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전상민, 2011). 취업 상태일 경우 양육자가 직접 전일적으로 돌보기위해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가령, 양육자가

영아 자녀의 직접 돌봄을 선호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정책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보육 서비스 이용을 통한 기관 대리 양육이나 민간·공공 도우미와 같은 개인 대리양육 형태가 주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가구 구조나 가구원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부모나 친척 등 혈연관계를 통한 대리 양육이 가능한 경우 부모가 직접 돌봄을 하지는 못하지만 가정 내 양육 형태를 선택할 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 등과 같이 혈연관계를 통한 개인 대리 양육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 보육 시설을 통한 대리 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이 양육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리 주 양육자가 보육 기관을 통한 서비스 보다면 가정 내 대리 양육을 선택하고 싶어도 해당 지역에서의 공공·민간 도우미 인력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 보육 기관을 토한 서비스 수급도 지역의 보육시설 공급의 충분성과 접근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표 Ⅰ-2-2〉 영아 양육형태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주요 요인	내 용
개인적 특성	- 객관적 특성 : 교육수준, 연령, 취업여부, - 주관적 특성 : 돌봄에 대한 태도, 직장 복귀계획
아동의 특성	- 객관적 특성 : 아동의 연령, 가구 내의 아동 수
가구의 특성	- 객관적 특성 : 가구형태(가족구조), 가구원수, 소득 수준 - 주관적 특성 : 남편 양육참여, 주변 지원 정도
지역적 특성	- 객관적 특성 : 행정구역별 특성(대도시,중소도시,읍면동) 서비스 접근성 - 주관적 특성 : 보육시설의 충분성,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

자료: 전상민(2011); 최상설·홍경준(2012); 김진미(2014); 김영미·류연규(2014) 참고 재정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양육자가 양육형태를 선택할 시 하나의 양육형태만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전일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아의 특성상 직접양육과 기관과 개인을 통한 대리양육이라는 주 형태는 있겠지만 양육자가 하나의 양육형태만 선택하기 보다는 보조 양육형태도 함께 취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육형태의 조합은 하나의 정책수단만을 선택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양육자 상황별로 자녀의 연령별로 지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양육자가 휴가 정책이 가능한 시기에는 유아의 월령이 만 0세 이며 이 시기에는 주 양육자가 가정내에서의 직접 양육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육아종

합지원센터 등의 시간제 보육이나 혈연·비혈연에 의한 대리 양육 형태를 보조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육아휴직 제도가 종료되고 영아도 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 양육형태는 기관을 통한 대리 양육 형태를 띠게 되지만, 기관 보육 종료 후 보조 양육을 직접 부모가 수행할 수도 있고 개인에 의한 대리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의 연구에서는 돌봄 지원 정책의 설계 시 단지 양육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탈가족화와 가족화에 국한되지 말고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의 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 바 있다.

〈표 Ⅰ-2-3〉 정책수단에 따른 양육형태의 조합

정책수단		양육형태	주 정책대상자	정책목표 (보장권리)
대분류	소분류			
시간 정책	휴가정책 (출산휴가, 육아휴직)	·주: 직접양육 ·부: 대리양육	·취업모/취업부	·영아의 돌봄권 확보 ·양육자의 육아권 확보
	유연근무제 육아기근로 시간 단축	·주: 직접양육 ·부: 대리양육	·취업모/취업부	·영아의 돌봄권 확보 ·양육자의 육아권 확보 ·양육자의 노동권 확보
비용지원 정책	가정양육 수당	·주: 직접양육 ·부: 대리양육	·전업모/전업부	·영아의 돌봄권 확보 ·양육자의 육아권 확보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주: 대리양육 ·부: 직접양육	·취업모/취업부 ·전업모/전업부	·영아의 육아권 확보 ·양육자의 노동권 확보
	아이돌봄 서비스			
보육 서비스 정책	육아종합 지원센터	·주: 직접양육 ·부: 대리양육	·취업모/취업부 ·전업모/전업부	·영아의 돌봄권 확보 ·양육자의 양육권 확보
	건강가정 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자료: 본 연구진이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함.

3. 시사점

이상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아기 발달이 전 생애 발달의 토대가 되고, 영아는 주양육자에게 전인적으로 의존된 존재라는 점에서 누가 어떻게 양육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아 양육에 대한 주된 수요는 주로 직접 돌봄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수요는 영아의 성장에 따라 다소가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거시적인 정책방향은 그간의 노동권 확보와 양육자의 편의 및 어려움을 해소라는 성인 중심의 양육지원정책에서 영아발달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영아 중심으로 정책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의 육아권과 아동의 돌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정 내 양육지원을 동등한 중요도를 가지고 균형 있게 양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은 첫째, 부모의 취업여부 및 취약계층 등의 가구 여건을 고려하여 양질의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울 경우를 위한 질적인 영아보육을 국가책임 하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하는 부모의 육아권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의 개선과 시간지원 정책의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장시간 보육을 지양하고, 젠더 효과에 대한 경계 등 다각적 방면을 고려한 양육지원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육이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인식에서 양육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 및 육아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만 0~1세 시기에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가장 적절하다는 부모인식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부모의 양육 가치관과 가구 여건에 맞는 양육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아기는 부모의 직접육아를 지원하는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01 비용 지원 정책

02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03 시간지원정책

Ⅲ.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본 장에서는 영아 양육지원 정책을 정책특성별로 정리하고, 이들 정책의 이용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비용 지원 정책

가. 영유아(0~2세) 보육료

2019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 대하여 종일반 부모보육료의 경우 만0세 454천원, 만1세 400천원, 만2세 331천원을 지원하고, 맞춤반의 경우 각각 354천원, 311천원, 258천원을 지원한다(표 Ⅲ-1-1 참조).

〈표 Ⅲ-1-1〉 영유아보육료 단가(2019)

단위: 원

연령		종일반		맞춤반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만0세	종일	454,000	485,000	354,000	485,000	60,000
	24시간	681,000	-	-	-	-
만1세	종일	400,000	264,000	311,000	264,000	60,000
	24시간	600,000	-	-	-	-
만2세	종일	331,000	179,000	258,000	179,000	60,000
	24시간	496,000	-	-	-	-

자료: 복지로, 보육료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2019. 3. 8 인출)

〈표 Ⅲ-1-2〉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황

단위: 명

연령	종일반, 맞춤반
	계
만0세	121,314
만1세	304,880
만2세	379,170
총계	805,371

주: 2018.12.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8년 보육통계. p. 233.

나. 양육수당

2009년 7월에 도입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 기준 0~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양육수당은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가정 양육 아동에게 지원한다(표 Ⅲ-1-3 참조).

〈표 Ⅲ-1-3〉 연령별 양육수당(2019)

단위: 천원

연령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0	200	200
12~23개월	150	177	
24~35개월	100	156	

자료: 복지로, 양육수당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2019. 3. 8 인출)

가정양육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0~11개월 영아에게는 291,106건이 지급 되었고 12~23개월 영아에게는 총 236,328건이 지급되었으며, 24~35개월 영아에게는 총 88,435건이 지급되어 총 615,869건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Ⅲ-1-4 참조).

〈표 Ⅲ-1-4〉 가정양육수당 지급 현황

단위: 건

연령	일반아동		장애아동		농어촌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0~11개월	148,459	141,221	6	6	710	704	149,175	141,931	291,106
12~23개월	119,886	114,963	142	104	600	633	120,628	115,700	236,328
24~35개월	44,044	43,459	303	212	215	207	44,562	43,873	88,435
합계	312,389	299,643	451	322	1,525	1,544	314,365	301,504	615,869

주: 2018.12.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8년 보육통계. pp. 276-279.

다. 아동수당

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은 0세부터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아동수당, 2019. 10. 1 인출[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아동수당, 2019. 10. 1 인출[6]), 또한 소득·재산 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지원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7. 19: 1).

〈표 Ⅲ-1-5〉 아동수당 연혁

구분	도입	보편지급	연령확대
시행 일자	2018.9.1	2019.1.1	2019.9.1
아동수당 대상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19.4월 시행, 1월분부터 소급)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자료: 아동수당 http://www.ihappy.or.kr/info/intro.php (2019. 10. 1 인출)

아동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2018년 11월에는 221만 명에게 지급되었고, 2019년 4월에는 231만 명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Ⅲ-1-6, 표 Ⅲ-1-7 참조).

〈표 Ⅲ-1-6〉 아동수당 신청·지급 현황(2018년 9~11월 누적치)

단위: 만 명, %

구분	신청	지급	제외	지급여부 미 결정자		
				소계	금융재산 조회 중	지자체 조사 중
아동 수	240.1	221.1	9.7	9.3	3.0	6.3
비율	100.0	92.1	4.0	3.9	1.2	2.6

주: 2018. 11. 22.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11. 22). 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p. 1.

〈표 Ⅲ-1-7〉 아동수당 신청·지급 현황(2019)

단위: 만 명, %

전체대상 아동 수	신청 아동 수	아동수당 신청률	'19.4.25		'19.4.25 아동수당 지급아동수(C)				4월 급여지급 미결정자
			지급 아동 수	급여지급률	기존 결정인원	신규 결정인원			
						직권 신청	신규신청		
							기존 미신청자	신규출생아 (1.15일~)	
(A)	(B)	(B/A)	(C)	(C/A)					(B-C)
236.7	232.7	98.3	230.8	97.5	205.8	11.8	6.3	6.9	1.8

주: 2019. 4. 25.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4. 25).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p. 2.

5) 아동수당, 연혁 http://www.ihappy.or.kr/info/intro.php (2019. 10. 1 인출)
6) 아동수당, 자주하는 질문 11번 http://www.ihappy.or.kr/faq/faq.php (2019. 10. 7 인출)

라. 기타 비용 지원

가정 내 양육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필요시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8a: 289).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한다(여성가족부, 2019: 17-1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을 대상으로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영유아 예방 접종률을 향상함과 동시에 양육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표 Ⅲ-1-8 참조).

〈표 Ⅲ-1-8〉 비용 지원 정책

<table>
<tr><th>사업</th><th>대상</th><th>지원내용</th></tr>
<tr><td>아동수당[1)]</td><td>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td><td>· 월 100,000원 지원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원</td></tr>
<tr><td>영유아 보육료[2-1)]</td><td>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 종일(7:30~19:30, 일12시간):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 맞춤(9:00~15:00, 일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종일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td><td>· 어린이집 이용 영아에게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금액[2-2)] (2019 기준, 단위: 원)
<table>
<tr><th rowspan="2">연령</th><th colspan="2">정부지원</th><th rowspan="2">부모부담</th></tr>
<tr><th>종일반</th><th>맞춤반</th></tr>
<tr><td>만0세</td><td>454,000</td><td>354,000</td><td>0</td></tr>
<tr><td>만1세</td><td>400,000</td><td>311,000</td><td>0</td></tr>
<tr><td>만2세</td><td>331,000</td><td>258,000</td><td>0</td></tr>
</table></td></tr>
<tr><td>가정 양육수당 지원[3)]</td><td>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td><td>·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0,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장애아동 및 농어촌 차등지급)</td></tr>
<tr><td>시간제 보육[4)]</td><td>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td><td>· 지원시간: 월 80시간
· 보육료 이용 단가: 시간당 4,000원 중 3,000원 지원(부모부담 1,000원)</td></tr>
<tr><td>시간연장형 보육료</td><td>만 0~2세 종일반 보육료(맞춤반 보육료 지원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td><td>· 지원 단가: 일반 아동(시간당 3,100원), 장애 아동(시간당 4,100원)
· 이용가능시간: 평일 19:30~24:00, 토</td></tr>
</table>

사업	대상	지원내용
지원[5]	육료(취학전)를 지원 받는 아동을 지원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요일 15:30~24:00 ·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6]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 차등 - 영아 종일제: 월 60-20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9,650원)의 일부를 지원 - 시간제: 연 72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일반형 9,650원, 종합형 12,550원)의 일부를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7]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아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에이즈, 방사선 치료 등 특정 9개 상황 해당자	·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8]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월령별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실시 · 9종의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9]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 대상 백신(17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등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10]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대상자: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환아관리대상자: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비용 (2~4만원), 2차 정밀검사 비용(7만원 한도) ·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 제공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11]	· 시 · 군 · 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둘째아: 소득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만원, AABR 2만7,000원)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ABR 본인부담금) ·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12]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둘째아: 소득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용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13]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table>
<tr><th>사업</th><th>대상</th><th>지원내용</th></tr>
<tr><td>장애아동 수당[14]</td><td>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미해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td><td>중증장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 매월 20만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차상위: 매월 15만원
· 보장시설 거주 생계·의료급여수급: 매월 7만원
경증장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 매월 10만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차상위: 매월 10만원
· 보장시설 거주 생계·의료급여수급: 매월 2만원</td></tr>
<tr><td>장애아 보육료 지원[15]</td><td>-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을 지원</td><td>· 장애아반 편성아동: 46만2,000원 지원
·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46만2,000원</td></tr>
<tr><td>장애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16]</td><td>·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으로 인해 입양당시 질환을 앓은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위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td><td>·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td></tr>
<tr><td>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17]</td><td>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
- 만 18세까지 지원</td><td>· 중증장애 입양아동: 월 62만7,000원
· 경증장애 입양아동: 월 55만1,000원</td></tr>
<tr><td>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18]</td><td>·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td><td>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본인부담금 차액은 국고 지원
·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td></tr>
<tr><td>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9]</td><td>·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td><td>-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td></tr>
<tr><td>다문화 보육료 지원[20]</td><td>· 다문화가족 자녀 만 0-5세아 지원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td><td><table><tr><th>연령</th><th>종일반</th><th>맞춤반</th></tr><tr><td>만0세</td><td>454,000</td><td>354,000</td></tr><tr><td>만1세</td><td>400,000</td><td>311,000</td></tr><tr><td>만2세</td><td>331,000</td><td>258,000</td></tr><tr><td>만3-5세</td><td colspan="2">22만원</td></tr></table></td></tr>
<tr><td>해산급여[21]</td><td>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td><td>· 1인당 60만원 지급(쌍둥이 120만원)</td></tr>
<tr><td>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지원[22]</td><td>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td><td>· 임신·출산 진료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분만취약지 30일 이상 거주: 20만원 추가 지원</td></tr>
<tr><td>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23]</td><td>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td><td>·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td></tr>
</table>

사업	대상	지원내용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24]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 해산비로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25]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지원[26]	전국 가구평균소득 50%~100% 이하인 한부모가구(아이돌봄서비스 나형~다형)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시간당 1천원 지원)

자료: 1) 아동수당 http://www.ihappy.or.kr/ (2019. 10. 1 인출)
2-1) 복지로, 보육료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2019. 3. 8 인출)
2-2) 보건복지부(2019a). 2019년 보육사업안내. p. 89
3) 보건복지부(2018a).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344
4) 복지로, 시간제보육.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12397 (2019. 3. 5 인출)
5) 복지로,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6 (2019. 7. 2 인출)
6)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17-19.
7)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searchCnDivCd=&welInfSno=50 (2019. 3. 5 인출)
8) 복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322 (2019. 3. 5 인출)
9) 복지로,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245 (2019. 3. 5 인출)
10) 복지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36 (2019. 7. 2 인출)
11) 복지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237 (2019. 7. 2 인출)
12) 복지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27 (2019. 7. 2 인출)
13) 복지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299 (2019. 7. 2 인출)
14) 복지로, 장애아동수당.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31 (2019. 7. 2 인출)
15) 복지로, 장애아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293 (2019. 7. 2 인출)
16) 복지로,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2 (2019. 7. 2 인출)
17) 복지로, 장애아동입양 양육 보조금.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8 (2019. 7. 2 인출)
18) 복지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360 (2019. 7. 2 인출)

19) 복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2 (2019. 7. 2 인출)
20) 복지로, 다문화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28 (2019. 7. 2 인출)
21) 복지로, 해산급여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283 (2019. 7. 2 인출)
22) 복지로,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315 (2019. 7. 2 인출)
23) 복지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250 (2019. 7. 2 인출)
24) 복지로,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308 (2019. 7. 2 인출)
2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 (2019. 7. 2 인출)
26) 정부24, 한부모 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000000302080 (2019. 7. 2 인출)

시간제 보육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18년 437개반, 2019년 10월 기준 459개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의 경우 2018년말 기준 1,143개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Ⅲ-1-9, 표 Ⅲ-1-10 참조).

〈표 Ⅲ-1-9〉 시간제 보육운영 현황

단위: 보육반 수(연평균 보육반 수)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월
총계	237(166)	382(346)	438(411)	437(443)	459(-)

주: 2019년 10월 말 기준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보육 현황 http://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4.jsp (2019. 11. 30. 인출)

〈표 Ⅲ-1-10〉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어린이집수	남	여	계
시간연장	382	582	561	1,143
휴일	95	169	145	314
총계	477	751	706	1,457

주: 2018.12.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8년 보육통계. p. 127.

아이돌보미 이용자 추이를 보면 시간제의 경우 2014년 49,989가구였고, 2018년 60,053가구로 증가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은 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통합센터가 13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돌봄서비스 양성교육기관은 여성인력새로일하기센터가 24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Ⅲ-1-11, 표 Ⅲ-1-12, 표 Ⅲ-1-13 참조).

〈표 Ⅲ-1-11〉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추이

단위: 가구수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간제	49,989	52,354	55,958	58,489	60,053
종일제	4,373	5,333	5,263	5,057	4,538
총	54,362	57,687	61,221	63,546	64,591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주요통계 이용자 현황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 (2019. 6. 25 인출)

〈표 Ⅲ-1-12〉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단위: 개소

계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통합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단체 여성인력	지자체 직영	사회 복지관	지활 센터	기타
222	135	25	13	10	10	4	4	21

주: 2018. 12 기준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주요통계 이용자 현황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 (2019. 6. 25. 인출)

〈표 Ⅲ-1-13〉 아이돌봄서비스 양성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소

계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통합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인력새로 일하기센터	YWCA/ YMCA	기타
47	6	6	2	24	4	5

주: 2018. 12 기준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주요통계 이용자 현황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 (2019. 6. 25 인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2016년 5월 기준으로 14,212명으로 나타났다(표 Ⅲ-1-14).

〈표 Ⅲ-1-1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누적 수혜자 수(2016년 5월 기준)

단위: 명, %

1월	2월	3월	4월	5월	계(A)	2015년 목표치(B)	수혜율 (A)/(B)
8,917	10,569	12,879	15,054	17,141	현재 14,212명	51,136	27.8%
					누적 17,141명		33.5%

주: 2016년 3월말 기준 대상자 소계 6,109명 중 기저귀 지원 대상 6,102명, 조제분유 7명으로 기저귀 지원을 받는 비율이 99.9%로 거의 대부분임
자료: 최윤경·이정원·박진아·송헌재·이동하(201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효과성 분석 및 평가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8.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0세 2,886명, 1~4세 20,206명, 5~9세 43,927명으로 집계되었다(표 Ⅲ-1-15).

〈표 Ⅲ-1-15〉 연령별 성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단위: 명

구분		계	0세	1-4세	5-9세
2018	계	1,484,671	2,886	20,206	43,927
	남	676,449	1,482	10,191	22,319
	여	808,222	1,404	10,015	21,608

자료: 국민건강보험, 2018년 의료급여 주요통계
https://www.nhis.or.kr/menu/boardRetriveMenuSet.xx?menuId=F3323 (2019. 7. 17. 인출)

국가예방접종 2019년 1~2분기 현황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5,299,632건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으며, 백신별 현황은 다음 〈표 Ⅲ-1-16〉과 같다(표 Ⅲ-1-16 참조).

〈표 Ⅲ-1-16〉 2019년 1~2분기 백신별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년 1~2분기			분기별	
		누 계	보건소	의료기관	1분기	2분기
합 계		5,299,632	714,425	4,585,207	2,980,770	2,318,862
BCG 피내		127,760	63,559	64,201	69,946	57,814
B형간염		495,804	43,139	452,665	257,923	237,881
DTaP		259,153	9,154	249,999	142,514	116,639
IPV		101,179	3,967	97,212	62,439	38,740
Hib		199,675	10,028	189,647	105,593	94,082
DTaP-IPV		207,765	15,094	192,671	133,955	73,810
DTaP-IPV/Hib		453,820	30,933	422,887	230,675	223,145
Td/Tdap		216,919	37,286	179,633	118,421	98,498
MMR		553,669	28,110	525,559	378,641	175,028
일본뇌염	사백신	748,736	59,165	689,571	426,060	322,676
	생백신	92,790	9,856	82,934	46,923	45,867
수두		176,450	7,909	168,541	95,095	81,355
PCV		652,845	36,768	616,077	335,295	317,550
HepA		391,657	16,783	374,874	206,450	185,207
HPV		159,158	20,682	138,476	84,462	74,696
인플루엔자	소아	144,021	3,761	140,260	136,857	7,164

주: 1) 2019. 7. 2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된 자료로, 산출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2) 12세 이하 어린이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9년 1~2분기 백신별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 현황 https://nip.cdc.go.kr/irgd/support.do (2019. 7. 17. 인출)

보건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아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의 일환으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기준으로 약 1,1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7. 17 인출[7]). 기존에 특수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질환은 선천선대사이상이 페닐케톤뇨증 외 11개 질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크론병과 단장증후군이 있는데, 전문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부터는 3개 질환(지방산대사장애,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에 대해 특수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7. 17 인출[8]). 2018년 기준으로 이상의 3개 질환 대상 영유아는 573명으로, 장림프관확장증 284명, 담관(도)폐쇄 105명, 지방산대사장애 184명이다(표 Ⅲ-1-17 참조).

〈표 Ⅲ-1-17〉 2018년 건강보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 이용 현황(만 5세 이하)

단위: 명

계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희귀난치성)
573	184	105	284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본격 시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207 (2019. 7. 17. 인출)

장애아 및 다문화 보육료 지원 현황을 보면 만 2세 장애아의 경우 1,413명을 지원하여 가장 많은 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2010년 22,630백만원 예산이 사용되었고,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한 21,72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18, 표 Ⅲ-1-19 참조).

〈표 Ⅲ-1-18〉 장애아 및 다문화 보육료 지원 현황(2018년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장애아	다문화
만0세	127	3,069
만1세	231	8,246
만2세	1,055	10,465
총계	1,413	21,780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8년 보육통계. p. 234.

7)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본격 시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207 (2019. 7. 17. 인출)

8)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본격 시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207 (2019. 7. 17. 인출)

〈표 Ⅲ-1-19〉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예산액			22,630	26,205	27,673	27,565	26,612	26,612	23,398	22,593	21,727
수급자수			23,057	23,586	22,813	22,777	21,121	20,434	19,934	19,323	18,568
지급 금액	중증	기초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차상위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경증 (기초 및 차상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관련 통계('18.12월).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8&CONT_SEQ=293152 (2019. 4. 19 인출)

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에 대한 18세미만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15,171명으로 대상자 수는 2013년 이래로 지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된다(표 Ⅲ-1-20 참조).

〈표 Ⅲ-1-20〉 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

단위: 명

구 분	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2009년	259,406	21,258	90,775	**147,373**
2010년	276,689	21,789	91,962	**162,938**
2011년	307,527	23,348	108,763	**175,416**
2012년	322,454	22,387	120,566	**179,501**
2013년	331,223	24,836	123,666	**182,721**
2014년	335,832	31,906	127,482	**176,444**
2015년	326,904	30,968	130,012	**165,924**
2016년	292,757	27,453	127,444	**137,860**
2017년	279,568	27,245	128,252	**124,071**
2018년	272,373	27,339	129,863	**115,171**

자료: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1&CONT_SEQ=305372 (2019. 7. 17. 인출)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수급한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미취학 한부모가구 중 31.9%가 현재 지원받고 있으며, 6.6%는 과거에 지원받은 적이 있고, 39.4%는 제도는 알고 있으나 수혜한 경험은 없었고, 22.0%는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표 Ⅲ-1-21 참조).

〈표 Ⅲ-1-21〉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경험(2018년)

단위: 가구, %

구분		사례수 (가구)	현재 지원받음	과거 지원받은 적 있음	제도 알지만 받은 적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전체		2,500	25.4	5.5	46.7	22.4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74	31.9	6.6	39.4	22.0
	초등학생	876	23.9	5.7	49.9	20.5
	중학생이상	1,249	24.4	5.1	46.6	23.8

자료: 통계청,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385&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2015_009 (2019. 7. 17. 인출)

〈표 Ⅲ-1-22〉 해산급여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급여종류별	2011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3,889,419	3,090,698	800,234
생계급여	3,137,007	2,497,511	639,496
주거급여	721,119	574,918	146,201
교육급여	140,873	113,312	27,561
해산장제급여	18,269	14,537	3,732

자료: 통계청, 국민기초생활급여-급여종류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12&conn_path=I2 (2019. 7. 17. 인출)

2.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돌봄 장소, 장난감 및 도서 이용, 교류 기회, 품앗이 활동 연계 등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8: 195).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며, 일시보육서비스, 장난감 대여, 도서 및 교재교구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영유아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로, 2019. 3. 5 인출)[9].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돕기 위해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복지로, 2019. 3. 5 인출)[10].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맞춤형

9) 복지로,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43 (2019. 3. 5 인출)

10) 복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고자 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을 발굴하도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며 아동 8종, 임신부 2종, 부모 1종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복지로, 2019. 3. 5 인출)[11](표 Ⅲ-2-1 참조).

〈표 Ⅲ-2-1〉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사업	대상	지원내용
공동육아 나눔터[1]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	· 자녀돌봄 활동 장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이용, 대여 ·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 제공 ·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연계 등
육아종합 지원서비스 제공[2]	영유아 및 부모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3]	지역주민	·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가족문화프로그램 등
드림 스타트[4]	0세(임산부)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아동(총 8종):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 폭력 예방 교육 등 · 임산부(총 2종): 산전/산후검진, 예비부모 교육 · 부모(총 1종):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5]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 된 영유아	· 산모수첩 및 어린이건강수첩을 제공
장애아가족 양육지원[6]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 선정)	· 가정 당 연 60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를 받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언어발달지원 사업[7]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12세 미만 비장애자녀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선정)	· 언어재활, 독서지도, 수화지도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8]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	·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 ※ 어업인 가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또는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

chIntClId=02&searchCnDivCd=&welInfSno=63 (2019. 3. 5 인출)

11) 복지로,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301 (2019. 3. 5 인출)

사업	대상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9]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20일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5일 연장 가능
발달재활서비스[10]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6세 미만 아동은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어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 가능	·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 · 발달재활서비스 소요비용 차등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11]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 ·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12]	· 방문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방문 부모교육: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생애주기별	·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1:1 한국어 교육 무상지원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 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무상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13]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14]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 최대 50개월
부모교육 매뉴얼 콘텐츠[15]	부모	· 생애주기 및 가족 특성별 매뉴얼 · 교육대상의 특성별로 세부 주제 결합으로 모듈식 강의 · 부모교육 시행기관에서 인쇄물, 홈페이지, 앱 등으로 자료 열람 가능
온라인 동영상 강의(교육물) 제작·보급[15]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에게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상시 교육 기회 부여
부모교육 강사 정보 온라인 검색시스템 운영[15]	부모	·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의 맞춤형 부모교육 강사 선택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양성된 전문강사 정보를 상시 제공 · 패밀리넷(familynet.or.kr) '부모교육 강사 정보' 메뉴 서비스 운영

사업	대상	지원내용
취약가족대상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서비스(가족행복드림서비스)[15]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해체, 가족관계 단절, 가정폭력·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취약가족	· 대상 가족을 방문하여 상담·교육 서비스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시·도별 1개소)
어깨동무 부모교실 운영지원[15]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일반 및 취약가정 부모 등) 모임 대상으로 지속적인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부모-자녀 긍정적 관계형성 및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도모 · 부모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부모교육의 자발적 활성화 도모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개 권역 52개 기관 85개 부모모임 지원

자료: 1-1) 복지로, 공동육아나눔터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65 (2019. 3. 5 인출)
1-2)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 195.
2) 복지로,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02&searchCnDivCd=&welInfSno=43 (2019. 3. 5 인출)
3) 복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02&searchCnDivCd=&welInfSno=63 (2019. 3. 5 인출)
4) 복지로,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301 (2019. 3. 5 인출)
5) 복지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235 (2019. 7. 2 인출)
6) 복지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40 (2019. 7. 2 인출)
7) 복지로, 언어발달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9 (2019. 7. 2 인출)
8) 복지로,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6378 (2019. 7. 2 인출)
9)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56 (2019. 7. 2 인출)
10) 복지로, 발달재활서비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8 (2019. 7. 2 인출)
11) 복지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직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437 (2019. 7. 2 인출)
12) 복지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001&welInfSno=12399 (2019. 3. 5 인출)
13) 복지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25 (2019. 7. 2 인출)
14) 복지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26 (2019. 7. 2 인출)
1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 3. 12).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이 달라집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현황은 2018년 상반기 동안 누적 328,361명으로 집계되었다. 월별로는 약 3~6만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표 Ⅲ-2-2 참조).

〈표 Ⅲ-2-2〉 월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현황 추이(2018)

단위: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계	32,467	35,018	59,206	66,234	66,440	68,996	328,361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년 상반기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실적 Report. http://www.kihf.or.kr/lay1/program/S1T62C69/photo/arlim/hongbo/view.do?article_seq=1112291&cpage=&rows=12&condition=&keyword= (2019. 8. 16 인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5월말 기준 설치된 개소수가 중앙센터 1개, 시도센터 18개, 시군구 센터 86개이다.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 단위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시군구 수에 비해 지역별 설치수가 적은 편이다(표 Ⅲ-2-3 참조).

〈표 Ⅲ-2-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019년 5월말 기준)

단위: 개

구분	중앙센터	시도센터	시군구 센터
서울특별시	1	1	25
부산광역시	-	1	7
대구광역시	-	1	1
인천광역시	-	1	5
광주광역시	-	1	-
대전광역시	-	1	-
울산광역시	-	1	4
세종특별자치시	-	1	-
경기도	-	2	26
강원도	-	1	1
충청북도	-	1	2
충청남도	-	1	1
전라북도	-	1	4
전라남도	-	1	1
경상북도	-	1	3
경상남도	-	1	5
제주특별자치도	-	1	1
계	1	18	86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https://www.data.go.kr/dataset/15024860/fileData.do (2019. 7. 17. 인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수는 2013년 이래로 2018년까지 151개소를 유지하고 있다(표 Ⅲ-2-4 참조).

〈표 Ⅲ-2-4〉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수

단위 :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수	98	138	139	148	151	151	151	151	151	151

자료: e-나라지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2 (2019. 7. 17. 인출)

언어발달지원사업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387명이 이용하였고, 지원금액은 73,966천원이다(표 Ⅲ-2-5 참조).

〈표 Ⅲ-2-5〉 연도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이용자 수	313	398	421	387
이용액	60,183	75,916	78,562	73,96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p 72.

발달재활서비스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52,830명이 이용하였고, 지원금액은 8,691,978천원이다(표 Ⅲ-2-6 참조).

〈표 Ⅲ-2-6〉 연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이용자 수	50,769	51,609	52,200	52,830
이용액	8,563,030	8,622,253	8,652,818	8,691,97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p 15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의 2018년 이용자 수는 97만 9백여명이며, 정부지원금 지급액은 757억 49백만원이며, 제공인력 규모는 약 1만 7천여명이다(표 Ⅲ-2-7 참조).

〈표 Ⅲ-2-7〉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이용자 수 및 지급 현황(2018)

단위: 백명

구분	이용자 수	정부지원금 지급액	제공기관 수	제공인력 수
현황	979백명	75,749백만원	837개소	170백명

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통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2019. 10. 10. 인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지원현황은 2018년 9월 기준 한국어교육 4,119가구, 부모교육 3,939가구, 자녀생활서비스 5,357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총 수혜가구는 13,415가구이다(표 Ⅲ-2-8 참조).

〈표 Ⅲ-2-8〉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수혜자 현황

단위: 명, 가구

연도	계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	
	방문교육 지도사	수혜자	지도사 1인당 가구수	수혜자	수혜자	
					부모교육	자녀생활
2013	2918	20,407	7.0	9,841	6,220	4,346
2014	2,336	18,651	8.0	8,627	5,375	4,649
2015	2,062	16,571	8.0	6,594	5,266	4,711
2016	1,931	15,660	8.1	5,509	5,081	5,070
2017	1,864	15,413	8.3	5,041	4,865	5,507
2018.9	1,823	13,415	7.3	4,119	3,939	5,357

자료: 국회의원 윤소하 보도자료(2018. 10. 30). [2018년 국정감사] 다문화가정자녀 방문교육서비스 대기자 8천명 http://yunsoha.kr/xe/act_03/11510 (2019. 7. 17 인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운영 센터는 2015년 206개소이며, 지도사는 298명이며, 아동대상 서비스의 이용현황은 언어평가는 2016년 기준 9,731명, 언어교육은 5,648명이다(표 Ⅲ-2-9 참조).

〈표 Ⅲ-2-9〉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운영 및 이용현황

단위: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운영현황								
센터	75개소	93개소	173개소	172개소	205개소	206개소	206개소	-
다문화 언어발달 지도사	83명	101명	206명	200명	300명	300명	298명	-
언어평가 및 교육현황 아동 수								
언어평가 (연인원)	5,686	9,132	19,117	20,347	23,976	25,272	28,147	28,520
언어평가 (실인원)	3,213	4,063	7,354	8,113	8,864	9,101	9,643	9,731
언어교육 (연인원)	13,142	52,566	117,365	129,096	175,978	187,518	197,212	204,327
언어교육 (실인원)	2,415	2,254	4,966	5,015	5,452	5,501	5,610	5,648

주: 아동대상 서비스는 언어평가, 언어교육임.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소개. http://www.kihf.or.kr/lay1/S1T247C248/contents.do (2019. 7. 17. 인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수급자는 매해 증가하여 누적인원이 2017년 888명, 2018년 말에는 1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9. 4. 27[12]). 영유아기에 혜택을 보는 제도는 아니나 다자녀를 둔 부모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시 가입기간을 자녀수에 따라 가산을 하는 제도이다(연합뉴스, 2019. 4. 27[13]).

〈표 Ⅲ-2-1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누적)

단위: 명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수급자 수	42	103	140	287	412	627	888
(연인원)		61	37	147	125	215	261

주: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보험료 부담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자료: 연합뉴스(2019. 4. 2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수급자 작년 12월 1천명.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5200017 (2019. 7. 17. 인출)

3. 시간지원정책

영아 양육, 특히 0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정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간지원 정책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출산 및 육아휴직제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정책은 임신 및 출산 관련 휴가와 육아관련 휴가·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휴가에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다(표 Ⅲ-3-1 참조).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45일부터 90일의 휴가를 보장한다(표 Ⅲ-3-1 참조).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사용하는 휴가인데,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통상임금을 지급한다(표 Ⅲ-3-1 참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

12) 연합뉴스(2019. 4. 2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수급자 작년 12월 1천명.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5200017 (2019. 7. 17. 인출)
13) 연합뉴스(2019. 4. 2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수급자 작년 12월 1천명.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5200017 (2019. 7. 17. 인출)

산 후 90일 이내에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가로 기간은 유급 10일이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0. 1: 1).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5일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0. 1: 1).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위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첫 1일은 유급이고 이후 2일은 무급으로 남녀근로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표 Ⅲ-3-1 참조).

육아관련 휴가·휴직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다(표 Ⅲ-3-1 참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사용 기간은 1년이며, 동일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표 Ⅲ-3-1 참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처음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남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한다(표 Ⅲ-3-1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대상이다(표 Ⅲ-3-1 참조).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0. 1: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0. 1: 2).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면서,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되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0. 1: 10).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0. 1: 10).

〈표 Ⅲ-3-1〉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유 형	세부형태	개념
임신 및 출산	출산전후휴가[1]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휴가보장 ·출산 후 최소 45일을 반드시 배정해야 함
	유산·사산휴가[2]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사용 ·인공 임신중절 시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함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통상임금지급
	배우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

유 형	세부형태	개념
출산 후 육아	출산휴가[3]	·휴가기간은 최초 10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 분할 사용 가능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4]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휴가기간은 연내 3일 이내이며, 최초 1일은 유급
	육아휴직[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 ·최대 휴직기간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가능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이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가산한 기간 이내로 사용가능하여 최대 2년으로 확대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자료: 1)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출산휴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79&ccfNo=3&cciNo=1&cnpClsNo=1 (2019. 10. 1 인출)
2)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유산·사산휴가의 사용.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79&ccfNo=3&cciNo=2&cnpClsNo=1 (2019. 10. 1 인출)
3)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배우자출산휴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1&cciNo=2&cnpClsNo=1 (2019. 10. 1 인출)
4)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4&cciNo=2&cnpClsNo=1 (2019. 10. 1 인출)
5)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육아휴직 신청.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1 (2019. 10. 1 인출)
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10. 1).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기 관련 지원으로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가족돌봄휴직, 시간외 근로금지 등이 있다(표 Ⅲ-3-2 참조).

〈표 Ⅲ-3-2〉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

형태	개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원
가족돌봄휴직	·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휴직 ·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형태	개념
시간 외 근로 금지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함(근로기준법 제71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됨(법 제74조제5항)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의 정의) 대상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수유시간 허용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대상 · 사업장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허용해야 함(근로기준법 제 75조)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임신출산육아기지원. 근로자 지원. http://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2019. 7. 2 인출)

1) 출산전후 및 육아 휴직제도 이용 현황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5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 2007년 58,368명에서 2017년 81,093명으로 이용자는 전반적으로 38.9% 증가하였다.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액은 2007년 132,412만원에서 2017년 242,598만원으로 83.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Ⅲ-3-3 참조).

〈표 Ⅲ-3-3〉 출산 휴가 이용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휴가자수	58,368	68,526	70,560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4,590	89,834	81,093
지원금액	132,412	166,631	178,477	192,564	232,915	241,900	235,105	236,845	258,139	247,331	242,598

주: 연도별 자료로는 2017년 자료가 최신 자료임 (2019년 6월 현재).
자료: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19. 6. 18. 인출)

[그림 Ⅲ-3-1] 출산 휴가 휴가자수 및 지원금액 추이

단위: 명,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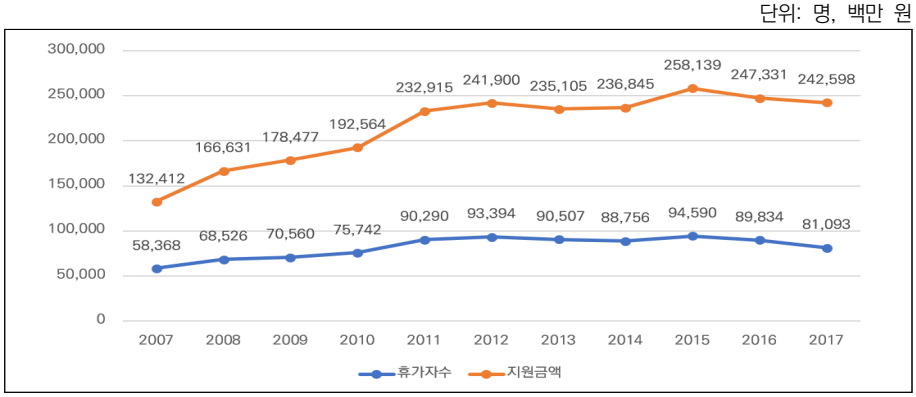

자료: 〈표 Ⅲ-3-3〉을 그래프로 작성함.

육아휴직의 경우, 2007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그 이용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9.15% 증가하였다. 남녀별 이용자 증가 수준을 비교해 보면, 2013년 대비 여성은 67,323명에서 81,577명으로 약 17.5% 증가하였고, 남성은 2,293명에서 17,622명으로 약 87% 증가하여 남성 이용자의 큰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8.5%에서 2018년 17.8%로 남성 육아휴직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다만, 육아휴직 이용 남성 근로자는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성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표 Ⅲ-3-4 참조).

〈표 Ⅲ-3-4〉 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
여성	20,875	28,790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78,080	81,577	42,414
남성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12,043	17,622	11,080
계	21,185	29,145	35,400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89,795	90,123	99,199	53,494
남성비율	1.5%	1.2%	1.4%	2.0%	2.4%	2.8%	3.3%	4.5%	5.6%	8.5%	13.4%	17.8%	20.7%
전년대비 증감률	-	37.6%	21.5%	17.9%	39.3%	10.2%	8.7%	10.4%	13.7%	2.8%	0.4%	9.1%	-

주: 2007~2017년은 자료1)에서 2018-2019년은 자료2)에서 발췌

자료: 1)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19. 6. 18. 인출)을 바탕으로 남성 비율 및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계산함.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7. 29).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p. 10.

[그림 Ⅲ-3-2] 육아휴직 성별 이용자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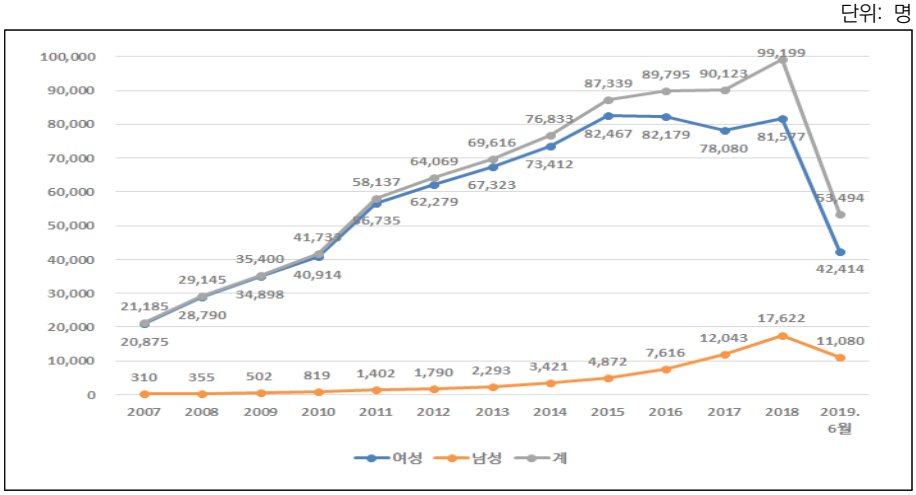

자료: 〈표 Ⅲ-3-4〉를 그래프로 작성함.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에 도입되어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7. 29: 2-3).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가 필수적으로, 가구의 주소득자인 부·모도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2018년 사용자는 남성 5,737명, 여성 869명으로 도입첫해인 2014년 이래로 매해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7. 29: 11).

〈표 Ⅲ-3-5〉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사용현황

단위: 명,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월
여성	9	174	307	513	869	-
남성	82	1,171	2,396	3,896	5,737	-
계	91	1,345	2,703	4,409	6,606	4,833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7. 29).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p. 1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과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를 보면,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 후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폭이 훨씬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3]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과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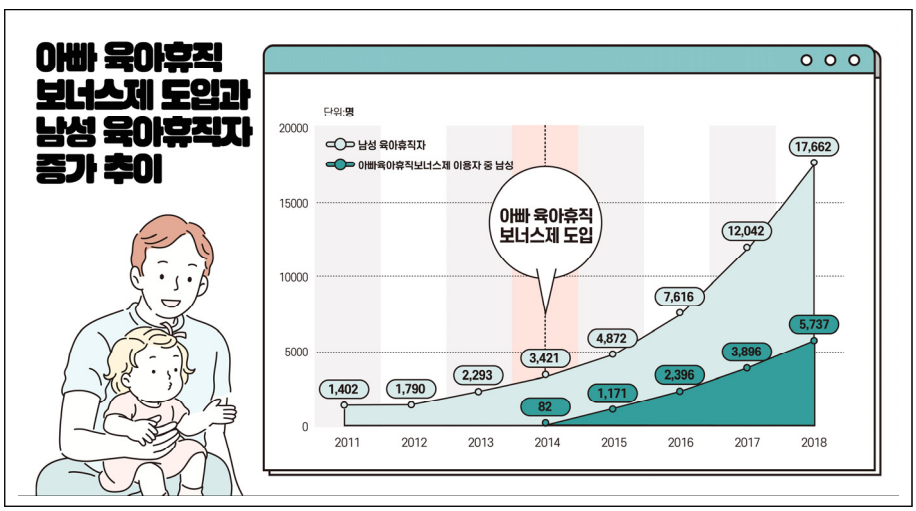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7. 29).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p. 3.

육아휴직 이용자에 대한 2016년 육아휴직급여 지원 금액은 6,252억 원이었고, 2017년 6,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552억원)증가하였다.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현재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1,0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2017년에 남성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금액 대비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8.1%)이 전체 육아휴직자수 대비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13.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표 Ⅲ-3-6 참조).

〈표 Ⅲ-3-6〉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여성	60,249	97,449	138,221	175,582	270,500	348,644	408,557	482,743	592,238	585,186	625,270
남성	740	982	1,503	2,539	5,761	9,153	11,691	17,920	27,425	40,057	55,160
계	60,989	98,431	139,724	178,121	276,261	357,797	420,248	500,663	619,663	625,243	680,430
남성 비율	1.2%	1.0%	1.1%	1.4%	2.1%	2.6%	2.8%	3.6%	4.4%	6.4%	8.1%
전해 대비 증감률	-	61.4%	42.0%	27.5%	55.1%	29.5%	17.5%	19.1%	23.8%	0.9%	8.8%

주: 연도별 자료로는 2017년 자료가 최신 자료임 (2019년 6월 현재).
자료: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19. 6. 18. 인출)

[그림 Ⅲ-3-4] 육아휴직 성별 급여 지원 추이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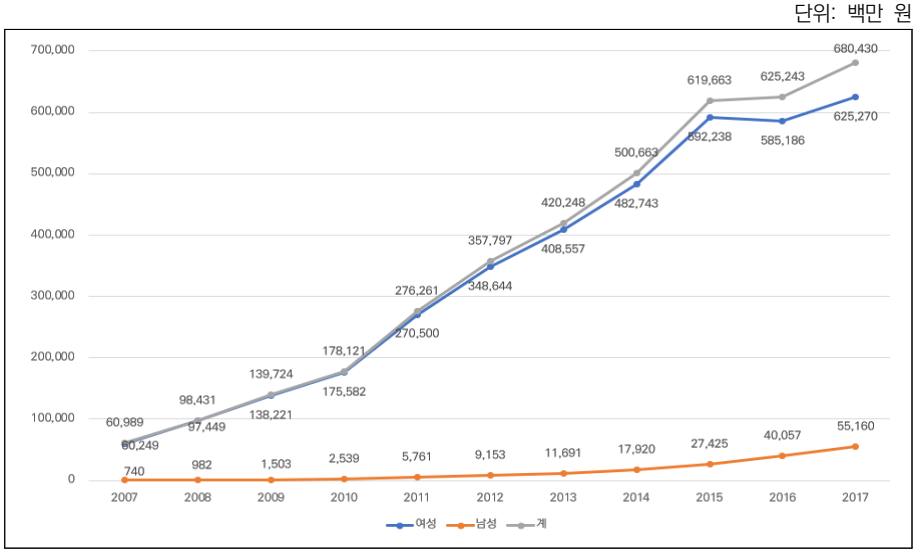

자료: 〈표 Ⅲ-3-6〉를 그래프로 작성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018년 3,820명, 2019년 6월 2,759명으로 육아기 부모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지만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주로 여성 이용이 두드러지나 남성 이용자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표 Ⅲ-3-7 참조).

〈표 Ⅲ-3-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가 추이

단위: 명

	2011	2013	2015	2017	2018	2019.6월
여성	37	692	1,890	2,500	3,270	2,433
남성	2	44	170	321	550	326
계	39	736	2,060	2,821	3,820	2,759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7. 29).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p. 13.

나. 유연근무제

위와 같은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외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관련 제도를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8)에서 살펴보면, '유연근무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업무시작과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표 Ⅲ-3-8 참조).

〈표 Ⅲ-3-8〉 유연근무제의 유형

유형	내용	적합 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

유형	내용	적합 직무
제58조 제1 · 2항)	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 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

자료: 고용노동부(2018).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p. 4

Ⅳ

영아 양육 실태조사 분석

01 전국보육실태조사(2015, 2018)

02 시간정책 실태조사

03 소결

Ⅳ. 영아 양육 실태조사 분석

본 장에서는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14]와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15]의 결과를 활용하여 그 중에서 영아 관련 내용만 선택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분석한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해 보기 위하여 본 연구소에서 2016년에 수행하였던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16]에서 영유아 양육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정책 이용 관련 설문조사[17]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전국보육실태조사(2015, 2018)

가. 일반현황

낮 시간에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2015년에는 영아가구의 경우 어머니 53.7%, 기관 36.7%, 조부모 6.8%, 육아전문인력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0세의 81.8%가 주로 어머니가 돌본다고 응답하였고,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은 2세 이후부터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54.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36.2%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조부모 7.1%, 육아전문인력

14)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15)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16) 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7) 미취학아동(0~만 5세) 자녀를 둔 1,035명의 취업부모(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응답자는 자녀의 모(아내) 또는 부(남편)으로 한정하였다. 표본할당은 2016년 5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0~5세의 전국 인구분포에 맞춰 1세별로 선발하여 조사하였다. 시간정책의 활용도를 파악하고 수요자의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고자 시간정책(근로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과 휴가휴직제도) 사용여부, 정책 이용 만족도, 육아지원자 혹은 기관 이용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아울러 시간배분(노동, 자녀돌봄, 가사돌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자녀관 등을 조사하였다 (출처: 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6).

1.0%, 아버지 0.9% 순이다. 자녀 연령별로는 0세의 76.8%가 주로 어머니가 돌보며,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11.5%로 나타났고, 1세는 기관돌봄이 48.5%, 어머니 돌봄이 40.8%, 2세는 기관돌봄이 56.3%, 어머니 돌봄이 37.5%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하다. 연령별로는 0세의 기관돌봄이 2.4%p 가량 늘었고, 어머니 돌봄이 5%p 감소하였으며, 조부모 돌봄이 1.4%p 증가하였다. 1세는 기관돌봄이 10.2%p가 증가하고, 어머니 돌봄이 6.2%p 감소하여 1세의 기관이용 경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세는 오히려 기관돌봄이 2.8%p 감소하고, 어머니 돌봄이 1.8% 증가하고, 아버지 돌봄이 0.6%p 증가하였다. 조부모 돌봄에서 모든 영아연령에서 외조부모 돌봄이 친조부모보다 작지만 약 2배 정도로 높았다. 아버지 돌봄의 경우도 2015년 0.7%, 2018년 0.9%로 0-2세 전체로는 0.2%p 의 낮은 수준의 증가를 보였으나, 연령별로는 2015년에는 주로 1세에서 나타났다면, 2018년에는 0세, 1세 2세에 고르게 분포 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표 Ⅳ-1-1〉 영아자녀를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2015, 2018)

단위: %(명)

년도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 조부모	외 조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전문 인력	기관에 맡김	없음	계(수)
	영아	0.7	53.7	0.3	3.5	3.3	0.1	0.4	1.0	36.7	0.2	100.0 (2,030)
	보육연령											
2015	0세	0.2	81.8	-	4.2	3.5	0.1	0.3	0.7	9.1	-	100.0 (867)
	1세	2.0	47.0	0.8	4.8	4.1	0.1	0.9	1.4	38.3	0.6	100.0 (566)
	2세	0.1	35.7	0.1	1.7	2.4	-	0.1	0.9	59.1	-	100.0 (597)
	영아	0.9	54.1	0.2	2.5	4.6	0.1	0.5	1.0	36.2	-	100.0 (1,911)
	보육연령											
2018	0세	0.8	76.8	0.4	3.3	5.8	0.3	0.8	0.4	11.5	-	100.0 (803)
	1세	1.1	40.8	0.1	2.7	4.6	-	0.5	1.7	48.5	-	100.0 (540)
	2세	0.7	37.5	-	1.3	3.0	-	0.1	1.1	56.3	-	100.0 (56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82 〈표 Ⅳ-1-1〉.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128~129 〈표 Ⅳ-1-1〉.

평일에 영아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는 2015년〈표 Ⅳ-1-2〉, 2018년 〈표 Ⅳ-1-3〉과 같다. 2015년에는 자녀 연령별로 0세 영아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은 모든 시간대에서 부모가 75% 이상으로 가장

높다. 오전 8시 30분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는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90%대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오전 9시 31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1세아의 경우, 0세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오전 9시 31분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은 편이고,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다.

2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은 1세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어린이집 이용비율은 최대 88.3%이고, 오전 9시 31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밀집되어 있다. 부모가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전 7시 31분부터 오전 9시 사이, 오후 4시 31분 이후에 60%대 이상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에 부모가 영아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높아진다.

〈표 Ⅳ-1-2〉 영아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2015)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07:00~07:30	-	97.6	0.6	96.5	0.1	-	96.7
07:31~08:00	0.2	96.4	0.6	95.3	2.3	-	91.8
08:01~08:30	2.3	91.0	3.6	88.9	7.1	-	85.8
08:31~09:00	4.2	87.7	14.1	77.5	23.7	-	69.8
09:01~09:30	9.2	82.6	35.1	57.5	55.0	0.4	40.0
09:31~10:00	12.5	78.5	56.9	38.2	75.7	0.9	19.5
10:01~10:30	14.4	76.2	63.8	31.3	86.3	0.9	10.4
10:31~11:00	15.1	75.6	64.5	30.5	88.0	0.9	8.5
11:01~11:30	15.1	75.4	64.5	30.1	88.0	0.9	8.5
11:31~12:00	15.1	75.9	64.5	30.1	88.3	0.9	8.6
12:01~12:30	15.1	75.2	64.5	30.5	88.3	0.9	8.4
12:31~13:00	14.4	75.9	64.4	30.6	88.3	0.9	8.4
13:01~13:30	14.4	75.9	62.9	31.0	87.3	0.9	9.2
13:31~14:00	14.4	75.3	62.5	30.5	87.2	0.9	9.0
14:01~14:30	14.0	75.7	62.3	30.4	85.8	0.9	9.8
14:31~15:00	14.0	76.1	60.7	32.3	84.8	0.5	11.3
15:01~15:30	13.4	77.5	56.4	37.0	78.9	0.5	16.5
15:31~16:00	10.6	80.4	47.0	45.0	64.8	0.4	29.3
16:01~16:30	7.8	82.8	32.3	57.9	44.4	0.2	47.5
16:31~17:00	5.9	84.6	20.7	68.1	27.4	0.2	60.5
17:01~17:30	3.9	87.1	14.0	73.3	16.2	-	69.2
17:31~18:00	2.6	89.1	7.7	78.4	11.5	-	74.5

구분	0세		1세		2세		
	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18:01~18:30	1.0	91.4	3.3	82.3	5.4	-	82.5
18:31~19:00	0.7	93.1	1.5	85.6	2.5	-	87.3
19:01~19:30	0.2	95.0	0.8	87.5	0.6	-	93.8
19:31~20:00	-	95.4	0.8	90.8	0.3	-	95.0
20:01~20:30	-	96.3	0.6	93.6	-	-	96.4
20:31~21:00	-	98.1	-	95.6	-	-	96.9
21:01~21:30	-	98.6	-	96.9	-	-	97.6
21:31~22:00	-	98.5	-	97.0	-	-	97.5
22:01~22:30	-	98.6	-	97.9	-	-	97.3

주: 1) 연령구분: 보육연령기준
2) 기타는 기타기관(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주민센터, 시간제보육기관 등)과 기타 교육서비스(학습지 등)임.
3) 보육연령 2세(생활연령 3세)인 아동이 7명 있음.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84~85 〈표 Ⅳ-1-3〉, p. 85~86 〈표 Ⅳ-1-4〉, p. 87 〈표 Ⅳ-1-5〉.

2018년에는 자녀 연령별로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은 모든 시간대에서 부모가 71% 이상으로 가장 높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 30분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는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90%대로 대부분이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5년보다 조금 당겨진 오전 9시 01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1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1세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0세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2015년보다 당겨진 오전 9시 01분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은 편이고, 2015년과 동일하게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다. 2세는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두드러지는데 최대 85.3%로 최대치는 2015년보다 3%p 낮으며, 2015년과 동일하게 오전 9시 31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밀집되어 있다. 부모의 돌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오후 4시 31분 이후에 60%대 이상이며, 2015년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에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Ⅳ-1-3〉 영아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2018)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07:00~07:30	0.2	97.1	0.4	95.5	0.8	-	96.3
07:31~08:00	0.7	95.0	1.4	92.6	1.7	-	94.0
08:01~08:30	2.6	91.2	5.1	86.0	8.0	0.1	86.2
08:31~09:00	5.3	87.0	16.8	73.1	25.4	0.1	67.6
09:01~09:30	10.8	79.5	47.0	46.5	56.6	0.1	37.7
09:31~10:00	14.2	76.0	63.5	30.7	78.7	0.3	17.8
10:01~10:30	15.9	73.6	70.5	24.7	85.3	0.3	11.5
10:31~11:00	15.9	73.2	70.6	24.6	85.3	0.3	11.5
11:01~11:30	16.1	72.3	70.6	24.5	85.3	0.3	11.5
11:31~12:00	16.1	71.9	70.6	24.5	85.3	0.3	11.4
12:01~12:30	16.1	71.8	70.6	24.5	85.3	0.3	11.2
12:31~13:00	15.9	71.6	69.6	25.0	85.3	0.3	11.2
13:01~13:30	15.7	72.3	69.4	25.3	85.1	0.3	11.7
13:31~14:00	15.7	72.4	69.3	25.4	84.9	0.3	11.7
14:01~14:30	15.6	73.0	68.7	25.8	84.9	0.1	11.8
14:31~15:00	15.3	73.1	68.4	26.6	84.6	0.1	12.5
15:01~15:30	14.7	73.8	65.4	28.6	81.2	0.1	14.9
15:31~16:00	12.6	75.4	53.4	38.0	68.1	0.1	26.9
16:01~16:30	8.3	80.1	32.3	54.9	46.8	0.1	45.8
16:31~17:00	6.2	82.4	19.3	66.3	28.2	-	61.6
17:01~17:30	4.5	84.8	10.6	74.2	16.3	-	71.8
17:31~18:00	2.6	87.1	7.2	77.1	9.7	-	78.0
18:01~18:30	1.3	90.8	3.5	83.6	5.6	-	83.2
18:31~19:00	0.5	93.5	0.8	89.0	2.7	-	87.0
19:01~19:30	0.4	95.0	0.6	92.0	1.0	-	91.1
19:31~20:00	0.3	96.7	0.2	95.8	0.7	-	94.3
20:01~20:30	0.2	97.1	0.2	96.8	0.4	-	95.8
20:31~21:00	-	97.9	0.2	98.3	0.2	-	96.8
21:01~21:30	-	98.1	0.2	98.3	0.2	-	97.3
21:31~22:00	-	98.1	0.2	98.3	0.2	-	97.3
22:01~22:30	-	98.2	0.2	98.3	0.2	-	97.4

주: 1) 연령구분: 보육연령기준
2)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131~132 〈표 Ⅳ-1-4〉, pp. 132~133 〈표 Ⅳ-1-5〉, pp. 133~134 〈표 Ⅳ-1-6〉.

2015년 조사에서는 육아정보나 조언을 얻는 경로로 친구나 동료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 관련 사이트 27.6%, 집안 어른 17.5% 등의 순이었다.

〈표 Ⅳ-1-4〉 영아가구의 육아 관련 정보 및 조언을 얻는 경로(2015)

단위: %(명)

집안 어른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육아 관련 사이트	육아 관련 전문가	관련 서적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타	없음	계(수)
17.5	7.7	36.2	27.6	3.8	3.9	0.2	0.2	2.9	100.0(1,439)

주: 1) 한부모, 조손 가정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2) 2018년도에는 해당 항목 조사하지 않음.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02 〈표 Ⅳ-2-9〉

연령별로 부모 이외에 어디(누구)로부터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5년에는 만0~1세는 조부모, 만2세는 가정어린이집과 그 외 어린이집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에는 선택지를 단순화하여 가정양육과 기관보육에 대해 응답한 결과, 만0~1세는 가정양육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만2세는 기관보육 55.3%, 가정양육 43.9%로 기관보육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2015년의 응답지를 가정양육과 기관보육, 없음(부모) 등으로 단순화해보면 2018년이 2015년에 비해 영아의 가정양육 선호도가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1-5〉 연령별 가장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2015, 2018)

단위: %(명)

년도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2015	조부모	70.7	77.4	59.6	67.3	27.5	32.3
	친인척	4.1		5.4		3.1	
	비혈연인	2.6		2.3		1.7	
	가정어린이집	3.7	8.5	11.8	22.2	24.8	62.2
	가정어린이집 이외 어린이집	3.3		8.4		34.7	
	유치원	0.1		0.1		0.6	
	(반일제)학원	-		-		0.5	
	육아종합지원센터	0.8		1.3		1.3	
	건강가정지원센터	0.4		0.5		0.2	
	기타	0.2		0.1		0.1	
	없음	14.0	14.0	10.4	10.4	5.6	5.6
	계	100.0		100.0		100.0	
	(수)	(2,593)		(2,593)		(2,593)	

년도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2018	가정양육	98.6	85.9	43.9
	기관보육	1.4	14.1	55.3
	잘 모르겠음	-	-	0.8
	계	100.0	100.0	100.0
	(수)	(2,533)	(2,533)	(2,5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자료에서 개인양육, 기관으로 합한 수치는 본 연구진이 2018년과의 비교를 위해 부가한 것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03 〈표 Ⅳ-2-6〉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55 〈표 Ⅳ-2-6〉

나. 모취업 여부

미취업모의 미취업 이유와 향후 취업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5년 조사에서 영아가구 미취업모의 미취업 이유로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21.1%,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6.1% 등으로 응답하였다.

영아가구 미취업모의 향후 취업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5년에는 58.6%가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취업 계획이 없다는 37.0%로 나타나 양육이 취업 여부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취업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8.6%, 아이가 더 크면 알아볼 생각이 35.9%로 나타나 2015년과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2018년 수치만 보면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모가 상당수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미취업 이유가 조사되지 않아 정확한 추측은 어려우나, 과거에 비해 취업의사가 있는 어머니가 이미 취업모로 분류됐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실제로 영아가구 미취업모의 취업의지가 약화된 것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표 Ⅳ-1-6〉 영아가구 미취업모의 미취업 이유/취업 계획(2015, 2018)

단위: %(명)

미취업 이유(2015)[2]							
자녀양육가사에 전념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주위의 반대	건강상 이유	기타	계(수)
69.4	21.1	6.1	1.4	0.9	0.9	0.3	100.0(1,002)

미취업모의 취업 계획(2015, 2018)						
조사 년도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계획 없음	모름/ 무응답	계(수)
2015	2.8	1.1	58.6	37.0	0.5	100.0(1,002)
2018	3.5	2.0	35.9	58.6	-	100.0(76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도에는 해당 항목 조사하지 않음.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07 〈표 Ⅳ-3-1〉, p. 108 〈표 Ⅳ-3-2〉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06 〈표 Ⅲ-2-17〉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 조사하였다. 2015년 조사에서 영아가구 취업모는 '긴급상황'과 '부모참여'에 대해 어려움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이른 출근'과 '퇴근시간'에 대한 어려움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표 Ⅳ-1-7〉 영아가구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2015, 2018)

단위: 점(명)

년도	이른 출근	퇴근시간	휴일 출근	긴급상황	부모참여 부담	(수)
2015	3.2	3.2	3.0	3.3	3.3	(462)
2018	3.4	3.3	2.8	3.2	3.1	(61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모참여 부담' 질문에 기관 미이용자는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수와 다름.
3) 해당 점수는 '어렵지 않음' 1점 ~ '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낌을 의미함.
4) 비해당(모 취업여부 모름)은 제외하였고, 영유아 가구 구분은 생활연령 기준임.
5) 2015년도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18년도는 취업중인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09 〈표 Ⅳ-3-4〉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09 〈표 Ⅲ-2-21〉

2015년 조사에서 영아가구에서 취업모 중 30.5%는 취업 상태를 중단한 적이 있으며, 취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는 임신했을 때가 6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출산 혹은 출산휴가 직후라고 응답하였다(26.7%). 취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몸이 힘들어서 28.9%, 일이 육아에 지장을 주어서 15.6% 등의 순으로 취업 중단 이유를 응답하였다.

〈표 Ⅳ-1-8〉 영아가구의 모 취업중단 여부, 중단 시기 및 중단 사유(2015)

단위: %(명)

구분	전체	비율 (수)
취업 중단 여부	있다	30.5 (2,018)
취업 중단 시기	임신 했을 때	65.3
	출산·출산휴가 직후	26.7
	1세 이전	2.7
	1~2세	4.8
	3세~취학 전	0.4
	계(수)	100.0 (584)
구분	전체	비율 (수)
취업 중단 사유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듦	4.3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42.0
	일이 육아에 지장을 주어	15.6
	발전가능성이 희박하여	3.0
	몸이 힘들어서	28.9
	기타	6.2
	계(수)	100.0 (584)

주: 비해당(모 취업여부 모름)은 제외함.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10 〈표 Ⅳ-3-5〉

2018년 조사에서는 영아가구에서 부모 중 어머니가 그만 둔 적이 있는 경우는 39.8%, 아버지가 그만 둔 적이 있는 경우는 0.2%, 부모 모두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는 0.5%로 나타났다. 취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경우, 모는 임신했을 때가 63.1%로 가장 높았고, 출산 혹은 출산휴가 직후가 23.2%였으며, 부는 만 3세에서 취학 전이 25.6%, 출산 혹은 출산휴가 직후 25.3%, 만 1-2세 21.7%, 만1세 이전 15.0%, 임신 했을 때 12.3%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중단한 이유로 모의 경우,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고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크다는 응답도 30.9%로 높은 편이었으며, 이 외에도 일이 육아에 지장을 주어서 11.5%, 육아로 인한 업무지장이 큼 9.6% 등의 순으로 취업 중단 이유를 응답하였다. 부의 경우는 대리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38.5%, 직장 내 육아지원서비스 없어서 26.5%,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18.1%,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커서 16.8%로 나타나 모의 취업 중단사유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Ⅳ-1-9〉 영아가구 부모의 취업중단 여부, 중단 시기 및 중단 사유(2018)

단위: %(명)

취업 중단 여부	
구분	비율 (수)
어머니가 그만 둔 적 있음	39.8
아버지가 그만 둔 적 있음	0.2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있음	0.5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없음	59.6
계(수)	100.0 (1,372)

취업 중단 시기		
구분	부	모
임신 했을 때	12.3	63.1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25.3	23.2
만 1세 이전	15.0	3.9
만 1~2세	21.7	6.0
만 3세~취학 전	25.6	3.4
취학 이후	-	0.5
계(수)	100.0 (15)	100.0 (1,030)

취업 중단 사유		
구분	부	모
대리 양육비용 부담이 큼	38.5	7.2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큼	16.8	30.9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18.1	31.4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줌	-	11.5
육아로 인한 업무지장이 큼	-	9.6
직장 내 육아 지원서비스 없어서	26.5	4.3
다자녀 육아 힘들어서	-	2.6
기타	-	2.4
계(수)	100.0 (7)	100.0 (55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도는 모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18년도는 부/모 모두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100~101 〈표 Ⅲ-2-10〉, p. 101~102 〈표 Ⅲ-2-11〉, p. 103 〈표 Ⅲ-2-12〉, 〈표 Ⅲ-2-13〉

다. 기관이용

영아가구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요구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최초 기관 이용은 2015년과 2018년 모두 대부분(약 98%)이 어린이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초 이용 기관이 유치원인 경우는 2015년 0.3%, 2018년 0.1%이며 반일제 학원은 2015년 0.5%, 2018년 0.8%에 그쳤다.

영아가구에서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는 2015년은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25.5%), 전인적 발달을 위해(22.3%), 사회성 발달을 위해(20.5%), 양육부담 경

감(16.8%) 순이었다. 2018년은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30.2%), 전인적 발달을 위해(21.1%), 양육부담 경감(19.8%), 사회성 발달을 위해(19.1%) 순으로 2015년과 비슷한 경향이다.

〈표 Ⅳ-1-10〉 영아가구 최초 이용기관 및 기관 이용 이유(2015, 2018)

단위: %(명)

최초 이용기관											
년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기타		계(수)		
2015	98.6		0.3		0.5		0.7		100.0 (1,065)		
2018	98.7		0.1		0.8		0.4		100.0 (1,030)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년도	전인적 발달	초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돌봄 어려움	사회성 발달	놀이 상대 없음	비용 전액 지원	양육 부담 경감	미취업이나 다른일로 바쁨	기타	계(수)
2015	22.3	0.2	0.3	25.5	20.5	6.5	2.6	16.8	2.0	3.4	100.0 (1,065)
2018	21.1	-	0.5	30.2	19.1	4.4	2.1	19.8	2.5	0.4	100.0 (1,0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 경험자 대상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19 〈표 Ⅴ-1-1〉, p. 120~121 〈표 Ⅴ-1-3〉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186~187 〈표 Ⅴ-1-1〉, p. 189 〈표 Ⅴ-1-3〉

2015년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자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연령별로 0세 44.9%, 1세 43.4%, 2세 40.1%이며, 0세의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영아의 분포를 보면, 조사에 포함된 전체 1,016명 중 국공립에 다니는 영아는 9.6%, 법인 3.3%, 법인·단체 등 2.6%, 민간 56.0%, 가정 27.2%, 직장 1.0%, 부모협동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아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11.2%로 가장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 비율이 낮아졌고, 법인 유형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가정의 경우는 0세의 53.0%가 이용하며, 1,2세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은 0세 이용은 없고, 1, 2세는 1%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최근 그만 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로 열 명 중 한 명은 중단 경험을 갖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세가 가장 많이 중도에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집 이용을 중단한 사유를 보면,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불만, 아이의 적응 어려움이 19.8%로 가장 많았다.

〈표 Ⅳ-1-11〉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구의 맞벌이 특성, 기관유형, 기관이용 중단 사유(2015)

단위: %(명)

조사항목	구분	보육 연령		
		0세	1세	2세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구의 맞벌이 특성	맞벌이	44.9	43.4	40.1
	외벌이	54.6	53.5	58.1
	둘 다 무직	-	1.3	0.7
	비해당/모름	0.5	1.8	1.1
	계(수)	100.0 (121)	100.0 (370)	100.0 (525)
이용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2	8.4	11.2
	법인	0.9	3.5	3.6
	법안단체 등	0.7	3.6	2.3
	민간	41.2	54	59.6
	가정	53	29.2	21.8
	직장	-	1.4	1
	부모협동	-	-	0.4
	계(수)	100.0 (121)	100.0 (370)	100.0 (525)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	있다	9.6 (2,030)		
		0.8 (867)	9.6 (566)	17.4 (597)
어린이집 이용 중단 사유	시설 환경 불만족	-	5.7	11.1
	프로그램 불만족	-	5.1	4.9
	원장· 교사 불만족	11.9	21.1	19.5
	아이 적응 곤란	39.9	22.7	17.4
	비용 부담	-	-	-
	집과의 거리	-	4.3	6.3
	해당 연령반없음	-	6.1	0.6
	이용 시간 안맞음	-	5.5	1.1
	다른 기관 이용	-	1.6	2.3
	이사	8.3	8.7	25
	주변 환경 불만족	-	0.5	-
	기타	39.9	18.8	11.8
	계(수)	100.0 (4)	100.0 (52)	100.0 (102)

주: 1) 유치원 이용 2세(보육연령) 아동 7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중단 사유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23 〈표 Ⅴ-2-2〉, p. 154~155 〈표 Ⅵ-1-1〉, p. 157 〈표 Ⅵ-1-3〉, p. 158 〈표 Ⅵ-1-4〉.

2018년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자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연령별로 0세 68.6%, 1세 54.8%, 2세 49.1%로 2015년보다 높은 수준이며, 0세의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최근 그만 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

로 2015년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사유를 보면, 0세는 어린이집 관련 불만이 56.1%로 가장 많았고, 1세는 다른 기관에 보내려고 32.3%, 어린이집과 조건이 안맞음이 29.1%,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26.3%순이었으며, 2세는 다른 기관 보내려고 43.4%, 어린이집과 조건이 안맞음이 21.1%순이었다.

〈표 Ⅳ-1-12〉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구의 맞벌이 특성, 기관이용 중단 경험, 중단 사유(2018)

단위: %(명)

조사항목	구분	보육 연령		
		0세	1세	2세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구의 맞벌이 특성[2]	맞벌이	68.6	54.8	49.1
	외벌이	29.4	43.5	48.4
	둘 다 무직	0.9	0.1	-
	비해당/모름	1.1	1.6	2.5
	계(수)	100.0 (117)	100.0 (386)	100.0 (495)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 여부	있다	3.3 (1,911)		
		0.3 (803)	2.5 (540)	8.1 (568)
중단 사유	어린이집 관련 불만	56.1	-	12.5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	26.3	12.0
	어린이집과의 조건 안맞음[4]	25.0	29.1	21.1
	기관 폐원 및 이사	-	2.6	8.5
	다른 기관 보내려고	-	32.3	43.4
	집에서 양육 하려고	-	9.7	-
	안전에 대한 의구심	18.9	-	-
	기타	-	-	2.5
	계(수)	100.0 (3)	100.0 (13)	100.0 (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중복응답. 1~3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임.
4) '어린이집과의 조건 안맞음': 집과의 거리가 멂, 이용시간이 맞지 않음, 해당 연령반이 없음 등.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193~194 〈표 Ⅴ-2-2〉, p. 199 〈표 Ⅴ-3-3〉

2015년 조사에서 전체 영아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6시간 53분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취업 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모의 영아와 미취업모의 영아는 각각 7시간 38분, 6시간 23분으로 취업모의 경우에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길었다. 연령별로는 취업모의 0세아의 경우 7시간 51분으로 가장 길고, 모휴직의 경우는 0세가 5시간 42분으로 가장 짧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취업모의 0세아가 수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이용 시간이 길다는 점은 가정 여건 상 어린이집 돌봄이 필요한 0세아를 위해 질 좋은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Ⅳ-1-13〉 영아가구의 연령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시간(등원시간 제외)(2015)

단위: 시간(명)

구분	전체	보육연령		
		0세	1세	2세
취업모				
평균	7시간 38분	7시간 51분	7시간 26분	7시간 46분
표준편차	1시간 44분	1시간 39분	1시간 56분	1시간 35분
(수)	(385)	(56)	(137)	(192)
모휴직				
평균	6시간 32분	5시간 42분	6시간 33분	6시간 49분
표준편차	1시간 31분	1시간 9분	31분	2시간 7분
(수)	(43)	(9)	(18)	(16)
미취업모				
평균	6시간 23분	6시간 12분	6시간 23분	6시간 24분
표준편차	1시간 6분	1시간 44분	59분	1시간 4분
(수)	(584)	(55)	(214)	(315)
전체				
평균	6시간 53분	6시간 47분	6시간 49분	6시간 56분
표준편차	1시간 32분	1시간 51분	1시간 32분	1시간 29분
(수)	(1,016)	(121)	(370)	(525)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69 〈표 Ⅵ-1-17〉.

2018년 조사 보고서에서는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이 영아만으로 보고되지 않아 영유아 전체 값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영유아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7시간 12분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취업 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모의 영유아와 미취업모의 영유아는 각각 7시간 42분, 6시간 48분으로 취업모의 경우에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길었다.

〈표 Ⅳ-1-14〉 영유아가구의 이용기관 및 모 취업여부별 기관 이용시간(등·하원시간 미포함)(2018)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전체	이용기관별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취업	휴직중	미취업
5시간까지	5.3	2.6	8.7	16.5	2.9	3.7	8.4
5~6시간	15.7	15.5	13.2	41.9	10.2	23.8	21.1
6~7시간	30.6	33.6	26.2	23.1	25.2	34.8	36.5
7~8시간	27.8	25.8	32.6	15.8	29.5	21.1	26.6
8~9시간	13.0	13.4	13.4	1.3	18.4	14.1	6.3
9~10시간	5.4	6.1	4.8	-	9.3	2.5	1.1
10시간 이상	2.3	3.1	1.1	1.3	4.5	-	0.1

구분	전체	이용기관별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취업	휴직중	미취업
평균	7시간 12분	7시간 24분	7시간 12분	6시간 12분	7시간 42분	6시간 54분	6시간 48분
표준편차	1시간 18분	1시간 18분	1시간 18분	1시간 6분	1시간 24분	1시간 12분	1시간 6분
계(수)	100.0 (2,830)	100.0 (1,753)	100.0 (1,009)	100.0 (68)	100.0 (1,419)	100.0 (135)	100.0 (1,24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4) 2018년도는 연령별이 아닌 이용기관별로 분석함.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13 〈표 Ⅴ-3-14〉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74.3%가 초과이용이 없으며, 월1회 이하가 10.2%, 2-4회가 10.3%로 20.5%정도가 주 1회 이하로 가끔 시간 초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1세 영아가 시간 초과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77.5%가 초과하는 경우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월1회 이하가 9.7%, 월 2-4회가 7.7%로 17.4%가 주 1회 이하로 가끔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세 영아가 시간 초과 이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1-15〉 영아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초과 이용 횟수(2015, 2018)

단위: %(명)

년도	구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3회	주 4~5회	매일	없음	계(수)
2015	영아	10.2	10.3	2.3	2.2	0.6	74.3	100.0 (1,016)
	보육연령							
	0세	5.9	13.1	3.4	1.8	0.3	75.6	100.0 (121)
	1세	11.8	10.5	4.0	1.0	0.3	72.4	100.0 (370)
	2세	9.7	9.8	1.0	3.1	0.9	75.5	100.0 (525)
2018	영아	9.7	7.7	2.9	1.0	1.2	77.5	100.0 (998)
	보육연령							
	0세	6.5	9.8	1.9	1.1	-	80.7	100.0 (117)
	1세	9.2	8.1	3.1	1.0	0.9	77.7	100.0 (386)
	2세	10.9	6.8	3.0	0.9	1.8	76.5	100.0 (49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70 〈표 Ⅵ-1-18〉
2)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91 〈표 Ⅵ-1-19〉

2015년 조사에서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시작 시각을 보면, 오전 8시 31분~9시 사이에 시작을 희망하는 비율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별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종료 시각을 살펴보면,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가 2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16.3%, 5시 30분부터 6시 사이가 12.1%, 4시부터 4시 30분 사이 11.9%이다. 즉 과반수인 68.3%가 3시부터 6시 사이에 종료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표 Ⅳ-1-16〉 영아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시작 시각/종료 시각(2015)

단위: %(명)

구분	7:30 이전	7:31 ~8:00	8:01 ~8:30	8:31 ~9:00	9:01 ~9:30	9:31 ~10:00	10:31 이후	평균	계(수)
시작 시각									
영아	9.7	7.6	12.1	32.1	23.0	14.3	1.2	8:58	100.0 (1,016)
보육연령									
0세	16.8	15.5	5.3	26.9	20.6	12.3	2.6	8:48	100.0 (121)
1세	12.6	7.2	12.5	29.0	26.4	10.9	1.5	8:55	100.0 (370)
2세	6.6	6.8	12.8	35.1	20.9	17.1	0.8	9:02	100.0 (525)

구분	14:00 까지	14:01 ~ 15:00	15:01 ~ 16:00	16:01 ~ 16:30	16:31 ~ 17:00	17:01 ~ 17:30	17:31 ~ 18:00	18:01 ~ 18:30	18:31 ~ 19:00	19:00 ~ 19:30	19:31 이후	평균	계(수)
종료 시각													
영아	1.9	4.9	28.0	11.9	16.3	4.9	12.1	3.2	6.8	3.2	6.7	17:05	100.0 (1,016)
보육연령													
0세	4.9	4.9	19.4	9.4	14.2	5.3	13.6	1.4	6.1	10.8	10.0	17:20	100.0 (121)
1세	1.0	3.6	25.4	11.7	17.3	6.2	11.3	5.2	7.5	2.8	8.0	17:15	100.0 (370)
2세	2.1	53.7	31.2	12.5	15.9	4.0	12.4	2.0	6.5	2.4	5.3	16:57	100.0 (525)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72 〈표 Ⅵ-1-20〉

2018년 조사보고서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등하원시각을 영아만으로 보고하지 않아 영유아 전체 값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시작 시각은, 오전 8시 31분~9시 사이에 시작을 희망하는 비율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맞춤반 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종료 시각을 살펴보면,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가 2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18.8%, 5시 30분부터 6시 사이가 14.2%, 6시부터 7시 사이 11.6%이다. 이는 2015년과 비슷한 경향으로 3시부터 6시 사이에 종료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73.1%로 나타났다.

〈표 Ⅳ-1-17〉 영유아 부모의 이용기관별 희망 등·하원시각(2018)

단위: %(명)

희망 등원시각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전체	종일반	맞춤반			
7:30까지	12.0	12.9	8.7	7.3	3.0	10.0
7:31~8:00	10.3	10.7	8.7	10.5	4.7	10.1
8:01~8:30	13.8	15.2	8.8	17.7	17.1	15.3
8:31~9:00	39.9	39.7	40.5	45.6	41.8	41.9
9:01~9:30	16.4	15.5	19.9	13.3	23.2	15.6
9:31~10:00	7.3	5.7	13.1	5.6	9.3	6.8
10:01이후	0.3	0.4	0.3	0.2	0.9	0.3
계(수)	100.0 (1,753)	100.0 (1,380)	100.0 (373)	100.0 (1,009)	100.0 (68)	100.0 (2,830)
희망 하원시각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전체	종일반	맞춤반			
14:00까지	0.5	0.3	1.4	3.1	4.1	1.6
14:01~15:00	2.9	2.9	2.7	6.9	32.3	5.4
15:01~16:00	24.9	22.6	33.1	25.4	29.8	25.2
16:01~16:30	8.7	8.8	8.2	10.6	6.9	9.3
16:31~17:00	18.8	18.7	19.0	21.7	11.8	19.5
17:01~17:30	6.5	7.1	4.2	5.6	-	5.9
17:31~18:00	14.2	14.1	14.4	11.3	8.0	12.9
18:00~19:00	11.6	12.2	9.6	9.7	2.7	10.6
19:00~19:30	5.7	5.9	5.1	2.5	1.5	4.4
19:31이후	6.3	7.4	2.2	3.3	2.8	5.1
계(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753)	(1,380)	(373)	(1,009)	(68)	(2,8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2018년도는 연령별이 아닌 이용기관별로 분석함.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18 〈표 Ⅴ-3-18〉

2015년 조사에서 영아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은 하루에 6~7시간 희망자가 26.8%로 가장 많았고, 7~8시간이 19.1%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10시간 이상 희망자는 16.0%인데 특히 현재 어린이집 운영 시간인 12시간보다 더 장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응답도 4.7%로 나왔다. 전체 평균 희망 이용시간은 8시간 6분 정도로 산출되었다. 이는 2012년 조사 결과인 8시간 9분보다 3분정도 짧아진 응답이다. 그러나 실제 이용하고 있는 시간이 7시간임을 고려하면 현재보

다는 1시간 6분 정도를 더 길게 이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2세에 대한 희망 이용시간이 가장 짧고 0세가 8시간 30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표 Ⅳ-1-18〉 영아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2015)

단위: %(명), 시간

구 분	5시간까지	5~6시간	6~7시간	7~8시간	8~9시간	9~10시간	10~11시간	11~12시간	12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2012년
영아	3.9	12.0	26.8	19.1	12.8	9.3	5.0	6.3	4.7	100.0(1,016)	8시간 6분	2시간 6분	8시간 9분
보육연령													
0세	6.6	11.4	20.5	9.8	15.8	7.8	10.7	9.3	8.0	100.0 (121)	8시간 30분	2시간 36분	7시간 57분
1세	2.2	9.4	25.4	22.7	13.4	7.9	5.0	7.3	6.6	100.0 (370)	8시간 18분	2시간 6분	8시간 11분
2세	4.6	14.0	28.8	18.0	12.0	10.5	4.1	5.2	2.9	100.0 (525)	7시간 54분	2시간 1분	8시간 11분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74~175 〈표 Ⅵ-1-22〉.

2018년 조사보고서에서는 희망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영아만으로 한정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 영유아 전체로 살펴보았다. 7~8시간 희망자가 22.7%로 가장 많았고, 6~7시간이 21.4%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10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 희망자는 18.6%로 희망수요가 적지 않다. 전체 평균 희망 이용시간은 8시간 30분 정도로 산출되었다. 맞춤반 여부에 따라서는 종일반은 평균 8시간 42분, 맞춤반은 8시간 6분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는 8시간 54분, 미취업모 7시간 42분으로 평균 약 1시간 이상의 희망이용시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Ⅳ-1-19〉 영유아가구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등·하원 시간 미포함)(2018)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전체	이용기관별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소계	맞춤반 아님[3]	맞춤반						
5시간까지	2.4	1.1	0.7	2.4	3.6	11.0	1.3	2.5	3.5	-
5~6시간	9.3	8.2	7.5	10.6	9.5	26.7	5.6	7.1	13.9	4.6
6~7시간	21.7	21.4	19.4	28.6	21.4	29.6	16.2	21.4	28.2	10.9
7~8시간	24.3	22.7	22.8	22.3	28.4	12.5	20.9	21.6	28.7	15.8
8~9시간	16.2	16.7	17.5	13.9	16.3	7.9	18.8	14.3	13.2	30.5
9~10시간	9.7	11.4	12.1	8.9	7.0	8.0	13.0	7.9	5.9	26.7
10~11시간	6.4	6.4	6.6	5.8	7.0	-	10.0	6.0	2.3	8.5
11시간 이상	10.0	12.2	13.4	7.5	6.8	4.4	14.1	19.2	4.3	2.9

구분	전체	이용기관별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소계	맞춤반 아님[3]	맞춤반						
평균	8시간 18분	8시간 30분	8시간 42분	8시간 6분	8시간 6분	7시간 6분	8시간 54분	8시간 42분	7시간 42분	8시간 48분
표준편차	2시간 00분	2시간 00분	2시간 00분	1시간 48분	1시간 54분	2시간 6분	2시간 6분	2시간 18분	1시간 30분	1시간 24분
계(수)	100.0 (2,830)	100.0 (1,753)	100.0 (1,380)	100.0 (373)	100.0 (1,009)	100.0 (68)	100.0 (1,419)	100.0 (135)	100.0 (1,241)	100.0 (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맞춤반 아님: 유아반과 영아반 중 종일반을 의미함.
4)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5) 2018년도는 연령별이 아닌 이용기관별로 분석함.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20 〈표 Ⅴ-3-20〉.

2018년 조사에서 살펴본 희망 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경우 평균 1시간 12분의 차이가 나타났고, 맞춤반 여부에 따라 종일반은 1시간 12분, 맞춤반은 1시간 6분의 차이가 있었다.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는 1시간 12분, 미취업모는 54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원하는 만큼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이며, 특히 어린이집 이용자와 취업모(휴직중 포함)에서 희망-실제 이용시간의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만약 영아자녀의 기관 이용으로 한정했을 때에도 이러한 차이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어린이집 이용자와 취업모의 돌봄공백을 기관을 통한 돌봄으로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희망 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의 차이가 나는 심층적인 이유를 파악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Ⅳ-1-20〉 영유아가구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실제 이용시간 차이(2018)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모 취업여부별				전체
	전체	맞춤반 아님[3]	맞춤반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평균	1시간 12분	1시간 12분	1시간 6분	54분	54분	1시간 12분	1시간 48분	54분	54분	1시간 6분
표준편차	1시간 48분	1시간 54분	1시간 42분	1시간 36분	1시간 54분	1시간 48분	2시간 24분	1시간 36분	1시간 12분	1시간 48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모 취업여부별				전체
	전체	맞춤반 아님[3]	맞춤반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1,380)	(373)	(1,009)	(68)	(1,419)	(135)	(1,241)	(35)	(2,8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맞춤반 아님: 유아반과 영아반 중 종일반을 의미함.
4)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22 〈표 Ⅴ-3-22〉.

2015년 조사에서 영아자녀에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영아의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고(81.7%), 다음으로 혈연관계 17.4%, 비혈연 또는 아이돌보미가 각각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이가 아플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다만 비혈연 혹은 아이돌보미(각각 0.2%)보다는 시간제보육을 사용하는 비율(0.8%)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Ⅳ-1-21〉 영아가구의 긴급상황 시 주된 돌봄제공자(2015)

단위: %(명)

구분	긴급 시						아플 때					계(수)
	부모	혈연	비혈연	시간제 보육	아이 돌보미	기타	부모	혈연	비혈연	시간제 보육	아이 돌보미	
영아	81.7	17.4	0.3	0.2	0.3	-	84.9	13.9	0.2	0.8	0.2	100.0 (1,016)
보육연령												
0세	84.1	15.4	0.1	-	0.4	-	87.8	11.2	-	0.7	0.2	100.0 (121)
1세	79.1	20.0	0.1	0.4	0.5	-	82.2	16.3	0.4	0.7	0.3	100.0 (370)
2세	82.3	16.7	0.8	0.2	0.1	-	84.9	13.9	0.2	0.9	0.1	100.0 (525)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15 〈표 Ⅵ-6-3〉.

2018년 조사보고서에서는 영아로 한정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 전체값으로 살펴보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고(74.9%), 다음으로 혈연관계 23.2%, 비혈연 1.0%, 아이돌보미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이가 아플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다만 비혈연(0.4%) 혹은 아이돌보미(0.1%) 보다는 시간제보육을 사용하는 비율(1.1%)이 더 높게 나타났다. 모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모는 약 90%이상이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가 부재한 경우는 부가 돌보

는 경우가 약 10% 내외인 반면 혈연이 약 80% 이상 돌보며, 취업모는 약 60%정도가 부모가 돌보며, 혈연이 돌보는 경우가 약 30% 이상으로 다른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22〉 영아가구의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2018)

단위: %(명)

구분	긴급 시						아플 때						계(수)
	부모	혈연	비혈연	시간제 보육	아이 돌보미	기타	부모	혈연	비혈연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기타	
영유아	74.9	23.2	1.0	0.3	0.5	0.2	77.9	20.3	0.4	1.1	0.1	0.1	100.0(1,753)
모취업 여부													
취업	62.1	35.3	1.5	0.2	0.9	-	66.4	31.6	0.7	1.1	0.1	-	100.0(888)
휴직중	71.7	26.1	1.0	1.1	-	-	69.9	27.2	-	2.8	-	-	100.0(97)
미취업	91.3	7.6	0.4	0.3	0.2	0.4	93.5	5.2	-	0.8	0.2	0.3	100.0(751)
모부재 등	7.4	88.6	4.0	-	-	-	11.6	84.5	4.0	-	-	-	100.0(1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도 조사보고서에서는 연령별 분석을 하지 않고 모 취업여부별 분석만 제시함.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55 〈표 Ⅵ-6-4〉.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가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인 경우,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기관 이용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5년 조사에서는 영아가구의 21.8%가 '아무데도 안 보낸다'에 응답하였고, 현 기관에 계속 보내거나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는 경우는 78.2%로 나타났다. 유아가구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아무데도 안 보낸다'는 응답이 3.6%였던 것(김은설 외, 2016: 159)을 감안하면, 현재는 기관을 이용하지만 대리 양육자만 있다면 가정양육할 의사가 있는 영아가구가 21.8%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조사에서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영아가구의 22.0%가 '아무데도 안 보낸다'고 응답하였고, 기관에 계속 보내겠다는 경우는 78.0%로 나타났다. 2015년처럼 대리 양육자가 있다면 가정양육 의사가 있는 영아가구가 22.0%로 파악된다.

〈표 Ⅳ-1-23〉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구 중 돌볼 사람이 있을 경우 가정양육 의향(2015, 2018)

단위: %(명)

년도	구분	아무데도 안 보냄	다른 기관으로 옮김	현 기관에 계속 보냄	계(수)
2015	영아	21.8	10.0	68.2	100.0(220)
	보육연령				
	0세	28.4	-	71.6	100.0(38)
	1세	17.9	14.5	67.6	100.0(89)
	2세	24.2	7.7	68.1	100.0(93)
년도	**구분**	**아무데도 안 보냄**	**기관에 계속 보냄**		**계(수)**
2018	영아	22.0	78.0		100.0(25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59 〈표 Ⅵ-1-5〉.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04 〈표 Ⅴ-3-6〉.

기관을 이용 중인 영아가구에게 정부가 양육수당을 인상할 경우 가정양육의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2015년 조사에서는 '기관에 계속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영아연령에서 7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만두고 다른 데 보낸다'와 '그만두고 집에서 보겠다'는 0세를 제외하고 각각 2%, 8%에 불과하였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급여액을 상향 조정할 시에는 기관 이용을 중단한다고 응답한 경우, 보육연령 기준 0세아는 평균 310,000원, 1세아는 270,000원, 2세아는 182,000원이 상향 조정되기를 희망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기관에 계속 다닌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든 영아연령에서 약 83%이상으로 높았고, 기관을 그만두고 집에서 보거나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경우는 약 3.3%~11.4%로 0세만 제외하면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의 상향조정 시 기관이용을 중단한다고 응답한 경우, 2세아 평균 30.4만원, 1세아 평균 28.5만원, 0세아 평균 27.5만원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2세아의 상향금액이 다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표 Ⅳ-1-24〉 어린이집 이용 영아부모의 가정양육수당 관련 의견(2015, 2018)

단위: %(명), 만원

구분		양육수당 인상 시 기관이용 중단 의견					가정양육 위한 인상 금액		
		계속 다님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그만두고 집에서 봄	모르겠음	계(수)	평균 (만원)	표준편차	(수)
2015	보육연령								
	0세	77.7	-	16.2	6.0	100.0 (121)	31.0	19.4	(17)
	1세	81.6	1.8	8.3	8.3	100.0 (370)	27.0	16.8	(35)
	2세	86.4	1.2	8.7	3.7	100.0 (525)	18.2	9.5	(43)
2018	보육연령								
	0세	83.3	4.8	11.4	0.6	100.0 (117)	27.5	16.7	(20)
	1세	86.0	5.1	6.4	2.5	100.0 (386)	28.5	14.9	(42)
	2세	89.2	3.3	5.1	2.3	100.0 (495)	30.4	21.6	(4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가정양육을 위한 인상금액은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그만두고 집에서 보겠음'에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227~228 〈표 Ⅵ-8-2〉.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49~350 〈표 Ⅵ-5-10〉.

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대기 신청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2015년 조사에는 대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영아가구가 24.4%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 경험이 있는 경우 대기 신청 방식은 입소관리시스템이 77.0%로 조사되었고, 평균 대기 기간은 약 5.9개월로 조사되었다.

2018년 조사에서는 대기경험이 있는 경우가 31.8%로 2015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기 신청방식은 입소관리시스템이 87.1%로 조사되어 수기방식이 적게 집계되었고, 평균 대기 기간은 약 6.8개월로 조사되어 2015년에 비해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의 사용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대기경험이나 대기기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표 Ⅳ-1-25〉 영아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전 대기경험 및 신청방식/대기 기간(2015, 2018)

단위: %(명), 개월

구분		대기 경험	대기 신청 방식			대기 기간								
		있음 (수)	수기	관리시스템	(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10개월 미만	10~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계(수)	평균
2015	영아	24.4 (2,030)	23.0	77.0	(405)	22.7	14.1	13.6	4.4	23.2	13.6	8.4	100.0 (409)	5.99

구분		대기 경험		대기 신청 방식			대기 기간								
		있음	(수)	수기	관리 시스템	(수)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10 개월 미만	10~15 개월 미만	15 개월 이상	계(수)	평균
	보육 연령														
	0세	12.4	(867)	19.1	80.9	(85)	22.2	18.4	7.6	2.0	27.0	13.5	9.3	100.0 (85)	5.75
	1세	29.1	(566)	23.8	76.2	(155)	22.8	15.1	14.8	4.3	19.0	14.0	10.0	100.0 (156)	6.06
	2세	30.4	(597)	23.7	76.3	(165)	22.8	11.7	14.5	5.4	25.6	13.3	6.6	100.0 (168)	6.02
2018	영아	31.8	(1,911)	12.9	87.1	(524)	18.7	11.7	13.5	4.6	25.1	15.1	11.2	100.0 (527)	6.8
	보육 연령														
	0세	21.0	(803)	9.6	90.4	(142)	21.6	12.7	7.9	4.5	29.4	14.2	9.7	100.0 (142)	6.1
	1세	34.2	(540)	10.3	89.7	(164)	19.0	12.5	15.4	7.7	21.5	12.0	11.9	100.0 (165)	6.7
	2세	43.4	(568)	16.8	83.2	(218)	16.7	10.5	15.6	2.4	25.2	17.9	11.7	100.0 (220)	7.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대기 기간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대기 경험이 있는 경우, 대기 신청 방식은 어린이집에 대기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응답함.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252~253 〈표 Ⅵ-8-28〉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70~371 〈표 Ⅵ-9-1〉, p. 372 〈표 Ⅵ-9-2〉

영아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전, 대기 신청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2015년 조사에서는 해당 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 40.2%, 민간어린이집 37.0%, 가정어린이집 15.3%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43.3%, 민간어린이집 30.0%, 가정어린이집 1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26〉 영아가구의 입소대기 신청기관(2015, 2018)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수)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국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2015 2)	영아	40.2	2.4	3.1	37.0	15.3	0.5	0.7	0.4	0.1	0.2	100.0(409)
	보육 연령											
	0세	54.4	2.4	5.4	23.1	14.6	-	-	-	-	-	100.0(85)
	1세	40.1	2.6	3.3	35.7	17.2	-	0.6	0.5	-	-	100.0(156)
	2세	35.3	2.3	2.1	43.2	13.8	1.2	1.0	0.4	0.2	0.5	100.0(168)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수)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국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2018 3)	영아	43.3	2.2	2.7	30.0	17.4	-	2.3	1.4		0.6	100.0(533)
	보육 연령											
	0세	45.2	0.7	1.4	29.4	18.6	-	3.2	0.8		0.7	100.0(144)
	1세	44.2	1.9	3.8	23.3	21.1	-	3.2	1.8		0.7	100.0(167)
	2세	41.5	3.3	2.6	35.3	14.0	-	1.1	1.6		0.5	100.0(22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입소대기 기간이 가장 긴 기관을 기준으로 응답한 것임.
3)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기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4) 2018년 조사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병설과 단설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조사하였음.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54 〈표 Ⅵ-8-29〉.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72 〈표 Ⅵ-9-2〉.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 신청을 한 경우, 이용 만족도 및 그 이유를 질문하였고, 동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요구를 파악하였다. 2015년 조사에서 영아가구에서 가장 높은 응답은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 필요'가 50.0%로 조사되었으며, '입소 신청 시 시스템에 서류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 29.5%, '입소 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 20.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영유아부모[18] 응답자는 '입소 아동 중 일부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 35.5%,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 대상 예외 신청방법' 28.3%, '입소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 27.7%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시스템 이용 어려움을 배려하는 방법에 대한 응답의 비중이 다소 줄었고, 기관 재량권에 대한 응답이 약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1-27〉 입소대기관리시스템 불만족 시 개선 사항(2015, 2018)

단위: %(명)

구분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 대상 예외 신청 방법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	입소 아동 중 일부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	기타	계(수)
2015	영유아	42.9	28.9	24.2	4.1	100.0 (91)
	영아	50.0	29.5	20.5	-	100.0 (58)

18) 2018년 조사보고서에 영아부모에 대한 응답값이 별도로 보고되지 않아 영유아부모의 응답으로 기술

구분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 대상 예외 신청 방법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	입소 아동 중 일부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	기타	계(수)
	보육연령					
	0세	20.7	63.5	15.8	-	100.0 (12)
	1세	55.2	23.4	21.4	-	100.0 (23)
	2세	52.7	26.4	20.9	-	100.0 (23)
2018	영유아	28.3	27.7	35.5	8.4	100.0 (16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56 〈표 Ⅵ-8-31〉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75 〈표 Ⅵ-9-4〉

라.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중 가장 많이 돌봐주는 사람을 혈연과 비혈연에서 각각 선택하도록 하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2015년에는 전반적으로 동거 조부모가 49.0%, 비동거 조부모가 44.8%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고, 육아전문파견인력이 7.3%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아는 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1,2세아는 조부모 외에도 비혈연, 육아전문파견인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2018년에는 비동거 조부모가 63.7%, 동거 조부모 23.8%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고 민간육아도우미 9.1%, 공공 아이돌보미 3.4%순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조부모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연령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표 Ⅳ-1-28〉 영아가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 분포(2015, 2018)

단위: %(명)

구분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동거 비혈연	육아전문 파견인력	기타 비혈연	(수)
2015 2)	영아	49.0	44.8	0.3	1.7	-	7.3	0.8	(152)
	생활연령								
	0세	44.0	51.9	-	-	-	4.2	-	(31)
	1세	29.8	62.4	-	1.6	-	17.0	1.6	(47)
	2세	63.4	30.4	0.6	2.5	-	2.4	0.7	(74)

구분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공공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 지인	기타 비현열	(수)
2018	영아	23.8	63.7	0.6	3.0	3.4	9.1	0.9	-	(272)
	생활연령									
	0세	18.5	68.5	2.1	4.4	3.4	8.3	1.4	-	(89)
	1세	31.6	59.2	-	2.2	3.4	9.2	-	-	(90)
	2세	21.9	63.5	-	2.6	3.5	9.5	1.2	-	(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육아전문파견인력에는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정보육교사가 포함되며, 기타 비혈연에는 파출부·가사도우미, 이웃보육모 등이 포함됨. 18년도에는 육아전문파견인력을 '공공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로 나누어 조사함.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43 〈표 Ⅸ-1-4〉.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21~522 〈표 Ⅸ-1-4〉.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2015년에는 자녀가 어려서 적응에 애로가 있다는 응답이 82.5%로 매우 높았으며,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5.5%,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3.9% 순으로 높았다. 2018년에는 '너무 어려 적응에 애로가 있음'이 78.3%, '(기관은)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봐서 불안함' 7.0%, 기타 3.9%, '대기자 많음' 3.4%순으로 나타났다. 영아부모들은 여전히 어린연령에 기관적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2015년에 비해 기관의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불안감에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약간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표 Ⅳ-1-29〉 영아가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2015, 2018)

단위: %(명)

구분	너무 어려 적응 애로	비용 부담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듦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시설 환경 열악	한 사람이 돌봐 불안	대기자 많음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기관 프로그램 맘에 안듦	기타	계(수)
2015	82.5	1.8	3.9	3.2	-	0.1	-	5.5	-	3.1	100.0 (108)
2018	78.3	3.2	1.2	-	0.7	7.0	3.4	2.1	-	3.9	100.0 (157)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44 〈표 Ⅸ-1-5〉.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24 〈표 Ⅸ-1-6〉.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가족원이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2015년 조사에서는 조부모가 9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부모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 동거 조부모는 51.2%, 비동거 조부모는 46.8%로 동거하는 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고, 친조부모가 44.0%, 외조부모가 54.0%로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중 취업모를 대상으로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56.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1세아는 외조부모(비동거 외조부모 62.2%, 동거 외조부모 10.3%)에게 양육지원을 받는 경향이 다른 연령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도 혈연 양육지원자 중에서 조부모가 96.0%로 대다수였으며, 친인척의 비율이 4.0%로 2015년에 비해 소폭 비중이 커졌다. 조부모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2015년에 비해 비동거 조부모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고, 친조부모 33.9%, 외조부모 62.1%로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2015년에 비해 더 높았다. 친인척의 지원도 2015년 2.1%에서 2018년 4.0%로 소폭 상승했다.

〈표 Ⅳ-1-30〉 영아가구 혈연 양육지원자 및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2015, 2018)

단위: %(명)

구분	취업 여부	생활 연령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2015	영아 전체	영아	27.4	23.8	16.6	30.2	0.3	1.8	100.0(191)
	취업모	영아	21.1	22.9	20.0	33.2	0.4	2.4	100.0(130)
		0세	20.5	18.0	24.0	37.4	-	-	100.0(33)
		1세	7.3	10.3	18.1	62.2	-	2.2	100.0(42)
		2세	29.8	32.4	19.8	13.9	0.8	3.2	100.0(55)
2018	영아 전체	영아	13.7	12.5	20.2	49.6	0.7	3.3	100.0(250)
	취업모	영아	11.1	12.0	19.7	52.5	0.9	3.8	100.0(183)
		0세	5.1	12.3	29.6	44.6	3.4	5.0	100.0(54)
		1세	14.9	15.2	19.8	47.1	-	2.9	100.0(63)
		2세	12.0	9.0	12.9	62.5	-	3.7	100.0(6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45 〈표 Ⅸ-2-1〉, p. 346 〈표 Ⅸ-2-2〉.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25~526 〈표 Ⅸ-2-1〉, pp. 526~527 〈표 Ⅸ-2-2〉.

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조사에서는 필요시 불규칙하게 이용이 28.7%로 가장 높고, 하루 종일이 27.8%, 부모 출근 후~기관 등원 전과 기관 하원 후~부모 퇴근 전에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9.4% 순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는 필요시 불규칙하게 이용이 33.8%로 가장 높고, 하루종일 24.6%, 부모 출근 후~기관 등원전과 기관하원 후~부모 퇴근 전에 모두 이용하는 비율일 20.1%, 하원후~퇴근전만 이용하는 비율은 18.1%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향은 2015년과 2018년이 비슷하나, 불규칙한 이용이 늘었고, 출근후~등원전 이용비율이 7.3%에서 1.0%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31〉 영아가구 혈연 양육지원자 이용 시간대(2015, 2018)

단위: %(명)

구분	하루 종일	출근후~ 등원전	하원후~ 퇴근전	출근후~등원전, 하원후~퇴근전	불규칙 (필요시)	기타	계(수)
2015	27.8	7.3	16.9	19.4	28.7	-	100.0(191)
2018	24.6	1.0	18.1	20.1	33.8	2.4	100.0(25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48 〈표 Ⅸ-2-4〉.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29~530 〈표 Ⅸ-2-4〉.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가구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2015년 조사에서는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49.2%로 높고, 혈연 개인양육지원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는 46.8%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혈연과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중복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0세는 혈연지원을 단독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3.3%로 높은 편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관을 중복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혈연개인양육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혈연개인양육과 기관이용을 병행이용하는 비율이 41.6% 순이었다. 혈연개인양육과 비혈연개인양육을 병행이용하는 경우는 3.5%, 혈연개인양육에 비혈연개인양육과 기관이용 모두를 병행이용하는 경우는 1.4%로 나타났다. 2015년

에 비해 혈연개인양육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과반이 넘어 다소 높아진 수치이다. 연령에 따라서는 혈연 단독이용이 0세에서 가장 두르러지며, 1세 2세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혈연개인양육과 기관 보완이용이 0세는 6.0%에서 1세 39.4%, 2세 73.2%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2015년과 비슷한 경향이다.

〈표 Ⅳ-1-32〉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영아의 혈연 양육지원자와 기관 등 병행 이용 여부(2015, 2018)

단위: %(명)

구분		혈연 단독	비혈연 보완	기관 보완	비혈연과 기관 모두 보완	계(수)
2015	영아	46.8	-	49.2	4.1	100.0 (191)
	생활연령					
	0세	93.3	-	6.7	-	100.0 (61)
	1세	56.3	-	30.3	13.4	100.0 (58)
	2세	21.4	-	78.6	-	100.0 (72)
2018	영아	53.5	3.5	41.6	1.4	100.0 (250)
	생활연령					
	0세	87.1	6.9	6.0	-	100.0 (83)
	1세	54.6	3.0	39.4	3.0	100.0 (84)
	2세	24.4	1.1	73.2	1.3	100.0 (8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47 〈표 Ⅸ-2-3〉.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28 〈표 Ⅸ-2-3〉.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비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2015년 조사에서는 아이돌보미가 6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베이비시터 27.5%, 파출부·가사도우미 6.3% 순이다. 2018년 조사에서는 민간 육아도우미가 67.8%, 공공 아이돌보미 25.7%, 이웃·지인 6.5%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영아가구에서 비혈연 양육자로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이 매우 높았으나 2018년에는 영아가구의 이용률이 낮았고,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이 과반수로 높게 나타나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표 Ⅳ-1-33〉 영아가구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2015, 2018)

단위: %(명)

구분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파출부·가사도우미	이웃 보육모	동거 비혈연	계(수)
2015	62.3	27.5	6.3	4.0	-	100.0 (12)

구분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웃·지인	기타	계(수)
2018	25.7	67.8	6.5	-	100.0 (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 조사에서는 베이비시터, 파출부 가사도우미는 '민간 육아도우미'로, 이웃보육모는 '이웃·지인', 동거비혈연은 '기타'로 재분류하여 조사 수치를 제시함.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55 〈표 Ⅸ-3-1〉.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36 〈표 Ⅸ-3-1〉.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혈연 개인양육지원 및 보육·교육기관의 중복 이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영아가구에서 혈연 양육지원서비스와 기관을 모두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은 47.9%로 비혈연의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의 과반수는 다른 양육지원 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을 단독 이용하는 경우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혈연 개인양육과 더불어 기관이용을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가구가 32.0%, 비혈연 개인양육에 혈연 개인양육을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23.9%순으로 나타났다. 비혈연 개인양육에 혈연과 기관을 모두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가구는 2015년과 달리 9.8%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Ⅳ-1-34〉 영아가구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이용 여부(2015, 2018)

단위: %(명)

구분	비혈연 단독	혈연 보완	기관이용 보완	혈연과 기관 모두 보완	계(수)
2015	23.4	-	28.7	47.9	100.0 (12)
2018	34.3	23.9	32.0	9.8	100.0 (3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56 〈표 Ⅸ-3-3〉.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38 〈표 Ⅸ-3-3〉.

영아가구의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시간대를 살펴본 결과, 2015년 조사에서는 아동 하원 후~부모 퇴근 전이 51.8%로 반수를 조금 넘었고, 부모의 '출근 후~등원 전/하원 후~퇴근 전' 28.8%, 하루종일 이용이 13.4% 수준이었고, 주당 이용시간은 평균 25.9시간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는 '출근 후~등원

전/하원 후~퇴근 전'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종일 이용이 29.2%, 불규칙 이용이 21.7%로 나타났고, 주당 이용시간은 평균 30.2시간이다. 2015년에는 주로 하원도우미 형태가 많았던 것에 반해 2018년에는 등원과 하원모두를 이용하는 등하원도우미 형태가 가장 많고, 종일 이용과 필요시 불규칙한 이용도 높게 나타났고, 주당 이용시간도 평균 약 5시간 증가하였다.

〈표 Ⅳ-1-35〉 영아가구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대 및 주당 이용시간(2015, 2018)

단위: %(명), 시간

구분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대						돌보는 시간(주당)
	하루 종일	출근후~등원전	하원후~퇴근전	출근후~등원전, 하원후~퇴근전	불규칙(필요시)	계(수)	평균
2015	13.4	-	51.8	28.8	6.0	100.0(12)	25.9
2018	29.2	3.3	3.8	42.1	21.7	100.0(33)	30.2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57 〈표 Ⅸ-3-4〉.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39 〈표 Ⅸ-3-4〉.

마. 기타

보육료·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영유아가구의 응답결과이다. 2015년 조사에서는 먼저 보육교육비 전 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비율(만족+매우 만족)이 52.3%로 조사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해당 비율은 48.8%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는 영아대상 비용정책 중에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는 비율은 '0-2세 보육료 지원' 82.7%,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69.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67.1%, '0-2세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63.0% 순이며, 가정양육수당은 55.1%로 나타났다.

〈표 Ⅳ-1-36〉 영유아가구 비용 지원 정책의 만족도(2015, 2018)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2015	보육료·교육비 전 계층 지원	1.7	16.7	29.3	39.1	13.2	100.0 (1,741)	3.5
	가정양육수당	2.0	18.6	30.7	37.2	11.6	100.0 (1,560)	3.4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2018	0-2세 보육료 지원	0.2	2.5	14.6	72.8	9.9	100.0 (2,008)	3.9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1.8	5.2	23.8	55.1	14.1	100.0 (1,240)	3.7
	0-2세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3.0	6.5	27.4	46.7	16.3	100.0 (430)	3.7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1.0	3.8	23.4	55.0	16.7	100.0 (1,706)	3.8
	가정양육수당 지원	1.8	10.6	32.5	45.0	10.1	100.0 (2,178)	3.5
	장애아 무상보육	1.9	10.9	31.7	48.1	7.4	100.0 (34)	3.5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0.9	4.8	27.1	50.3	16.8	100.0 (153)	3.8
	시간제보육료 지원	1.6	9.0	31.6	42.1	15.8	100.0 (91)	3.6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1.5	3.4	27.4	53.7	14.0	100.0 (407)	3.8
	지방정부수당	3.5	10.6	32.6	45.0	8.3	100.0 (1,450)	3.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잘 모름' 응답은 제외함.
3) 만족도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96 〈표 Ⅺ-2-10〉, p. 397 〈표 Ⅺ-2-11〉.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609 〈표 Ⅺ-4-6〉.

2015년 조사에서 보육·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에 불만족한다(불만족+매우 불만족)고 응답한 영아가구의 경우, 그 이유로 '고소득층에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고,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이 여전하다'가 18.8%로 조사되었다(김은설 외, 2016: 398).

〈표 Ⅳ-1-37〉 영아가구 보육료·교육비/가정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불만족 이유(2018)

단위: %(명), 점

형평성 부족	세금 부담감	부모 부담 여전함	누리과정 재정 지원 불안정	기타	계(수)
65.6	10.1	18.8	4.5	1.1	100.0 (365)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98 〈표 Ⅺ-2-12〉.

영아가구가 정부의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바라는 것을 조사한 결과, 2015년 조사에서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25.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3.7%,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 18.9%, 가정양육수당 인상 10.0%,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8.8%,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4.6%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조사에서 영아가구가 1순위로 뽑는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6.8%, 기관

서비스 질 향상 16.1%,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11.1%,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 10.8%, 가정양육수당 인상 9.8%, 유연근무제 확대 6.1%,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시간연장형보육, 시간제보육 등) 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38〉 영아가구가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2015, 2018)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 교육비 지원 인상	가정 양육 수당 인상	기관 서비스 질 향상	보육 유형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육아 정보 상담 제공	유연 근무제 확대	기타	계 (수)
2015	23.7	18.9	10.0	25.6	3.6	4.6	8.8	0.4	4.5	0.1	100.0 (1,741)
2018(1순위)	36.8	10.8	9.8	16.1	4.5	4.0	11.1	0.9	6.1	-	100.0 (1,63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01~402 〈표 Ⅺ-3-2〉.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615 〈표 Ⅺ-5-1〉.

2015년 조사에서 전 계층 보육료·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사를 조사한 결과, 영아가구 중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6.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추가 부담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17.6%에 그쳤다. 2018년에는 해당항목을 조사하지 않았다.

〈표 Ⅳ-1-39〉 영아가구의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2015)

단위: %(명)

없다	있다	잘 모름	계(수)
66.3	17.6	16.1	100.0 (1,741)

주: 2018년 조사에서는 해당분석이 없음.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02~403 〈표 Ⅺ-3-3〉.

시간제보육반에 대한 영아가구의 응답이다. 2015년 조사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0.7%,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이 없음' 30.8%, '들어본 적 있음' 24.5% 순으로 조사되었고,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는 4.0%에 불과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전혀 모름' 39.8%,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32.6%, '들어본 적 있음 20.6%' 이었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7.0%로 나타나 이용경험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시간제보육반에 대한 인지도가 2015

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6개월~36개월 미만인 영아가구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반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관해 응답을 받은 결과이다. 2015년 조사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을 현재 받고 있는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가구 중 시간제보육반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7.5%로 지배적이었으며,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주기가 매일, 1주일에 2~3번, 1주일에 한번, 한 달에 1~2번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김은설 외, 2016: 246). 2018년 조사에서는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가구에게 시간제보육 이용 주기를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6.4%로 여전히 지배적이며,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주기는 매일, 1주일에 1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이 고르게 나타났다.

〈표 Ⅳ-1-40〉 영아가구의 시간제보육반 인지/이용 경험 및 이용 주기(2015, 2018)

단위: %(명)

시간제보육반 인지/이용 경험						
구분	이용 경험 있음	들어본 적 있음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모름	계(수)	
2015	4.0	24.5	30.8	40.7	100.0	(1,475)
2018	7.0	20.6	32.6	39.8	100.0	(1,372)

시간제보육반 이용 주기								
구분		매일	1주일에 2~3번	1주일에 1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계(수)
2015	영아(6~36개월)	0.2	1.4	0.5	0.5	-	97.5	100.0 (669)
	생활연령							
	0세	0.7	-	-	1.6	-	97.7	100.0 (230)
	1세	-	1.2	0.3	-	-	98.5	100.0 (311)
	2세	-	3.3	1.2	-	-	95.5	100.0 (128)
	모 취업여부							
	취업	-	-	-	-	-	100.0	100.0 (92)
	휴직중	3.0	4.8	-	-	-	92.2	100.0 (41)
	미취업	-	1.3	0.6	0.6	-	97.5	100.0 (533)
2018	영아(6~36개월)	1.0	0.7	0.2	0.7	0.9	96.4	100.0 (1,39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시간제보육 이용 주기는 6~36개월 미만인 응답자에 한해 조사한 결과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45 〈표 Ⅵ-8-21〉, p. 246 〈표 Ⅵ-8-22〉.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88~589 〈표 Ⅺ-2-5〉, p. 356 〈표 Ⅵ-7-1〉.

자녀에게 각 취약보육유형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취약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한 영아가구의 23.4%가 상시로 필요하다, 30.1%는 1주일에 1~2번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한달에 1~2회 28.5%, 1년에 1~2회도 18.0%로 자주 필요한 경우와 간혹 필요한 경우 등 고르게 나타났다.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은 각각 40.7%, 36.9%가 '1년에 1~2회'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시간연장보육에 비해서는 간헐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령별로는 24시간보육은 0세는 대부분 1년에 1~2회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세와 2세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휴일보육도 24시간 보육과 비슷한 경향이었다.

〈표 Ⅳ-1-41〉 영아가구의 제 특성별 취약보육의 필요성(2015)

단위: %(명)

구분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상시	주 1~2회	한달 1~2회	1년 1~2회	계	(수)	상시	주 1~2회	한달 1~2회	1년 1~2회	계	(수)	상시	주 1~2회	한달 1~2회	1년 1~2회	계	(수)
영아	23.4	30.1	28.5	18.0	100.0	(228)	17.6	23.3	18.3	40.7	100.0	(81)	12.4	18.6	32.1	36.9	100.0	(147)
보육연령																		
0세	26.6	29.7	31.9	11.8	100.0	(27)	-	1.9	7.9	90.2	100.0	(11)	2.7	8.1	50.0	39.3	100.0	(20)
1세	26.5	29.4	25.0	19.1	100.0	(95)	15.5	31.8	12.0	40.8	100.0	(33)	13.9	25.4	32.6	28.2	100.0	(59)
2세	19.9	30.8	31.0	18.2	100.0	(106)	23.8	20.0	26.8	29.4	100.0	(37)	13.6	15.0	26.8	44.6	100.0	(68)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30 〈부표 Ⅳ-6-1〉.

2018년 조사에서는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영유아가구의 25.8%가 필요하며[19], 0세는 35.8%가, 1세는 25.7%가, 2세는 27.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0세가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한달 1~2회와 주 1~2회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24시간 보육은 영유아가구의 4.8%가, 휴일보육은 14.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한달 1~2회 혹은 1년에 1~2회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빈도가 높은 편이다.

19) 상시 + 주 1~2회 + 한달 1~2회 + 1년 1~2회

〈표 Ⅳ-1-42〉 제 특성별 취약보육의 필요성(2018)

단위: %(명)

구분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상시	주 1~2회	한달 1~2회	1년 1~2회	필요 없음	계 (수)	상시	주 1~2회	한달 1~2회	1년 1~2회	필요 없음	계 (수)	상시	주 1~2회	한달 1~2회	1년 1~2회	필요 없음	계 (수)
영유아	5.8	7.2	8.4	4.4	74.2	100.0 (1,753)	0.7	0.6	0.8	2.7	95.2	100.0 (1,753)	1.8	1.5	5.8	5.2	85.7	100.0 (1,753)
보육연령																		
0세	7.3	9.2	10.4	9.0	64.2	100.0 (117)	0.4	-	-	2.5	97.1	100.0 (117)	3.0	1.9	10.2	4.1	80.7	100.0 (117)
1세	5.9	7.5	9.4	2.9	74.3	100.0 (386)	0.9	0.5	1.0	2.1	95.5	100.0 (386)	1.9	1.7	6.9	4.7	84.8	100.0 (386)
2세	7.1	5.6	9.1	6.0	72.2	100.0 (495)	0.9	0.7	0.5	3.4	94.4	100.0 (495)	1.2	1.5	5.2	7.3	84.8	100.0 (49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 조사보고서에는 영아로 한정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53 〈표 Ⅵ-6-3〉.

바. 분석

본 항에서는 위에서 정리한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경험, 기관보육이용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로짓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과 '기관보육이용 경험여부'는 각각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의 경우 '현재 받음', '과거 받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로, '받은 적 없음'은 경험이 없는 경우로 처리하였으며, 기관 보육을 사용한 경험 여부의 경우 '어린이집만 이용', '유치원만 이용', '둘 다 이용' 등을 경험이 있는 경우로, '미이용' 응답인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종속변수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므로 아래 로짓모델(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Garcia et al. 1995; Gujarati 2011, 김나영 2014, 134-135, 재인용).

$$(1) \qquad P_i = E(y_i = 1 | x_i) = \frac{\exp(Z_i)}{1+\exp(Z_i)} \ , \ 0 < P_i < 1.$$

P_i 는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험할 확률을 로지스틱 함수 (logistic function)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2) $$Z_i = \beta_0 + \sum_{j=1}^{n} \beta_j x_{ij} \ , \quad -\infty < Z_i < \infty.$$

x_j는 본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로 (총)자녀수, 영아자녀수, 가구소득(십만 원), 추가 양육서비스 이용 형태, 시간제돌봄 이용경험, 영아자녀연령, 맞벌이 여부 등이다.

(3) $$L_i = \ln(\frac{P_i}{1-P_i}) = Z_i.$$

또한 $\frac{P_i}{1-P_i}$는 자녀필요성에 긍정적일 확률에 대한 odds ratio로, 이는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확률과 그렇지 않은 확률 간의 비율을 의미하며, 여기에 로그를 취한 L_i을 로짓(logit)이라고 하므로 식 (3)은 로짓모델(logit model)이 된다.

분석모델은 아래와 같다.

모델1

$$Y = \alpha_0 + \alpha_1 NC + \alpha_2 NS + \alpha_3 IC + \alpha_4 LCA + \alpha_5 DW + \epsilon$$

모델2

$$Y = \alpha_0 + \alpha_1 NC + \alpha_2 NS + \alpha_3 IC + \alpha_4 CS + \alpha_5 TS + \alpha_6 LCA + \alpha_7 DW + \epsilon$$

Y1(종속변수):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0.없음/1.있음)
Y2(종속변수): 기관보육이용 경험(0.없음/1.있음),
NC: (총)자녀수
NS: 영아자녀수
IC: 가구소득(십만 원)
CS: 추가 양육서비스 이용 형태(0.비혈연/1.혈연)
TS: 시간제돌봄 이용경험
LCA: (영아)자녀연령
DW: 맞벌이여부(0.아니요/1.예)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모델1과 2 모두 자녀수, 가구소득 그리고 자녀연령이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 여부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아자녀수의 경우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3〉 상관관계: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모델1)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	자녀수	영아자녀수	가구소득	(영아) 자녀연령	맞벌이여부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	1					
자녀수	-0.0414** (0.0351)	1				
영아자녀수	0.2995*** (0)	0.0173 (0.3774)	1			
가구소득	-0.12*** (0)	0.0034 (0.8622)	-0.0971*** (0)	1		
(영아) 자녀연령	-0.3683*** (0)	0.1166*** (0)	-0.812*** (0)	0.1119*** (0)	1	
맞벌이여부	-0.0099 (0.6159)	0.0527*** (0.0073)	-0.0122 (0.5333)	0.0474** (0.0158)	0.0223 (0.2569)	1

*p< .1 **p< .05 ***p < .01

〈표 Ⅳ-1-44〉 상관관계: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모델2)

	가정 양육수당 수혜 경험	(총) 자녀수	영아 자녀수	가구소득	(영아) 자녀연령	맞벌이여부	추가양육 서비스 이용 형태	시간제돌봄 이용경험
가정 양육수당 수혜 경험	1							
(총) 자녀수	-0.0414** (0.0351)	1						
영아 자녀수	0.2995*** (0)	0.0173 (0.3774)	1					
가구소득	-0.12*** (0)	0.0034 (0.8622)	-0.0971*** (0)	1				
(영아) 자녀연령	-0.3683*** (0)	0.1166*** (0)	-0.812*** (0)	0.1119*** (0)	1			
맞벌이여부	-0.0099 (0.6159)	0.0527*** (0.0073)	-0.0122 (0.5333)	0.0474** (0.0158)	0.0223 (0.2569)	1		
추가양육 서비스 이용 형태	0.0129 (0.5109)	-0.0589*** (0.0027)	0.051*** (0.0094)	0.2037*** (0)	-0.0537*** (0.0062)	0.0206 (0.2955)	1	
시간제돌봄 이용경험	-0.0134 (0.4959)	0.0454** (0.0207)	-0.0009 (0.9637)	0.0759*** (0.0001)	0.0324* (0.0987)	0.0206 (0.2941)	0.0042 (0.8316)	1

*p< .1 **p< .05 ***p< .01

로짓모델 분석결과를 보면 ,모델1의 경우 가구소득과 자녀연령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로 보면 가구소득이 한 단위(십만 원) 증가할 때,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이 있을 확률이 없을 확률의 0.989배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마찬가지로 자녀연령이 1세 증가할 때,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이 있을 확률이 없을 확률의 0.603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2의 경우도 모델1과 같이 가구소득과 자녀연령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즈비로 보면 가구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이 있을 확률이 없을 확률의 0.989배이고, 자녀연령이 1세 증가할 때,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이 있을 확률이 없을 확률의 0.604배로 분석되었다.

〈표 Ⅳ-1-45〉 로짓분석결과: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

	모델1		모델2	
변수명	**계수(S.D)**	**오즈비(S.D)**	**계수(S.D)**	**오즈비(S.D)**
종속변수: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				
(총)자녀수	0.011 (0.061)	1.012 (0.062)	0.013 (0.062)	1.013 (0.062)
영아자녀수	-0.084 (0.131)	0.92 (0.121)	-0.086 (0.132)	0.918 (0.121)
가구소득	-0.011*** (0.002)	0.989*** (0.002)	-0.011*** (0.003)	0.989*** (0.002)
(영아) 자녀연령	-0.505*** (0.05)	0.603*** (0.03)	-0.505*** (0.05)	0.604*** (0.03)
맞벌이여부	0.004 (0.096)	1.004 (0.096)	0.003 (0.096)	1.003 (0.096)
추가양육 서비스 이용 형태			0.047 (0.097)	1.048 (0.102)
시간제돌봄 이용경험			0.034 (0.199)	1.035 (0.206)
Pseudo R^2	0.1195		0.1196	
N	2,593			

*p< .1 **p< .05 ***p< .01

기관보육이용 경험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모델1과 2 모두 자녀수, 자녀연령 그리고 맞벌이 여부가 통계학적으로 기관보육이용과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영아자녀수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표 Ⅳ-1-46〉 상관관계: 기관보육 이용 경험(모델1)

	기관보육이용	자녀수	영아자녀수	가구소득	(영아) 자녀연령	맞벌이여부
기관보육이용	1					
자녀수	0.0636*** (0.0012)	1				
영아자녀수	-0.0387** (0.0489)	0.0173 (0.3774)	1			
가구소득	0.0278 (0.1569)	0.0034 (0.8622)	-0.0971*** (0)	1		
(영아) 자녀연령	0.0663*** (0.0007)	0.1166*** (0)	-0.812*** (0)	0.1119*** (0)	1	
맞벌이여부	0.1307*** (0)	0.0527*** (0.0073)	-0.0122 (0.5333)	0.0474** (0.0158)	0.0223 (0.2569)	1

*p< .1 **p< .05 ***p< .01

〈표 Ⅳ-1-47〉 상관관계: 기관보육 이용 경험(모델2)

	기관보육 이용	(총)자녀수	영아자녀수	가구소득	(영아) 자녀연령	맞벌이여부	추가양육 서비스 이용 형태	시간제돌봄 이용경험
기관보육 이용	1							
(총)자녀수	0.0636*** (0.0012)	1						
영아자녀수	-0.0387** (0.0489)	0.0173 (0.3774)	1					
가구소득	0.0278 (0.1569)	0.0034 (0.8622)	-0.0971*** (0)	1				
(영아) 자녀연령	0.0663*** (0.0007)	0.1166*** (0)	-0.812*** (0)	0.1119*** (0)	1			
맞벌이여부	0.1307*** (0)	0.0527*** (0.0073)	-0.0122 (0.5333)	0.0474** (0.0158)	0.0223 (0.2569)	1		
추가양육 서비스 이용 형태	0.0229 (0.2435)	-0.0589*** (0.0027)	0.051*** (0.0094)	0.2037*** (0)	-0.0537*** (0.0062)	0.0206 (0.2955)	1	
시간제돌봄 이용경험	0.0118 (0.5477)	0.0454** (0.0207)	-0.0009 (0.9637)	0.0759*** (0.0001)	0.0324* (0.0987)	0.0206 (0.2941)	0.0042 (0.8316)	1

*p< .1 **p< .05 ***p< .01

로짓모델 분석결과를 보면 모델1과 2 모두 자녀수, 자녀연령, 맞벌이 여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의 오즈비를 보면, 자녀수는 1.189, 자녀연령은 1.117, 맞벌이여부는 2.101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증가할 때마다 기관보육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확률의 1.189배이며, 자녀연령이 1세 증가할 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없다고 응답할 확률의 1.117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인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없다고 응답할 확률의 2.101배로 나타났다.

모델2도 모델1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오즈비를 보면, 자녀수가 증가할 때마다 기관보육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확률의 1.195배이며, 자녀연령이 1세 증가할 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없다고 응답할 확률의 1.117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인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없다고 응답할 확률의 2.097배로 나타났다.

〈표 Ⅳ-1-48〉 로짓분석결과: 기관보육 이용 경험

	모델1		모델2	
변수명	**계수(S.D)**	**오즈비(S.D)**	**계수(S.D)**	**오즈비(S.D)**
	종속변수: 기관보육이용 경험			
(총)자녀수	0.173** (0.073)	1.189** (0.086)	0.178** (0.073)	1.195** (0.087)
영아자녀수	0.089 (0.138)	1.093 (0.151)	0.084 (0.138)	1.087 (0.15)
가구소득	0.002 (0.003)	1.002 (0.003)	0.002 (0.003)	1.002 (0.003)
(영아) 자녀연령	0.111** (0.05)	1.117** (0.056)	0.111** (0.05)	1.117** (0.056)
맞벌이여부	0.742*** (0.117)	2.101*** (0.246)	0.74*** (0.117)	2.097*** (0.245)
추가양육 서비스 이용 형태			0.129 (0.108)	1.138 (0.123)
시간제돌봄 이용경험			0.043 (0.238)	1.044 (0.248)
Pseudo R^2	0.0263		0.0269	
N	2,593			

*p< .1 **p< .05 ***p< .01

2. 시간정책 실태조사[20)]

가. 일반현황

영유아가구의 주된 양육방식을 보면, '어린이집'이 4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조부모/친인척'이 3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만0세, 만1세의 경우, 조부모/친인척이 돌보는 경우가 각각 50.3%, 50.9%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양육방식을 살펴보면, 읍면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순으로 이용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에서는 '어린이집', '조부모/친인척' 순서로 나타나 읍면지역에서는 '조부모/친인척'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2-1〉 주된 양육 방식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친인척	아이돌보미/가정보육사	기타	계
전체	46.7	13.3	31.8	4.4	3.8	100.0(1,035)
자녀 연령						
만0세	37.1	5.0	50.3	1.3	6.3	100.0(159)
만1세	34.5	4.8	50.9	5.5	4.3	100.0(165)
만2세	63.9	6.6	22.3	4.8	2.4	100.0(166)
만3세	57.2	8.3	25.6	5.0	3.9	100.0(180)
만4세	48.9	19.4	22.8	5.0	3.9	100.0(180)
만5세	37.8	33.0	22.2	4.9	2.1	100.0(185)
직장 종류(모)						
기관/공기업	42.1	13.7	29.9	7.6	6.7	100.0(197)
민간기업	47.6	12.3	33.2	3.8	3.1	100.0(717)
기타	48.8	19.0	26.4	3.3	2.5	100.0(121)
직장 종류(부)						
기관/공기업	50.6	10.9	28.2	7.5	2.8	100.0(174)
민간기업	46.2	13.4	32.6	3.9	3.9	100.0(770)
기타	42.9	17.6	31.9	3.3	4.3	100.0(91)
사업장규모(모)						
30인 미만	48.3	16.2	31.3	1.7	2.5	100.0(358)
30~100인 미만	48.4	13.7	28.8	4.6	4.5	100.0(219)
100~300인 미만	47.0	10.8	31.4	7.6	3.2	100.0(185)
300~500인 미만	40.2	14.6	32.9	7.3	5.0	100.0(82)

20) 본 절은 김나영 외(2016)에서 조사한 '시간정책 실태조사' 원자료를 본 연구주제에 맞춰 재분석한 결과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친인척	아이돌보미/가정보육사	기타	계
500~1000인 미만	40.3	11.1	30.6	9.7	8.3	100.0(72)
1000인 이상	46.2	8.4	39.5	2.5	3.4	100.0(119)
사업장규모(부)						
30인 미만	43.4	18.6	33.2	2.2	2.6	100.0(226)
30~100인 미만	51.8	12.7	29.4	3.6	2.5	100.0(197)
100~300인 미만	47.9	11.6	33.5	3.3	3.7	100.0(215)
300~500인 미만	51.7	11.7	27.6	6.9	2.1	100.0(145)
500~1000인 미만	39.5	12.3	32.1	8.6	7.5	100.0(81)
1000인 이상	42.7	11.1	33.9	5.8	6.5	100.0(171)
평균월소득(가구)						
300만원 이하	43.6	18.2	20.0	16.4	1.8	100.0(55)
500만원 이하	48.6	13.1	31.7	3.5	3.1	100.0(397)
700만원 이하	46.0	12.0	34.3	4.2	3.5	100.0(359)
900만원 이하	50.4	12.6	26.9	3.4	6.7	100.0(119)
900만원 초과	39.0	17.1	35.2	3.8	4.9	100.0(105)
거주지역						
대도시	45.4	11.2	34.4	5.2	3.8	100.0(678)
중소도시	48.4	16.5	29.0	2.6	3.5	100.0(310)
읍면지역	53.2	23.4	12.8	6.4	4.2	100.0(47)

이용 중인 기관 유형의 결과는 민간어린이집의 이용률이 45.0%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만0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38.1%)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 이용률(22.6%)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만1세와 만2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이용 중인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모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국공립	사립		
전체	14.9	5.2	5.6	45.0	11.4	2.4	0.4	2.9	11.4	0.8	100.0(832)
자녀 연령											
만0세	15.5	4.8	7.1	38.1	22.6	2.4	1.2	3.6	3.6	1.2	100.0(84)
만1세	12.1	9.3	4.7	42.1	15.0	4.7	0.0	1.9	5.6	4.7	100.0(107)
만2세	16.0	4.9	3.5	51.4	15.3	2.8	0.7	0.7	4.9	0.0	100.0(144)
만3세	15.2	5.7	7.6	49.4	13.9	1.9	0.6	2.5	3.2	0.0	100.0(158)
만4세	11.5	3.6	4.2	49.1	5.5	3.6	0.0	4.8	17.6	0.0	100.0(165)
만5세	18.4	4.0	6.9	36.8	4.0	0.0	0.0	3.4	25.9	0.6	100.0(174)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모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국공립	사립		
직장 종류(모)											
기관/공기업	24.8	2.7	8.7	32.9	14.8	4.0	2.0	4.7	5.4	0.0	100.0(149)
민간기업	12.9	5.7	4.8	49.4	10.5	2.4	0.0	1.9	12.2	0.2	100.0(581)
기타	11.8	5.9	5.9	37.3	11.8	0.0	0.0	5.9	15.7	5.9	100.0(102)
직장 종류(부)											
기관/공기업	18.8	5.6	9.7	43.1	9.7	5.6	0.7	2.1	4.2	0.7	100.0(144)
민간기업	14.4	4.7	4.5	46.3	11.7	1.9	0.3	2.8	12.9	0.5	100.0(618)
기타	11.4	8.6	7.1	37.1	12.9	0.0	0.0	5.7	12.9	4.3	100.0(70)
거주지역											
대도시	15.2	6.3	5.7	46.9	9.6	2.2	0.4	2.4	10.6	0.7	100.0(540)
중소도시	12.3	3.2	4.8	42.9	15.1	3.2	0.0	4.0	13.9	0.8	100.0(252)
읍면지역	27.5	2.5	10.0	32.5	12.5	0.0	2.5	2.5	7.5	2.5	100.0(40)

〈표 Ⅳ-2-3〉 기관유형별 어린이집 수/이용아동 수(2009/2012-2018)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8	어린이집수	39,181	3,531	1,378	748	13,544	18,708	164	1,108
	(%)	(100.0)	(9.0)	(3.5)	(1.9)	(34.6)	(47.7)	(0.4)	(2.8)
	아동 수	1,413,532	200,240	92,822	41,370	710,339	301,600	4,344	62,817
	(%)	(100.0)	(14.2)	(6.6)	(2.9)	(50.3)	(21.3)	(0.3)	(4.4)
2017	어린이집수	40,238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	(100.0)	(7.8)	(3.5)	(1.9)	(34.9)	(48.8)	(0.4)	(2.6)
	아동 수	1,450,243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08	58,454
	(%)	(100.0)	(12.9)	(6.7)	(3.0)	(50.9)	(22.2)	(0.3)	(4.0)
2016	어린이집수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	(100.0)	(7.0)	(3.4)	(2.0)	(34.8)	(50.1)	(0.4)	(2.3)
	아동 수	1,451,215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	(100.0)	(12.1)	(6.8)	(3.1)	(51.4)	(22.6)	(0.3)	(3.6)
2015	어린이집수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	(100.0)	(6.2)	(3.3)	(2.0)	(34.4)	(51.9)	(0.4)	(1.8)
	아동 수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	(100.0)	(11.4)	(6.9)	(3.2)	(51.5)	(23.7)	(0.3)	(3.1)
2014	어린이집수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	(100.0)	(5.7)	(3.2)	(1.9)	(33.9)	(54.3)	(0.3)	(1.6)
	아동 수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	(100.0)	(10.6)	(7.0)	(3.3)	(51.8)	(24.4)	(0.3)	(2.6)
2013	어린이집수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	(100.0)	(5.3)	(3.3)	(2.0)	(33.7)	(54.0)	(0.3)	(1.4)
	아동 수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	(100.0)	(10.4)	(7.3)	(3.5)	(51.8)	(24.5)	(0.2)	(2.3)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2	어린이집수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	(100.0)	(5.2)	(3.4)	(2.0)	(34.0)	(53.9)	(0.3)	(1.2)
	아동 수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	(100.0)	(10.1)	(7.6)	(3.5)	(51.7)	(25.0)	(0.2)	(2.0)
2009	어린이집수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	(100.0)	(5.4)	(4.1)	(2.6)	(37.8)	(43.8)	(0.2)	(1.0)
	아동 수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236,892	1,655	18,794
	(%)	(100.0)	(11.0)	(9.6)	(4.5)	(53.0)	(20.2)	(0.1)	(1.6)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8b). 보육정책 DW 시스템(2018. 11. 기준).
3) 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8~59 〈표 Ⅱ-1-1〉 등을 재구성함.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이유(복수응답)를 보면, 전체응답자의 46.1%가 '기관 이용 후 돌볼 사림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 41.2%의 응답자가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만0세와 만1세 자녀를 둔 응답자들의 경우 '자녀가 어려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57.4%와 52.7%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Ⅳ-2-4〉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기관 이용 후 돌볼사람이 필요해서	자녀가 어려서 기관적응 힘들까봐	원하는 시간에 기관이용 할수없어	이용 희망기관 대기자 많아서	이용비용 부담되어서	(수)
전체	46.1	41.2	32.5	15.8	15.8	(690)
자녀 연령						
만0세	36.5	57.4	31.3	16.5	16.5	(115)
만1세	37.5	52.7	32.1	11.6	14.3	(112)
만2세	52.4	40.0	40.0	14.3	21.0	(105)
만3세	52.5	36.4	33.9	14.4	11.0	(118)
만4세	48.0	32.5	29.3	16.3	18.7	(123)
만5세	49.6	29.1	29.1	21.4	13.7	(117)
직장 종류(모)						
기관/공기업	40.3	32.8	32.1	17.2	9.0	(134)
민간기업	47.6	44.1	32.4	16.1	17.6	(490)
기타	47.0	36.4	33.3	10.6	16.7	(66)
직장 종류(부)						
기관/공기업	45.2	39.1	36.5	14.8	8.7	(115)
민간기업	46.0	42.4	31.9	16.6	17.6	(524)

구분	기관 이용 후 돌볼사람이 필요해서	자녀가 어려서 기관적응 힘들까봐	원하는 시간에 기관이용 할수없어	이용 희망기관 대기자 많아서	이용비용 부담되어서	(수)
기타	49.0	33.3	29.4	9.8	13.7	(51)
사업장규모(모)						
30인 미만	43.2	42.3	27.0	9.5	15.8	(222)
30~100인 미만	42.6	43.3	32.6	15.6	17.0	(141)
100~300인 미만	53.0	35.8	45.5	18.7	17.9	(134)
300~500인 미만	40.0	32.7	25.5	38.2	9.1	(55)
500~1000인 미만	51.9	42.6	24.1	18.5	14.8	(54)
1000인 이상	48.8	47.6	35.7	11.9	15.5	(84)
사업장규모(부)						
30인 미만	42.8	45.5	28.3	7.6	13.1	(145)
30~100인 미만	51.2	44.9	26.8	14.2	14.2	(127)
100~300인 미만	45.1	41.0	30.6	17.4	17.4	(144)
300~500인 미만	52.0	33.7	40.8	21.4	21.4	(98)
500~1000인 미만	36.4	30.9	38.2	27.3	20.0	(55)
1000인 이상	45.5	43.0	36.4	15.7	12.4	(121)
평균월소득(가구)						
300만원 이하	46.4	39.3	42.9	21.4	14.3	(28)
500만원 이하	43.6	44.0	30.0	12.1	19.5	(257)
700만원 이하	50.2	40.7	30.9	14.8	12.8	(243)
900만원 이하	41.3	32.5	36.3	23.8	15.0	(80)
900만원 초과	46.3	42.7	37.8	20.7	14.6	(82)
거주지역						
대도시	44.2	42.5	35.5	17.6	16.8	(482)
중소도시	51.6	38.6	26.1	11.4	14.7	(184)
읍면지역	41.7	33.3	20.8	12.5	4.2	(24)

주: 1) 중복응답
2) 기타: 자녀가 원해서, 아이가 어려서, 신뢰감/안심이 되어서/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가족이 돌봄으로 야근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같이 살고 있어서, 주변 사람의 권유로, 조부모가 원해서, 안전 위해, 배우자의 양육휴직, 보육시설의 방학기간, 기관이 질병에 취약해서

유연근무제와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양육에의 도움정도를 보면, '(매우)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움에의 정도는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소득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나 도움정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Ⅳ-2-5〉 시간정책의 양육에의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도움됨	조금 도움됨	별로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되지 않음	계
전체	43.2	42.3	10.6	4.0	100.0(852)
자녀 연령					
만0세	50.8	33.8	9.2	6.2	100.0(130)
만1세	45.6	39.0	11.8	3.7	100.0(136)
만2세	41.7	43.1	13.9	1.4	100.0(144)
만3세	39.5	49.3	7.9	3.3	100.0(152)
만4세	40.3	38.9	16.0	4.9	100.0(144)
만5세	42.5	47.9	4.8	4.8	100.0(146)
자녀와의 관계					
모	44.5	39.5	11.2	4.8	100.0(438)
부	41.8	45.2	9.9	3.1	100.0(414)
직장 종류(모)					
기관/공기업	41.6	42.8	13.9	1.7	100.0(173)
민간기업	43.7	42.3	9.8	4.2	100.0(591)
기타	43.2	40.9	9.1	6.8	100.0(88)
직장 종류(부)					
기관/공기업	48.4	37.7	10.7	3.1	100.0(159)
민간기업	41.1	43.8	10.9	4.3	100.0(626)
기타	50.7	38.8	7.5	3.0	100.0(67)
사업장규모(모)					
30인 미만	43.7	42.2	8.9	5.2	100.0(270)
30~100인 미만	40.6	45.0	12.8	1.7	100.0(180)
100~300인 미만	40.7	44.9	9.6	4.8	100.0(167)
300~500인 미만	32.9	49.3	15.1	2.7	100.0(73)
500~1000인 미만	49.2	32.8	13.1	4.9	100.0(61)
1000인 이상	54.5	33.7	7.9	4.0	100.0(101)
사업장규모(부)					
30인 미만	47.9	37.6	9.7	4.8	100.0(165)
30~100인 미만	47.1	44.5	5.2	3.2	100.0(155)
100~300인 미만	38.4	48.1	10.3	3.2	100.0(185)
300~500인 미만	39.1	43.0	14.1	3.9	100.0(128)
500~1000인 미만	39.7	37.0	19.2	4.1	100.0(73)
1000인 이상	45.2	39.7	10.3	4.8	100.0(146)
평균월소득(가구)					
300만원 이하	47.6	45.2	4.8	2.4	100.0(42)
500만원 이하	44.5	40.3	10.7	4.5	100.0(308)
700만원 이하	45.1	41.8	10.5	2.6	100.0(304)
900만원 이하	36.9	54.4	7.8	1.0	100.0(103)
900만원 초과	37.9	35.8	15.8	10.5	100.0(95)

나. 출산 및 육아휴직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 총 이용기간을 설문한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제의 경우 '1년 6개월 이하' 사용자의 비중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6〉 출산 및 육아휴직제 총 이용 기간

단위: %(명)

구분	총 이용 기간							계
출산전후휴가	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120일 이내	100.0(540)
	55.0		8.1		31.9		5.0	
배우자 출산휴가	1일		2일		3일		4일	5일	100.0(371)
	10.8		6.2		45.0		1.9	36.1	
육아휴직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6개월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100.0(316)
	18.7	11.7	7.0	50.3	3.2	7.0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1개월 이하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초과	100.0(98)
	21.4		34.7		27.6	11.2	5.1	

출산 및 육아휴직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출산전후휴가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만0세의 경우 70.4%, 만1세의 경우 64.2%로 다른 연령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도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만0세의 경우 64.2%, 만1세의 경우 63.6%로 다른 연령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Ⅳ-2-7〉 출산 및 육아휴직제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보통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출산전후휴가	1.4	4.1	10.1	27.1	57.3	100.0(1,035)
자녀연령 만0세	1.9	3.1	5.7	18.9	70.4	100.0(159)
만1세	1.8	3.6	6.7	23.6	64.2	100.0(165)
만2세	1.2	3.6	9.0	27.1	59.0	100.0(166)
만3세	0.6	5.6	13.9	31.7	48.3	100.0(180)
만4세	1.7	3.9	13.3	31.1	50.0	100.0(180)
만5세	1.1	4.3	11.4	29.2	54.1	100.0(185)
배우자출산휴가	0.5	4.0	13.9	32.7	49.0	100(1,035)
자녀연령 만0세	0.6	5.0	9.4	23.9	61.0	100(159)
만1세	0.6	4.2	9.7	24.8	60.6	100(165)

구분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보통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만2세	0.0	3.0	9.6	31.9	55.4	100(166)
만3세	0.0	3.3	18.9	38.3	39.4	100(180)
만4세	0.6	4.4	15.6	35.6	43.9	100(180)
만5세	1.1	3.8	18.9	39.5	36.8	100(185)
육아휴직	0.1	2.8	11.0	30.5	55.6	100(1,035)
자녀연령 만0세	0.0	2.5	9.4	23.9	64.2	100(159)
만1세	0.0	2.4	7.3	26.7	63.6	100(165)
만2세	0.0	1.2	10.8	28.3	59.6	100(166)
만3세	0.0	1.7	12.8	33.9	51.7	100(180)
만4세	0.0	5.0	11.7	32.8	50.6	100(180)
만5세	0.5	3.8	13.5	36.2	45.9	100(18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0.7	3.6	17.2	35.9	42.6	100(1,035)
자녀연령 만0세	1.3	5.0	10.1	32.1	51.6	100(159)
만1세	0.6	4.2	13.3	32.1	49.7	100(165)
만2세	0.0	1.8	17.5	35.5	45.2	100(166)
만3세	0.6	1.7	22.8	40.0	35.0	100(180)
만4세	1.1	5.6	20.0	32.8	40.6	100(180)
만5세	0.5	3.2	18.4	42.2	35.7	100(185)

다. 유연근무제

(과거 직장포함)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자녀연령이 만2세인 경우, 단시간 근로제도 이용경험이 높게(31.9%) 나타났고, 자녀 아버지(16.3%) 보다 자녀 어머니(31.8%)의 이용경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아버지의 경우 직장종류에 따른 경험 비율의 차이가 다소 나타났다. 사업장규모별로 보면, 아주 소규모이거나 대규모인 경우에는 중간 규모의 사업장 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기관/공기업 종사자의 이용경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남녀 및 자녀연령에 따른 이용경험 비중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8〉 (과거 직장포함)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경험 있음	이용해 본 적 없음	계
전체	23.6	76.4	100.0(1,035)
자녀 연령			
만0세	20.1	79.9	100.0(159)
만1세	17.0	83.0	100.0(165)

구분	이용경험 있음	이용해 본 적 없음	계
만2세	31.9	68.1	100.0(166)
만3세	26.7	73.3	100.0(180)
만4세	22.2	77.8	100.0(180)
만5세	23.2	76.8	100.0(185)
자녀 와의 관계			
모	31.8	68.2	100.0(488)
부	16.3	83.7	100.0(547)
직장 종류(모)			
기관/공기업	27.9	72.1	100.0(197)
민간기업	22.3	77.7	100.0(717)
기타	24.0	76.0	100.0(121)
직장 종류(부)			
기관/공기업	31.6	68.4	100.0(174)
민간기업	22.1	77.9	100.0(770)
기타	20.9	79.1	100.0(91)
사업장규모(모)			
30인 미만	19.3	80.7	100.0(358)
30~100인 미만	23.7	76.3	100.0(219)
100~300인 미만	33.0	67.0	100.0(185)
300~500인 미만	31.7	68.3	100.0(82)
500~1000인 미만	20.8	79.2	100.0(72)
1000인 이상	17.6	82.4	100.0(119)
사업장규모(부)			
30인 미만	16.8	83.2	100.0(226)
30~100인 미만	25.4	74.6	100.0(197)
100~300인 미만	24.7	75.3	100.0(215)
300~500인 미만	31.7	68.3	100.0(145)
500~1000인 미만	27.2	72.8	100.0(81)
1000인 이상	20.5	79.5	100.0(171)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제도에 있어서 '자녀양육 및 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근로제도의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이 48.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연령별로 보았을 때, 만0세의 경우 해당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아버지(34.8%) 보다는 자녀 어머니(55.5%)의 경우 양육 및 교육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9〉 유연근무제 이용 주요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양육·교육	업무효율성 향상	출퇴근시간,거리의 문제	부모 등 아픈가족 돌봄	개인시간 활용의 효율성 확보	회사의 업무방침	본인의 교육 및 자기발전	기타 개인 사유	계
전체	48.0	12.7	11.1	10.2	7.4	5.7	4.1	0.8	100.0(244)
자녀 연령									
만0세	62.5	15.6	0.0	9.4	0.0	9.4	0.0	3.1	100.0(32)
만1세	50.0	10.7	10.7	10.7	7.1	3.6	7.1	0.0	100.0(28)
만2세	45.3	13.2	7.5	3.8	9.4	15.1	3.8	1.9	100.0(53)
만3세	43.8	14.6	10.4	12.5	12.5	0.0	6.3	0.0	100.0(48)
만4세	37.5	10.0	20.0	17.5	7.5	0.0	7.5	0.0	100.0(40)
만5세	53.5	11.6	16.3	9.3	4.7	4.7	0.0	0.0	100.0(43)
자녀와의 관계									
모	55.5	13.5	9.0	9.7	5.8	3.9	2.6	0.0	100.0(155)
부	34.8	11.2	14.6	11.2	10.1	9.0	6.7	2.2	100.0(89)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여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하였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 '예'라고 응답한 비중이 67.1%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 어머니(63.4%) 보다 자녀 아버지의 경우(70.8%)에 있어서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10〉 유연근무제 이용과 자녀돌봄 시간 변화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67.1	32.9	100.0(583)
자녀 연령			
만0세	61.8	38.2	100.0(76)
만1세	67.1	32.9	100.0(82)
만2세	62.9	37.1	100.0(105)
만3세	68.4	31.6	100.0(114)
만4세	72.3	27.7	100.0(101)
만5세	68.6	31.4	100.0(105)
자녀와의 관계			
모	63.4	36.6	100.0(292)
부	70.8	29.2	100.0(291)

유연근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0~80%의 비중으로 '대체로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1〉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평균
전체	2.7	6.5	23.6	42.0	25.2	100.0(1,035)	3.81
자녀 연령							
만0세	2.5	4.4	15.7	39.0	38.4	100.0(159)	4.06
만1세	3.6	6.7	18.8	39.4	31.5	100.0(165)	3.88
만2세	0.6	7.2	23.5	43.4	25.3	100.0(166)	3.86
만3세	1.7	6.1	26.1	46.7	19.4	100.0(180)	3.76
만4세	4.4	6.1	26.7	42.2	20.6	100.0(180)	3.68
만5세	3.2	8.1	29.2	41.1	18.4	100.0(185)	3.63
자녀와의 관계							
모	2.3	4.7	20.5	43.6	28.9	100.0(488)	3.92
부	3.1	8.0	26.3	40.6	21.9	100.0(547)	3.70
직장 종류(모)							
기관/공기업	5.6	7.1	25.9	35.5	25.9	100.0(197)	3.69
민간기업	1.5	5.9	22.3	44.9	25.4	100.0(717)	3.87
기타	5.0	9.1	27.3	35.5	23.1	100.0(121)	3.63
직장 종류(부)							
기관/공기업	5.2	9.8	21.3	37.9	25.9	100.0(174)	3.70
민간기업	1.7	6.0	24.2	43.2	24.9	100.0(770)	3.84
기타	6.6	4.4	23.1	39.6	26.4	100.0(91)	3.75
사업장규모(모)							
30인 미만	2.2	6.1	21.8	48.3	21.5	100.0(358)	3.81
30~100인 미만	2.7	5.5	27.4	36.5	27.9	100.0(219)	3.81
100~300인 미만	2.7	5.4	20.0	50.8	21.1	100.0(185)	3.82
300~500인 미만	6.1	8.5	28.0	32.9	24.4	100.0(82)	3.61
500~1000인 미만	2.8	9.7	20.8	29.2	37.5	100.0(72)	3.89
1000인 이상	1.7	7.6	26.1	33.6	31.1	100.0(119)	3.85
사업장규모(부)							
30인 미만	2.7	6.6	27.4	38.1	25.2	100.0(226)	3.77
30~100인 미만	1.5	5.6	22.3	40.6	29.9	100.0(197)	3.92
100~300인 미만	2.8	6.5	21.9	46.5	22.3	100.0(215)	3.79
300~500인 미만	4.8	5.5	23.4	47.6	18.6	100.0(145)	3.70
500~1000인 미만	4.9	8.6	22.2	39.5	24.7	100.0(81)	3.70
1000인 이상	1.2	7.0	22.8	39.8	29.2	100.0(171)	3.89

3. 소결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주된 양육 방식에서 만0세의 경우 기관보다는 자녀 어머니 혹은 조부모/친척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맞벌이 부부

만 조사한 결과에서는 조부모/친척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중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낮아지고, 어린이집 이용의 비중이 매우 높아져 만2세의 경우 전체 가구 대상일 때는 59.1%로 조사되었고, 맞벌이부부 대상일 때는 63.6%로 나타났다.

이용 기관 유형을 보면, 만0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38.1%)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 이용률(22.6%)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만1세와 만2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의 경우 기관 보다는 가정(혹은 개인)양육을 선호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입소대기 등의 여건 때문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가정어린이집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0세' 자녀의 개인양육(부모포함)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 지원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맞벌이 부부 대상 조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제도에 있어서 '자녀양육 및 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확보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육아휴직과 같은 상대적으로 긴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활성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무의 특성, 사업장의 인력 구성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해당 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되, 근로를 병행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 확보를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전체 취업모 가운데 30.5%는 취업 상태를 중단한 적이 있으며, 그 시기는 '임신했을 때'가 6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출산 혹은 출산휴가 직후'라고 응답하였다(26.7%). 취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높은 경력단절이 임신·출산 등의 초기 양육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시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V

영아 양육지원 수요조사

01 조사개요

02 분석 결과

03 분석

04 소결

Ⅴ. 영아 양육지원 수요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내용

영아 양육 부모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사전조사를 위한 면담과 전국보육실태조사 설문문항 등을 바탕으로 설문(안)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부모취업여부, 이용 양육서비스 형태, 요구 및 개선 항목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세부항목으로 부모취업여부는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 이용 양육서비스 형태는 기관, 가정 내 양육, 개인양육서비스 등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설문 내용은 1차적으로 연구진이 작성 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정·확정 하였다.

〈표 Ⅴ-1-1〉 주요 설문조사 내용

대분류	소분류	내용
기본 문항	일반특성	• 연령, 성별, 결혼여부(미혼/기혼/이혼 또는 사별), 학력, **거주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 **자녀수, 36개월 미만 자녀의 수, 36개월 미만 자녀의 월령(가장 어린 자녀 기준)연령,** 가족 구성원, • **소득,** 소득의 수입원
	고용상태	• **모 취업형태, 모 고용형태, 모 근무형태, 모 사업장 형태**
부모 취업 여부	맞벌이 및 모홑벌이 가구	• 출퇴근시각, 평균근로시간(주), 근무기간, 휴일 근무 여부 • 휴일 근무 일수, 장시간 근로 일수, 긴급 상황 시 돌봄제공자
	부홑벌이 가구	• (모)취업중단여부-중단 시 자녀월령, 중단이유
영아 양육지원정책		• 비용 지원 정책 이용여부와 만족도(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보 서비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등) • 비용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이용여부와 만족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 도서관 포함), 건강가정 지원센터, 표준모자 보건수첩,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점 이용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이용 이유,

대분류	소분류	내용
		• 부모 교육 필요성 동의정도, 부모교육 제공 기관 선호도, 부모교육 제간 시간 선호도 •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 시간 지원 정책 이용여부와 만족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가족돌봄휴직, 시간 외 근로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허용,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유형) • 시간 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 정책의 충분성,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범주,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양육 형태	연령별 주 양육실태 및 선호형태	• 영아 자녀 연(월)령별 주 양육 실태, 보조 양육 실태 • 영아 자녀 연(월)령별 주 선호 양육 형태 보조 양육 형태
	부모 직접돌봄	• 부모 직접 돌봄 양육 유형 선택 이유,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가정양육수당 적절한 금액, 보조양육 형태 이용 이유, 주 양육형태에 대한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을 통한 기관 대리 양육 유형 선택 이유, 이용 기관 유형, 이용시작시기(개월), 이용시작 시기 • 현재 등하원시각, 이용시간 , 초과 이용 시간 및 빈도(횟수) • 보조양육 형태 이용 이유, 주 양육형태에 대한 만족도 • 기관 이용 시간(일), 시간 초과 이용 빈도(주), • 양육수당 인상 시 기관 이용 중단 의견, 중단 의사 • 어린이집 중단 결정 적정 양육수당 금액
	개인양육 서비스	• 개인양육 서비스 제공자, 혈연/비혈연 개인양육 서비스 이용 이유, • 월평균 지불 비용, 이용 시간대 및 주당 이용시간 • 보조양육 형태 이용 이유, 주 양육형태에 대한 만족도
양육 비용		•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비용(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비, 이전지출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용 • 영아 자녀에게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 가장 부담되는 항목 우선순위
요구 및 개선		•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어린이집, 유치원 등) • 입소대기 기간 및 신청시스템 개선 • 양육비 경감을 위한 비용 지원 확대(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등) • 가정양육 지원 확대 • 취약보육(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확대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건강관리지원, 교육프로그램, 육아관련 정보제공 강화 • 영아양육지원의 세분화에 대한 의견(맞벌이 여부, 장애아, 농어촌, 한부모, 다문화 등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지원) • 시간정책 개선 의견 • 추가적 요구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타		• 시간제보육반- 인지 및 이용경험, 만족도 • 보육 환경 개선 재정 마련을 위한 증세 찬반 - 증세를 통한 개선 분야(공고 보육인프라 확대, 보육료 인상, 양육수당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물리적 보육 환경 개선 등)

나. 조사대상 특성

본 연구는 영아(만 0세~만 3세) 자녀를 둔 양육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1] 조사 대상은 양육모에 한정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양육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주 양육자의 역할은 가정 내 여성이 많이 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가정 내 여성의 고용특성에 따라 가구와 양육형태의 특성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 가정하였다.[22] 본 조사의 주요 연구 목적은 영아에 대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표본은 먼저 영아의 연령별로 표본을 균등할당 후 추후 지역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모집하였다. 또한 양육모의 취업상태가 양육형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취업모의 표본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사 대상의 특성은 아래 〈표 Ⅴ-1-2〉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81.0%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의 수는 2명이 45.1%로 가장 많았다. 양육모의 취업상태는 취업과 휴직이 각각 38.7%, 18.2%로 나타났으며, 미취업 상태는 41.9%로 나타났다. 양육모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21) 당초 조사계획은 조사시점 기준(2019. 9월 기준)으로 만 0세~만 2세(36개월 미만) 영아 자녀를 둔 양육모 1,5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영아에 한정한 샘플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6년 출생년도 영아 자녀를 둔 양육모로 모집단을 확장하되, 36개월 이상 자녀 양육을 하는 응답자의 경우 양육실태와 선호형태 질문 시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문을 설계함.

연도	출생연월	월령	연령	명수
2019년생	2019.1~2018.8	1개월~12개월 미만	만0세	200명
2018년생	2018.10~2018.12	1개월~12개월 미만	만0세	400명
	2018.1~2018.9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만1세	
2017년생	2017.10~2017.12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만1세	400명
	2017.1~2017.9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만2세	
2016년생	2016.10~2016.12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만2세	400명
	2016.1~2016.9	36개월 이상	만3세	
전 체				1,400명

22) 「2019 통계로 본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취업 여성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14.2% 무급가족종사자는 8.4%이다. 여성임금근자로자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58.5%이며, 비정규직 비율은 41.5%이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5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다(남성 임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6.3%이고,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5%이다). 이러한 실태를 기반으로 여성이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심화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구의 소득이 달라짐은 물론 양육을 위한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시간지원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통계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7. 1)

근무형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간제 임금근로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2〉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1,400)		
연령		모 고용 형태	
20대	9.1 (128)	임금근로자(정규직)	37.0 (518)
30대	81.0 (1,13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0.0 (140)
40대	9.9 (138)	자영업주/고용주	5.1 (72)
지역 규모		무급가족종사자	4.8 (67)
대도시	40.0 (560)	미취업	43.1 (603)
중소도시	42.5 (595)	모 근무 형태	
읍면지역	17.5 (245)	임금근로자(전일제)	37.4 (524)
자녀 수		임금근로자(시간제)	9.6 (134)
1명	42.9 (601)	자영업주/고용주	5.1 (72)
2명	45.1 (631)	무급가족종사자	4.8 (67)
3명 이상	12.0 (168)	미취업	43.1 (603)
막내 자녀 연령		모 사업장 형태	
만0세 (1~12개월 미만)	20.2 (283)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1.1 (156)
만1세 (12~24개월 미만)	29.9 (419)	민간 대기업	4.6 (64)
만2세 (24~36개월 미만)	27.3 (382)	민간 중견기업	3.6 (51)
만3세 (36~44개월 미만)	22.6 (316)	민간 중소기업	13.1 (183)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개인사업체	20.1 (282)
어린이집	58.6 (820)	기타	4.4 (61)
반일제 이상 학원	0.6 (8)	미취업	43.1 (603)
비혈연 개인양육	1.4 (19)	월평균 가구소득	
혈연 개인양육	3.1 (44)	200만원 미만	1.8 (25)
부모 직접 돌봄	34.9 (488)	200만원~350만원 미만	30.9 (433)
기타	1.5 (21)	350만원~500만원 미만	30.9 (433)
모 취업 상태		500만원~650만원 미만	24.9 (348)
취업	38.7 (542)	650만원~800만원 미만	6.4 (89)
휴직	18.2 (255)	800만원 이상	5.1 (72)
학업	1.2 (17)		
미취업	41.9 (586)		

2. 분석 결과

가. 가구의 고용형태별 근로환경

먼저 가구의 고용형태별 근로환경을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와 부 홑

벌이 가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이와 같이 분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 가구와 모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 형태를 선택하는 데 근로시간 및 유형 등 근로환경이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와 모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 홑벌이 가구와는 달리 양육만을 전담하는 양육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맞벌이 가구와 모 홑벌이 가구는 양육형태에 대한 수요가 달리 부 홑벌이 가구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의 양육모의 근무형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주간에 근무하는 비율이 6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비율이 11.4%로 높게 나타났다. 출퇴근은 하되, 정해진 시간 없이 유연근무를 한다는 비율도 8.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형태의 비율은 모 고용형태·근무형태·사업장형태에 따라 다소 간 특징아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임금근로자 정규직·전일제·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주간에 근무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정규직 : 84.4%, 전일제 : 86.8%,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 91.0%). 반면 임금근로자자 중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주간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비정규직 : 62.1%, 시간제 : 51.5%), 프리랜서로 근무하거나 유연 근무를 하는 비율도 그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비정규직 프리랜서 : 19.3%, 비정규직 유연근무 10.0%, 시간제 프리랜서 23.9%, 시간제 유연근무 10.4%). 자영업주와 고용주의 경우는 세 가지의 근무형태의 비율이 30%대로 골고루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비율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변수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및 200만원~350만원 미만 가구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주간에 근무한다는 비율이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유연근무와 프리랜서의 비율이 다소 간 높았다.

〈표 Ⅴ-2-1〉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 모 근무형태

단위 : %(명)

구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주간에 근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야간에 근무	주/야간 교대 근무	주 또는 달별로 스케줄 근무	출퇴근 하되, 정해진 시간 없이 유연 근무	프리랜서	기타	계(수)
전체	69.8	1.4	2.4	3.6	8.2	11.4	3.3	100.0(797)
모 취업 상태								
취업	77.5	1.1	2.4	4.2	8.7	5.5	0.6	100.0(542)
휴직	53.3	2.0	2.4	2.4	7.1	23.9	9.0	100.0(255)
X^2(df)	107.126(6)***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84.4	1.4	2.9	3.9	3.9	2.5	1.2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62.1	0.7	2.1	5.0	10.0	19.3	0.7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30.6	2.8	0.0	0.0	33.3	31.9	1.4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14.9	1.5	1.5	3.0	10.4	41.8	26.9	100.0(67)
X^2(df)	387.245(18)***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86.8	0.8	2.5	3.2	3.8	1.5	1.3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51.5	3.0	3.7	7.5	10.4	23.9	0.0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30.6	2.8	0.0	0.0	33.3	31.9	1.4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14.9	1.5	1.5	3.0	10.4	41.8	26.9	100.0(67)
X^2(df)	428.017(18)***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91.0	0.0	2.6	1.3	1.9	1.9	1.3	100.0(156)
민간 대기업	75.0	0.0	4.7	4.7	10.9	4.7	0.0	100.0(64)
민간 중견기업	72.5	0.0	7.8	7.8	3.9	7.8	0.0	100.0(51)
민간 중소기업	78.7	2.2	3.8	3.3	3.8	6.0	2.2	100.0(183)
개인사업체	56.4	2.5	0.4	4.3	14.9	19.9	1.8	100.0(282)
기타	42.6	0.0	0.0	3.3	6.6	23.0	24.6	100.0(61)
X^2(df)	222.606(3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3.8	0.0	0.0	7.7	15.4	15.4	7.7	100.0(13)
200만원~350만원 미만	55.1	3.8	1.3	3.2	9.0	21.2	6.4	100.0(156)
350만원~500만원 미만	64.7	0.9	3.3	3.3	10.7	13.5	3.7	100.0(215)
500만원~650만원 미만	79.0	0.4	3.0	3.7	5.5	7.0	1.5	100.0(271)
650만원~800만원 미만	81.0	1.3	0.0	5.1	2.5	8.9	1.3	100.0(79)
800만원 이상	73.0	1.6	3.2	3.2	14.3	1.6	3.2	100.0(63)
X^2(df)	70.250(30)***							

***p 〈.001

평일 출퇴근 시각과 근무시간 또한 정규직 임금근로자(9시간 7분)와 전일제 근로자(9시간 10분)가 평균적으로 가장 장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7시간 30분)와 시간제 근로자(6시간 50분)가 평균적으로 가장

단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주·고용주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는 평균 8시간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사업장 형태의 경우는 근무형태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민간 대기업의 근무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9시간 33분) 그 다음으로 민간 중견기업(9시간 14분)이 장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주간에 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근로시간은 민간에 비해서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8시간 51분).

〈표 Ⅴ-2-2〉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 평일 출퇴근 시각 및 근무시간

단위: 시:분:초(명)

구분	출근시각	퇴근시각	근무시간 (퇴근시각-출근시각)	사례수
전체	9:00:10	17:33:40	8:48:44	(567)
모 취업 상태				
취업	9:03:41	17:32:47	8:39:14	(426)
휴직	8:49:32	17:36:18	9:17:24	(141)
F	1.8(a)	0.1	12.1***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8:53:00	17:40:37	9:07:03	(44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9:25:27	16:55:51	7:30:23	(88)
자영업주/고용주	10:16:15	18:25:00	8:08:45	(24)
무급가족종사자	7:40:54	16:03:38	8:22:43	(11)
F	8.6***(a)	6.8***(a)	20.9***(a)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8:47:54	17:45:41	9:10:19	(459)
임금근로자(시간제)	10:04:14	16:14:47	6:50:00	(73)
자영업주/고용주	10:16:15	18:25:00	8:08:45	(24)
무급가족종사자	7:40:54	16:03:38	8:22:43	(11)
F	18.0***(a)	16.0***(a)	40.0***(a)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8:41:24	17:32:49	8:51:24	(142)
민간 대기업	8:30:26	18:04:25	9:33:58	(48)
민간 중견기업	8:35:40	17:50:00	9:14:19	(37)
민간 중소기업	9:09:21	17:31:36	9:01:09	(148)
개인사업체	9:29:07	17:25:30	8:13:43	(166)
기타	8:15:11	17:22:06	9:06:55	(26)
F	5.7***(a)	0.9(a)	5.8***(a)	

***p <.001

주당 근무일수의 경우, 주 5일 근무가 96.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 4일 근무하는 사람이 1.9%로 나타났다. 월평균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 하는 일수가 1~2일인 사람의 비율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일을

초과근무 하는 사람의 비율도 14.1%로 나타났다. 16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9.4% 가량 나타났다.[23]

〈표 V-2-3〉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 주당 근무일수 및 월 평균 10시간 초과 근무 일수

단위 : %(명)

구분	주5일	주4일	주3일	주2일	주1일	계(수)
주당 근무일수	96.4	1.9	0.9	0.3	0.5	100.0(586)
구분	1~2일	3~5일	6~10일	11~15일	16일 이상	계(수)
월 평균 10시간 초과 근무일 수	67.6	14.1	6.9	2.0	9.4	100.0(797)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민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주간에 일하는 사람이 일·가정 양립차원에서 시간적 압박을 받을 확률이 다른 근로 환경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은 주 5일 동안 규정된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평균 9시간 이상 평균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무 환경으로 인한 제약이 높을 경우 자녀의 양육 시 가장 애로사항으로 언급되는 것이 긴급 상황 시 자녀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반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가를 쓰거나(76.2%) 자녀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61.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거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 등 제도를 통한 돌봄을 선택하는 비율은 4.1%와 7.5%로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양육모의 근무환경과는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나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이 반일제 이상 학원인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나 시간제 보육 등의 제도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4〉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 긴급 상황 시 자녀돌봄 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가를 씀	자녀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	시간제 보육 이용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기타	계(수)
전체	76.2	61.6	4.1	7.5	1.5	100.0(797)

23) 월 평균 10시간 이상 초과하는 평균 근무일수는 3.9일로 나타남.

구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가를 씀	자녀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	시간제 보육 이용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기타	계(수)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77.1	61.8	3.6	7.0	1.1	100.0(532)
반일제 이상 학원	66.7	50.0	16.7	16.7	0.0	100.0(6)
비혈연 개인양육	81.3	50.0	12.5	12.5	0.0	100.0(16)
혈연 개인양육	56.4	76.9	0.0	5.1	2.6	100.0(39)
부모 직접 돌봄	77.2	58.9	5.1	8.1	2.5	100.0(197)
기타	85.7	71.4	14.3	28.6	0.0	100.0(7)
모 취업 상태						
취업	76.9	64.0	3.3	6.8	1.1	100.0(542)
휴직	74.5	56.5	5.9	9.0	2.4	100.0(255)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80.7	64.5	5.0	8.1	1.0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65.7	62.9	1.4	7.9	1.4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73.6	54.2	2.8	4.2	2.8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65.7	44.8	4.5	6.0	4.5	100.0(67)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80.3	65.6	4.4	8.6	1.0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66.4	58.2	3.7	6.0	1.5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73.6	54.2	2.8	4.2	2.8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65.7	44.8	4.5	6.0	4.5	100.0(67)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84.6	60.3	4.5	10.3	1.3	100.0(156)
민간 대기업	76.6	70.3	6.3	9.4	1.6	100.0(64)
민간 중견기업	84.3	60.8	5.9	9.8	0.0	100.0(51)
민간 중소기업	73.8	65.6	4.9	9.3	0.5	100.0(183)
개인사업체	73.4	57.4	3.2	5.0	1.8	100.0(282)
기타	67.2	63.9	1.6	3.3	4.9	100.0(61)

2) 부 홑벌이 가구

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최초의 퇴직 시기를 조사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아 자녀에 대한 직접 돌봄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현재 노동환경이 이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 다수의 여성이 경력단절이 되고 있다. 영아 자녀를 둔 부 홑벌이의 가구의 경우도 양육 부담으로 인해 여성이 퇴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당 가구의 상황별로 퇴직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분석결과 임신했을 때의 퇴직경험이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출산 및 출산 휴가 바로 바로 퇴직했다는 비율이 21.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비율은 막내자녀의 월령이 만 0세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임신했을 때, 81.0%, 출산 및 출산휴가 후 바로 13.9%). 자녀수의 수가 1명일 때는 임신했을 때 퇴직했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출산 및 출산이후 바로가 자녀수가 1명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자녀수 2명 : 25.1%, 자녀수 3명 : 31.3%). 월평균 가구 소득구간별로 보면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임신했을 때와 출산 및 출산휴가 휴가 후 바로 퇴직했다는 비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2-5〉 부홑벌이 가구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모 퇴직 경험 : 최초 퇴직 시기(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임신 했을 때	출산·출산 휴가 후 바로	만1세 이전	만1~2세 때	만3세~취학 전까지	취학 이후	(수)
전체	71.5	21.5	2.5	5.9	4.8	1.3	(478)
자녀 수							
1명	81.1	13.7	1.7	2.9	0.6	0.0	(175)
2명	67.5	25.1	3.1	6.7	6.3	1.6	(255)
3명 이상	58.3	31.3	2.1	12.5	12.5	4.2	(48)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81.0	13.9	1.3	2.5	5.1	0.0	(79)
만1세 (12~24개월 미만)	69.4	23.1	3.8	5.6	3.1	1.3	(160)
만2세 (24~36개월 미만)	72.9	18.6	2.1	8.6	6.4	0.7	(140)
만3세 (36~44개월 미만)	65.7	29.3	2.0	5.1	5.1	3.0	(99)
모 취업 상태							
학업	62.5	31.3	6.3	0.0	6.3	0.0	(16)
미취업	71.9	21.2	2.4	6.1	4.8	1.3	(46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7.8	11.1	0.0	11.1	11.1	0.0	(9)
200만원~350만원 미만	75.4	20.5	2.2	2.7	3.6	1.3	(224)
350만원~500만원 미만	72.8	20.8	2.3	8.1	4.6	0.6	(173)
500만원~650만원 미만	57.6	30.5	3.4	3.4	10.2	3.4	(59)
650만원~800만원 미만	50.0	12.5	12.5	25.0	0.0	0.0	(8)
800만원 이상	40.0	20.0	0.0	60.0	0.0	0.0	(5)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퇴직에 대한 주요 이유 1순위도 직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어렵기 때문이 37.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16.9%로 나타났다. 직장일보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는 비율도 24.1%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궤를 같이 하며, 영아

자녀의 직접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현재의 고용과 양육 정책이 양육자가 직접 돌봄을 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주요 퇴직 이유는 각 가구의 자녀의 수에 따라 다소 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고 있다. 자녀의 수가 1명이나 2명일 때는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어렵거나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퇴직했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가 3명일 때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가치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자녀가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돌봄 가치에 더욱 무게를 둔다는 것을 시사하며 다자녀 가구의 양육형태의 수요는 다소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Ⅴ-2-6〉 부홑벌이 가구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퇴직 경험 : 주된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직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어려워서	소득보다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비용이 커서	일보다 부모직접 육아가 가치가 크므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일이 많아서 육아에 지장을 주어서	육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직장 내 육아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동시에 여러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서	기타	계(수)
전체	37.1	7.6	24.1	16.9	2.4	3.7	2.0	1.2	4.9	100.0(490)
자녀 수										
1명	50.3	6.6	13.8	13.3	4.4	2.8	1.7	0.6	6.6	100.0(181)
2명	31.2	8.1	26.5	21.5	1.5	3.8	1.9	1.5	3.8	100.0(260)
3명 이상	20.4	8.2	49.0	6.1	0.0	6.1	4.1	2.0	4.1	100.0(49)
X^2(df)	54.439(16)***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45.7	6.2	24.7	12.3	1.2	4.9	2.5	1.2	1.2	100.0(81)
만1세 (12~24개월 미만)	37.2	6.7	24.4	13.4	4.3	3.7	1.8	2.4	6.1	100.0(164)
만2세 (24~36개월 미만)	35.7	9.1	23.8	19.6	1.4	3.5	2.8	0.7	3.5	100.0(143)
만3세 (36~44개월 미만)	32.4	7.8	23.5	22.5	2.0	2.9	1.0	0.0	7.8	100.0(102)
X^2(df)	21.517(24)									
모 취업 상태										
학업	37.5	12.5	6.3	18.8	6.3	6.3	0.0	0.0	12.5	100.0(16)
미취업	37.1	7.4	24.7	16.9	2.3	3.6	2.1	1.3	4.6	100.0(474)
X^2(df)	6.519(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1.1	0.0	22.2	44.4	0.0	0.0	11.1	0.0	11.1	100.0(9)
200만원~350만원 미만	42.2	6.1	21.3	15.2	1.7	3.0	2.6	1.7	6.1	100.0(230)
350만원~500만원 미만	35.8	9.1	23.9	17.6	2.3	5.7	1.1	0.6	4.0	100.0(176)
500만원~650만원 미만	29.5	8.2	32.8	19.7	4.9	1.6	0.0	1.6	1.6	100.0(61)
650만원~800만원 미만	12.5	25.0	50.0	0.0	0.0	0.0	12.5	0.0	0.0	100.0(8)
800만원 이상	33.3	0.0	16.7	16.7	16.7	0.0	0.0	0.0	16.7	100.0(6)
X^2(df)	50.338(40)									

*** $p < .001$

나. 응답자의 양육실태와 선호형태

응답자의 양육실태와 선호형태 영역에서는 영아 자녀의 각 연(월)령별로 주 양육에 대한 실태 및 선호 형태의 차이와 현재 주 양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만 0세~만 2세에 이르는 주 양육 선호와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영아 자녀의 연(월령) 기준으로 하여 자녀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응답하도록 하였다(예, 2017년 9월 출생한 만 2세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해당 자녀의 만 1세와 만 0세에 대해서도 과거력을 회상하여 응답). 주 양육에 대한 실태와 선호형태의 차이를 살펴본 이유는 자녀의 연(월)령별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양육 유형의 선택지가 있지만 수요자가 직면하고 있는 제약 상황 상 최종적으로 선택한 양육 형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양육실태와 선호 양육형태의 일치 여부가 양육자가 선택한 주 양육형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영아의 각 연(월)령별로 수요자는 어떤 양육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 선호된 양육형태를 선택한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앞서 맞벌이 가구 혹은 모 홑벌이 가구의 근로환경을 분석한 결과 각 가구별 처한 고용상황이 모의 고용형태, 근무형태, 사업장형태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 주 양육실태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실제 주 양육실태가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연령별 양육실태와 선호형태

가) 만 0세 자녀 양육 가구의 주 양육 실태와 선호 형태

만 0세 자녀에 대한 주양육 실태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을 통해 주로 양육하는 비율이 29.3%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6.6%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어린이집에서 양육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 0세 대한 주 양육에 대한 선호형태 또한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 어린이집, 조부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주 양육 실태와 주 양육의 선호 형태에 대

해서는 해당 비율이 다소간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선호한 비율은 22.2%인데 반해 해당 비율 보다 높은 29.3%가 어린이집을 주 양육 형태로 실제 만 0세 영아를 양육하고 있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는 67.4%가 해당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보다 낮은 비율인 58.7%만이 실제로 부모가 직접 만 0세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경우 2.9%만이 해당 양육형태를 선호했으나 이보다 높은 6.6%가 조부모에게 주 양육을 위탁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실제 만 0세에 대한 주 양육 형태에 해서 어린이집이나 조부모를 선호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수요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만 0세에 대한 주 양육 형태의 선호와 실태 사이에는 간극이 있으며 이러한 수요의 불일치는 향후 만족도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Ⅴ-2-7〉 만 0세 양육 가구 주 양육 실태 및 선호 형태 차이

단위: %(명)

구분	주양육 실태	주양육 선호 형태
어린이집	29.3	22.2
반일제 이상 학원(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0.4	1.3
시간제 사교육기관(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1.5	0.8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0.4	1.4
아이돌봄서비스	1.1	2.3
사설 베이비시터	0.9	1.0
조부모	6.6	2.9
기타친인척	0.4	0.2
부모가 직접 돌봄	58.7	67.4
기타	0.8	0.5
계(수)	100.0(1,400)	100.0(1,400)

만 0세 영아 양육 형태 전반에 대해서는 부모 직접 돌봄, 어린이집, 조부모가 순차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각 유형 별 차이는 각 가구의 고용 현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만 0세 영아에 대한 주 양육실태는 모의 취업상태, 모의 고용형태, 모 근무형태. 모 사업장 형태 등 고용변수에 따라 양육 형태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모가 휴직했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휴직 : 71.0%, 미취업 75.3%), 취업 및 학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통해 양육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취업모 : 44.5%, 학업모 : 41.2%).

특히 취업모의 경우는 조부모에게 양육을 의탁하는 비율도 14.0%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모 고용형태·근무형태에서는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가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미취업자를 제외하고서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비정규직·시간제 임금근로자가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높았다(무급가족종사자 : 67.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57.1%, 시간제 임금근로자 : 53.7%). 이는 앞서 살펴본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시간적 제약 상황이 가장 높았던 결과에 비추어보면, 시간적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유형이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하여 양육하는 비율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모 사업장 형태별로는 미취업자를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체와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근무하는 모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높았다(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 51.9%, 개인사업체 : 52.1%). 반면 민간 중견기업, 민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모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어린이집에 주 양육을 위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민간 중견기업 : 39.2%, 민간 중소기업 : 35.5%).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민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어린이집에 주 양육을 위탁하는 비율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주양육 실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월평균 소득이 낮아질수록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2-8〉 만 0세 자녀 양육가구 주 양육 실태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 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가 직접 돌봄	기타	계(수)
전체	29.3	0.4	1.5	0.4	1.1	0.9	6.6	0.4	58.7	0.8	100.0(1,400)
지역 규모											
대도시	27.5	0.5	1.1	0.5	2.0	1.3	7.1	0.7	58.4	0.9	100.0(560)
중소도시	30.4	0.3	2.4	0.5	0.7	0.8	5.5	0.0	58.3	1.0	100.0(595)
읍면지역	30.6	0.0	0.4	0.0	0.4	0.0	7.8	0.4	60.4	0.0	100.0(245)
X^2(df)	26.348(18)										
자녀 수											
1명	23.6	0.5	2.7	0.3	1.3	0.8	8.3	0.5	61.1	0.8	100.0(601)
2명	31.4	0.3	0.8	0.6	0.8	0.8	5.4	0.2	59.0	0.8	100.0(631)
3명 이상	41.7	0.0	0.0	0.0	1.8	1.2	4.8	0.6	49.4	0.6	100.0(168)
X^2(df)	39.934(18)**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가 직접 돌봄	기타	계(수)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0.6	0.7	0.7	0.7	2.1	1.4	7.1	0.7	74.6	1.4	100.0(283)
만1세 (12~24개월 미만)	27.9	0.5	1.9	0.7	1.2	1.0	6.9	0.5	58.7	0.7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36.9	0.3	1.3	0.3	0.3	0.8	5.5	0.3	54.2	0.3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38.6	0.0	1.9	0.0	1.3	0.3	7.0	0.0	50.0	0.9	100.0(316)
X^2(df)	89.210(27)***										
모 취업 상태											
취업	44.5	0.4	1.3	0.6	1.7	1.3	14.0	0.7	35.2	0.4	100.0(542)
휴직	20.4	0.8	0.8	0.4	2.0	0.8	3.1	0.0	71.0	0.8	100.0(255)
학업	41.2	0.0	0.0	0.0	0.0	0.0	5.9	0.0	52.9	0.0	100.0(17)
미취업	18.8	0.2	2.0	0.3	0.3	0.5	1.2	0.2	75.3	1.2	100.0(586)
X^2(df)	252.953(27)***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38.8	0.8	1.4	0.8	2.3	1.0	13.1	0.8	40.7	0.4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32.1	0.0	1.4	0.0	0.7	1.4	6.4	0.0	57.1	0.7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37.5	0.0	0.0	0.0	1.4	2.8	8.3	0.0	50.0	0.0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29.9	0.0	0.0	0.0	0.0	0.0	1.5	0.0	67.2	1.5	100.0(67)
미취업	19.4	0.2	2.0	0.3	0.3	0.5	1.3	0.2	74.6	1.2	100.0(603)
X^2(df)	189.795(36)***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38.2	0.6	1.3	0.6	2.1	1.1	13.4	0.8	41.8	0.2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34.3	0.7	1.5	0.7	1.5	0.7	5.2	0.0	53.7	1.5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37.5	0.0	0.0	0.0	1.4	2.8	8.3	0.0	50.0	0.0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29.9	0.0	0.0	0.0	0.0	0.0	1.5	0.0	67.2	1.5	100.0(67)
미취업	19.4	0.2	2.0	0.3	0.3	0.5	1.3	0.2	74.6	1.2	100.0(603)
X^2(df)	186.064(36)***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31.4	0.6	0.6	0.0	1.9	1.9	11.5	0.0	51.9	0.0	100.0(156)
민간 대기업	32.8	0.0	3.1	1.6	1.6	0.0	18.8	3.1	39.1	0.0	100.0(64)
민간 중견기업	41.2	2.0	0.0	2.0	2.0	2.0	9.8	0.0	39.2	2.0	100.0(51)
민간 중소기업	42.1	0.5	1.6	0.5	3.8	0.5	13.7	1.1	35.5	0.5	100.0(183)
개인사업체	37.2	0.4	1.1	0.4	0.7	1.1	6.7	0.0	52.1	0.4	100.0(282)
기타	32.8	0.0	0.0	0.0	0.0	1.6	8.2	0.0	55.7	1.6	100.0(61)
미취업	19.4	0.2	2.0	0.3	0.3	0.5	1.3	0.2	74.6	1.2	100.0(603)
X^2(df)	216.576(5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0	0.0	0.0	0.0	8.0	0.0	8.0	0.0	68.0	0.0	100.0(25)
200만원~350만원 미만	26.6	0.0	1.8	0.0	0.7	0.2	2.3	0.2	67.2	0.9	100.0(433)
350만원~500만원 미만	23.3	0.5	1.8	0.7	0.5	0.2	3.0	0.2	68.6	1.2	100.0(433)
500만원~650만원 미만	37.1	0.3	1.1	0.9	1.1	0.9	10.9	0.6	46.8	0.3	100.0(348)
650만원~800만원 미만	43.8	1.1	1.1	0.0	1.1	2.2	14.6	0.0	34.8	1.1	100.0(89)
800만원 이상	30.6	1.4	0.0	0.0	5.6	6.9	22.2	1.4	31.9	0.0	100.0(72)
X^2(df)	207.688(45)***										

$^{**}p < .01$, $^{***}p < .001$

주 양육 선호 형태의 경우도 주 양육 실태와 마찬가지로 모의 고용상황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모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미취업모와 학업모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양육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취업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다. 모 고용형태와 근무형태 별로는 미취업자를 제외하고는 무급가족종사자가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무급가족 종사자 : 73.1%), 자영업주/고용주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자영업주/고용주 :54.2%). 모사업장 형태별로는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근무하는 유형이 부모가 직접 양육형태를 가장 선호하며(73.1%), 민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유형이 가장 낮았다(민간 중견기업 :49.0%, 민간 중소기업 : 55.7%).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는 200만원~350만원 미만 소득 유형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2-9〉 만 0세 자녀 양육가구 주 양육 선호 형태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 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가 직접 돌봄	기타	계(수)
전체	22.2	1.3	0.8	1.4	2.3	1.0	2.9	0.2	67.4	0.5	100.0(1,400)
지역 규모											
대도시	22.0	2.0	0.5	1.6	2.1	1.4	2.3	0.4	67.7	0.0	100.0(560)
중소도시	22.4	1.0	1.2	0.8	2.4	0.7	3.0	0.0	67.6	1.0	100.0(595)
읍면지역	22.4	0.4	0.4	2.4	2.4	0.8	3.7	0.4	66.5	0.4	100.0(245)
X^2(df)	20.479(18)										
자녀 수											
1명	18.6	1.7	1.2	1.8	2.0	1.0	3.0	0.3	69.9	0.5	100.0(601)
2명	23.0	1.1	0.5	1.3	2.4	0.6	2.4	0.2	68.0	0.6	100.0(631)
3명 이상	32.1	0.6	0.6	0.6	3.0	2.4	4.2	0.0	56.5	0.0	100.0(168)
X^2(df)	27.717(18)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2.0	2.1	1.1	2.1	3.5	1.8	4.2	0.4	72.8	0.0	100.0(283)
만1세 (12~24개월 미만)	25.1	1.9	0.5	1.7	3.1	1.2	2.1	0.5	64.0	0.0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23.3	0.3	0.8	1.3	0.8	0.5	2.9	0.0	68.8	1.3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26.3	0.9	0.9	0.6	1.9	0.6	2.5	0.0	65.5	0.6	100.0(316)
X^2(df)	53.906(27)**										
모 취업 상태											
취업	29.7	0.9	0.6	1.8	1.8	1.5	5.5	0.4	57.2	0.6	100.0(542)
휴직	18.4	2.0	1.2	1.2	3.5	1.6	1.2	0.4	69.8	0.8	100.0(255)
학업	29.4	0.0	0.0	0.0	0.0	0.0	0.0	0.0	70.6	0.0	100.0(17)
미취업	16.7	1.4	0.9	1.2	2.2	0.3	1.2	0.0	75.8	0.3	100.0(586)
X^2(df)	75.092(27)***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 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가 직접 돌봄	기타	계(수)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26.6	1.7	0.4	1.7	2.3	1.5	4.6	0.4	60.2	0.4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7.9	0.7	0.7	1.4	0.7	1.4	2.9	0.0	62.9	1.4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27.8	0.0	2.8	1.4	2.8	2.8	6.9	0.0	54.2	1.4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16.4	0.0	1.5	1.5	6.0	0.0	0.0	1.5	73.1	0.0	100.0(67)
미취업	17.1	1.3	0.8	1.2	2.2	0.3	1.2	0.0	75.6	0.3	100.0(603)
X^2(df)	80.019(36)***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25.4	1.5	0.4	1.9	2.1	1.5	4.8	0.4	61.8	0.2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32.8	1.5	0.7	0.7	1.5	1.5	2.2	0.0	56.7	2.2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27.8	0.0	2.8	1.4	2.8	2.8	6.9	0.0	54.2	1.4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16.4	0.0	1.5	1.5	6.0	0.0	0.0	1.5	73.1	0.0	100.0(67)
미취업	17.1	1.3	0.8	1.2	2.2	0.3	1.2	0.0	75.6	0.3	100.0(603)
X^2(df)	89.597(36)***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9.9	1.9	0.0	0.6	1.3	0.6	2.6	0.0	73.1	0.0	100.0(156)
민간 대기업	23.4	1.6	1.6	1.6	3.1	1.6	10.9	0.0	56.3	0.0	100.0(64)
민간 중견기업	33.3	0.0	0.0	5.9	5.9	3.9	2.0	0.0	49.0	0.0	100.0(51)
민간 중소기업	29.0	2.2	0.5	0.5	3.3	1.6	5.5	1.1	55.7	0.5	100.0(183)
개인사업체	28.4	0.7	1.1	2.5	1.1	1.8	3.5	0.4	59.2	1.4	100.0(282)
기타	19.7	0.0	1.6	0.0	4.9	0.0	1.6	0.0	72.1	0.0	100.0(61)
미취업	17.1	1.3	0.8	1.2	2.2	0.3	1.2	0.0	75.6	0.3	100.0(603)
X^2(df)	115.913(5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0	4.0	0.0	4.0	4.0	0.0	0.0	0.0	68.0	0.0	100.0(25)
200만원~350만원 미만	19.4	0.2	0.7	1.6	3.0	0.7	1.6	0.0	72.3	0.5	100.0(433)
350만원~500만원 미만	22.4	1.4	1.4	1.2	2.5	0.5	1.6	0.2	68.1	0.7	100.0(433)
500만원~650만원 미만	23.6	2.6	0.6	1.1	0.9	1.1	3.7	0.3	65.5	0.6	100.0(348)
650만원~800만원 미만	31.5	1.1	0.0	2.2	0.0	2.2	6.7	0.0	56.2	0.0	100.0(89)
800만원 이상	20.8	0.0	0.0	1.4	5.6	4.2	9.7	1.4	56.9	0.0	100.0(72)
X^2(df)	77.082(45)**										

$^{**}p < .01$, $^{***}p < .001$

나) 만 1세 자녀 양육 가구의 주 양육 실태와 선호 형태

만 1세의 경우 만 0세와 비교하여 부모가 직접 돌보는 양육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만 0세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만 1세의 경우는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반일제 학원(놀이학교, 유아예체능단)을 선호하는 비율이

어린이집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0세의 경우 부모, 어린이집, 조부모 순이었던데 반해 만 1세의 경우는 기관을 통한 양육에 대해서도 좀 더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4%라는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선호와는 달리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형태는 부모가 직접 돌보기보다는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집: 48.1%, 부모가 직접 돌봄: 41.7%). 주 양육형태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52.1%인 반면 실제 이를 선택하는 비율은 41.7%이다. 반면,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호하는 비율은 37.8%인데 반해 어린이집을 실제 주 양육형태로 선택하는 비율은 48.1%로 선호하는 비율보다 다소 높음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부모를 통해 주 양육을 위탁하는 선호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한데 비해 그 보다도 높은 5.3%가 조부모가 실제 양육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만 1세의 경우도 만 0세와 마찬가지로 선호와 실제로 선택하는 양육 수요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2-10〉 만 1세 양육 가구 주 양육 실태 및 선호 형태 차이

단위: %(명)

구분	주양육 실태	주양육 선호 형태
어린이집	48.1	37.8
반일제 이상 학원(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0.4	2.1
시간제 사교육기관(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1.5	1.2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0.9	1.3
아이돌봄서비스	0.5	1.9
사설 베이비시터	0.5	0.6
조부모	5.3	2.0
기타친인척	0.4	0.2
부모가 직접 돌봄	41.7	52.1
기타	0.6	0.7
계(수)	100.0(1,117)	100.0(1,400)

만 1세 영아에 대해서는 앞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 양육하는 형태가 48.1%로 가장 높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41.7%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간 차이는 자녀수와 모의 고용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모의 취업상태 별로는 미취업인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63.8%로 가장 높았고 31.5%만이 어린이집에 양육을 위탁하고 있다. 반면, 취업모의 경우 15.6%만이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으며 67.7%가 어린이집에 양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편, 학업모와 휴직모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양육을 위탁하는 비율이 53.3%와 4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업모의 경우 약 절반에 이르는 비율이 부모가 직접 돌보기보다는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에 맞벌이 위주로 우선순위가 이뤄졌던 정책에서 학업을 업으로 하는 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모 고용형태·근무형태에서는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고용주 유형이 어린이집에 양육을 위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정규직 임금근로자 : 64.3%, 전일제 임금근로자 : 64.3%, 자영업주/고용주 : 64.2%).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시간제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어린이집에 양육을 위탁하는 비율이 높았다(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54.9%, 시간제 임금근로자 : 54.2%, 무급가족종사자 : 46%). 특이한 점은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다른 유형에 비해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다(정규직 임금근로자 : 10.8%, 전일제 임금근로자 : 11.8%). 이들 유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환경으로 인해서 시간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나 어린이집을 통해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 대안으로 조부모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모사업장 형태별로도 민간 대기업, 민간 중견기업, 민간 중소기업 순으로 어린이집을 통해 대리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민간 대기업 : 68.9%, 민간 중견기업 : 67.5%, 민간 중소기업 : 66.7%). 반면, 미취업을 제외하고는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과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양육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통해 주 양육을 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 57.0%, 개인사업체 : 59.5%).

〈표 Ⅴ-2-11〉 만 1세 양육 가구 주 양육 실태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 직접 돌봄	기타	계(수)
전체	48.1	0.4	1.5	0.9	0.5	0.5	5.3	0.4	41.7	0.6	100.0(1,117)
지역 규모											
대도시	46.6	0.7	0.4	1.1	0.4	0.4	5.5	0.7	43.7	0.4	100.0(453)
중소도시	49.2	0.4	2.8	0.4	0.4	0.9	4.6	0.0	40.3	0.9	100.0(461)
읍면지역	48.8	0.0	1.0	1.5	1.0	0.0	6.4	0.5	40.4	0.5	100.0(203)
X^2(df)	21.192(18)										
자녀 수											
1명	41.0	0.8	2.7	1.1	0.4	0.2	6.8	0.6	45.2	1.1	100.0(473)
2명	51.5	0.2	0.8	0.4	0.6	1.0	4.5	0.0	40.7	0.4	100.0(513)
3명 이상	60.3	0.0	0.0	2.3	0.8	0.0	3.1	0.8	32.8	0.0	100.0(131)
X^2(df)	43.853(18)***										
막내 자녀 연령											
만1세 (12-24개월 미만)	41.1	0.2	1.4	1.0	0.5	0.7	5.3	0.5	48.9	0.5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52.9	0.3	1.6	1.3	0.5	0.3	3.9	0.5	37.7	1.0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51.6	0.9	1.6	0.3	0.6	0.6	7.0	0.0	37.0	0.3	100.0(316)
X^2(df)	27.002(18)										
모 취업 상태											
취업	67.7	0.9	1.3	1.3	0.4	0.9	11.1	0.6	15.6	0.2	100.0(467)
휴직	40.3	0.7	1.3	1.3	0.7	0.7	2.0	0.0	51.7	1.3	100.0(149)
학업	53.3	0.0	0.0	0.0	0.0	0.0	6.7	0.0	40.0	0.0	100.0(15)
미취업	31.5	0.0	1.9	0.4	0.6	0.2	0.6	0.2	63.8	0.8	100.0(486)
X^2(df)	271.529(27)***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64.3	0.8	1.8	1.5	0.5	1.0	10.8	0.8	18.3	0.5	100.0(40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54.9	0.9	0.9	0.9	0.0	0.9	8.8	0.0	31.9	0.9	100.0(113)
자영업주/고용주	64.2	1.9	0.0	0.0	1.9	0.0	3.8	0.0	28.3	0.0	100.0(53)
무급가족종사자	46.0	0.0	0.0	2.0	0.0	0.0	0.0	0.0	52.0	0.0	100.0(50)
미취업	32.1	0.0	1.8	0.4	0.6	0.2	0.8	0.2	63.1	0.8	100.0(501)
X^2(df)	236.055(36)***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64.3	0.5	1.2	1.2	0.5	1.0	11.8	0.7	18.2	0.5	100.0(406)
임금근로자(시간제)	54.2	1.9	2.8	1.9	0.0	0.9	4.7	0.0	32.7	0.9	100.0(107)
자영업주/고용주	64.2	1.9	0.0	0.0	1.9	0.0	3.8	0.0	28.3	0.0	100.0(53)
무급가족종사자	46.0	0.0	0.0	2.0	0.0	0.0	0.0	0.0	52.0	0.0	100.0(50)
미취업	32.1	0.0	1.8	0.4	0.6	0.2	0.8	0.2	63.1	0.8	100.0(501)
X^2(df)	248.592(36)***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57.0	0.0	1.7	0.8	0.0	0.8	12.4	0.8	26.4	0.0	100.0(121)
민간 대기업	68.9	0.0	2.2	0.0	0.0	2.2	17.8	2.2	6.7	0.0	100.0(45)
민간 중견기업	67.5	0.0	0.0	2.5	0.0	2.5	5.0	0.0	22.5	0.0	100.0(40)
민간 중소기업	66.7	2.1	0.7	2.1	1.4	0.0	11.1	0.7	14.6	0.7	100.0(144)
개인사업체	59.5	0.5	1.8	1.4	0.5	0.5	3.6	0.0	31.4	0.9	100.0(220)
기타	47.8	2.2	0.0	0.0	0.0	2.2	13.0	0.0	34.8	0.0	100.0(46)
미취업	32.1	0.0	1.8	0.4	0.6	0.2	0.8	0.2	63.1	0.8	100.0(501)
X^2(df)	267.152(54)***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 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 직접 돌봄	기타	계(수)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5.0	0.0	0.0	0.0	0.0	0.0	10.0	0.0	35.0	0.0	100.0(20)
200만원-350만원 미만	38.7	0.3	1.2	1.2	0.9	0.6	0.9	0.3	55.7	0.3	100.0(341)
350만원-500만원 미만	44.3	0.3	2.1	0.3	0.0	0.0	2.1	0.0	50.3	0.6	100.0(336)
500만원-650만원 미만	55.3	0.7	1.8	1.4	0.7	0.0	11.3	0.4	27.1	1.4	100.0(284)
650만원-800만원 미만	72.4	0.0	0.0	0.0	0.0	0.0	10.5	0.0	17.1	0.0	100.0(76)
800만원 이상	55.0	1.7	1.7	1.7	1.7	6.7	11.7	3.3	16.7	0.0	100.0(60)
X^2(df)	205.558(45)***										

***p <.001

주 양육 선호형태의 경우 어린이집을 주로 양육형태로 선택하는 실태와는 달리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 1세에 대한 주 양육 선호형태도 실태와 마찬가지로 모의 근로환경에 의해 선호하는 형태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만 1세를 양육하는 취업모와 학업모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미취업모 : 60.1%, 학업모 : 52.9%), 취업모와 휴직모의 경우는 어린이집과 부모가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취업모 어린이집 선호: 42.8%, 취업모 부모 직접 돌봄 선호 44.6%, 휴직모 어린이집 선호: 40.0%, 휴직모 부모 직접 돌봄 선호 49.4%). 모 고용형태 별로는 자영업주/고용주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유형이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미취업모의 경우는 부모 부모가 직접 돌보는 양육형태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54.3%, 미취업모 : 59.9%), 정규직 임금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의 겨우는 두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사업장 형태별로 특이사항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취업모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 60.9%), 민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간대기업 45.3%, 민간 중견기업 : 41.2%, 민간 중소기업 : 50.3%).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종사하는 양육모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미취업모와 비슷한 비율이다(미취업모 : 59.9%).

〈표 Ⅴ-2-12〉 만 1세 양육가구 주 양육 선호형태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가 직접 돌봄	기타	계(수)
전체	37.8	2.1	1.2	1.3	1.9	0.6	2.0	0.2	52.1	0.7	100.0(1,400)
지역 규모											
대도시	37.7	2.0	1.3	0.9	2.7	1.1	1.6	0.4	52.3	0.2	100.0(560)
중소도시	37.1	1.8	0.8	1.7	1.3	0.3	2.2	0.2	53.4	1.0	100.0(595)
읍면지역	39.6	3.3	2.0	1.2	1.6	0.4	2.4	0.0	48.2	1.2	100.0(245)
X^2(df)	17.694(18)										
자녀 수											
1명	33.3	2.8	1.7	1.7	1.2	0.8	2.2	0.3	55.2	0.8	100.0(601)
2명	39.0	1.6	1.1	1.3	2.4	0.6	1.7	0.2	51.3	0.8	100.0(631)
3명 이상	49.4	1.8	0.0	0.0	3.0	0.0	2.4	0.0	43.5	0.0	100.0(168)
X^2(df)	28.832(18)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27.9	2.5	2.1	2.1	3.5	1.1	2.8	0.0	56.9	1.1	100.0(283)
만1세 (12~24개월 미만)	41.3	3.1	0.5	1.2	1.9	0.2	1.7	0.7	48.9	0.5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40.1	1.0	1.3	1.3	1.0	0.5	1.6	0.0	52.4	0.8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39.2	1.9	1.3	0.6	1.6	0.9	2.2	0.0	51.6	0.6	100.0(316)
X^2(df)	39.434(27)										
모 취업 상태											
취업	42.8	2.6	0.9	1.1	2.6	0.6	3.9	0.4	44.6	0.6	100.0(542)
휴직	40.0	3.1	2.0	1.2	2.0	0.8	0.8	0.0	49.4	0.8	100.0(255)
학업	35.3	0.0	0.0	5.9	0.0	0.0	5.9	0.0	52.9	0.0	100.0(17)
미취업	32.3	1.4	1.2	1.4	1.4	0.7	0.7	0.2	60.1	0.9	100.0(586)
X^2(df)	52.698(27)**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42.1	2.5	1.4	1.4	2.9	0.4	3.9	0.4	44.8	0.4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35.7	4.3	0.7	0.7	0.7	0.7	1.4	0.0	54.3	1.4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48.6	2.8	1.4	1.4	2.8	1.4	1.4	0.0	38.9	1.4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46.3	1.5	1.5	0.0	1.5	1.5	0.0	0.0	47.8	0.0	100.0(67)
미취업	32.3	1.3	1.2	1.5	1.3	0.7	0.8	0.2	59.9	0.8	100.0(603)
X^2(df)	59.365(36)**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40.6	2.7	1.0	1.1	3.1	0.4	4.0	0.4	46.6	0.2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41.0	3.7	2.2	1.5	0.0	0.7	0.7	0.0	47.8	2.2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48.6	2.8	1.4	1.4	2.8	1.4	1.4	0.0	38.9	1.4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46.3	1.5	1.5	0.0	1.5	1.5	0.0	0.0	47.8	0.0	100.0(67)
미취업	32.3	1.3	1.2	1.5	1.3	0.7	0.8	0.2	59.9	0.8	100.0(603)
X^2(df)	65.514(36)**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32.1	1.9	1.3	0.6	1.3	0.0	1.9	0.0	60.9	0.0	100.0(156)
민간 대기업	45.3	4.7	1.6	0.0	9.4	0.0	6.3	0.0	32.8	0.0	100.0(64)
민간 중견기업	41.2	3.9	0.0	5.9	3.9	2.0	2.0	2.0	39.2	0.0	100.0(51)
민간 중소기업	50.3	0.5	0.5	0.0	3.3	0.0	5.5	0.5	38.8	0.5	100.0(183)
개인사업체	40.4	4.6	1.8	1.8	0.4	1.4	1.1	0.0	47.2	1.4	100.0(282)
기타	45.9	0.0	1.6	0.0	3.3	0.0	3.3	0.0	45.9	0.0	100.0(61)
미취업	32.3	1.3	1.2	1.5	1.3	0.7	0.8	0.2	59.9	0.8	100.0(603)
X^2(df)	142.159(54)***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 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가 직접 돌봄	기타	계(수)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2.0	4.0	0.0	4.0	4.0	0.0	4.0	4.0	28.0	0.0	100.0(25)
200만원~350만원 미만	35.8	2.3	1.8	1.2	1.4	0.9	0.9	0.0	54.7	0.9	100.0(433)
350만원~500만원 미만	37.6	1.6	1.2	1.6	1.2	0.5	0.9	0.0	54.7	0.7	100.0(433)
500만원~650만원 미만	39.9	2.6	0.6	0.9	3.2	0.6	3.2	0.6	48.0	0.6	100.0(348)
650만원~800만원 미만	43.8	1.1	1.1	1.1	2.2	1.1	3.4	0.0	46.1	0.0	100.0(89)
800만원 이상	27.8	2.8	1.4	1.4	2.8	0.0	6.9	0.0	55.6	1.4	100.0(72)
X^2(df)	65.567(45)*										

*p <.05, **p <.01, ***p <.001

다) 만 2세 자녀 양육 가구의 주 양육 실태와 선호 형태

만 2세의 경우 만 0세와 만 1세보다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어린이집: 62.4%, 부모가 직접 돌봄: 28.8%). 또한 반일제 이상 학원(놀이학교, 유아예체능단)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을 선호하는 비율도 2.5%와 2.1%로 각각 나타나 만 1세이 이어 만 2세의 경우 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 2세의 경우도 이전 연령과 마찬가지로 주 양육실태와 주 양육 선호형태는 다소 간 차이가 난다. 이전 연령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보다는 더 높은 비율로 실제로 어린이집을 통한 대리 양육을 선택하고 있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보다 좀 더 낮은 비율로 실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형태로 자녀를 돌보고 있다. 만 2세에 양육형태가 다른 연령에 비해 흥미로운 지점은 반일제 이상 학원이나 시간제 보육을 선호하는 비율에 비해 실제로 이러한 양육형태를 선택하는 비율이 0.3%로 극소수라는 점이다. 이는 해당 양육형태를 실제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비용, 이용 방법 등의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Ⅴ-2-13〉 만 2세 양육가구 주 양육 실태 및 선호 형태 차이

단위: %(명)

구분	실제 주 양육실태	주양육 선호 형태
어린이집	79.5	62.4
반일제 이상 학원(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0.3	2.5
시간제 사교육기관(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0.3	0.9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0.3	2.1
아이돌봄서비스	0.1	0.4
사설 베이비시터	0.4	0.5
조부모	1.1	1.5
기타친인척	0.0	0.0
부모가 직접 돌봄	17.6	28.8
기타	0.3	0.8
계(수)	100.0(698)	100.0(1,400)

만 2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을 통해 대리 양육을 하는 비율이 79.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은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부모가 직접 돌봄: 17.6%, 조부모 돌봄: 1.1%). 이러한 주 양육 형태의 실태의 차이는 다른 연령과 마찬가지로 모의 근로 환경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리 나타고 있었다. 모의 취업상태 별로는 미취업을 비교하여 취업모·휴직모·학업모의 경우는 어린이집을 통한 대리 양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와 근무형태 별로는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90% 이상이 어린이집을 통해 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직 임금근로자 : 91.6%, 전일제 임금근로자 : 92.2%).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시간제 임금근로자·자영업주/고용주의 순으로 어린이집에 대리양육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들은 약 80% 비율을 보이고 있다(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85.9%, 시간제 임금근로자 : 84.3%, 자영업주/고용주 : 82.9%).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미취업모의 경우 이들보다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무급가족 종사자 : 73.3%, 미취업 : 67.1%). 모 사업형태로는 민간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어린이집을 통한 대리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민간 중견기업 : 95.5%) 다른 형태의 경우도 85% 이상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정부 및 공공기관 : 90.2%, 민간 대기업 :90.0%, 민간 중소기업 : 91.3%, 개인사업체 : 85.1%)

〈표 Ⅴ-2-14〉 만 2세 양육가구 주 양육 실태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사설 베이비시터	조부모	부모 직접 돌봄	기타	계(수)
전체	79.5	0.3	0.3	0.3	0.1	0.4	1.1	17.6	0.3	100.0(698)
지역 규모										
대도시	82.1	0.4	0.0	0.7	0.0	0.7	1.1	15.0	0.0	100.0(280)
중소도시	77.8	0.3	0.7	0.0	0.3	0.3	1.0	18.9	0.7	100.0(297)
읍면지역	77.7	0.0	0.0	0.0	0.0	0.0	1.7	20.7	0.0	100.0(121)
X^2(df)	13.988(16)									
자녀 수										
1명	79.1	0.3	0.7	0.0	0.3	0.3	1.4	17.1	0.7	100.0(292)
2명	79.6	0.3	0.0	0.6	0.0	0.6	1.0	17.8	0.0	100.0(314)
3명 이상	80.4	0.0	0.0	0.0	0.0	0.0	1.1	18.5	0.0	100.0(92)
X^2(df)	10.799(16)									
막내 자녀 연령										
만2세 (24~36개월 미만)	79.6	0.3	0.5	0.3	0.3	0.3	0.8	17.5	0.5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79.4	0.3	0.0	0.3	0.0	0.6	1.6	17.7	0.0	100.0(316)
X^2(df)	5.689(8)									
모 취업 상태										
취업	90.3	0.3	0.0	0.3	0.3	0.9	2.1	5.5	0.3	100.0(329)
휴직	80.5	0.0	0.0	0.0	0.0	0.0	0.0	19.5	0.0	100.0(77)
학업	91.7	0.0	0.0	0.0	0.0	0.0	0.0	8.3	0.0	100.0(12)
미취업	66.1	0.4	0.7	0.4	0.0	0.0	0.4	31.8	0.4	100.0(280)
X^2(df)	85.266(24)***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1.6	0.0	0.0	0.4	0.4	1.1	1.5	4.6	0.4	100.0(263)
임금근로자(비정규직)	85.9	1.3	0.0	0.0	0.0	0.0	1.3	11.5	0.0	100.0(78)
자영업주/고용주	82.9	0.0	0.0	0.0	0.0	0.0	5.7	11.4	0.0	100.0(35)
무급가족종사자	73.3	0.0	0.0	0.0	0.0	0.0	0.0	26.7	0.0	100.0(30)
미취업	67.1	0.3	0.7	0.3	0.0	0.0	0.3	30.8	0.3	100.0(292)
X^2(df)	92.016(32)***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92.2	0.0	0.0	0.4	0.4	1.2	1.9	3.9	0.0	100.0(258)
임금근로자(시간제)	84.3	1.2	0.0	0.0	0.0	0.0	0.0	13.3	1.2	100.0(83)
자영업주/고용주	82.9	0.0	0.0	0.0	0.0	0.0	5.7	11.4	0.0	100.0(35)
무급가족종사자	73.3	0.0	0.0	0.0	0.0	0.0	0.0	26.7	0.0	100.0(30)
미취업	67.1	0.3	0.7	0.3	0.0	0.0	0.3	30.8	0.3	100.0(292)
X^2(df)	98.601(32)***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90.2	0.0	0.0	0.0	0.0	1.2	1.2	7.3	0.0	100.0(82)
민간 대기업	90.0	0.0	0.0	3.3	0.0	3.3	3.3	0.0	0.0	100.0(30)
민간 중견기업	95.5	0.0	0.0	0.0	0.0	0.0	0.0	4.5	0.0	100.0(22)
민간 중소기업	91.3	0.0	0.0	0.0	0.0	1.1	3.3	3.3	1.1	100.0(92)
개인사업체	85.1	0.6	0.0	0.0	0.6	0.0	1.3	12.3	0.0	100.0(154)
기타	84.6	0.0	0.0	0.0	0.0	0.0	0.0	15.4	0.0	100.0(26)
미취업	67.1	0.3	0.7	0.3	0.0	0.0	0.3	30.8	0.3	100.0(292)
X^2(df)	103.537(48)***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 시터	조부모	부모 직접 돌봄	기타	계(수)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6.9	0.0	0.0	0.0	0.0	0.0	0.0	23.1	0.0	100.0(13)
200만원~350만원 미만	71.9	0.5	0.5	0.0	0.0	0.0	0.5	26.5	0.0	100.0(196)
350만원~500만원 미만	79.9	0.0	0.0	0.0	0.5	0.0	0.0	19.1	0.5	100.0(204)
500만원~650만원 미만	84.2	0.5	0.5	0.5	0.0	0.5	2.0	11.2	0.5	100.0(196)
650만원~800만원 미만	90.6	0.0	0.0	1.9	0.0	0.0	0.0	7.5	0.0	100.0(53)
800만원 이상	77.8	0.0	0.0	0.0	0.0	5.6	8.3	8.3	0.0	100.0(36)
X^2(df)	80.288(40)***									

***p <.001

만 2세를 양육하는 모가 선호하는 주 양육 유형은 어린이집을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연령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과는 다른 차별화된 선호를 보인다. 만 2세의 경우도 모의 고용상황에 따라 선호 유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의 취업형태 별로는 학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통한 대리양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82.4%) 그 뒤를 취업모과 휴직모가 잇고 있다(취업모: 66.8%, 휴직모: 62.0%). 모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자영업주/고용주가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67.1%,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63.9% 비율을 보이고 있다. 모 근무형태로는 자영업주/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전일제 임금근로자, 시간제 임금근로자 순으로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영업주/고용주: 69.4%, 무급가족종사자: 67.2%, 전일제 임금근로자: 65.1%, 정규직 임금근로자: 62.7%). 만 2세의 경우 다른 연령에서는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가 다른 근로유형에 비해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선호 패턴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모 사업장 형태별로는 다른 연령과 유사하게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종사자가 미취업자를 제외하고는 30.8% 비율로 다른 사업자 형태 종사자에 비해 부모 직접 돌봄 선호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15〉 만 2세 양육가구 선호 주 양육형태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 시터	조부모	부모 직접 돌봄	기타	계(수)
전체	62.4	2.5	0.9	2.1	0.4	0.5	1.5	28.8	0.8	100.0(1,400)
연령										
20대	60.9	2.3	0.8	2.3	0.0	0.0	0.8	32.8	0.0	100.0(128)
30대	62.6	2.7	1.0	2.4	0.5	0.4	1.2	28.1	1.0	100.0(1,134)
40대	62.3	0.7	0.7	0.0	0.0	1.4	4.3	30.4	0.0	100.0(138)
X^2(df)	22.095(16)									
지역 규모										
대도시	59.8	2.5	1.1	2.3	0.7	1.1	1.8	30.0	0.7	100.0(560)
중소도시	65.4	2.2	0.7	1.5	0.3	0.2	1.5	27.6	0.7	100.0(595)
읍면지역	61.2	3.3	1.2	3.3	0.0	0.0	0.8	29.0	1.2	100.0(245)
X^2(df)	16.539(16)									
자녀 수										
1명	57.6	2.8	0.8	3.2	0.5	0.5	1.3	31.8	1.5	100.0(601)
2명	64.8	2.4	1.1	1.4	0.3	0.3	1.6	27.7	0.3	100.0(631)
3명 이상	70.8	1.8	0.6	1.2	0.6	1.2	1.8	22.0	0.0	100.0(168)
X^2(df)	25.373(16)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52.7	2.1	2.1	3.5	1.1	0.0	2.8	35.0	0.7	100.0(283)
만1세 (12~24개월 미만)	60.1	3.8	0.7	1.7	0.2	0.7	1.7	29.1	1.9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68.3	1.3	0.3	1.3	0.0	0.5	1.0	27.0	0.3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67.1	2.5	0.9	2.5	0.6	0.6	0.6	25.0	0.0	100.0(316)
X^2(df)	52.712(24)***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77.7	2.1	0.9	1.6	0.2	0.1	0.7	16.6	0.1	100.0(820)
반일제 이상 학원	50.0	12.5	0.0	25.0	0.0	0.0	12.5	0.0	0.0	100.0(8)
비혈연 개인양육	21.1	5.3	5.3	5.3	5.3	21.1	5.3	26.3	5.3	100.0(19)
혈연 개인양육	29.5	11.4	2.3	6.8	0.0	0.0	18.2	31.8	0.0	100.0(44)
부모 직접 돌봄	42.4	2.0	0.8	2.0	0.4	0.2	0.6	50.0	1.4	100.0(488)
기타	42.9	4.8	0.0	4.8	4.8	4.8	9.5	19.0	9.5	100.0(21)
X^2(df)	578.490(40)***									
모 취업 상태										
취업	66.8	3.9	0.7	2.6	0.4	0.9	2.8	22.0	0.0	100.0(542)
휴직	62.0	3.1	1.6	2.0	0.0	0.4	1.6	29.0	0.4	100.0(255)
학업	82.4	0.0	5.9	0.0	0.0	0.0	0.0	11.8	0.0	100.0(17)
미취업	58.0	1.0	0.7	1.9	0.7	0.2	0.3	35.5	1.7	100.0(586)
X^2(df)	69.544(24)***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63.9	3.7	1.0	3.3	0.4	1.2	3.1	23.6	0.0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67.1	4.3	0.7	0.7	0.0	0.0	0.7	26.4	0.0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69.4	1.4	0.0	1.4	0.0	0.0	2.8	25.0	0.0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67.2	4.5	3.0	0.0	0.0	0.0	0.0	23.9	1.5	100.0(67)
미취업	58.7	1.0	0.8	1.8	0.7	0.2	0.3	34.8	1.7	100.0(603)
X^2(df)	76.106(32)***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 시터	조부모	부모 직접 돌봄	기타	계(수)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65.1	3.4	1.0	3.1	0.4	1.1	3.1	22.9	0.0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62.7	5.2	0.7	1.5	0.0	0.0	0.7	29.1	0.0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69.4	1.4	0.0	1.4	0.0	0.0	2.8	25.0	0.0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67.2	4.5	3.0	0.0	0.0	0.0	0.0	23.9	1.5	100.0(67)
미취업	58.7	1.0	0.8	1.8	0.7	0.2	0.3	34.8	1.7	100.0(603)
X^2(df)	75.587(32)***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61.5	5.1	0.0	0.6	0.0	0.6	1.3	30.8	0.0	100.0(156)
민간 대기업	62.5	1.6	1.6	4.7	1.6	1.6	6.3	20.3	0.0	100.0(64)
민간 중견기업	64.7	5.9	0.0	3.9	0.0	0.0	5.9	19.6	0.0	100.0(51)
민간 중소기업	65.6	2.2	2.2	1.6	0.5	2.2	3.3	22.4	0.0	100.0(183)
개인사업체	66.0	4.3	0.7	2.8	0.0	0.0	1.4	24.8	0.0	100.0(282)
기타	73.8	1.6	1.6	3.3	0.0	0.0	0.0	18.0	1.6	100.0(61)
미취업	58.7	1.0	0.8	1.8	0.7	0.2	0.3	34.8	1.7	100.0(603)
X^2(df)	107.792(4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4.0	4.0	0.0	4.0	0.0	0.0	4.0	24.0	0.0	100.0(25)
200만원~350만원 미만	57.7	2.1	1.6	1.8	0.5	0.2	0.9	33.3	1.8	100.0(433)
350만원~500만원 미만	62.4	2.5	0.5	2.5	0.5	0.2	0.7	30.3	0.5	100.0(433)
500만원~650만원 미만	66.7	3.2	0.6	2.3	0.3	0.6	2.0	24.1	0.3	100.0(348)
650만원~800만원 미만	71.9	2.2	1.1	1.1	1.1	0.0	2.2	20.2	0.0	100.0(89)
800만원 이상	58.3	1.4	1.4	1.4	0.0	4.2	5.6	27.8	0.0	100.0(72)
X^2(df)	64.546(40)**									

$^{**}p < .01$, $^{***}p < .001$

2) 부모 직접 돌봄 주 양육형태

부모가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이유 1순위 선택 설문에서는 영아시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1.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한다는 비율이 10.8%로 나타났다.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5.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 등에서 살펴본 영아의 경우 영아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전일적 돌봄을 필요로 하고 그 때문에 부모의 직접 돌봄을 선호한다는 논의와 비슷하다.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전일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인력을 찾지 못해서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이유가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나는 것은 영아를 돌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 혹은 부모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주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휴가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앞서 영아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봄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난 것과 연결한다면 시간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호 이유는 앞선 주 양육 실태와 선호형태의 차이를 살펴본 것과 같이 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모 고용형태와 모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휴가 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가 높게 나타난 반면(정규직 임금근로자 : 43.5%, 전일제 임금근로자 : 42.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10.3%, 시간제 임금근로자 : 11.1%). 자영업주/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휴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룹임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휴가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표 Ⅴ-2-16〉 부모 직접 돌봄 주 양육 형태 선호 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	근무시간 조정 가능	휴가제도[1] 사용 가능	비용 부담 때문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 없음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 가능한 수준이 달라서	아이를 맡길 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의 대기가 길어서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 않음	영아는 부모 직접 양육이 더 적절	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	기타	계(수)
전체	0.9	10.8	3.3	1.7	0.4	5.8	2.2	0.6	71.8	1.9	0.7	100.0(539)
자녀 수												
1명	0.8	12.4	4.6	1.2	0.4	6.2	2.5	0.4	68.9	1.7	0.8	100.0(241)
2명	0.8	9.9	1.2	1.6	0.0	6.2	2.1	0.4	74.5	2.5	0.8	100.0(243)
3명 이상	1.8	7.3	7.3	3.6	1.8	1.8	1.8	1.8	72.7	0.0	0.0	100.0(55)
X^2(df)	20.470(20)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0.9	20.4	2.8	1.4	0.0	5.2	0.5	0.5	65.9	1.9	0.5	100.0(211)
만1세 (12~24개월 미만)	0.5	6.8	4.4	2.0	0.5	4.4	3.4	0.5	75.1	2.0	0.5	100.0(205)
만2세 (24~36개월 미만)	1.5	0.0	3.0	1.5	0.0	10.4	4.5	1.5	74.6	1.5	1.5	100.0(67)
만3세 (36~44개월 미만)	1.8	1.8	1.8	1.8	1.8	7.1	1.8	0.0	78.6	1.8	1.8	100.0(56)
X^2(df)	53.444(30)**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4.0	10.0	0.0	2.0	0.0	8.0	0.0	0.0	74.0	2.0	0.0	100.0(50)
반일제 이상 학원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1)
부모 직접 돌봄	0.6	10.9	3.7	1.6	0.4	5.5	2.5	0.6	71.5	1.8	0.8	100.0(488)
X^2(df)	10.591(20)											

구분	근무 시간 조정 가능	휴가 제도[1] 사용 가능	비용 부담 때문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 없음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 가능한 수준이 달라서	아이를 맡길 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의 대기가 길어서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 않음	영아는 부모 직접 양육이 더 적절	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	기타	계(수)
모 취업 상태												
취업	4.5	19.7	3.0	4.5	0.0	1.5	0.0	0.0	66.7	0.0	0.0	100.0(66)
휴직	1.3	28.5	2.6	0.7	0.7	4.0	1.3	0.0	55.6	4.6	0.7	100.0(151)
학업	0.0	0.0	0.0	0.0	0.0	20.0	20.0	0.0	60.0	0.0	0.0	100.0(5)
미취업	0.0	0.6	3.8	1.6	0.3	7.3	2.8	0.9	80.8	0.9	0.9	100.0(317)
X^2(df)	134.547(30)***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1.7	43.5	1.7	2.6	0.0	0.9	0.0	0.0	46.1	2.6	0.9	100.0(11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7.7	10.3	5.1	0.0	0.0	7.7	2.6	0.0	66.7	0.0	0.0	100.0(39)
자영업주/고용주	0.0	3.8	0.0	3.8	0.0	3.8	3.8	0.0	80.8	3.8	0.0	100.0(26)
무급가족종사자	0.0	2.7	5.4	0.0	2.7	5.4	0.0	0.0	75.7	8.1	0.0	100.0(37)
미취업	0.0	0.6	3.7	1.6	0.3	7.5	3.1	0.9	80.4	0.9	0.9	100.0(322)
X^2(df)	223.646(40)***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1.7	42.4	2.5	2.5	0.0	0.8	0.0	0.0	47.5	1.7	0.8	100.0(118)
임금근로자(시간제)	8.3	11.1	2.8	0.0	0.0	8.3	2.8	0.0	63.9	2.8	0.0	100.0(36)
자영업주/고용주	0.0	3.8	0.0	3.8	0.0	3.8	3.8	0.0	80.8	3.8	0.0	100.0(26)
무급가족종사자	0.0	2.7	5.4	0.0	2.7	5.4	0.0	0.0	75.7	8.1	0.0	100.0(37)
미취업	0.0	0.6	3.7	1.6	0.3	7.5	3.1	0.9	80.4	0.9	0.9	100.0(322)
X^2(df)	218.511(40)***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2.3	47.7	2.3	0.0	0.0	0.0	0.0	0.0	43.2	2.3	2.3	100.0(44)
민간 대기업	0.0	30.0	10.0	10.0	0.0	20.0	0.0	0.0	20.0	10.0	0.0	100.0(10)
민간 중견기업	0.0	46.7	0.0	6.7	0.0	6.7	0.0	0.0	33.3	6.7	0.0	100.0(15)
민간 중소기업	3.1	40.6	3.1	3.1	0.0	3.1	0.0	0.0	46.9	0.0	0.0	100.0(32)
개인사업체	3.3	12.1	3.3	0.0	0.0	2.2	2.2	0.0	73.6	3.3	0.0	100.0(91)
기타	0.0	4.0	0.0	4.0	4.0	4.0	0.0	0.0	80.0	4.0	0.0	100.0(25)
미취업	0.0	0.6	3.7	1.6	0.3	7.5	3.1	0.9	80.4	0.9	0.9	100.0(322)
X^2(df)	216.177(6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1	9.1	18.2	9.1	0.0	18.2	0.0	0.0	36.4	0.0	0.0	100.0(11)
200만원~350만원 미만	0.9	4.6	4.6	0.9	0.5	6.0	2.3	0.5	76.0	2.8	0.9	100.0(217)
350만원~500만원 미만	0.5	12.1	2.0	1.5	0.5	6.1	3.0	0.0	72.7	1.0	0.5	100.0(198)
500만원~650만원 미만	0.0	21.1	2.2	2.2	0.0	4.4	1.1	1.1	64.4	2.2	1.1	100.0(90)
650만원~800만원 미만	9.1	18.2	0.0	0.0	0.0	0.0	0.0	9.1	63.6	0.0	0.0	100.0(11)
800만원 이상	0.0	16.7	0.0	8.3	0.0	0.0	0.0	0.0	75.0	0.0	0.0	100.0(12)
X^2(df)	82.984(50)**											

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p < .01$, $^{***}p < .001$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택한 양육자의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57.9%, 보통 27.6%로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비율은 14.5%로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 취업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2-17〉 부모 직접돌봄 주 양육형태 선택유형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57.9	27.6	14.5	100.0(539)	2.4
지역 규모					
대도시	55.3	29.1	15.5	100.0(206)	2.4
중소도시	59.0	25.9	15.1	100.0(239)	2.4
읍면지역	60.6	28.7	10.6	100.0(94)	2.4
X^2(df)/F	2.031(4)				0.1
모 취업 상태					
취업	59.1	25.8	15.2	100.0(66)	2.4
휴직	55.6	30.5	13.9	100.0(151)	2.4
학업	100.0	0.0	0.0	100.0(5)	1.6
미취업	58.0	27.1	14.8	100.0(317)	2.4
X^2(df)/F	4.420(6)				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1.8	18.2	0.0	100.0(11)	1.9
200만원~350만원 미만	62.2	23.5	14.3	100.0(217)	2.3
350만원~500만원 미만	56.6	27.8	15.7	100.0(198)	2.5
500만원~650만원 미만	46.7	35.6	17.8	100.0(90)	2.5
650만원~800만원 미만	63.6	36.4	0.0	100.0(11)	2.3
800만원 이상	58.3	41.7	0.0	100.0(12)	2.3
X^2(df)/F	14.566(10)				1.4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다면 응답자들이 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적정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응답자들은 가정양육수당의 적정금액으로 3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비율이 77.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20만 원~25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비율이 17.6%로 높았다.

한편, 전반적으로는 30만 원 이상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적정 금액에 대한 생각 차이는 막내 자녀의 월령과 어떤 기관을 통해 주 양육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막내 자녀의 연(월령)이 어릴수록 3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의 연(월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낮아졌다(만 0세 30만 원 이상

: 85.3%, 만 1세 30만 원 이상 : 80.0%, 만 2세 30만 원 이상 : 65.7%, 만 3세 30만 원 이상 : 50.0%). 막내 자녀 기관 이용 유형별로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그룹일수록 3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어린이집에 보낼수록 그 비율이 낮았다(부모 직접 돌봄 30만 원 이상 : 79.3%, 어린이집 이용 30만 원 이상 : 58.0%).

이러한 차이는 모 근로상황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주/고용주·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것에 반해(무급가족종사자: 83.8%, 자영업주/고용주: 84.6%,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82.1%),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는 각각 79.1%와 74.5%로 다소 낮았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체 등은 30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 68.2%만이 3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25.0%는 20~25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사업장 형태와 대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V-2-18〉 부모 직접돌봄 주 양육형태 선택유형 가정양육수당 적정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25 만원 미만	25~30 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9	1.7	17.6	1.7	77.2	100.0(539)	35.0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9	0.5	11.4	0.9	85.3	100.0(211)	37.7
만1세 (12~24개월 미만)	0.0	2.4	16.1	1.5	80.0	100.0(205)	35.2
만2세 (24~36개월 미만)	6.0	1.5	23.9	3.0	65.7	100.0(67)	31.0
만3세 (36~44개월 미만)	3.6	3.6	39.3	3.6	50.0	100.0(56)	29.1
X^2(df)/F	47.056(12)***						5.3**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8.0	10.0	24.0	0.0	58.0	100.0(50)	28.7
반일제 이상 학원	0.0	0.0	100.0	0.0	0.0	100.0(1)	20.0
부모 직접 돌봄	1.2	0.8	16.8	1.8	79.3	100.0(488)	35.7
X^2(df)/F	43.703(8)***						4.3*
모 취업 상태							
취업	7.6	1.5	13.6	1.5	75.8	100.0(66)	38.0
휴직	0.0	2.6	12.6	1.3	83.4	100.0(151)	36.8
학업	0.0	0.0	0.0	0.0	100.0	100.0(5)	48.0
미취업	1.6	1.3	21.1	1.9	74.1	100.0(317)	33.3
X^2(df)/F	23.614(12)*						3.3*(a)

구분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25 만원 미만	25~30 민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1.7	1.7	16.5	0.9	79.1	100.0(115)	37.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7.7	2.6	7.7	0.0	82.1	100.0(39)	37.1
자영업주/고용주	0.0	0.0	11.5	3.8	84.6	100.0(26)	32.9
무급가족종사자	0.0	5.4	8.1	2.7	83.8	100.0(37)	38.2
미취업	1.6	1.2	20.8	1.9	74.5	100.0(322)	33.6
X^2(df)/F	22.130(16)						2.0(a)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4.5	2.3	25.0	0.0	68.2	100.0(44)	36.3
민간 대기업	0.0	0.0	0.0	0.0	100.0	100.0(10)	51.0
민간 중견기업	0.0	0.0	6.7	6.7	86.7	100.0(15)	44.3
민간 중소기업	3.1	0.0	12.5	0.0	84.4	100.0(32)	35.0
개인사업체	2.2	2.2	9.9	2.2	83.5	100.0(91)	36.1
기타	0.0	8.0	12.0	0.0	80.0	100.0(25)	35.6
미취업	1.6	1.2	20.8	1.9	74.5	100.0(322)	33.6
X^2(df)/F	27.335(24)						2.8*(a)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1	0.0	0.0	9.1	81.8	100.0(11)	39.5
200만원~350만원 미만	0.5	2.8	16.1	2.3	78.3	100.0(217)	34.7
350만원~500만원 미만	2.5	1.5	20.2	0.5	75.3	100.0(198)	34.2
500만원~650만원 미만	2.2	0.0	18.9	1.1	77.8	100.0(90)	35.1
650만원~800만원 미만	9.1	0.0	27.3	0.0	63.6	100.0(11)	32.4
800만원 이상	0.0	0.0	0.0	8.3	91.7	100.0(12)	52.1
X^2(df)/F	28.703(20)						2.8*(a)

$^{*}p < .05$, $^{**}p < .01$, $^{***}p < .001$

영아 자녀를 돌볼 때 부모가 직접 돌보는 주 양육형태를 선택한 사람들이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61.9%였다. 이를 통해 부모가 직접 영아 자녀를 돌보는 가구들이 중 다수가 자녀의 전일적 돌봄을 위해 보조 양육 형태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아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보조 양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양육 시간 외에 부모의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육아의 체력적 부담이 커서라는 응답이 28.4%로 나타나, 양육자가 자녀에 밀착하여 전일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막내 자녀의 연(월)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막내 자녀의 월령이 만 3세 이상일 경우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하는 이유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때문이라는 비율이 31.4%로 나타났다. 만 2세의 경우도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교육적 경험의 이유가 다른 연령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20.0%, 자녀에게 교육적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26.7%). 이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영아 자

녀를 둔 부모들이 개인적 시간 확보와 더불어 자녀의 교육적 발달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

〈표 Ⅴ-2-19〉 부모 직접돌봄 주 양육형태 선택유형 보조양육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양육 시간 외에 부모 개인시간의 확보를 위해서	육아의 체력부담이 커서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자녀에게 교육적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기타	계(수)
전체	38.0	28.4	17.4	14.7	1.5	100.0(334)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42.1	33.1	11.3	12.8	0.8	100.0(133)
만1세 (12~24개월 미만)	33.9	31.4	19.0	14.0	1.7	100.0(121)
만2세 (24~36개월 미만)	28.9	20.0	20.0	26.7	4.4	100.0(45)
만3세 (36~44개월 미만)	48.6	11.4	31.4	8.6	0.0	100.0(35)
X^2(df)	25.707(12)*					
모 취업 상태						
취업	41.7	20.8	18.8	14.6	4.2	100.0(48)
휴직	37.4	31.8	14.0	15.9	0.9	100.0(107)
학업	0.0	66.7	0.0	33.3	0.0	100.0(3)
미취업	38.1	27.8	19.3	13.6	1.1	100.0(176)
X^2(df)	9.587(12)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44.6	24.1	16.9	14.5	0.0	100.0(83)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3	33.3	16.7	20.0	6.7	100.0(30)
자영업주/고용주	52.9	29.4	5.9	5.9	5.9	100.0(17)
무급가족종사자	28.0	36.0	16.0	20.0	0.0	100.0(25)
미취업	37.4	28.5	19.0	14.0	1.1	100.0(179)
X^2(df)	18.587(16)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40.9	26.1	15.9	17.0	0.0	100.0(88)
임금근로자(시간제)	32.0	28.0	20.0	12.0	8.0	100.0(25)
자영업주/고용주	52.9	29.4	5.9	5.9	5.9	100.0(17)
무급가족종사자	28.0	36.0	16.0	20.0	0.0	100.0(25)
미취업	37.4	28.5	19.0	14.0	1.1	100.0(179)
X^2(df)	17.585(16)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41.2	23.5	11.8	17.6	5.9	100.0(34)
민간 대기업	50.0	37.5	12.5	0.0	0.0	100.0(8)
민간 중견기업	44.4	33.3	11.1	11.1	0.0	100.0(9)
민간 중소기업	34.6	19.2	30.8	15.4	0.0	100.0(26)
개인사업체	44.1	25.4	13.6	16.9	0.0	100.0(59)
기타	15.8	52.6	10.5	15.8	5.3	100.0(19)
미취업	37.4	28.5	19.0	14.0	1.1	100.0(179)
X^2(df)	23.602(24)					

구분	양육 시간 외에 부모 개인시간의 확보를 위해서	육아의 체력부담이 커서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자녀에게 교육적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기타	계(수)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5.0	25.0	0.0	0.0	0.0	100.0(4)
200만원~350만원 미만	40.6	25.0	18.0	16.4	0.0	100.0(128)
350만원~500만원 미만	29.8	32.2	22.3	14.0	1.7	100.0(121)
500만원~650만원 미만	44.6	29.2	7.7	15.4	3.1	100.0(65)
650만원~800만원 미만	50.0	25.0	12.5	0.0	12.5	100.0(8)
800만원 이상	37.5	25.0	25.0	12.5	0.0	100.0(8)
X^2(df)	24.210(20)					

$^{*}p$ <.05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양육형태로 선택한 그룹의 양육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46.2%로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0%로 나타났다. 영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다른 양육형태에 비해 강하게 선호하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자녀를 제 손으로 돌 볼 경우 이에 대한 만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 양육 방식이 일치한 그룹일수록 불일치한 그룹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주 양육 실태와 선호가 일치한 그룹 만족도: 52.2%, 주 양육실태와 선호가 불일치한 그룹 만족도: 22.7%).

〈표 Ⅴ-2-20〉 부모 직접돌봄 주 양육형태 선택유형 주 양육형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14.8	39.0	46.2	100.0(539)	3.4
지역 규모					
대도시	20.9	30.6	48.5	100.0(206)	3.4
중소도시	10.9	43.5	45.6	100.0(239)	3.4
읍면지역	11.7	45.7	42.6	100.0(94)	3.4
X^2(df)/F	14.831(4)**				0.3(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4.7	40.8	44.5	100.0(211)	3.4
만1세 (12~24개월 미만)	16.1	42.0	42.0	100.0(205)	3.3
만2세 (24~36개월 미만)	14.9	32.8	52.2	100.0(67)	3.5
만3세 (36~44개월 미만)	10.7	28.6	60.7	100.0(56)	3.6
X^2(df)/F	7.714(6)				2.3
모 취업 상태					
취업	6.1	40.9	53.0	100.0(66)	3.6
휴직	19.9	37.1	43.0	100.0(151)	3.3
학업	20.0	40.0	40.0	100.0(5)	3.6
미취업	14.2	39.4	46.4	100.0(317)	3.4
X^2(df)/F	7.433(6)				1.8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1	63.6	27.3	100.0(11)	3.2
200만원~350만원 미만	14.7	38.2	47.0	100.0(217)	3.4
350만원~500만원 미만	15.2	40.9	43.9	100.0(198)	3.4
500만원~650만원 미만	12.2	32.2	55.6	100.0(90)	3.5
650만원~800만원 미만	27.3	54.5	18.2	100.0(11)	3.1
800만원 이상	25.0	33.3	41.7	100.0(12)	3.3
X^2(df)/F	11.158(10)				0.8
양육형태 일치여부					
주양육방식 일치	11.7	36.1	52.2	100.0(429)	3.5
불일치	27.3	50.0	22.7	100.0(110)	2.9
X^2(df)/t	35.189(2)***				6.0***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1$, $^{***}p < .001$

3) 어린이집 주 양육형태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응답자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한 1순위 이유는 직장에 복귀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가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육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7.0%로 뒤를 이었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하는 양육자들이 주로 선택할 수 있는 양육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육아의 부담 완화나 아이의 발달 상황을 고려한 교육적인 이유로 선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 이유는 양육모의 근로 상황에 따라 다소 간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모·휴직모·학업모의 경우 직장 복귀나 취업을 위한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취업모 직장 복귀 혹은 취업 이유: 45.0%, 휴직모 직장 복귀 혹은 취업 이유: 25.8%, 학업모 직장 복귀 혹은 취업 이유: 33.3%), 미취업모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 완화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하였다(미취업모 육아부담 완화: 32.7%). 모 고용형태 별로도 정규직·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서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17.8%, 17.4%로 직장복귀 혹은 취업 이유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근로 상황이 이들에게는 양육형태 선택에 상대적으로 강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모사업장 형태에서 주목할 만한 그룹은 민간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직장복귀 혹은 취업이유,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 다음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서가 다른 사업장 형태 그룹

보다 높게 나타났다(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휴가제도 미사용 이유: 9.6%, 민간 대기업 휴가제도 미사용 이유: 7.3%, 민간 중견기업 휴가제도 미사용 이유: 3.1%, 민간 중소기업 휴가제도 미사용 이유: 10.4%). 따라서 이들 그룹에 대한 휴가 제도 사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Ⅴ-2-21〉 어린이집을 주 양육 형태 선택 유형 어린이집 선호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	근무 시간이 길어서	휴가 제도[1] 사용 못해서	직장 복귀 혹은 취업 위해	비용 부담 때문	집근처 원하는 다른 서비스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 가능한 수준이 달라서	아이를 맡길만 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다른 서비스의 대기가 길어서	다른 서비스 이용 자격 해당 않음	육아 부담 완화하기 위해	아이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	기타	계(수)
전체	9.9	6.7	31.0	5.7	4.2	0.5	7.0	0.1	0.5	17.0	16.6	0.5	100.0(757)
모 취업 상태													
취업	15.5	10.1	45.0	3.4	2.2	0.7	5.2	0.2	0.2	6.4	10.8	0.2	100.0(407)
휴직	9.7	3.2	25.8	8.6	5.4	0.0	3.2	0.0	2.2	22.6	18.3	1.1	100.0(93)
학업	8.3	0.0	33.3	0.0	0.0	0.0	8.3	0.0	0.0	16.7	33.3	0.0	100.0(12)
미취업	0.8	2.9	9.8	8.6	7.3	0.4	11.4	0.0	0.4	32.7	24.9	0.8	100.0(245)
X^2(df)	233.309(33)***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17.8	9.2	45.0	3.6	1.8	0.6	4.1	0.3	0.9	5.9	10.7	0.3	100.0(33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0.0	6.7	40.0	5.6	1.1	0.0	5.6	0.0	0.0	15.6	15.6	0.0	100.0(90)
자영업주/고용주	7.1	11.9	23.8	7.1	4.8	2.4	9.5	0.0	0.0	21.4	11.9	0.0	100.0(42)
무급가족종사자	0.0	6.7	30.0	6.7	16.7	0.0	3.3	0.0	0.0	13.3	20.0	3.3	100.0(30)
미취업	1.2	2.7	10.9	8.2	7.0	0.4	11.3	0.0	0.4	31.9	25.3	0.8	100.0(257)
X^2(df)	243.545(44)***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17.4	9.4	47.6	2.9	1.2	0.3	3.8	0.3	0.9	6.2	10.0	0.0	100.0(340)
임금근로자(시간제)	11.4	5.7	29.5	8.0	3.4	1.1	6.8	0.0	0.0	14.8	18.2	1.1	100.0(88)
자영업주/고용주	7.1	11.9	23.8	7.1	4.8	2.4	9.5	0.0	0.0	21.4	11.9	0.0	100.0(42)
무급가족종사자	0.0	6.7	30.0	6.7	16.7	0.0	3.3	0.0	0.0	13.3	20.0	3.3	100.0(30)
미취업	1.2	2.7	10.9	8.2	7.0	0.4	11.3	0.0	0.4	31.9	25.3	0.8	100.0(257)
X^2(df)	256.350(44)***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7.0	9.6	55.3	2.1	0.0	0.0	2.1	0.0	0.0	8.5	5.3	0.0	100.0(94)
민간 대기업	17.1	7.3	51.2	4.9	0.0	0.0	7.3	0.0	0.0	9.8	2.4	0.0	100.0(41)
민간 중견기업	15.6	3.1	46.9	6.3	9.4	0.0	3.1	3.1	3.1	0.0	9.4	0.0	100.0(32)
민간 중소기업	16.8	10.4	40.8	5.6	0.8	0.8	4.0	0.0	0.8	4.0	16.0	0.0	100.0(125)

구분	근무 시간이 길어서	휴가 제도[1] 사용 못해서	직장 복귀 혹은 취업 위해	비용 부담 때문	집근처 원하는 다른 서비스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 가능한 수준이 달라서	아이를 맡길만 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다른 서비스의 대기가 길어서	다른 서비스 이용 자격 해당 않음	육아 부담 완화 하기 위해	아이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	기타	계(수)
개인사업체	12.5	9.1	31.8	4.5	4.0	0.6	6.8	0.0	0.6	14.8	14.8	0.6	100.0(176)
기타	3.1	6.3	37.5	3.1	9.4	3.1	3.1	0.0	0.0	12.5	18.8	3.1	100.0(32)
미취업	1.2	2.7	10.9	8.2	7.0	0.4	11.3	0.0	0.4	31.9	25.3	0.8	100.0(257)
X^2(df)	270.387(66)***												

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 $p < .001$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응답자가 어린이집 이외의 보조 양육형태를 병행하는 비율은 92.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유형의 대다수가 보조 양육형태를 통해 양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응답자가 어린이집 이외의 보조 양육형태를 병행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근로 시간이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다 길어서가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시간 외에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25.9%로 그 뒤를 이었고 아이가 장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힘들어해서라는 이유가 11.5%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모 근로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규직·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어린이집 이용시간보다 길고(정규직 임금근로자: 42.4%, 전일제 임금근로자: 41.8%)), 아이가 장시간 기관 이용을 힘들어한다는 이유를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정규직 임금근로자: 15.0%, 전일제 임금근로자 : 15.1%). 이러한 패턴은 모사업장 형태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영업주/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근로자는 부모의 양육 외 개인 시간 확보가 그 다음 순위였다(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8.6%, 시간제 임금근로자: 32.5%, 자영업주/고용주: 32.5%, 무급가족 종사자:29.6%).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취업모의 경우 근로시간이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다 길기 때문에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여러 번 지적된 것과 같이, 노동과 보육정책의 부조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Ⅴ-2-22〉 어린이집 주 양육 형태 선택_보조양육형태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양육시간 외 개인시간 확보	원하는 서비스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수준 달라서	육아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이 어린이집 이용시간보다 길어서	장시간 기관이용을 아이가 힘들어함	기타	계(수)
전체	25.9	8.8	19.5	27.2	11.5	7.0	100.0(702)
모 취업 상태							
취업	17.6	6.0	11.8	43.3	12.9	8.4	100.0(381)
휴직	31.0	9.5	27.4	10.7	19.0	2.4	100.0(84)
학업	18.2	9.1	9.1	18.2	27.3	18.2	100.0(11)
미취업	38.5	13.3	30.1	6.6	5.8	5.8	100.0(226)
X^2(df)	161.227(15)***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15.3	7.0	13.4	42.4	15.0	7.0	100.0(31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8.6	4.8	9.5	35.7	13.1	8.3	100.0(84)
자영업주/고용주	32.5	7.5	25.0	25.0	5.0	5.0	100.0(40)
무급가족종사자	29.6	7.4	29.6	3.7	18.5	11.1	100.0(27)
미취업	37.6	13.1	29.1	7.2	6.8	6.3	100.0(237)
X^2(df)	139.625(20)***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14.5	7.2	13.8	41.8	15.1	7.5	100.0(318)
임금근로자(시간제)	32.5	3.8	7.5	37.5	12.5	6.3	100.0(80)
자영업주/고용주	32.5	7.5	25.0	25.0	5.0	5.0	100.0(40)
무급가족종사자	29.6	7.4	29.6	3.7	18.5	11.1	100.0(27)
미취업	37.6	13.1	29.1	7.2	6.8	6.3	100.0(237)
X^2(df)	143.966(20)***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1.4	10.2	13.6	34.1	19.3	11.4	100.0(88)
민간 대기업	25.0	0.0	12.5	52.5	5.0	5.0	100.0(40)
민간 중견기업	20.0	10.0	6.7	40.0	16.7	6.7	100.0(30)
민간 중소기업	18.4	4.4	15.8	41.2	12.3	7.9	100.0(114)
개인사업체	24.4	6.7	14.6	32.3	15.2	6.7	100.0(164)
기타	20.7	10.3	24.1	37.9	6.9	0.0	100.0(29)
미취업	37.6	13.1	29.1	7.2	6.8	6.3	100.0(237)
X^2(df)	132.164(3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8.2	0.0	18.2	45.5	9.1	9.1	100.0(11)
200만원~350만원 미만	35.0	9.3	26.2	12.6	12.0	4.9	100.0(183)
350만원~500만원 미만	28.4	11.6	20.0	24.7	9.5	5.8	100.0(190)
500만원~650만원 미만	19.5	8.1	16.2	36.7	11.9	7.6	100.0(210)
650만원~800만원 미만	19.7	6.1	13.6	36.4	13.6	10.6	100.0(66)
800만원 이상	19.0	4.8	14.3	35.7	14.3	11.9	100.0(42)
X^2(df)	54.885(25)***						

*** $p < .001$

보조 양육형태의 주중 평균 이용시간은 13.3시간으로 나타났고 평균 이용 빈도는 3.2회로 응답하였다. 주중 주 5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용 빈도는 근로상황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영업주/고용주가 평균 4.2회로 보조 양육형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 중견기업 종사자의 경우도 평균 4.1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3〉 어린이집 주 양육 형태 선택_보조양육형태 이용시간과 빈도

단위: 시간, 회(명)

구분	평균 이용시간	평균 이용빈도	사례수
전체	13.3	3.2	(702)
취업	12.9	3.3	(381)
휴직	16.0	3.5	(84)
학업	6.6	2.2	(11)
미취업	13.3	2.9	(226)
F	0.9	2.3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12.3	3.3	(31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4.2	3.3	(84)
자영업주/고용주	18.1	4.2	(40)
무급가족종사자	18.3	3.3	(27)
미취업	12.9	2.9	(237)
F	1.2	2.8*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12.6	3.4	(318)
임금근로자(시간제)	13.2	2.9	(80)
자영업주/고용주	18.1	4.2	(40)
무급가족종사자	18.3	3.3	(27)
미취업	12.9	2.9	(237)
F	1.0	3.3*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6.0	3.0	(88)
민간 대기업	12.4	3.1	(40)
민간 중견기업	10.4	4.1	(30)
민간 중소기업	14.5	3.6	(114)
개인사업체	12.0	3.3	(164)
기타	15.3	2.9	(29)
미취업	12.9	2.9	(237)
F	0.6	2.2*	

* $p < .05$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응답자들에게 양육 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물었을 때 양육수당 인상과는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을 하겠다는 비율이 69.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비율이 24.8%이고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어(정규직 임금근로자: 79.6%, 전일제 임금근로자: 79.7%) 시간적 유연성이 없고 장시간 근로하는 임금근로자일수록 어린이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도 응답비율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그룹이 월평균 그룹 소득이 높은 그룹에 비해 중단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200만원 미만: 23.1%), 금액에 따라 중단할 의사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높았다(200만원 미만~350만원 미만: 32.3%, 350만원~500만원 미만: 23.7%, 500만원 미만~650만원 미만: 22.7%). 이들 가구의 경우 근로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보다 근로 유지를 위해 자녀의 양육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만약 국가에서 주는 양육 수당이 많다면 오히려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 간주된다.

〈표 Ⅴ-2-24〉 어린이집 주 양육 형태 선택_양육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 중단의사

단위: %(명)

구분	중단할 생각 있음	금액에 따라 다름	관계없이 계속 어린이집 이용	계(수)
전체	5.3	24.8	69.9	100.0(757)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3.6	16.9	79.6	100.0(33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2	25.6	72.2	100.0(90)
자영업주/고용주	9.5	21.4	69.0	100.0(42)
무급가족종사자	16.7	36.7	46.7	100.0(30)
미취업	6.6	34.2	59.1	100.0(257)
X^2(df)	44.059(8)***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3.2	17.1	79.7	100.0(340)
임금근로자(시간제)	3.4	25.0	71.6	100.0(88)
자영업주/고용주	9.5	21.4	69.0	100.0(42)
무급가족종사자	16.7	36.7	46.7	100.0(30)
미취업	6.6	34.2	59.1	100.0(257)
X^2(df)	43.546(8)***			

구분	중단할 생각 있음	금액에 따라 다름	관계없이 계속 어린이집 이용	계(수)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5.3	14.9	79.8	100.0(94)
민간 대기업	7.3	24.4	68.3	100.0(41)
민간 중견기업	0.0	21.9	78.1	100.0(32)
민간 중소기업	4.0	19.2	76.8	100.0(125)
개인사업체	4.5	21.0	74.4	100.0(176)
기타	6.3	25.0	68.8	100.0(32)
미취업	6.6	34.2	59.1	100.0(257)
X^2(df)	26.412(1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3.1	15.4	61.5	100.0(13)
200만원~350만원 미만	6.1	32.3	61.6	100.0(198)
350만원~500만원 미만	5.6	23.7	70.7	100.0(215)
500만원~650만원 미만	4.1	22.7	73.2	100.0(220)
650만원~800만원 미만	2.9	19.1	77.9	100.0(68)
800만원 이상	4.7	18.6	76.7	100.0(43)
X^2(df)	19.739(10)*			
양육형태 일치여부				
주양육방식 일치	4.6	23.1	72.4	100.0(590)
불일치	7.8	31.1	61.1	100.0(167)
X^2(df)	8.339(2)*			

*p <.05, **p <.01, ***p <.001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양육수당을 얼마 정도까지 인상하면 어린이집을 이용을 중단하겠냐는 의사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30만 원 이상이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이 88.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25만원 미만이 6.6%로 나타났다. 이러한 답변은 앞선 가정 양육수당을 얼마까지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 근로상황 별로는 모 근무형태와 모 사업장 형태에 따라서 응답에 대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어린이집을 중단한다는 비율이 94.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80.0%로 가장 낮았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3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어린이집을 중단하겠다는 비율이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이 94.7%로 가장 높았던 반면, 민간 대기업이 84.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근로자는 근로 안정성은 높지만 근무 시간이 길고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근무 유형일수록 어린이집과 같

은 기관을 통한 대리 양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양육 수당에 대한 구간과 더불어 구체적인 금액을 물어보았을 때 가정 양육수당으로 평균 46.9만원을 받았을 때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 금액의 차이는 모 근로 상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상황 별로는 취업모가 평균 57.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모 고용형태 별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평균 5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일제 임금근로자도 평균 58.1만원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응답하였다. 모 사업장 형태별로는 민간 중견기업이 평균 6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취업을 제외하고는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이 평균 44.5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응답하였다. 양육형태가 불일치하였을 경우 평균 54.6만원으로 응답하여 선호와 실제 양육형태가 괴리가 있을 경우 더 높은 비용을 수령해야 어린이집 중단 의사가 있다고 의견 표명을 하였다.

〈표 Ⅴ-2-25〉 어린이집 주 양육 형태 선택_양육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 중단 가능 한 양육수당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25 만원 미만	25~30 민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3	2.6	6.6	0.9	88.6	100.0(228)	46.9
취업	2.3	1.1	5.7	0.0	90.8	100.0(87)	57.4
휴직	2.8	2.8	5.6	2.8	86.1	100.0(36)	42.1
학업	0.0	0.0	12.5	0.0	87.5	100.0(8)	37.5
미취업	0.0	4.1	7.2	1.0	87.6	100.0(97)	39.9
X^2(df)/F	7.427(12)						7.6***(a)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2.9	0.0	4.3	0.0	92.8	100.0(69)	56.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4.0	4.0	8.0	0.0	84.0	100.0(25)	57.2
자영업주/고용주	0.0	7.7	7.7	0.0	84.6	100.0(13)	43.8
무급가족종사자	0.0	0.0	6.3	6.3	87.5	100.0(16)	40.0
미취업	0.0	3.8	7.6	1.0	87.6	100.0(105)	39.8
X^2(df)/F	15.920(16)						5.2***(a)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0.0	0.0	5.8	0.0	94.2	100.0(69)	58.1
임금근로자(시간제)	12.0	4.0	4.0	0.0	80.0	100.0(25)	51.6
자영업주/고용주	0.0	7.7	7.7	0.0	84.6	100.0(13)	43.8
무급가족종사자	0.0	0.0	6.3	6.3	87.5	100.0(16)	40.0
미취업	0.0	3.8	7.6	1.0	87.6	100.0(105)	39.8
X^2(df)/F	35.811(16)**						5.5***(a)

구분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25 만원 미만	25~30 민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0.0	0.0	5.3	0.0	94.7	100.0(19)	44.5
민간 대기업	15.4	0.0	0.0	0.0	84.6	100.0(13)	54.1
민간 중견기업	0.0	0.0	14.3	0.0	85.7	100.0(7)	60.0
민간 중소기업	3.4	3.4	3.4	0.0	89.7	100.0(29)	55.7
개인사업체	0.0	2.2	8.9	0.0	88.9	100.0(45)	53.2
기타	0.0	0.0	0.0	10.0	90.0	100.0(10)	53.0
미취업	0.0	3.8	7.6	1.0	87.6	100.0(105)	39.8
X^2(df)/F	38.729(24)*						2.7*(a)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0	0.0	20.0	0.0	80.0	100.0(5)	40.0
200만원~350만원 미만	1.3	2.6	5.3	0.0	90.8	100.0(76)	44.5
350만원~500만원 미만	3.2	4.8	12.7	0.0	79.4	100.0(63)	41.2
500만원~650만원 미만	0.0	0.0	3.4	1.7	94.9	100.0(59)	54.5
650만원~800만원 미만	0.0	0.0	0.0	6.7	93.3	100.0(15)	53.7
800만원 이상	0.0	10.0	0.0	0.0	90.0	100.0(10)	48.5
X^2(df)/F	24.293(20)						1.9
양육형태 일치여부							
주양육방식 일치	1.8	3.1	7.4	1.2	86.5	100.0(163)	43.8
불일치	0.0	1.5	4.6	0.0	93.8	100.0(65)	54.6
X^2(df)/t	3.222(4)						-2.3*

$^{*}p < .05$, $^{**}p < .01$, $^{***}p < .001$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46.8%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는 막내 자녀의 연(월)령이 만 1세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57.6%), 그다음으로 만 2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45.7%), 만 0세일 때 가장 낮았다(30.0%). 이러한 결과는 만 0세일 때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나 제약적 상황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선택하였을 때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2-26〉 어린이집 주 양육 형태 선택_주 양육형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13.5	39.8	46.8	100.0(757)	3.4
지역 규모					
대도시	12.5	42.6	44.9	100.0(305)	3.4
중소도시	14.5	39.0	46.5	100.0(318)	3.4
읍면지역	13.4	35.1	51.5	100.0(134)	3.5
X^2(df)/F	2.747(4)				0.9(a)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6.7	53.3	30.0	100.0(30)	3.2
만1세 (12~24개월 미만)	12.8	29.7	57.6	100.0(172)	3.6
만2세 (24~36개월 미만)	12.8	41.4	45.7	100.0(304)	3.4
만3세 (36~44개월 미만)	14.3	43.0	42.6	100.0(251)	3.4
X^2(df)/F	14.299(6)*				2.9*
모 취업 상태					
취업	14.3	38.6	47.2	100.0(407)	3.4
휴직	16.1	33.3	50.5	100.0(93)	3.5
학업	8.3	75.0	16.7	100.0(12)	3.2
미취업	11.4	42.4	46.1	100.0(245)	3.4
X^2(df)/F	9.612(6)				0.4(a)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0	61.5	38.5	100.0(13)	3.4
200만원~350만원 미만	15.2	41.9	42.9	100.0(198)	3.4
350만원~500만원 미만	14.0	37.2	48.8	100.0(215)	3.4
500만원~650만원 미만	15.0	39.1	45.9	100.0(220)	3.4
650만원~800만원 미만	7.4	47.1	45.6	100.0(68)	3.4
800만원 이상	9.3	27.9	62.8	100.0(43)	3.7
X^2(df)/F	13.046(10)				1.1
양육형태 일치여부					
주양육방식 일치	13.2	39.0	47.8	100.0(590)	3.5
불일치	14.4	42.5	43.1	100.0(167)	3.4
X^2(df)/t	1.147(2)				1.0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05

다. 영아 양육지원 정책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근로상황 자녀 연(월)령별 주 양육형태와 선호형태의 일치 여부 및 각 주 양육형태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목차에서는 이와 같이 수요자가 직면한 상황과 그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에 대한 이용 여부와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1) 비용지원 정책

영아 양육지원 정책 중 아동수당의 경우 이용한 사람이 97.1%로 거의 보편적으로 이용된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는

54.2%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거의 40~50%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의 종사자의 경우 64.7%의 만족도를 보여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 Ⅴ-2-27〉 아동수당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97.1	2.9	100.0(1,400)	13.5	32.3	54.2	100.0(1,360)	3.6
자녀 수								
1명	97.2	2.8	100.0(601)	14.2	35.4	50.3	100.0(584)	3.5
2명	96.8	3.2	100.0(631)	11.8	30.3	57.9	100.0(611)	3.7
3명 이상	98.2	1.8	100.0(168)	17.6	28.5	53.9	100.0(165)	3.6
X^2(df)/F	0.919(2)			10.062(4)*				4.0*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97.1	2.9	100.0 (820)	13.3	30.5	56.2	100.0(796)	3.6
반일제 이상 학원	87.5	12.5	100.0 (8)	14.3	57.1	28.6	100.0(7)	3.3
비혈연 개인양육	94.7	5.3	100.0 (19)	11.1	44.4	44.4	100.0(18)	3.4
혈연 개인양육	90.9	9.1	100.0 (44)	15.0	32.5	52.5	100.0(40)	3.5
부모 직접 돌봄	98.2	1.8	100.0 (488)	13.8	33.4	52.8	100.0(479)	3.6
기타	95.2	4.8	100.0 (21)	15.0	55.0	30.0	100.0(20)	3.2
X^2(df)/F	11.330(5)*			10.612(10)				1.0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95.8	4.2	100.0 (283)	13.7	35.1	51.3	100.0 (271)	3.6
만1세 (12~24개월 미만)	98.3	1.7	100.0 (419)	12.4	31.6	56.1	100.0(412)	3.7
만2세 (24~36개월 미만)	97.4	2.6	100.0 (382)	15.6	27.4	57.0	100.0(372)	3.6
만3세 (36~44개월 미만)	96.5	3.5	100.0 (316)	12.5	36.7	50.8	100.0(305)	3.6
X^2(df)/F	4.598(3)			9.000(6)				0.7
모 취업 상태								
취업	95.9	4.1	100.0 (542)	13.3	30.2	56.5	100.0(520)	3.6
휴직	98.4	1.6	100.0 (255)	17.9	27.9	54.2	100.0(251)	3.6
학업	100.0	0.0	100.0 (17)	23.5	23.5	52.9	100.0(17)	3.5
미취업	97.6	2.4	100.0 (586)	11.5	36.4	52.1	100.0(572)	3.6
X^2(df)/F	5.309(3)			13.104(6)*				0.5(a)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6.1	3.9	100.0 (518)	13.3	29.1	57.6	100.0(498)	3.7
임금근로자(비정규직)	98.6	1.4	100.0 (140)	16.7	27.5	55.8	100.0(138)	3.6
자영업주/고용주	97.2	2.8	100.0 (72)	15.7	30.0	54.3	100.0(70)	3.6
무급가족종사자	97.0	3.0	100.0 (67)	21.5	35.4	43.1	100.0(65)	3.3
미취업	97.7	2.3	100.0 (603)	11.9	36.0	52.1	100.0(589)	3.6
X^2(df)/F	3.539(4)			13.967(8)				2.4*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96.2	3.8	100.0 (524)	13.5	28.2	58.3	100.0(504)	3.7
임금근로자(시간제)	98.5	1.5	100.0 (134)	15.9	31.1	53.0	100.0(132)	3.6
자영업주/고용주	97.2	2.8	100.0 (72)	15.7	30.0	54.3	100.0(70)	3.6
무급가족종사자	97.0	3.0	100.0 (67)	21.5	35.4	43.1	100.0(65)	3.3
미취업	97.7	2.3	100.0 (603)	11.9	36.0	52.1	100.0(589)	3.6
X^2(df)/F	3.266(4)			14.150(8)				2.3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96.2	3.8	100.0 (156)	9.3	26.0	64.7	100.0(150)	3.8
민간 대기업	95.3	4.7	100.0 (64)	18.0	31.1	50.8	100.0(61)	3.5
민간 중견기업	96.1	3.9	100.0 (51)	26.5	28.6	44.9	100.0(49)	3.3
민간 중소기업	96.2	3.8	100.0 (183)	11.4	30.1	58.5	100.0(176)	3.7
개인사업체	97.9	2.1	100.0 (282)	17.4	29.7	52.9	100.0(276)	3.5
기타	96.7	3.3	100.0 (61)	13.6	33.9	52.5	100.0(59)	3.6
미취업	97.7	2.3	100.0 (603)	11.9	36.0	52.1	100.0(589)	3.6
X^2(df)/F	3.351(6)			24.405(12)*				3.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6.0	4.0	100.0 (25)	16.7	29.2	54.2	100.0(24)	3.6
200만원~350만원 미만	98.4	1.6	100.0 (433)	15.5	35.7	48.8	100.0(426)	3.5
350만원~500만원 미만	97.9	2.1	100.0 (433)	12.7	30.9	56.4	100.0(424)	3.6
500만원~650만원 미만	94.5	5.5	100.0 (348)	11.6	31.6	56.8	100.0(329)	3.7
650만원~800만원 미만	98.9	1.1	100.0 (89)	13.6	30.7	55.7	100.0(88)	3.6
800만원 이상	95.8	4.2	100.0 (72)	14.5	26.1	59.4	100.0(69)	3.7
X^2(df)/F	13.366(5)*			8.815(10)				2.0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05, **p <.01

영유아보육료의 경우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이용한 사람의 비율이 68.5%로 높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69.9%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료를 수령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한 응답자들은 해당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용과 만족도의 차이는 막내 자녀의 연(월)령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녀의 연(월)령이 증가할수록 이용비율이 높아지고, 만 1세와 만 2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만 0세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어린이집을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응답자들의 결과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모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고용주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정규직 임금근로자 만족도 : 76.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만족도 : 71.2%, 자영업주/고용주 만족도 : 70.4%), 무급가족 종사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무급가족종사자 만족도 : 57.1%). 모 근무형태별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만족도(전일제 임금근로자 : 77.1%, 시간제 임금근로자 : 67.6%) 보다 높았다. 모 사업장 형태별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종사하는 양육자의 만족도가 8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8〉 영유아보육료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68.5	31.5	100.0(1,400)	10.0	20.1	69.9	100.0(959)	4.0
지역 규모								
대도시	68.9	31.1	100.0(560)	8.0	23.1	68.9	100.0(386)	4.0
중소도시	67.6	32.4	100.0(595)	11.4	18.2	70.4	100.0(402)	3.9
읍면지역	69.8	30.2	100.0(245)	11.1	18.1	70.8	100.0(171)	4.0
X^2(df)	0.480(2)			5.387(4)				0.4
자녀 수								
1명	59.4	40.6	100.0(601)	8.7	21.6	69.7	100.0(357)	4.0
2명	75.8	24.2	100.0(631)	11.5	19.0	69.5	100.0(478)	3.9
3명 이상	73.8	26.2	100.0(168)	8.1	20.2	71.8	100.0(124)	4.0
X^2(df)	40.638(2)***			2.893(4)				0.1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37.1	62.9	100.0(283)	7.6	35.2	57.1	100.0(105)	3.8
만1세 (12~24개월 미만)	55.1	44.9	100.0(419)	11.3	15.2	73.6	100.0(231)	4.0
만2세 (24~36개월 미만)	85.1	14.9	100.0(382)	8.3	16.6	75.1	100.0(325)	4.0
만3세 (36~44개월 미만)	94.3	5.7	100.0(316)	11.7	22.5	65.8	100.0(298)	3.9
X^2(df)	310.167(3)***			25.233(6)***				2.2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96.0	4.0	100.0(820)	9.1	18.4	72.4	100.0(787)	4.0
반일제 이상 학원	50.0	50.0	100.0(8)	25.0	50.0	25.0	100.0(4)	3.0
비혈연 개인양육	52.6	47.4	100.0(19)	10.0	60.0	30.0	100.0(10)	3.3
혈연 개인양육	22.7	77.3	100.0(44)	20.0	40.0	40.0	100.0(10)	3.5
부모 직접 돌봄	28.1	71.9	100.0(488)	13.9	24.8	61.3	100.0(137)	3.8
기타	52.4	47.6	100.0(21)	9.1	18.2	72.7	100.0(11)	3.7
X^2(df)	705.234(5)***			25.703(10)**				2.8*(a)
모 취업 상태								
취업	83.6	16.4	100.0(542)	7.5	16.8	75.7	100.0(453)	4.1
휴직	53.3	46.7	100.0(255)	11.0	23.5	65.4	100.0(136)	3.8
학업	70.6	29.4	100.0(17)	16.7	8.3	75.0	100.0(12)	3.8
미취업	61.1	38.9	100.0(586)	12.6	23.5	64.0	100.0(358)	3.8
X^2(df)	99.239(3)***			16.402(6)*				8.1***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75.1	24.9	100.0(518)	7.5	16.5	76.1	100.0(389)	4.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74.3	25.7	100.0(140)	8.7	20.2	71.2	100.0(104)	4.0
자영업주/고용주	75.0	25.0	100.0(72)	11.1	18.5	70.4	100.0(54)	4.0
무급가족종사자	62.7	37.3	100.0(67)	11.9	31.0	57.1	100.0(42)	3.6
미취업	61.4	38.6	100.0(603)	12.7	23.0	64.3	100.0(370)	3.8
X^2(df)	29.324(4)***			17.023(8)*				6.8***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74.0	26.0	100.0(524)	7.7	15.2	77.1	100.0(388)	4.2
임금근로자(시간제)	78.4	21.6	100.0(134)	7.6	24.8	67.6	100.0(105)	4.0
자영업주/고용주	75.0	25.0	100.0(72)	11.1	18.5	70.4	100.0(54)	4.0
무급가족종사자	62.7	37.3	100.0(67)	11.9	31.0	57.1	100.0(42)	3.6
미취업	61.4	38.6	100.0(603)	12.7	23.0	64.3	100.0(370)	3.8
X^2(df)	30.211(4)***			20.853(8)**				7.1***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69.9	30.1	100.0(156)	8.3	10.1	81.7	100.0(109)	4.2
민간 대기업	78.1	21.9	100.0(64)	12.0	20.0	68.0	100.0(50)	3.9
민간 중견기업	72.5	27.5	100.0(51)	8.1	21.6	70.3	100.0(37)	4.0
민간 중소기업	76.5	23.5	100.0(183)	5.7	15.7	78.6	100.0(140)	4.2
개인사업체	73.4	26.6	100.0(282)	9.7	21.3	69.1	100.0(207)	4.0
기타	75.4	24.6	100.0(61)	6.5	28.3	65.2	100.0(46)	3.9
미취업	61.4	38.6	100.0(603)	12.7	23.0	64.3	100.0(370)	3.8
X^2(df)	27.443(6)***			21.992(12)*				4.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8.0	32.0	100.0(25)	11.8	35.3	52.9	100.0(17)	3.8
200만원~350만원 미만	60.7	39.3	100.0(433)	10.6	22.8	66.5	100.0(263)	3.8
350만원~500만원 미만	67.9	32.1	100.0(433)	10.5	20.7	68.7	100.0(294)	3.9
500만원~650만원 미만	73.6	26.4	100.0(348)	10.2	16.8	73.0	100.0(256)	4.1
650만원~800만원 미만	82.0	18.0	100.0(89)	4.1	24.7	71.2	100.0(73)	4.1
800만원 이상	77.8	22.2	100.0(72)	10.7	8.9	80.4	100.0(56)	4.2
X^2(df)	26.712(5)***			13.845(10)				2.1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05, $^{**}p$ <.01, $^{***}p$ <.001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와는 달리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이용 : 50.8%, 미이용 :49.2%). 전반적인 만족도는 46.6% 정도였다. 가정 양육수당을 이용한 비율은 막내 자녀의 연(월)령이 낮을수록 높아 만 0세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양육자가 취업상태일수록 가정 양육수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 취업했을 경우는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통한 대리 양육을 선호한다는 사실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Ⅴ-2-29〉 가정양육수당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50.8	49.2	100.0(1,400)	22.5	30.9	46.6	100.0(711)	3.4
자녀 수								
1명	52.7	47.3	100.0(601)	21.8	35.6	42.6	100.0(317)	3.3
2명	50.6	49.4	100.0(631)	21.9	27.6	50.5	100.0(319)	3.4
3명 이상	44.6	55.4	100.0(168)	28.0	25.3	46.7	100.0(75)	3.3
X^2(df)	3.473(2)			7.442(4)				1.1(a)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87.3	12.7	100.0(283)	17.8	34.8	47.4	100.0(247)	3.4
만1세 (12~24개월 미만)	65.4	34.6	100.0(419)	23.7	30.3	46.0	100.0(274)	3.3
만2세 (24~36개월 미만)	32.5	67.5	100.0(382)	28.2	21.8	50.0	100.0(124)	3.3
만3세 (36~44개월 미만)	20.9	79.1	100.0(316)	24.2	36.4	39.4	100.0(66)	3.3
X^2(df)	350.919(3)***			10.817(6)				0.8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22.6	77.4	100.0(820)	25.9	25.9	48.1	100.0(185)	3.3
반일제 이상 학원	100.0	0.0	100.0(8)	25.0	37.5	37.5	100.0(8)	3.3
비혈연 개인양육	68.4	31.6	100.0(19)	23.1	38.5	38.5	100.0(13)	3.3
혈연 개인양육	79.5	20.5	100.0(44)	25.7	28.6	45.7	100.0(35)	3.3
부모 직접 돌봄	93.0	7.0	100.0(488)	20.9	31.9	47.1	100.0(454)	3.4
기타	76.2	23.8	100.0(21)	18.8	56.3	25.0	100.0(16)	3.1
X^2(df)	639.943(5)***			9.178(10)				0.2
모 취업 상태								
취업	28.4	71.6	100.0(542)	24.7	31.8	43.5	100.0(154)	3.3
휴직	65.5	34.5	100.0(255)	23.4	28.1	48.5	100.0(167)	3.4
학업	52.9	47.1	100.0(17)	22.2	33.3	44.4	100.0(9)	3.4
미취업	65.0	35.0	100.0(586)	21.3	31.8	47.0	100.0(381)	3.4
X^2(df)	178.118(3)***			1.665(6)				0.3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38.2	61.8	100.0(518)	22.7	28.3	49.0	100.0(198)	3.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37.9	62.1	100.0(140)	26.4	26.4	47.2	100.0(53)	3.3
자영업주/고용주	41.7	58.3	100.0(72)	26.7	40.0	33.3	100.0(30)	3.1
무급가족종사자	59.7	40.3	100.0(67)	25.0	35.0	40.0	100.0(40)	3.2
미취업	64.7	35.3	100.0(603)	21.3	31.8	46.9	100.0(390)	3.4
X^2(df)	93.146(4)***			4.632(8)				0.7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38.5	61.5	100.0(524)	22.8	27.2	50.0	100.0(202)	3.4
임금근로자(시간제)	36.6	63.4	100.0(134)	26.5	30.6	42.9	100.0(49)	3.3
자영업주/고용주	41.7	58.3	100.0(72)	26.7	40.0	33.3	100.0(30)	3.1
무급가족종사자	59.7	40.3	100.0(67)	25.0	35.0	40.0	100.0(40)	3.2
미취업	64.7	35.3	100.0(603)	21.3	31.8	46.9	100.0(390)	3.4
X^2(df)	93.307(4)***			5.128(8)				0.7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44.9	55.1	100.0(156)	12.9	25.7	61.4	100.0(70)	3.7
민간 대기업	37.5	62.5	100.0(64)	37.5	41.7	20.8	100.0(24)	2.7
민간 중견기업	39.2	60.8	100.0(51)	45.0	20.0	35.0	100.0(20)	2.8
민간 중소기업	36.1	63.9	100.0(183)	25.8	28.8	45.5	100.0(66)	3.4
개인사업체	40.4	59.6	100.0(282)	23.7	31.6	44.7	100.0(114)	3.3
기타	44.3	55.7	100.0(61)	22.2	33.3	44.4	100.0(27)	3.3
미취업	64.7	35.3	100.0(603)	21.3	31.8	46.9	100.0(390)	3.4
X^2(df)	85.001(6)***			20.417(12)				3.2**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8.0	52.0	100.0(25)	25.0	41.7	33.3	100.0(12)	3.3
200만원~350만원 미만	58.7	41.3	100.0(433)	23.6	31.9	44.5	100.0(254)	3.3
350만원~500만원 미만	55.7	44.3	100.0(433)	21.6	30.7	47.7	100.0(241)	3.4
500만원~650만원 미만	43.4	56.6	100.0(348)	21.9	29.8	48.3	100.0(151)	3.4
650만원~800만원 미만	29.2	70.8	100.0(89)	7.7	34.6	57.7	100.0(26)	3.7
800만원 이상	37.5	62.5	100.0(72)	37.0	22.2	40.7	100.0(27)	3.0
X^2(df)	44.203(5)***			8.474(10)				1.2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1$, $^{***}p < .001$

아이돌봄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아동수당·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과는 달리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2.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용한 사람의 만족도의 경우도 39.8%로 낮았다. 모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와 학업모의 경우 이용했다는 비율이 각각 11.1%와 17.6%로 휴직모와 미취업모에 비해 비교적 해당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모사업장 형태별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민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종사자도 다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이용 : 10.3%, 민간 대기업 : 14.1%, 민간 중견기업 : 13.7%, 민간 중소기업 :12.0%), 전반적으로 사용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표 Ⅴ-2-30〉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7.4	92.6	100.0(1,400)	23.3	36.9	39.8	100.0(103)	3.3
지역 규모								
대도시	8.6	91.4	100.0(560)	25.0	41.7	33.3	100.0(48)	3.2
중소도시	5.4	94.6	100.0(595)	18.8	31.3	50.0	100.0(32)	3.5
읍면지역	9.4	90.6	100.0(245)	26.1	34.8	39.1	100.0(23)	3.1
X^2(df)	6.113(2)*			2.364(4)				0.7
자녀 수								
1명	5.8	94.2	100.0(601)	22.9	31.4	45.7	100.0(35)	3.3
2명	8.4	91.6	100.0(631)	26.4	39.6	34.0	100.0(53)	3.1
3명 이상	8.9	91.1	100.0(168)	13.3	40.0	46.7	100.0(15)	3.5
X^2(df)	3.688(2)			2.232(4)				0.8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8.8	91.2	100.0(283)	12.0	48.0	40.0	100.0(25)	3.4
만1세 (12~24개월 미만)	7.6	92.4	100.0(419)	37.5	18.8	43.8	100.0(32)	3.1
만2세 (24~36개월 미만)	7.1	92.9	100.0(382)	14.8	44.4	40.7	100.0(27)	3.4
만3세 (36~44개월 미만)	6.0	94.0	100.0(316)	26.3	42.1	31.6	100.0(19)	3.2
X^2(df)	1.839(3)			9.750(6)				0.5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8.5	91.5	100.0(820)	21.4	42.9	35.7	100.0(70)	3.2
반일제 이상 학원	37.5	62.5	100.0(8)	66.7	33.3	0.0	100.0(3)	2.3
비혈연 개인양육	36.8	63.2	100.0(19)	42.9	28.6	28.6	100.0(7)	3.0
혈연 개인양육	4.5	95.5	100.0(44)	0.0	50.0	50.0	100.0(2)	3.5
부모 직접 돌봄	3.3	96.7	100.0(488)	18.8	18.8	62.5	100.0(16)	3.6
기타	23.8	76.2	100.0(21)	20.0	20.0	60.0	100.0(5)	3.6
X^2(df)	57.332(5)***			11.376(10)				0.9
모 취업 상태								
취업	11.1	88.9	100.0(542)	16.7	45.0	38.3	100.0(60)	3.3
휴직	5.9	94.1	100.0(255)	26.7	13.3	60.0	100.0(15)	3.5
학업	17.6	82.4	100.0(17)	33.3	0.0	66.7	100.0(3)	3.3
미취업	4.3	95.7	100.0(586)	36.0	36.0	28.0	100.0(25)	3.0
X^2(df)	22.631(3)***			10.492(6)				0.6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11.8	88.2	100.0(518)	21.3	39.3	39.3	100.0(61)	3.3
임금근로자(비정규직)	5.7	94.3	100.0(140)	12.5	50.0	37.5	100.0(8)	3.4
자영업주/고용주	5.6	94.4	100.0(72)	0.0	25.0	75.0	100.0(4)	4.3
무급가족종사자	3.0	97.0	100.0(67)	0.0	0.0	100.0	100.0(2)	4.0
미취업	4.6	95.4	100.0(603)	35.7	32.1	32.1	100.0(28)	3.0
X^2(df)	24.132(4)***			8.780(8)				1.2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11.5	88.5	100.0(524)	21.7	38.3	40.0	100.0(60)	3.3
임금근로자(시간제)	6.7	93.3	100.0(134)	11.1	55.6	33.3	100.0(9)	3.3
자영업주/고용주	5.6	94.4	100.0(72)	0.0	25.0	75.0	100.0(4)	4.3
무급가족종사자	3.0	97.0	100.0(67)	0.0	0.0	100.0	100.0(2)	4.0
미취업	4.6	95.4	100.0(603)	35.7	32.1	32.1	100.0(28)	3.0
X^2(df)	21.698(4)***			9.412(8)				1.2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0.3	89.7	100.0(156)	18.8	43.8	37.5	100.0(16)	3.3
민간 대기업	14.1	85.9	100.0(64)	22.2	55.6	22.2	100.0(9)	3.2
민간 중견기업	13.7	86.3	100.0(51)	14.3	28.6	57.1	100.0(7)	3.4
민간 중소기업	12.0	88.0	100.0(183)	27.3	36.4	36.4	100.0(22)	3.1
개인사업체	6.0	94.0	100.0(282)	11.8	35.3	52.9	100.0(17)	3.6
기타	6.6	93.4	100.0(61)	0.0	25.0	75.0	100.0(4)	3.8
미취업	4.6	95.4	100.0(603)	35.7	32.1	32.1	100.0(28)	3.0
X^2(df)	22.325(6)**			9.527(12)				0.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0	96.0	100.0(25)	0.0	0.0	100.0	100.0(1)	4.0
200만원~350만원 미만	4.4	95.6	100.0(433)	26.3	31.6	42.1	100.0(19)	3.3
350만원~500만원 미만	6.7	93.3	100.0(433)	17.2	41.4	41.4	100.0(29)	3.4
500만원~650만원 미만	10.1	89.9	100.0(348)	25.7	34.3	40.0	100.0(35)	3.2
650만원~800만원 미만	13.5	86.5	100.0(89)	25.0	50.0	25.0	100.0(12)	2.9
800만원 이상	9.7	90.3	100.0(72)	28.6	28.6	42.9	100.0(7)	3.4
X^2(df)	15.505(5)**			4.008(10)				0.4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5$, $^{**}p < .01$, $^{***}p < .001$

시간제 보육의 경우도 아이돌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89.9%로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6.1% 정도였다. 이용 비율은 영아 자녀의 연(월)령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만 0세 이용: 5.7%, 만 1세 이용: 10.3%, 만 2세 이용: 10.2%, 만 3세 이용: 13.6%). 모 근로상황 별로도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았으나 학업모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업모 이용: 29.4%, 무급가족종사자: 22.4%).

〈표 Ⅴ-2-31〉 시간제보육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10.1	89.9	100.0(1,400)	20.6	33.3	46.1	100.0(141)	3.4
지역 규모								
대도시	10.9	89.1	100.0(560)	23.0	41.0	36.1	100.0(61)	3.2
중소도시	7.9	92.1	100.0(595)	21.3	29.8	48.9	100.0(47)	3.4
읍면지역	13.5	86.5	100.0(245)	15.2	24.2	60.6	100.0(33)	3.7
X^2(df)	6.640(2)*			5.638(4)				2.0
자녀 수								
1명	9.3	90.7	100.0(601)	16.1	30.4	53.6	100.0(56)	3.6
2명	11.3	88.7	100.0(631)	28.2	35.2	36.6	100.0(71)	3.1
3명 이상	8.3	91.7	100.0(168)	0.0	35.7	64.3	100.0(14)	3.9
X^2(df)	1.908(2)			8.739(4)				3.7*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5.7	94.3	100.0(283)	18.8	56.3	25.0	100.0 (16)	2.9
만1세 (12~24개월 미만)	10.3	89.7	100.0(419)	25.6	23.3	51.2	100.0(43)	3.4
만2세 (24~36개월 미만)	10.2	89.8	100.0(382)	17.9	33.3	48.7	100.0(39)	3.5
만3세 (36~44개월 미만)	13.6	86.4	100.0(316)	18.6	34.9	46.5	100.0(43)	3.4
X^2(df)	10.486(3)*			6.468(6)				0.9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12.8	87.2	100.0(820)	18.1	34.3	47.6	100.0(105)	3.5
반일제 이상 학원	25.0	75.0	100.0(8)	50.0	50.0	0.0	100.0(2)	2.0
비혈연 개인양육	21.1	78.9	100.0(19)	50.0	50.0	0.0	100.0(4)	2.5
혈연 개인양육	6.8	93.2	100.0(44)	0.0	100.0	0.0	100.0(3)	3.0
부모 직접 돌봄	4.5	95.5	100.0(488)	27.3	18.2	54.5	100.0(22)	3.3
기타	23.8	76.2	100.0(21)	20.0	20.0	60.0	100.0(5)	3.6
X^2(df)	32.829(5)***			15.000(10)				1.2(a)
모 취업 상태								
취업	10.9	89.1	100.0(542)	16.9	39.0	44.1	100.0(59)	3.4
휴직	11.0	89.0	100.0(255)	28.6	32.1	39.3	100.0(28)	3.1
학업	29.4	70.6	100.0(17)	40.0	0.0	60.0	100.0(5)	3.2
미취업	8.4	91.6	100.0(586)	18.4	30.6	51.0	100.0(49)	3.5
X^2(df)	9.541(3)*			5.435(6)				0.8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10.6	89.4	100.0(518)	18.2	32.7	49.1	100.0(55)	3.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9.3	90.7	100.0(140)	15.4	53.8	30.8	100.0(13)	3.1
자영업주/고용주	5.6	94.4	100.0(72)	0.0	75.0	25.0	100.0(4)	3.5
무급가족종사자	22.4	77.6	100.0(67)	40.0	26.7	33.3	100.0(15)	2.9
미취업	9.0	91.0	100.0(603)	20.4	27.8	51.9	100.0(54)	3.5
X^2(df)	13.939(4)**			10.404(8)				1.2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8.6	91.4	100.0(524)	20.0	31.1	48.9	100.0(45)	3.5
임금근로자(시간제)	17.2	82.8	100.0(134)	13.0	47.8	39.1	100.0(23)	3.3
자영업주/고용주	5.6	94.4	100.0(72)	0.0	75.0	25.0	100.0(4)	3.5
무급가족종사자	22.4	77.6	100.0(67)	40.0	26.7	33.3	100.0(15)	2.9
미취업	9.0	91.0	100.0(603)	20.4	27.8	51.9	100.0(54)	3.5
X^2(df)	22.389(4)***			10.140(8)				0.8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9.0	91.0	100.0(156)	7.1	64.3	28.6	100.0(14)	3.2
민간 대기업	12.5	87.5	100.0(64)	12.5	25.0	62.5	100.0(8)	3.6
민간 중견기업	11.8	88.2	100.0(51)	16.7	33.3	50.0	100.0(6)	3.5
민간 중소기업	11.5	88.5	100.0(183)	23.8	23.8	52.4	100.0(21)	3.6
개인사업체	10.6	89.4	100.0(282)	23.3	43.3	33.3	100.0(30)	3.1
기타	13.1	86.9	100.0(61)	37.5	12.5	50.0	100.0(8)	3.3
미취업	9.0	91.0	100.0(603)	20.4	27.8	51.9	100.0(54)	3.5
X^2(df)	2.737(6)			13.137(12)				0.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0	80.0	100.0(25)	20.0	40.0	40.0	100.0(5)	3.4
200만원~350만원 미만	10.9	89.1	100.0(433)	21.3	29.8	48.9	100.0(47)	3.5
350만원~500만원 미만	7.9	92.1	100.0(433)	11.8	41.2	47.1	100.0(34)	3.5
500만원~650만원 미만	11.5	88.5	100.0(348)	27.5	27.5	45.0	100.0(40)	3.3
650만원~800만원 미만	9.0	91.0	100.0(89)	12.5	37.5	50.0	100.0(8)	3.6
800만원 이상	9.7	90.3	100.0(72)	28.6	42.9	28.6	100.0(7)	2.9
X^2(df)	6.271(5)			4.844(10)				0.5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5$, $^{**}p < .01$, $^{***}p < .001$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경우도 미이용 비율이 76.1%로 높았으며, 해당 정책의 수혜를 입은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6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경우도 시간제 보육과 마찬가지로 영아 자녀의 연(월)령이 증가할수록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만 0세 이용 : 8.1%, 만 1세 이용 19.8%, 만 2세 이용 : 30.9%, 만 3세 이용 35.1%). 이러한 결과는 시간제 보육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직접 전일적 돌봄이 필요하며 신뢰할만한 기관이나 인력이 있어야 대리 양육을 위탁해야 하는 영아일수록 시간제와 같은 일시 양육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유추할 수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의 경우 표준 보육 시간을 연장하여 양육을 대리 위탁하는 만큼 취업에 의한 이용 비율이 차이가 났다. 취업모와 학업모의 경우 각각 29.7%와 41.2%로 휴직모와 미취업모에 비해 이용비율이 높았다.

〈표 Ⅴ-2-3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23.9	76.1	100.0(1,400)	12.5	24.2	63.3	100.0(335)	3.8
지역 규모								
대도시	23.0	77.0	100.0(560)	14.0	20.9	65.1	100.0(129)	3.8
중소도시	24.7	75.3	100.0(595)	12.2	26.5	61.2	100.0(147)	3.7
읍면지역	24.1	75.9	100.0(245)	10.2	25.4	64.4	100.0(59)	3.9
X^2(df)	0.446(2)			1.596(4)				0.4
자녀 수								
1명	20.8	79.2	100.0(601)	11.2	26.4	62.4	100.0(125)	3.8
2명	27.9	72.1	100.0(631)	15.3	25.0	59.7	100.0(176)	3.7
3명 이상	20.2	79.8	100.0(168)	2.9	11.8	85.3	100.0(34)	4.1
X^2(df)	9.938(2)**			9.234(4)				1.8(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8.1	91.9	100.0(283)	13.0	34.8	52.2	100.0(23)	3.6
만1세 (12~24개월 미만)	19.8	80.2	100.0(419)	10.8	18.1	71.1	100.0(83)	3.9
만2세 (24~36개월 미만)	30.9	69.1	100.0(382)	11.0	23.7	65.3	100.0(118)	3.8
만3세 (36~44개월 미만)	35.1	64.9	100.0(316)	15.3	27.0	57.7	100.0(111)	3.7
X^2(df)	74.663(3)***			5.702(6)				0.9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35.4	64.6	100.0(820)	10.7	23.8	65.5	100.0(290)	3.9
반일제 이상 학원	12.5	87.5	100.0(8)	0.0	100.0	0.0	100.0(1)	3.0
비혈연 개인양육	15.8	84.2	100.0(19)	66.7	0.0	33.3	100.0(3)	2.7
혈연 개인양육	0.0	100.0	100.0(44)	-	-	-	-(0)	-
부모 직접 돌봄	7.6	92.4	100.0(488)	24.3	29.7	45.9	100.0(37)	3.3
기타	19.0	81.0	100.0(21)	0.0	0.0	100.0	100.0(4)	4.3
X^2(df)	145.946(5)***			20.984(8)**				3.4**
모 취업 상태								
취업	29.7	70.3	100.0(542)	8.7	22.4	68.9	100.0(161)	4.0
휴직	12.9	87.1	100.0(255)	12.1	15.2	72.7	100.0(33)	3.9
학업	41.2	58.8	100.0(17)	42.9	0.0	57.1	100.0(7)	3.4
미취업	22.9	77.1	100.0(586)	15.7	29.9	54.5	100.0(134)	3.6
X^2(df)	29.988(3)***			15.854(6)*				3.4*(a)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24.3	75.7	100.0(518)	7.1	19.8	73.0	100.0(126)	4.1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5.7	74.3	100.0(140)	13.9	19.4	66.7	100.0(36)	3.9
자영업주/고용주	26.4	73.6	100.0(72)	5.3	36.8	57.9	100.0(19)	3.8
무급가족종사자	19.4	80.6	100.0(67)	23.1	15.4	61.5	100.0(13)	3.4
미취업	23.4	76.6	100.0(603)	17.0	28.4	54.6	100.0(141)	3.6
X^2(df)	1.382(4)			14.926(8)				3.8**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22.9	77.1	100.0(524)	6.7	20.8	72.5	100.0(120)	4.1
임금근로자(시간제)	31.3	68.7	100.0(134)	14.3	16.7	69.0	100.0(42)	3.9
자영업주/고용주	26.4	73.6	100.0(72)	5.3	36.8	57.9	100.0(19)	3.8
무급가족종사자	19.4	80.6	100.0(67)	23.1	15.4	61.5	100.0(13)	3.4
미취업	23.4	76.6	100.0(603)	17.0	28.4	54.6	100.0(141)	3.6
X^2(df)	5.443(4)			15.452(8)				3.8**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6.0	84.0	100.0(156)	0.0	24.0	76.0	100.0(25)	4.2
민간 대기업	31.3	68.8	100.0(64)	10.0	10.0	80.0	100.0(20)	4.2
민간 중견기업	23.5	76.5	100.0(51)	0.0	16.7	83.3	100.0(12)	4.0
민간 중소기업	26.8	73.2	100.0(183)	10.2	16.3	73.5	100.0(49)	4.1
개인사업체	26.6	73.4	100.0(282)	12.0	28.0	60.0	100.0(75)	3.7
기타	21.3	78.7	100.0(61)	15.4	15.4	69.2	100.0(13)	3.9
미취업	23.4	76.6	100.0(603)	17.0	28.4	54.6	100.0(141)	3.6
X^2(df)	9.487(6)			17.366(12)				2.6*(a)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0	80.0	100.0(25)	20.0	20.0	60.0	100.0(5)	3.8
200만원~350만원 미만	24.9	75.1	100.0(433)	13.9	26.9	59.3	100.0(108)	3.7
350만원~500만원 미만	20.3	79.7	100.0(433)	11.4	26.1	62.5	100.0(88)	3.9
500만원~650만원 미만	25.0	75.0	100.0(348)	11.5	20.7	67.8	100.0(87)	3.9
650만원~800만원 미만	30.3	69.7	100.0(89)	7.4	25.9	66.7	100.0(27)	4.0
800만원 이상	27.8	72.2	100.0(72)	20.0	15.0	65.0	100.0(20)	3.7
X^2(df)	6.362(5)			4.305(10)				0.5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5$, $^{**}p < .01$, $^{***}p < .001$

지금까지 살펴본 비용 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1순위는 아동수당(38.7%)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영유아보육료(21.2%)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3명 이상일수록 아동수당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자녀가 3명 미만일 때 보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녀 수 1명 아동 수당 1순위 : 40.6%, 자녀 수 2명 아동수당 1순위 : 35.7%, 자녀 수 3명 이상 : 43.5%). 또한 모의 고용형태와 근무형태가 자영업주/고용주일수록 다른 유형에 비해서 아동수당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51.4%로 높았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일수록 56.0%에 달하는 응답자가 가정 양육수당을 1순위로 선택하여 저소득 그룹의 경우는 현금성 지원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수당이 비용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요구가 곧 현재 아동 정책 수준에 대한 만족이 아님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앞서 아동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4.2% 정도로

현재 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에 대한 요구는 서비스(프로그램) 정책과 시간지원정책을 포함한 전체 정책에서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유사한 현금성 지원과의 비교 등을 통한 종합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표 Ⅴ-2-33〉 비용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1순위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 국가책임 전종지원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료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의료비	계(수)
전체	38.7	21.2	10.6	8.4	14.9	1.1	1.7	3.4	100.0(1,400)
지역 규모									
대도시	36.4	23.2	10.4	8.4	15.7	1.4	1.8	2.7	100.0(560)
중소도시	40.3	19.8	10.6	7.6	15.5	0.7	2.0	3.5	100.0(595)
읍면지역	40.0	20.0	11.0	10.6	11.4	1.6	0.8	4.5	100.0(245)
X^2(df)	12.687(14)								
자녀 수									
1명	40.6	18.6	9.3	10.1	13.8	1.2	2.0	4.3	100.0(601)
2명	35.7	23.6	11.7	7.4	15.8	1.1	1.7	2.9	100.0(631)
3명 이상	43.5	21.4	10.7	6.0	14.9	1.2	0.6	1.8	100.0(168)
X^2(df)	18.173(14)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39.6	12.0	14.5	10.2	15.9	2.8	1.4	3.5	100.0(283)
만1세 (12~24개월 미만)	38.4	19.6	15.0	7.2	12.4	1.4	2.4	3.6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39.0	22.5	7.3	8.9	17.3	0.3	1.8	2.9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38.0	30.1	5.1	7.9	14.2	0.3	0.9	3.5	100.0(316)
X^2(df)	68.913(21)***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37.7	29.6	4.8	7.9	14.3	0.4	2.2	3.2	100.0(820)
반일제 이상 학원	75.0	0.0	0.0	12.5	12.5	0.0	0.0	0.0	100.0(8)
비혈연 개인양육	57.9	10.5	5.3	10.5	15.8	0.0	0.0	0.0	100.0(19)
혈연 개인양육	38.6	9.1	15.9	15.9	11.4	2.3	0.0	6.8	100.0(44)
부모 직접 돌봄	38.1	9.4	20.3	8.8	16.4	2.3	1.0	3.7	100.0(488)
기타	61.9	9.5	9.5	0.0	9.5	4.8	4.8	0.0	100.0(21)
X^2(df)	174.669(35)***								
모 취업 상태									
취업	37.8	26.6	5.0	10.5	13.8	0.9	2.2	3.1	100.0(542)
휴직	43.1	18.0	11.0	8.2	14.1	1.2	2.0	2.4	100.0(255)
학업	35.3	23.5	5.9	11.8	23.5	0.0	0.0	0.0	100.0(17)
미취업	37.7	17.6	15.7	6.5	15.9	1.4	1.2	4.1	100.0(586)
X^2(df)	57.376(21)***								

구분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 국가책임 종일제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계(수)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35.7	25.7	6.0	11.4	13.9	1.5	2.3	3.5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47.1	21.4	7.9	6.4	14.3	0.0	2.1	0.7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51.4	18.1	4.2	5.6	12.5	0.0	2.8	5.6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40.3	20.9	14.9	9.0	14.9	0.0	0.0	0.0	100.0(67)
미취업	37.6	17.7	15.4	6.6	16.1	1.3	1.2	4.0	100.0(603)
X^2(df)	69.596(28)***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35.9	25.6	6.1	12.2	13.5	1.3	2.1	3.2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47.0	21.6	7.5	3.0	15.7	0.7	3.0	1.5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51.4	18.1	4.2	5.6	12.5	0.0	2.8	5.6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40.3	20.9	14.9	9.0	14.9	0.0	0.0	0.0	100.0(67)
미취업	37.6	17.7	15.4	6.6	16.1	1.3	1.2	4.0	100.0(603)
X^2(df)	73.800(28)***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37.2	28.2	9.0	6.4	13.5	1.9	0.6	3.2	100.0(156)
민간 대기업	35.9	25.0	3.1	17.2	14.1	1.6	0.0	3.1	100.0(64)
민간 중견기업	35.3	23.5	11.8	17.6	5.9	2.0	2.0	2.0	100.0(51)
민간 중소기업	38.3	23.5	6.6	9.8	12.6	1.6	4.9	2.7	100.0(183)
개인사업체	44.0	22.0	5.7	8.9	14.2	0.0	1.8	3.5	100.0(282)
기타	36.1	21.3	8.2	8.2	24.6	0.0	1.6	0.0	100.0(61)
미취업	37.6	17.7	15.4	6.6	16.1	1.3	1.2	4.0	100.0(603)
X^2(df)	83.522(4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6.0	20.0	16.0	4.0	4.0	0.0	0.0	0.0	100.0(25)
200만원~350만원 미만	40.6	17.6	15.0	5.8	16.9	0.2	1.2	2.8	100.0(433)
350만원~500만원 미만	38.8	20.3	9.2	8.1	16.6	1.8	1.6	3.5	100.0(433)
500만원~650만원 미만	35.9	25.0	8.9	12.1	11.2	1.4	2.0	3.4	100.0(348)
650만원~800만원 미만	40.4	25.8	3.4	11.2	10.1	1.1	4.5	3.4	100.0(89)
800만원 이상	31.9	25.0	6.9	6.9	19.4	1.4	1.4	6.9	100.0(72)
X^2(df)	61.773(35)**								
양육형태 일치여부									
주양육방식 일치	38.0	20.6	11.0	8.3	16.5	1.1	1.6	2.9	100.0(1,048)
불일치	40.9	23.0	9.4	8.8	9.9	1.1	2.0	4.8	100.0(352)
X^2(df)	12.903(7)								

$^{**}p < .01$, $^{***}p < .001$

2)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비율은 41.7%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64.4%로 높은 편이었다. 이용 비율은 앞서 살펴본 아동수당 등의 보편적인 비용지

원 정책보다 이용률은 낮으나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률은 더 증가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 이용 프로그램이 장난감 대여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들이 많아 영아 자녀가 단독으로 구성된 가구일수록 이용율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Ⅴ-2-34〉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포함)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41.7	58.3	100.0(1,400)	13.7	21.9	64.4	100.0(584)	3.7
지역 규모								
대도시	45.5	54.5	100.0(560)	14.1	22.0	63.9	100.0(255)	3.7
중소도시	38.7	61.3	100.0(595)	13.9	21.7	64.3	100.0(230)	3.7
읍면지역	40.4	59.6	100.0(245)	12.1	22.2	65.7	100.0(99)	3.8
X^2(df)	5.825(2)			0.261(4)				0.3
자녀 수								
1명	44.1	55.9	100.0(601)	13.2	20.8	66.0	100.0(265)	3.7
2명	42.3	57.7	100.0(631)	14.6	24.0	61.4	100.0(267)	3.6
3명 이상	31.0	69.0	100.0(168)	11.5	17.3	71.2	100.0(52)	3.9
X^2(df)	9.495(2)**			2.412(4)				1.6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36.7	63.3	100.0(283)	13.5	25.0	61.5	100.0(104)	3.7
만1세 (12~24개월 미만)	43.0	57.0	100.0(419)	16.1	20.0	63.9	100.0(180)	3.7
만2세 (24~36개월 미만)	46.1	53.9	100.0(382)	12.5	20.5	67.0	100.0(176)	3.8
만3세 (36~44개월 미만)	39.2	60.8	100.0(316)	12.1	24.2	63.7	100.0(124)	3.7
X^2(df)	6.917(3)			2.744(6)				0.5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42.6	57.4	(820)	9.7	23.8	66.5	100.0(349)	3.8
반일제 이상 학원	37.5	62.5	(8)	33.3	33.3	33.3	100.0(3)	3.0
비혈연 개인양육	47.4	52.6	(19)	11.1	33.3	55.6	100.0(9)	3.6
혈연 개인양육	29.5	70.5	(44)	23.1	23.1	53.8	100.0(13)	3.5
부모 직접 돌봄	41.6	58.4	(488)	19.7	17.2	63.1	100.0(203)	3.6
기타	33.3	66.7	(21)	14.3	42.9	42.9	100.0(7)	3.1
X^2(df)	3.839(5)			17.338(10)				1.5(a)
모 취업 상태								
취업	41.3	58.7	100.0(542)	13.4	26.8	59.8	100.0(224)	3.6
휴직	41.2	58.8	100.0(255)	13.3	20.0	66.7	100.0(105)	3.8
학업	64.7	35.3	100.0(17)	9.1	36.4	54.5	100.0(11)	3.8
미취업	41.6	58.4	100.0(586)	14.3	17.6	68.0	100.0(244)	3.7
X^2(df)	3.761(3)			7.448(6)				0.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0.0	60.0	100.0(25)	20.0	30.0	50.0	100.0(10)	3.4
200만원~350만원 미만	35.6	64.4	100.0(433)	11.7	20.1	68.2	100.0(154)	3.8
350만원~500만원 미만	44.6	55.4	100.0(433)	15.0	20.2	64.8	100.0(193)	3.7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500만원~650만원 미만	45.4	54.6	100.0(348)	13.3	24.1	62.7	100.0(158)	3.7
650만원~800만원 미만	41.6	58.4	100.0(89)	10.8	18.9	70.3	100.0(37)	3.7
800만원 이상	44.4	55.6	100.0(72)	18.8	31.3	50.0	100.0(32)	3.4
X^2(df)	10.386(5)			6.336(10)				1.1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전반적인 이용률이 9.4%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용을 한 인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6.8%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경우 비혈연을 통한 개인양육을 양육 형태로 선택한 유형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이용률이 다소 높았으나 사례수는 적었다(반일제 이상 학원 양육형태 이용 : 25.0%, 비혈연 개인양육 양육형태 이용 : 42.1%). 취업모와 휴직모의 이용률이 각각 12.0%와 10.6%로 학업모나 미취업모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고,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이용률(정규직 임금근로자 : 12.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11.4%, 전일제 임금근로자 : 11.6%, 시간제 임금근로자 : 14.2%)이 자영업주/고용주나 미취업모에 비해서 높았다(자영업주/고용주 : 6.9%, 미취업 : 6.6%). 그러나 이러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Ⅴ-2-35〉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9.4	90.6	100.0(1,400)	12.9	30.3	56.8	100.0(132)	3.6
지역 규모								
대도시	8.9	91.1	100.0(560)	16.0	36.0	48.0	100.0(50)	3.4
중소도시	8.4	91.6	100.0(595)	8.0	34.0	58.0	100.0(50)	3.7
읍면지역	13.1	86.9	100.0(245)	15.6	15.6	68.8	100.0(32)	3.7
X^2(df)	4.682(2)			6.024(4)				0.8
자녀 수								
1명	8.7	91.3	100.0(601)	11.5	32.7	55.8	100.0(52)	3.6
2명	10.3	89.7	100.0(631)	15.4	32.3	52.3	100.0(65)	3.5
3명 이상	8.9	91.1	100.0(168)	6.7	13.3	80.0	100.0(15)	4.0
X^2(df)	1.036(2)			4.110(4)				1.5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1.0	89.0	100.0(283)	16.1	32.3	51.6	100.0(31)	3.5
만1세 (12~24개월 미만)	11.0	89.0	100.0(419)	13.0	30.4	56.5	100.0(46)	3.6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만2세 (24~36개월 미만)	7.9	92.1	100.0(382)	13.3	23.3	63.3	100.0(30)	3.7
만3세 (36~44개월 미만)	7.9	92.1	100.0(316)	8.0	36.0	56.0	100.0(25)	3.5
X^2(df)	3.912(3)			1.886(6)				0.2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8.8	91.2	100.0(820)	8.3	33.3	58.3	100.0(72)	3.6
반일제 이상 학원	25.0	75.0	100.0(8)	50.0	50.0	0.0	100.0(2)	2.0
비혈연 개인양육	42.1	57.9	100.0(19)	25.0	25.0	50.0	100.0(8)	3.4
혈연 개인양육	15.9	84.1	100.0(44)	14.3	14.3	71.4	100.0(7)	3.9
부모 직접 돌봄	8.2	91.8	100.0(488)	15.0	27.5	57.5	100.0(40)	3.6
기타	14.3	85.7	100.0(21)	33.3	33.3	33.3	100.0(3)	2.7
X^2(df)	30.043(5)***			8.375(10)				1.5
모 취업 상태								
취업	12.0	88.0	100.0(542)	10.8	36.9	52.3	100.0(65)	3.6
휴직	10.6	89.4	100.0(255)	14.8	25.9	59.3	100.0(27)	3.5
학업	5.9	94.1	100.0(17)	0.0	0.0	100.0	100.0(1)	5.0
미취업	6.7	93.3	100.0(586)	15.4	23.1	61.5	100.0(39)	3.6
X^2(df)	10.102(3)*			3.450(6)				0.6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12.4	87.6	100.0(518)	14.1	31.3	54.7	100.0(64)	3.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1.4	88.6	100.0(140)	6.3	25.0	68.8	100.0(16)	3.9
자영업주/고용주	6.9	93.1	100.0(72)	0.0	100.0	0.0	100.0(5)	3.0
무급가족종사자	10.4	89.6	100.0(67)	14.3	28.6	57.1	100.0(7)	3.7
미취업	6.6	93.4	100.0(603)	15.0	22.5	62.5	100.0(40)	3.6
X^2(df)	11.970(4)*			13.924(8)				0.9(a)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11.6	88.4	100.0(524)	14.8	31.1	54.1	100.0(61)	3.5
임금근로자(시간제)	14.2	85.8	100.0(134)	5.3	26.3	68.4	100.0(19)	3.9
자영업주/고용주	6.9	93.1	100.0(72)	0.0	100.0	0.0	100.0(5)	3.0
무급가족종사자	10.4	89.6	100.0(67)	14.3	28.6	57.1	100.0(7)	3.7
미취업	6.6	93.4	100.0(603)	15.0	22.5	62.5	100.0(40)	3.6
X^2(df)	12.664(4)*			14.354(8)				1.1(a)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5.4	84.6	100.0(156)	16.7	20.8	62.5	100.0(24)	3.5
민간 대기업	12.5	87.5	100.0(64)	37.5	37.5	25.0	100.0(8)	2.9
민간 중견기업	9.8	90.2	100.0(51)	20.0	0.0	80.0	100.0(5)	3.6
민간 중소기업	12.0	88.0	100.0(183)	9.1	31.8	59.1	100.0(22)	3.6
개인사업체	9.2	90.8	100.0(282)	3.8	50.0	46.2	100.0(26)	3.6
기타	11.5	88.5	100.0(61)	0.0	42.9	57.1	100.0(7)	4.0
미취업	6.6	93.4	100.0(603)	15.0	22.5	62.5	100.0(40)	3.6
X^2(df)	14.467(6)*			16.841(12)				0.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0	92.0	100.0(25)	0.0	50.0	50.0	100.0(2)	3.5
200만원~350만원 미만	9.2	90.8	100.0(433)	5.0	25.0	70.0	100.0(40)	4.0
350만원~500만원 미만	7.4	92.6	100.0(433)	12.5	31.3	56.3	100.0(32)	3.5
500만원~650만원 미만	8.6	91.4	100.0(348)	16.7	33.3	50.0	100.0(30)	3.4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650만원~800만원 미만	19.1	80.9	100.0(89)	23.5	29.4	47.1	100.0(17)	3.2
800만원 이상	15.3	84.7	100.0(72)	18.2	36.4	45.5	100.0(11)	3.4
X^2(df)	15.086(5)*			7.148(10)				2.0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05, ***p 〈.001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85.6%로 이용했다는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응답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1.0%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의 경우 영아 가구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아 자녀의 연(월)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이용률 자체는 20% 미만으로 그리 높지 않다. 영아 자녀를 어린이집을 통해 대리 양육을 할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아 어린이집을 통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수함을 알 수 있다.

〈표 V-2-36〉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14.4	85.6	100.0(1,400)	7.4	41.6	51.0	100.0(202)	3.6
지역 규모								
대도시	14.5	85.5	100.0(560)	3.7	39.5	56.8	100.0(81)	3.8
중소도시	13.1	86.9	100.0(595)	9.0	42.3	48.7	100.0(78)	3.6
읍면지역	17.6	82.4	100.0(245)	11.6	44.2	44.2	100.0(43)	3.4
X^2(df)	2.774(2)			3.953(4)				2.6
자녀 수								
1명	11.0	89.0	100.0(601)	6.1	40.9	53.0	100.0(66)	3.6
2명	17.0	83.0	100.0(631)	9.3	44.9	45.8	100.0(107)	3.5
3명 이상	17.3	82.7	100.0(168)	3.4	31.0	65.5	100.0(29)	3.9
X^2(df)	10.143(2)**			4.195(4)				2.3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0.2	89.8	100.0(283)	3.4	55.2	41.4	100.0(29)	3.6
만1세 (12~24개월 미만)	13.1	86.9	100.0(419)	7.3	41.8	50.9	100.0(55)	3.5
만2세 (24~36개월 미만)	13.4	86.6	100.0(382)	5.9	37.3	56.9	100.0(51)	3.8
만3세 (36~44개월 미만)	21.2	78.8	100.0(316)	10.4	38.8	50.7	100.0(67)	3.5
X^2(df)	16.686(3)***			4.121(6)				0.8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17.1	82.9	100.0(820)	7.9	35.7	56.4	100.0(140)	3.7
반일제 이상 학원	12.5	87.5	100.0(8)	0.0	0.0	100.0	100.0(1)	4.0
비혈연 개인양육	15.8	84.2	100.0(19)	0.0	66.7	33.3	100.0(3)	3.3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혈연 개인양육	13.6	86.4	100.0(44)	16.7	50.0	33.3	100.0(6)	3.2
부모 직접 돌봄	9.8	90.2	100.0(488)	6.3	56.3	37.5	100.0(48)	3.4
기타	19.0	81.0	100.0(21)	0.0	50.0	50.0	100.0(4)	3.5
X^2(df)	13.419(5)*			9.639(10)				1.1
모 취업 상태								
취업	16.2	83.8	100.0(542)	10.2	50.0	39.8	100.0(88)	3.4
휴직	12.2	87.8	100.0(255)	0.0	35.5	64.5	100.0(31)	3.8
학업	17.6	82.4	100.0(17)	0.0	0.0	100.0	100.0(3)	4.7
미취업	13.7	86.3	100.0(586)	7.5	36.3	56.3	100.0(80)	3.7
X^2(df)	2.929(3)			12.158(6)				3.9*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14.7	85.3	100.0(518)	7.9	46.1	46.1	100.0(76)	3.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5.7	84.3	100.0(140)	9.1	45.5	45.5	100.0(22)	3.6
자영업주/고용주	15.3	84.7	100.0(72)	0.0	72.7	27.3	100.0(11)	3.4
무급가족종사자	14.9	85.1	100.0(67)	10.0	20.0	70.0	100.0(10)	3.9
미취업	13.8	86.2	100.0(603)	7.2	34.9	57.8	100.0(83)	3.7
X^2(df)	0.483(4)			9.206(8)				1.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2.0	88.0	100.0(25)	0.0	66.7	33.3	100.0(3)	3.3
200만원~350만원 미만	13.9	86.1	100.0(433)	5.0	38.3	56.7	100.0(60)	3.7
350만원~500만원 미만	13.9	86.1	100.0(433)	8.3	38.3	53.3	100.0(60)	3.7
500만원~650만원 미만	15.8	84.2	100.0(348)	7.3	47.3	45.5	100.0(55)	3.5
650만원~800만원 미만	15.7	84.3	100.0(89)	14.3	50.0	35.7	100.0(14)	3.2
800만원 이상	13.9	86.1	100.0(72)	10.0	30.0	60.0	100.0(10)	3.8
X^2(df)	1.022(5)			5.249(10)				1.0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5$, $^{**}p < .01$, $^{***}p < .001$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이용률이 6.1%로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60.5%로 높은 편이어서 이용률과 대조를 이루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비율은 58.3%임을 감안할 때 그 이용도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육아나눔터의 만족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 : 64.4%)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Ⅴ-2-37〉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6.1	93.9	100.0(1,400)	11.6	27.9	60.5	100.0(86)	3.7
지역 규모								
대도시	6.8	93.2	100.0(560)	13.2	36.8	50.0	100.0(38)	3.4
중소도시	4.9	95.1	100.0(595)	17.2	20.7	62.1	100.0(29)	3.6
읍면지역	7.8	92.2	100.0(245)	0.0	21.1	78.9	100.0(19)	4.2
X^2(df)	3.168(2)			6.794(4)				3.0
자녀 수								
1명	5.5	94.5	100.0(601)	12.1	24.2	63.6	100.0(33)	3.6
2명	6.7	93.3	100.0(631)	11.9	31.0	57.1	100.0(42)	3.6
3명 이상	6.5	93.5	100.0(168)	9.1	27.3	63.6	100.0(11)	3.9
X^2(df)	0.779(2)			0.520(4)				0.4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6.4	93.6	100.0(283)	16.7	33.3	50.0	100.0(18)	3.5
만1세 (12~24개월 미만)	7.6	92.4	100.0(419)	12.5	28.1	59.4	100.0(32)	3.6
만2세 (24~36개월 미만)	5.8	94.2	100.0(382)	9.1	13.6	77.3	100.0(22)	4.0
만3세 (36~44개월 미만)	4.4	95.6	100.0(316)	7.1	42.9	50.0	100.0(14)	3.4
X^2(df)	3.351(3)			5.309(6)				1.3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4.6	95.4	100.0(820)	5.3	28.9	65.8	100.0(38)	3.8
반일제 이상 학원	25.0	75.0	100.0(8)	0.0	0.0	100.0	100.0(2)	4.0
비혈연 개인양육	21.1	78.9	100.0(19)	0.0	25.0	75.0	100.0(4)	3.8
혈연 개인양육	4.5	95.5	100.0(44)	0.0	50.0	50.0	100.0(2)	4.0
부모 직접 돌봄	7.6	92.4	100.0(488)	21.6	24.3	54.1	100.0(37)	3.4
기타	14.3	85.7	100.0(21)	0.0	66.7	33.3	100.0(3)	3.3
X^2(df)	19.860(5)**			9.989(10)				0.6(a)
모 취업 상태								
취업	6.5	93.5	100.0(542)	2.9	28.6	68.6	100.0(35)	3.9
휴직	4.7	95.3	100.0(255)	8.3	16.7	75.0	100.0(12)	3.8
학업	5.9	94.1	100.0(17)	100.0	0.0	0.0	100.0(1)	2.0
미취업	6.5	93.5	100.0(586)	18.4	31.6	50.0	100.0(38)	3.4
X^2(df)	1.127(3)			13.756(6)*				2.3(a)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6.2	93.8	100.0(518)	6.3	31.3	62.5	100.0(32)	3.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4.3	95.7	100.0(140)	0.0	16.7	83.3	100.0(6)	4.0
자영업주/고용주	6.9	93.1	100.0(72)	0.0	20.0	80.0	100.0(5)	4.0
무급가족종사자	6.0	94.0	100.0(67)	0.0	0.0	100.0	100.0(4)	4.5
미취업	6.5	93.5	100.0(603)	20.5	30.8	48.7	100.0(39)	3.4
X^2(df)	1.033(4)			9.711(8)				1.7(a)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5.0	95.0	100.0(524)	7.7	38.5	53.8	100.0(26)	3.6
임금근로자(시간제)	9.0	91.0	100.0(134)	0.0	8.3	91.7	100.0(12)	4.3
자영업주/고용주	6.9	93.1	100.0(72)	0.0	20.0	80.0	100.0(5)	4.0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무급가족종사자	6.0	94.0	100.0(67)	0.0	0.0	100.0	100.0(4)	4.5
미취업	6.5	93.5	100.0(603)	20.5	30.8	48.7	100.0(39)	3.4
X^2(df)	3.300(4)			13.824(8)				2.4(a)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4.5	95.5	100.0(156)	14.3	42.9	42.9	100.0(7)	3.3
민간 대기업	9.4	90.6	100.0(64)	16.7	66.7	16.7	100.0(6)	3.2
민간 중견기업	5.9	94.1	100.0(51)	0.0	0.0	100.0	100.0(3)	4.7
민간 중소기업	4.9	95.1	100.0(183)	0.0	0.0	100.0	100.0(9)	4.4
개인사업체	6.0	94.0	100.0(282)	0.0	17.6	82.4	100.0(17)	4.0
기타	8.2	91.8	100.0(61)	0.0	40.0	60.0	100.0(5)	3.8
미취업	6.5	93.5	100.0(603)	20.5	30.8	48.7	100.0(39)	3.4
X^2(df)	2.947(6)			22.534(12)*				2.5*(a)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0	100.0	100.0(25)	-	-	-	-(0)	-
200만원~350만원 미만	5.8	94.2	100.0(433)	16.0	16.0	68.0	100.0(25)	3.6
350만원~500만원 미만	6.2	93.8	100.0(433)	11.1	29.6	59.3	100.0(27)	3.6
500만원~650만원 미만	5.5	94.5	100.0(348)	10.5	36.8	52.6	100.0(19)	3.6
650만원~800만원 미만	9.0	91.0	100.0(89)	12.5	25.0	62.5	100.0(8)	3.6
800만원 이상	9.7	90.3	100.0(72)	0.0	42.9	57.1	100.0(7)	3.9
X^2(df)	4.877(5)			4.136(8)				0.1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5$, $^{**}p < .01$

지금까지 살펴본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1순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 도서관 포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건강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는 이용률이 저조한데 비해 필요하다고 선택한 정책순위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음으로 나타나 수요자들의 함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2-38〉 서비스 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1순위

단위: %(명)

구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표준모자보건수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계(수)
전체	38.3	15.4	9.9	13.9	9.9	12.5	100.0(1,400)
지역 규모							
대도시	40.4	12.7	12.1	12.9	9.1	12.9	100.0(560)
중소도시	37.8	16.5	9.1	15.1	10.4	11.1	100.0(595)
읍면지역	34.7	19.2	6.9	13.5	10.6	15.1	100.0(245)
X^2(df)	16.377(10)						

구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표준모자보건수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계(수)
자녀 수							
1명	39.8	15.5	11.3	9.8	11.8	11.8	100.0(601)
2명	38.8	14.9	8.9	16.5	7.6	13.3	100.0(631)
3명 이상	31.0	17.3	8.9	19.0	11.9	11.9	100.0(168)
X^2(df)	25.525(10)**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37.5	17.7	13.1	13.1	8.8	9.9	100.0(283)
만1세 (12~24개월 미만)	38.7	14.3	8.6	13.6	10.5	14.3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39.3	15.7	9.4	13.1	9.9	12.6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37.3	14.6	9.5	16.1	10.1	12.3	100.0(316)
X^2(df)	10.027(15)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38.0	16.0	9.6	14.0	10.1	12.2	100.0(820)
반일제 이상 학원	37.5	50.0	12.5	0.0	0.0	0.0	100.0(8)
비혈연 개인양육	52.6	10.5	10.5	15.8	5.3	5.3	100.0(19)
혈연 개인양육	45.5	11.4	2.3	25.0	9.1	6.8	100.0(44)
부모 직접 돌봄	37.9	15.0	11.1	11.7	10.5	13.9	100.0(488)
기타	28.6	4.8	9.5	42.9	0.0	14.3	100.0(21)
X^2(df)	41.040(25)*						
모 취업 상태							
취업	36.9	15.5	10.1	14.2	10.7	12.5	100.0(542)
휴직	37.6	15.7	12.2	12.9	10.6	11.0	100.0(255)
학업	29.4	17.6	5.9	23.5	17.6	5.9	100.0(17)
미취업	40.1	15.2	8.9	13.8	8.7	13.3	100.0(586)
X^2(df)	8.539(15)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37.5	15.3	10.2	12.0	11.2	13.9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35.7	15.7	14.3	14.3	9.3	10.7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36.1	16.7	9.7	27.8	5.6	4.2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38.8	16.4	9.0	11.9	14.9	9.0	100.0(67)
미취업	39.8	15.3	8.8	14.1	9.0	13.1	100.0(603)
X^2(df)	26.634(20)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36.3	15.3	10.5	12.6	11.5	13.9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40.3	15.7	13.4	11.9	8.2	10.4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36.1	16.7	9.7	27.8	5.6	4.2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38.8	16.4	9.0	11.9	14.9	9.0	100.0(67)
미취업	39.8	15.3	8.8	14.1	9.0	13.1	100.0(603)
X^2(df)	26.573(20)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42.3	12.8	11.5	12.8	10.3	10.3	100.0(156)
민간 대기업	35.9	14.1	10.9	15.6	6.3	17.2	100.0(64)
민간 중견기업	29.4	13.7	13.7	7.8	11.8	23.5	100.0(51)
민간 중소기업	36.6	16.9	9.3	14.8	11.5	10.9	100.0(183)
개인사업체	36.2	16.0	12.1	14.9	10.6	10.3	100.0(282)
기타	37.7	19.7	4.9	11.5	13.1	13.1	100.0(61)
미취업	39.8	15.3	8.8	14.1	9.0	13.1	100.0(603)
X^2(df)	22.847(30)						

구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표준모자보건수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계(수)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2.0	8.0	20.0	0.0	8.0	12.0	100.0(25)
200만원~350만원 미만	37.9	18.0	11.1	10.2	11.1	11.8	100.0(433)
350만원~500만원 미만	37.6	14.5	8.1	16.6	9.5	13.6	100.0(433)
500만원~650만원 미만	36.2	15.2	10.9	16.1	8.9	12.6	100.0(348)
650만원~800만원 미만	43.8	12.4	6.7	14.6	9.0	13.5	100.0(89)
800만원 이상	43.1	12.5	9.7	13.9	12.5	8.3	100.0(72)
X^2(df)	27.396(25)						

$^{*}p < .05$, $^{**}p < .01$

다음으로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보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주로 장난감 대여가 75.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도서관 및 도서 대여를 한다는 비율이 3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장난감 대여에 대한 비율은 영아 자녀의 연(월)령이 장난감을 갖고 놀되 교체율이 빠른 만 1세와 만 2세에서 높게 나타났다(만 1세 장난감 대여: 80.0%, 만 2세 장난감 대여: 75.6%). 이에 반해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여 비율은 모든 연령에 비해 골고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난감은 도서 등에 비해 교체 주기가 짧고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Ⅴ-2-39〉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주로 이용한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장난감 대여	놀이시설 (키즈카페)	부모교육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도서관 및 도서 대여	건강검진 및 의료	육아/어린이집 정보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서비스	유아대상 수업/체험 프로그램	기타	모름/무응답	(수)
전체	75.5	15.2	5.5	0.7	30.3	0.5	3.3	1.2	1.0	2.6	2.1	3.4	(584)
지역 규모													
대도시	75.3	13.3	6.7	0.8	25.9	0.4	2.7	1.6	1.2	2.7	1.6	2.7	(255)
중소도시	74.8	18.3	4.8	0.4	33.5	0.9	4.3	0.9	0.9	2.2	2.6	4.3	(230)
읍면지역	77.8	13.1	4.0	1.0	34.3	0.0	2.0	1.0	1.0	3.0	2.0	3.0	(99)

구분	장난감 대여	놀이 시설 (키즈 카페)	부모 교육	공동 육아, 품앗이 육아	도서관 및 도서 대여	건강 검진 및 의료	육아/ 어린이집 정보	시간제 보육	아이 돌보미 서비스	유아 대상 수업/ 체험 프로그램	기타	모름/ 무응답	(수)
자녀 수													
1명	78.1	11.7	5.7	0.8	29.8	0.4	4.5	1.1	1.1	0.0	1.1	3.4	(265)
2명	73.4	19.9	5.6	0.4	32.6	0.4	2.2	1.5	1.1	4.1	2.2	3.7	(267)
3명 이상	73.1	9.6	3.8	1.9	21.2	1.9	1.9	0.0	0.0	7.7	5.8	1.9	(52)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72.1	10.6	1.9	0.0	31.7	1.0	3.8	1.0	2.9	2.9	4.8	5.8	(104)
만1세 (12~24개월 미만)	80.0	16.1	5.6	0.6	28.9	0.6	4.4	1.1	0.6	0.6	1.1	2.8	(180)
만2세 (24~36개월 미만)	75.6	14.8	5.1	0.6	30.7	0.0	2.8	1.7	1.1	2.8	1.1	4.0	(176)
만3세 (36~44개월 미만)	71.8	18.5	8.9	1.6	30.6	0.8	1.6	0.8	0.0	4.8	2.4	1.6	(124)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75.9	15.8	6.9	0.6	31.8	0.3	3.2	0.6	0.9	2.6	1.4	2.6	(349)
반일제 이상 학원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0	33.3	0.0	(3)
비혈연 개인양육	33.3	0.0	11.1	0.0	22.2	0.0	22.2	0.0	11.1	0.0	11.1	11.1	(9)
혈연 개인양육	69.2	7.7	0.0	0.0	23.1	0.0	7.7	7.7	0.0	0.0	7.7	0.0	(13)
부모 직접 돌봄	79.3	15.3	3.0	1.0	29.1	1.0	2.0	2.0	0.5	3.0	2.0	3.9	(203)
기타	28.6	14.3	14.3	0.0	28.6	0.0	14.3	0.0	14.3	0.0	0.0	28.6	(7)
모 취업 상태													
취업	69.2	13.8	6.3	0.4	31.3	0.4	5.4	0.9	2.2	2.2	3.6	4.9	(224)
휴직	76.2	15.2	3.8	1.9	33.3	1.9	2.9	2.9	1.0	1.0	1.0	2.9	(105)
학업	90.9	0.0	0.0	0.0	36.4	0.0	0.0	0.0	0.0	0.0	0.0	9.1	(11)
미취업	80.3	17.2	5.7	0.4	27.9	0.0	1.6	0.8	0.0	3.7	1.2	2.0	(244)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71.7	12.8	5.5	0.5	31.1	0.9	5.0	1.8	2.7	1.4	3.7	4.1	(219)
임금근로자(비정규직)	69.0	15.5	6.9	0.0	44.8	0.0	5.2	0.0	0.0	0.0	1.7	5.2	(58)
자영업주/고용주	70.0	20.0	0.0	3.3	20.0	3.3	0.0	0.0	0.0	10.0	0.0	3.3	(30)
무급가족종사자	77.3	18.2	9.1	4.5	22.7	0.0	4.5	4.5	0.0	0.0	0.0	4.5	(22)
미취업	80.8	16.5	5.5	0.4	28.2	0.0	1.6	0.8	0.0	3.5	1.2	2.4	(255)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73.1	13.0	4.9	0.4	33.2	0.9	4.9	1.3	1.8	1.3	3.1	4.5	(223)
임금근로자(시간제)	63.0	14.8	9.3	0.0	37.0	0.0	5.6	1.9	3.7	0.0	3.7	3.7	(54)
자영업주/고용주	70.0	20.0	0.0	3.3	20.0	3.3	0.0	0.0	0.0	10.0	0.0	3.3	(30)
무급가족종사자	77.3	18.2	9.1	4.5	22.7	0.0	4.5	4.5	0.0	0.0	0.0	4.5	(22)
미취업	80.8	16.5	5.5	0.4	28.2	0.0	1.6	0.8	0.0	3.5	1.2	2.4	(25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0.0	20.0	0.0	0.0	20.0	0.0	0.0	10.0	0.0	0.0	0.0	0.0	(10)
200만원~350만원 미만	79.2	14.9	5.8	1.3	24.7	0.0	3.2	1.9	0.0	1.3	1.3	3.2	(154)
350만원~500만원 미만	80.8	10.4	3.6	0.0	34.2	1.0	1.6	1.0	0.5	2.6	1.6	3.1	(193)
500만원~650만원 미만	72.8	19.6	7.0	0.6	37.3	0.6	1.9	0.6	1.9	3.8	1.3	3.8	(158)
650만원~800만원 미만	56.8	18.9	10.8	0.0	13.5	0.0	13.5	0.0	2.7	2.7	10.8	0.0	(37)
800만원 이상	59.4	18.8	3.1	3.1	21.9	0.0	9.4	0.0	3.1	3.1	3.1	9.4	(32)

그렇다면, 이처럼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선택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자들은 거리, 교통 등 거주 공간에서 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센터의 존재 여부를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도 37.9%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시간이나 이용 방법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도 13.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자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존재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요는 높으나 구조적인 공급이 해당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용한 사람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시간과 방법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만족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한 높은 수요를 감안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급과 이용에 대한 양적·질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Ⅴ-2-40〉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센터의 존재 여부를 몰라서	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프로그램 이용이 불편해서	기타	계(수)
전체	37.9	42.8	4.3	13.2	1.8	100.0(816)
지역 규모						
대도시	38.7	42.3	3.9	13.4	1.6	100.0(305)
중소도시	37.8	41.4	4.9	14.0	1.9	100.0(365)
읍면지역	36.3	47.3	3.4	11.0	2.1	100.0(146)
X^2(df)	2.563(8)					
자녀 수						
1명	42.0	39.3	4.8	12.2	1.8	100.0(336)
2명	34.1	46.4	4.1	13.7	1.6	100.0(364)
3명 이상	37.9	41.4	3.4	14.7	2.6	100.0(116)
X^2(df)	6.360(8)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38.5	39.7	8.9	11.2	1.7	100.0(179)
만1세 (12~24개월 미만)	38.9	46.9	2.1	9.6	2.5	100.0(239)
만2세 (24~36개월 미만)	36.4	44.7	3.9	14.1	1.0	100.0(206)
만3세 (36~44개월 미만)	37.5	38.5	3.1	18.8	2.1	100.0(192)
X^2(df)	23.896(12)*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35.2	43.9	3.8	15.5	1.5	100.0(471)
반일제 이상 학원	60.0	0.0	0.0	40.0	0.0	100.0(5)
비혈연 개인양육	30.0	50.0	10.0	10.0	0.0	100.0(10)

구분	센터의 존재 여부를 몰라서	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프로그램 이용이 불편해서	기타	계(수)
혈연 개인양육	45.2	38.7	9.7	6.5	0.0	100.0(31)
부모 직접 돌봄	41.1	41.4	4.6	10.2	2.8	100.0(285)
기타	42.9	50.0	0.0	7.1	0.0	100.0(14)
X^2(df)	20.720(20)					
모 취업 상태						
취업	36.2	39.0	4.4	17.9	2.5	100.0(318)
휴직	37.3	45.3	6.0	9.3	2.0	100.0(150)
학업	66.7	0.0	0.0	33.3	0.0	100.0(6)
미취업	39.2	45.9	3.5	10.2	1.2	100.0(342)
X^2(df)	21.070(12)*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37.8	36.8	4.3	18.1	3.0	100.0(299)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8.0	51.2	4.9	14.6	1.2	100.0(82)
자영업주/고용주	45.2	42.9	2.4	9.5	0.0	100.0(42)
무급가족종사자	35.6	48.9	11.1	2.2	2.2	100.0(45)
미취업	39.7	45.1	3.4	10.6	1.1	100.0(348)
X^2(df)	29.474(16)*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35.5	38.9	4.7	17.9	3.0	100.0(301)
임금근로자(시간제)	36.3	43.8	3.8	15.0	1.3	100.0(80)
자영업주/고용주	45.2	42.9	2.4	9.5	0.0	100.0(42)
무급가족종사자	35.6	48.9	11.1	2.2	2.2	100.0(45)
미취업	39.7	45.1	3.4	10.6	1.1	100.0(348)
X^2(df)	24.926(16)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30.4	44.3	2.5	19.0	3.8	100.0(79)
민간 대기업	50.0	26.5	5.9	17.6	0.0	100.0(34)
민간 중견기업	32.3	38.7	9.7	12.9	6.5	100.0(31)
민간 중소기업	38.5	36.8	4.3	19.7	0.9	100.0(117)
개인사업체	36.8	43.7	6.3	11.5	1.7	100.0(174)
기타	33.3	51.5	0.0	9.1	6.1	100.0(33)
미취업	39.7	45.1	3.4	10.6	1.1	100.0(348)
X^2(df)	33.481(2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0.0	33.3	6.7	0.0	0.0	100.0(15)
200만원~350만원 미만	37.6	45.9	5.0	9.7	1.8	100.0(279)
350만원~500만원 미만	35.8	47.9	4.2	11.7	0.4	100.0(240)
500만원~650만원 미만	40.5	36.8	3.2	16.3	3.2	100.0(190)
650만원~800만원 미만	40.4	28.8	3.8	23.1	3.8	100.0(52)
800만원 이상	27.5	40.0	5.0	25.0	2.5	100.0(40)
X^2(df)	31.796(20)*					

*p <.05

부모 교육의 경우 수요자들의 정책 우선순위는 다소 낮았지만, 사전 면담 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면담자가 많아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하였다. 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4%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4.9%에 이른다. 본 결과를 통해 면담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 기대가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서비스(프로그램) 정책 중의 우선순위로는 상대적으로는 중요성이 낮지만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2-41〉 부모교육 필요성의 동의정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필요치 않음	② 별로 필요치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필요한 편	⑤ 매우 필요	④+⑤	계(수)	평균
전체	0.1	2.2	2.3	12.8	49.5	35.4	84.9	100.0(1,400)	4.2
지역 규모									
대도시	0.2	2.7	2.9	13.2	50.7	33.2	83.9	100.0(560)	4.1
중소도시	0.0	2.4	2.4	12.3	48.9	36.5	85.4	100.0(595)	4.2
읍면지역	0.0	0.8	0.8	13.1	48.2	38.0	86.1	100.0(245)	4.2
F									1.5
자녀 수									
1명	0.0	1.3	1.3	11.6	51.2	35.8	87.0	100.0(601)	4.2
2명	0.2	3.2	3.3	14.1	47.9	34.7	82.6	100.0(631)	4.1
3명 이상	0.0	1.8	1.8	11.9	49.4	36.9	86.3	100.0(168)	4.2
F									1.9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0.0	2.5	2.5	15.2	47.0	35.3	82.3	100.0(283)	4.2
만1세 (12~24개월 미만)	0.2	1.9	2.1	13.1	49.6	35.1	84.7	100.0(419)	4.2
만2세 (24~36개월 미만)	0.0	2.4	2.4	11.5	48.2	38.0	86.1	100.0(382)	4.2
만3세 (36~44개월 미만)	0.0	2.2	2.2	11.7	53.2	32.9	86.1	100.0(316)	4.2
F									0.5
모 취업 상태									
취업	0.0	2.8	2.8	11.1	53.0	33.2	86.2	100.0(542)	4.2
휴직	0.4	1.6	2.0	14.5	46.3	37.3	83.5	100.0(255)	4.2
학업	0.0	0.0	0.0	17.6	35.3	47.1	82.4	100.0(17)	4.3
미취업	0.0	2.0	2.0	13.5	48.1	36.3	84.5	100.0(586)	4.2
F									0.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0	0.0	0.0	16.0	44.0	40.0	84.0	100.0(25)	4.2
200만원~350만원 미만	0.0	1.8	1.8	12.7	47.6	37.9	85.5	100.0(433)	4.2
350만원~500만원 미만	0.0	1.6	1.6	12.5	48.5	37.4	85.9	100.0(433)	4.2

구분	① 전혀 필요치 않음	② 별로 필요치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필요한 편	⑤ 매우 필요	④+⑤	계(수)	평균
500만원~650만원 미만	0.0	3.7	3.7	14.7	49.1	32.5	81.6	100.0(348)	4.1
650만원~800만원 미만	1.1	3.4	4.5	9.0	56.2	30.3	86.5	100.0(89)	4.1
800만원 이상	0.0	0.0	0.0	9.7	62.5	27.8	90.3	100.0(72)	4.2
F									1.3

앞서 부모 교육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이용했다는 비율보다 높았으며, 부모교육을 이용했다는 인원 중 어린이집을 통해 이용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렇다면 앞서 부모 교육을 원하는 다수의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부모교육 제공 기관을 살펴보면, 앞선 실태 조사와는 달리 부모들의 선호는 주민센터·지역사회 도서관(시립, 구립 등)·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67.2%로 더욱 강하게 선호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서비스 기관을 선호한다는 비율은 21.7%로 낮았다. 특히 이러한 선호는 자녀의 연(월)령이 낮을수록 공공기관을 더욱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영아 자녀의 연(월)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 등 기관 보다는 집에서 직접 돌보는 양육형태 선호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부모 교육이 이뤄졌을 때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표 Ⅴ-2-42〉 부모교육 제공 기관 선호

단위 : %(명)

구분	공공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	교육기관	보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타	계(수)
전체	67.2	10.4	21.7	0.7	100.0(1,400)
연령					
20대	69.5	10.9	18.8	0.8	100.0(128)
30대	67.1	10.0	22.1	0.8	100.0(1,134)
40대	65.9	13.0	21.0	0.0	100.0(138)
X^2(df)	3.044(6)				
지역 규모					
대도시	64.5	11.1	23.8	0.7	100.0(560)
중소도시	69.6	10.3	19.8	0.3	100.0(595)
읍면지역	67.8	9.0	21.6	1.6	100.0(245)
X^2(df)	7.992(6)				
자녀 수					
1명	70.7	9.8	18.5	1.0	100.0(601)
2명	65.6	10.5	23.3	0.6	100.0(631)
3명 이상	60.7	11.9	27.4	0.0	100.0(168)

구분	공공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	교육기관	보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타	계(수)
X^2(df)			11.020(6)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72.1	11.0	15.5	1.4	100.0(283)
만1세 (12~24개월 미만)	71.4	10.0	18.4	0.2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66.2	9.4	23.3	1.0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58.5	11.4	29.7	0.3	100.0(316)
X^2(df)			27.942(9)***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62.9	11.2	25.2	0.6	100.0(820)
반일제 이상 학원	75.0	0.0	25.0	0.0	100.0(8)
비혈연 개인양육	68.4	15.8	15.8	0.0	100.0(19)
혈연 개인양육	72.7	15.9	11.4	0.0	100.0(44)
부모 직접 돌봄	73.4	8.4	17.2	1.0	100.0(488)
기타	76.2	9.5	14.3	0.0	100.0(21)
X^2(df)			24.346(15)		
모 취업 상태					
취업	61.6	12.9	24.7	0.7	100.0(542)
휴직	68.2	11.0	20.4	0.4	100.0(255)
학업	70.6	17.6	11.8	0.0	100.0(17)
미취업	71.8	7.5	19.8	0.9	100.0(586)
X^2(df)			18.329(9)*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64.7	12.2	23.0	0.2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60.0	12.9	25.0	2.1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62.5	12.5	23.6	1.4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65.7	11.9	22.4	0.0	100.0(67)
미취업	71.8	7.8	19.6	0.8	100.0(603)
X^2(df)			20.021(12)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64.5	12.4	22.5	0.6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60.4	11.9	26.9	0.7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62.5	12.5	23.6	1.4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65.7	11.9	22.4	0.0	100.0(67)
미취업	71.8	7.8	19.6	0.8	100.0(603)
X^2(df)			14.794(12)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58.3	10.9	29.5	1.3	100.0(156)
민간 대기업	64.1	14.1	21.9	0.0	100.0(64)
민간 중견기업	51.0	23.5	25.5	0.0	100.0(51)
민간 중소기업	71.0	11.5	17.5	0.0	100.0(183)
개인사업체	63.8	11.0	24.5	0.7	100.0(282)
기타	65.6	13.1	19.7	1.6	100.0(61)
미취업	71.8	7.8	19.6	0.8	100.0(603)
X^2(df)			32.998(18)*		

구분	공공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	교육기관	보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타	계(수)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8.0	12.0	20.0	0.0	100.0(25)
200만원~350만원 미만	69.3	9.5	20.1	1.2	100.0(433)
350만원~500만원 미만	68.8	8.3	22.4	0.5	100.0(433)
500만원~650만원 미만	63.8	13.8	21.6	0.9	100.0(348)
650만원~800만원 미만	66.3	7.9	25.8	0.0	100.0(89)
800만원 이상	62.5	13.9	23.6	0.0	100.0(72)
X^2(df)	13.280(15)				

주: 공공기관(주민센터, 지역사회, 시립/구립 등), 교육기관(평생교육원, 대학교 등)
$^{*}p < .05$, $^{***}p < .001$

부모교육 제공 시간대는 주중보다는 주말을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오후 시간대를 더욱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주말 08:00~12:00 선호 : 21.9%, 주말 12:00~18:00 선호 : 26.1%). 주말 오후를 선호하는 응답비율은 도시에 거주할수록 높았고(대도시 주말 12:00~18:00 선호 : 25.5%, 중소도시 : 28.1%, 읍면지역 : 22.9%), 영아 자녀의 연(월)령이 어릴수록 높아졌다(만 0세 주말 12:00~18:00 선호 : 35.0%, 만 1세 주말 12:00~18:00 선호 : 28.9%, 만 2세 주말 12:00~18:00 선호 21.7%, 만 3세 주말 12:00~18:00 선호 : 19.9%). 모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근무형태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각각 32.2%, 31.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중에 전일적 돌봄 필요성이 높고 근로 환경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유형일수록 주말 오후를 선호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Ⅴ-2-43〉 부모교육 제공 시간대 선호

단위 : %(명)

구분	주중 (월~금) 08:00 ~12:00	주중 (월~금) 12:00 ~18:00	주중 (월~금) 18:00 ~22:00	주말 (토~일) 08:00 ~12:00	주말 (토~일) 12:00 ~18:00	주말 (토~일) 18:00 ~22:00	계(수)
전체	19.1	15.5	14.1	21.9	26.1	3.4	100.0(1,400)
지역 규모							
대도시	17.9	16.6	12.5	25.4	25.5	2.1	100.0(560)
중소도시	19.2	15.3	14.6	19.5	28.1	3.4	100.0(595)
읍면지역	21.6	13.5	16.3	19.6	22.9	6.1	100.0(245)
X^2(df)	19.591(10)*						
자녀 수							
1명	11.8	12.6	17.0	23.8	32.1	2.7	100.0(601)
2명	23.8	16.0	12.0	22.2	22.0	4.0	100.0(631)
3명 이상	27.4	23.8	11.3	13.7	20.2	3.6	100.0(168)
X^2(df)	69.370(10)***						

구분	주중 (월~금) 08:00 ~12:00	주중 (월~금) 12:00 ~18:00	주중 (월~금) 18:00 ~22:00	주말 (토~일) 08:00 ~12:00	주말 (토~일) 12:00 ~18:00	주말 (토~일) 18:00 ~22:00	계(수)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4.8	14.8	12.7	19.4	35.0	3.2	100.0(283)
만1세 (12~24개월 미만)	15.3	14.6	14.3	23.4	28.9	3.6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21.2	16.8	11.0	26.2	21.7	3.1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25.3	15.8	18.7	16.8	19.9	3.5	100.0(316)
X^2(df)	47.158(15)***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20.6	16.3	14.5	22.9	21.6	4.0	100.0(820)
반일제 이상 학원	37.5	12.5	12.5	0.0	37.5	0.0	100.0(8)
비혈연 개인양육	5.3	15.8	31.6	21.1	26.3	0.0	100.0(19)
혈연 개인양육	13.6	6.8	15.9	20.5	40.9	2.3	100.0(44)
부모 직접 돌봄	18.0	14.3	12.7	20.3	32.0	2.7	100.0(488)
기타	0.0	28.6	9.5	28.6	33.3	0.0	100.0(21)
X^2(df)	44.015(25)*						
모 취업 상태							
취업	10.0	9.0	21.2	26.8	27.9	5.2	100.0(542)
휴직	17.3	13.3	15.3	23.5	28.2	2.4	100.0(255)
학업	11.8	5.9	0.0	35.3	41.2	5.9	100.0(17)
미취업	28.5	22.7	7.3	16.2	23.2	2.0	100.0(586)
X^2(df)	158.992(15)***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6.6	6.8	20.5	29.5	32.2	4.4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0.0	15.0	20.7	21.4	18.6	4.3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29.2	15.3	11.1	19.4	19.4	5.6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22.4	23.9	16.4	11.9	23.9	1.5	100.0(67)
미취업	28.0	22.2	7.1	16.7	23.7	2.2	100.0(603)
X^2(df)	203.160(20)***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5.5	5.9	21.4	30.5	31.7	5.0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24.6	18.7	17.2	17.2	20.1	2.2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29.2	15.3	11.1	19.4	19.4	5.6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22.4	23.9	16.4	11.9	23.9	1.5	100.0(67)
미취업	28.0	22.2	7.1	16.7	23.7	2.2	100.0(603)
X^2(df)	226.119(20)***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3.8	5.8	27.6	31.4	28.8	2.6	100.0(156)
민간 대기업	17.2	7.8	12.5	26.6	29.7	6.3	100.0(64)
민간 중견기업	5.9	7.8	23.5	25.5	33.3	3.9	100.0(51)
민간 중소기업	5.5	7.1	16.9	30.1	35.5	4.9	100.0(183)
개인사업체	20.2	14.9	17.0	20.9	22.7	4.3	100.0(282)
기타	18.0	16.4	19.7	19.7	21.3	4.9	100.0(61)
미취업	28.0	22.2	7.1	16.7	23.7	2.2	100.0(603)
X^2(df)	193.943(30)***						

$^{*}p < .05$, $^{***}p < .001$

3) 시간 지원 정책

가) 임신출신육아기 지원 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이용률이 42.4%로 높았고 해당 정책의 해당사항이 없다는 비율이 36.2%였다.[24] 출산전후휴가가 있지만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21.4%에 달하였다. 해당 제도 이용한 사람들이 만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6%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출산휴가 이용 여부는 모의 근로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의 취업상태 별로는 취업모와 휴직모의 이용률이 높았고(취업모: 62.7%, 휴직모: 53.7%), 특히,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이용률이 높았다(정규직 임금근로자: 75.5%, 전일제 임금근로자: 76.1%). 이에 반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이용률이 확연히 떨어져 이들 이용률과 대조를 이룬다(비정규직 임금근로자: 33.6%, 시간제 임금근로자 : 29.1%). 비정규직·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해당 제도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비정규직 임금근로자: 41.4%, 시간제 임금근로자: 45.5%) 이들이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주/고용주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도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V-2-44〉 출산전후휴가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42.4	21.4	36.2	100.0(1,400)	16.2	20.2	63.6	100.0(594)	3.7
지역 규모									
대도시	46.4	20.2	33.4	100.0(560)	17.3	20.8	61.9	100.0(260)	3.7
중소도시	41.0	20.2	38.8	100.0(595)	16.0	19.3	64.8	100.0(244)	3.7
읍면지역	36.7	26.9	36.3	100.0(245)	13.3	21.1	65.6	100.0(90)	3.8
X^2(df)	10.949(4)*				1.066(4)				0.2
자녀 수									
1명	41.6	21.3	37.1	100.0(601)	16.0	19.2	64.8	100.0(250)	3.8
2명	43.1	21.9	35.0	100.0(631)	15.4	21.3	63.2	100.0(272)	3.7
3명 이상	42.9	19.6	37.5	100.0(168)	19.4	19.4	61.1	100.0(72)	3.6
X^2(df)	0.939(4)				1.018(4)				0.6

24) 시간지원정책의 경우 다른 정책과 달리,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과 같이 지원정책의 예외인 고용 유형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책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용한 유형(예, 비정규직, 시간제 임금근로자 등)을 구별하기 위해 이용, 미이용, 해당사항없음으로 분류하여 답변을 받았다.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44.2	21.6	34.3	100.0(283)	17.6	15.2	67.2	100.0(125)	3.7
만1세 (12~24개월 미만)	42.7	16.9	40.3	100.0(419)	15.1	19.0	65.9	100.0(179)	3.8
만2세 (24~36개월 미만)	43.2	20.9	35.9	100.0(382)	17.0	20.0	63.0	100.0(165)	3.7
만3세 (36~44개월 미만)	39.6	27.5	32.9	100.0(316)	15.2	27.2	57.6	100.0(125)	3.6
X^2(df)	13.596(6)*				6.259(6)				0.8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48.3	20.7	31.0	100.0(820)	15.2	20.5	64.4	100.0(396)	3.7
반일제 이상 학원	37.5	50.0	12.5	100.0(8)	33.3	0.0	66.7	100.0(3)	3.7
비혈연 개인양육	63.2	10.5	26.3	100.0(19)	16.7	33.3	50.0	100.0(12)	3.5
혈연 개인양육	63.6	18.2	18.2	100.0(44)	28.6	25.0	46.4	100.0(28)	3.4
부모 직접 돌봄	30.5	23.2	46.3	100.0(488)	15.4	18.8	65.8	100.0(149)	3.8
기타	28.6	9.5	61.9	100.0(21)	33.3	0.0	66.7	100.0(6)	3.5
X^2(df)	66.584(10)***				9.740(10)				0.7
모 취업 상태									
취업	62.7	17.5	19.7	100.0(542)	15.0	22.4	62.6	100.0(340)	3.7
휴직	53.7	19.2	27.1	100.0(255)	13.9	15.3	70.8	100.0(137)	3.9
학업	17.6	35.3	47.1	100.0(17)	0.0	33.3	66.7	100.0(3)	4.0
미취업	19.5	25.4	55.1	100.0(586)	22.8	19.3	57.9	100.0(114)	3.5
X^2(df)	250.943(6)***				8.774(6)				2.8*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75.5	14.9	9.7	100.0(518)	13.8	18.4	67.8	100.0(391)	3.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33.6	25.0	41.4	100.0(140)	14.9	31.9	53.2	100.0(47)	3.5
자영업주/고용주	27.8	22.2	50.0	100.0(72)	25.0	25.0	50.0	100.0(20)	3.4
무급가족종사자	28.4	23.9	47.8	100.0(67)	21.1	26.3	52.6	100.0(19)	3.5
미취업	19.4	25.7	54.9	100.0(603)	22.2	19.7	58.1	100.0(117)	3.5
X^2(df)	401.053(8)***				13.061(8)				3.4**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76.1	14.9	9.0	100.0(524)	13.5	19.3	67.2	100.0(399)	3.8
임금근로자(시간제)	29.1	25.4	45.5	100.0(134)	17.9	25.6	56.4	100.0(39)	3.5
자영업주/고용주	27.8	22.2	50.0	100.0(72)	25.0	25.0	50.0	100.0(20)	3.4
무급가족종사자	28.4	23.9	47.8	100.0(67)	21.1	26.3	52.6	100.0(19)	3.5
미취업	19.4	25.7	54.9	100.0(603)	22.2	19.7	58.1	100.0(117)	3.5
X^2(df)	419.915(8)***				9.625(8)				3.3*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78.8	12.8	8.3	100.0(156)	8.1	14.6	77.2	100.0(123)	4.2
민간 대기업	75.0	12.5	12.5	100.0(64)	8.3	25.0	66.7	100.0(48)	3.8
민간 중견기업	78.4	15.7	5.9	100.0(51)	20.0	27.5	52.5	100.0(40)	3.5
민간 중소기업	71.0	16.9	12.0	100.0(183)	19.2	19.2	61.5	100.0(130)	3.7
개인사업체	39.4	23.4	37.2	100.0(282)	15.3	23.4	61.3	100.0(111)	3.6
기타	41.0	18.0	41.0	100.0(61)	24.0	20.0	56.0	100.0(25)	3.5
미취업	19.4	25.7	54.9	100.0(603)	22.2	19.7	58.1	100.0(117)	3.5
X^2(df)	352.483(12)***				21.048(12)*				4.3***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5$, $^{**}p < .01$, $^{***}p < .001$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경우 이용했다는 비율이 34.2%에 불과하고 만족도도 39.0%로 낮은 편이다. 모의 고용과 근무형태가 임금근로자의 경우 다른 유형에 이용률이 다소 높았으나(정규직 임금근로자 : 35.9%,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37.9%, 전일제 임금근로자 : 35.5%, 시간제 임금근로자 : 39.6%) 전반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종사하는 양육모 배우자의 경우 50.0%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의 경우 돌봄 노동의 강도가 높고 출산 직후 모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감안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보완은 매우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Ⅴ-2-45〉 배우자 출산휴가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34.2	39.9	25.9	100.0(1,400)	38.8	22.1	39.0	100.0(479)	3.0
연령									
20대	39.1	32.0	28.9	100.0(128)	36.0	20.0	44.0	100.0(50)	3.1
30대	34.7	40.7	24.5	100.0(1,134)	39.8	22.3	37.8	100.0(394)	3.0
40대	25.4	40.6	34.1	100.0(138)	31.4	22.9	45.7	100.0(35)	3.2
X^2(df)/F	11.174(4)*				1.686(4)				0.7
지역 규모									
대도시	32.1	40.5	27.3	100.0(560)	37.8	23.3	38.9	100.0(180)	3.0
중소도시	36.5	39.2	24.4	100.0(595)	41.5	20.7	37.8	100.0(217)	3.0
읍면지역	33.5	40.4	26.1	100.0(245)	34.1	23.2	42.7	100.0(82)	3.2
X^2(df)/F	2.761(4)				1.620(4)				0.7
자녀 수									
1명	35.4	37.3	27.3	100.0(601)	40.8	22.5	36.6	100.0(213)	2.9
2명	34.7	40.6	24.7	100.0(631)	38.4	21.0	40.6	100.0(219)	3.1
3명 이상	28.0	47.0	25.0	100.0(168)	31.9	25.5	42.6	100.0(47)	3.2
X^2(df)/F	6.304(4)				1.813(4)				1.5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41.0	36.4	22.6	100.0(283)	43.1	22.4	34.5	100.0(116)	2.9
만1세 (12~24개월 미만)	33.9	38.9	27.2	100.0(419)	35.9	26.8	37.3	100.0(142)	3.0
만2세 (24~36개월 미만)	33.0	42.9	24.1	100.0(382)	39.7	17.5	42.9	100.0(126)	3.0
만3세 (36~44개월 미만)	30.1	40.8	29.1	100.0(316)	36.8	21.1	42.1	100.0(95)	3.1
X^2(df)/F	10.698(6)				5.071(6)				0.5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31.3	41.0	27.7	100.0(820)	37.4	19.8	42.8	100.0(257)	3.1
반일제 이상 학원	25.0	50.0	25.0	100.0(8)	50.0	50.0	0.0	100.0(2)	2.0
비혈연 개인양육	47.4	21.1	31.6	100.0(19)	44.4	22.2	33.3	100.0(9)	2.9
혈연 개인양육	34.1	43.2	22.7	100.0(44)	33.3	26.7	40.0	100.0(15)	3.2
부모 직접 돌봄	38.9	38.3	22.7	100.0(488)	40.5	24.7	34.7	100.0(190)	2.9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기타	28.6	42.9	28.6	100.0(21)	50.0	16.7	33.3	100.0(6)	2.8
X^2(df)/F	12.466(10)				5.587(10)				0.5
모 취업 상태									
취업	33.4	38.6	28.0	100.0(542)	35.9	21.0	43.1	100.0(181)	3.1
휴직	38.0	38.8	23.1	100.0(255)	38.1	25.8	36.1	100.0(97)	3.0
학업	29.4	47.1	23.5	100.0(17)	40.0	0.0	60.0	100.0(5)	3.0
미취업	33.4	41.5	25.1	100.0(586)	41.8	21.9	36.2	100.0(196)	2.9
X^2(df)/F	4.211(6)				4.604(6)				0.9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35.9	40.9	23.2	100.0(518)	34.4	17.7	47.8	100.0(186)	3.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37.9	35.7	26.4	100.0(140)	45.3	22.6	32.1	100.0(53)	2.8
자영업주/고용주	23.6	27.8	48.6	100.0(72)	47.1	35.3	17.6	100.0(17)	2.6
무급가족종사자	32.8	38.8	28.4	100.0(67)	27.3	54.5	18.2	100.0(22)	2.9
미취업	33.3	41.6	25.0	100.0(603)	41.8	21.4	36.8	100.0(201)	2.9
X^2(df)/F	23.589(8)**				25.518(8)**				2.3(a)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35.5	41.2	23.3	100.0(524)	34.9	18.3	46.8	100.0(186)	3.2
임금근로자(시간제)	39.6	34.3	26.1	100.0(134)	43.4	20.8	35.8	100.0(53)	2.9
자영업주/고용주	23.6	27.8	48.6	100.0(72)	47.1	35.3	17.6	100.0(17)	2.6
무급가족종사자	32.8	38.8	28.4	100.0(67)	27.3	54.5	18.2	100.0(22)	2.9
미취업	33.3	41.6	25.0	100.0(603)	41.8	21.4	36.8	100.0(201)	2.9
X^2(df)/F	24.378(8)**				23.320(8)**				1.5(a)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50.0	29.5	20.5	100.0(156)	25.6	14.1	60.3	100.0(78)	3.6
민간 대기업	42.2	32.8	25.0	100.0(64)	40.7	22.2	37.0	100.0(27)	2.8
민간 중견기업	35.3	35.3	29.4	100.0(51)	50.0	16.7	33.3	100.0(18)	2.7
민간 중소기업	30.6	47.5	21.9	100.0(183)	41.1	19.6	39.3	100.0(56)	3.0
개인사업체	26.6	39.7	33.7	100.0(282)	38.7	30.7	30.7	100.0(75)	2.9
기타	39.3	39.3	21.3	100.0(61)	41.7	37.5	20.8	100.0(24)	2.7
미취업	33.3	41.6	25.0	100.0(603)	41.8	21.4	36.8	100.0(201)	2.9
X^2(df)/F	37.554(12)***				25.238(12)*				3.1**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5$, $^{**}p < .01$, $^{***}p < .001$

육아휴직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비슷하게 이용률이 34.8%로 저조했지만, 이용자의 만족도는 61.6%로 매우 높았다. 영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양육형태를 매우 선호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 제도 이용을 실질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출사휴가 제도와 마찬가지로 모의 근로 상황에 따라 이용률의 편차가 나타났다. 모 고용과 근무 형태 별로 살펴보면 출산휴

가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정규직 임금근로자: 61.4%, 전일제 임금근로자: 62.4%), 그 밖의 유형의 경우는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비정규직 임금근로자: 30.0%, 시간제 임금근로자: 24.6%, 자영업주/고용주: 22.2%, 무급가족종사자: 23.9%).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종사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73.1%에 달해 민간 중소기업의 이용률의 50.8%와 대조를 이룬다.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결과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취약계층의 복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Ⅴ-2-46〉 육아휴직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34.8	29.6	35.6	100.0(1,400)	19.1	19.3	61.6	100.0(487)	3.7
지역 규모									
대도시	37.0	29.3	33.8	100.0(560)	17.9	21.3	60.9	100.0(207)	3.7
중소도시	35.3	27.7	37.0	100.0(595)	21.0	15.7	63.3	100.0(210)	3.7
읍면지역	28.6	34.7	36.7	100.0(245)	17.1	24.3	58.6	100.0(70)	3.7
X^2(df)	7.340(4)				3.616(4)				0.0
자녀 수									
1명	34.6	29.8	35.6	100.0(601)	20.7	16.3	63.0	100.0(208)	3.7
2명	33.9	29.8	36.3	100.0(631)	17.8	20.6	61.7	100.0(214)	3.7
3명 이상	38.7	28.0	33.3	100.0(168)	18.5	24.6	56.9	100.0(65)	3.5
X^2(df)	1.370(4)				2.849(4)				0.6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35.0	30.7	34.3	100.0(283)	20.2	18.2	61.6	100.0(99)	3.6
만1세 (12~24개월 미만)	34.4	27.4	38.2	100.0(419)	13.9	23.6	62.5	100.0(144)	3.8
만2세 (24~36개월 미만)	36.6	28.8	34.6	100.0(382)	22.1	15.0	62.9	100.0(140)	3.7
만3세 (36~44개월 미만)	32.9	32.3	34.8	100.0(316)	21.2	20.2	58.7	100.0(104)	3.6
X^2(df)	3.454(6)				6.055(6)				0.7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39.5	28.9	31.6	100.0(820)	17.0	18.5	64.5	100.0(324)	3.7
반일제 이상 학원	25.0	37.5	37.5	100.0(8)	0.0	50.0	50.0	100.0(2)	4.0
비혈연 개인양육	63.2	10.5	26.3	100.0(19)	25.0	25.0	50.0	100.0(12)	3.3
혈연 개인양육	36.4	45.5	18.2	100.0(44)	25.0	43.8	31.3	100.0(16)	3.3
부모 직접 돌봄	25.8	30.9	43.2	100.0(488)	23.8	15.9	60.3	100.0(126)	3.6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기타	33.3	4.8	61.9	100.0(21)	14.3	42.9	42.9	100.0(7)	3.4
X^2(df)	52.248(10)***				15.798(10)				1.1
모 취업 상태									
취업	48.0	29.5	22.5	100.0(542)	17.3	20.0	62.7	100.0(260)	3.7
휴직	51.8	21.6	26.7	100.0(255)	17.4	19.7	62.9	100.0(132)	3.7
학업	11.8	52.9	35.3	100.0(17)	0.0	0.0	100.0	100.0(2)	4.5
미취업	15.9	32.4	51.7	100.0(586)	26.9	17.2	55.9	100.0(93)	3.5
X^2(df)	195.776(6)***				5.689(6)				1.4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61.4	25.1	13.5	100.0(518)	15.4	18.9	65.7	100.0(318)	3.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30.0	30.7	39.3	100.0(140)	26.2	23.8	50.0	100.0(42)	3.4
자영업주/고용주	22.2	29.2	48.6	100.0(72)	6.3	18.8	75.0	100.0(16)	3.9
무급가족종사자	23.9	31.3	44.8	100.0(67)	43.8	31.3	25.0	100.0(16)	2.9
미취업	15.8	33.0	51.2	100.0(603)	26.3	16.8	56.8	100.0(95)	3.5
X^2(df)	298.537(8)***				20.486(8)**				4.0**(a)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62.4	25.0	12.6	100.0(524)	16.8	19.6	63.6	100.0(327)	3.7
임금근로자(시간제)	24.6	31.3	44.0	100.0(134)	15.2	18.2	66.7	100.0(33)	3.8
자영업주/고용주	22.2	29.2	48.6	100.0(72)	6.3	18.8	75.0	100.0(16)	3.9
무급가족종사자	23.9	31.3	44.8	100.0(67)	43.8	31.3	25.0	100.0(16)	2.9
미취업	15.8	33.0	51.2	100.0(603)	26.3	16.8	56.8	100.0(95)	3.5
X^2(df)	320.420(8)***				16.388(8)*				2.9*(a)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73.1	16.7	10.3	100.0(156)	10.5	17.5	71.9	100.0(114)	4.0
민간 대기업	60.9	20.3	18.8	100.0(64)	17.9	25.6	56.4	100.0(39)	3.7
민간 중견기업	62.7	29.4	7.8	100.0(51)	12.5	21.9	65.6	100.0(32)	3.7
민간 중소기업	50.8	32.8	16.4	100.0(183)	22.6	14.0	63.4	100.0(93)	3.7
개인사업체	33.7	29.4	36.9	100.0(282)	18.9	24.2	56.8	100.0(95)	3.5
기타	31.1	29.5	39.3	100.0(61)	31.6	26.3	42.1	100.0(19)	3.3
미취업	15.8	33.0	51.2	100.0(603)	26.3	16.8	56.8	100.0(95)	3.5
X^2(df)	285.063(12)***				18.464(12)				2.6*(a)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5$, $^{**}p < .01$, $^{***}p < .00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이용률이 3.2%로 극히 저조하다. 그러나 이용한 이들의 만족도는 68.9%로 매우 높다. 이러한 편차는 모 취업상태·고용형태·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비율이 50.7%로 높고, 정규직·전일제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나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용률이 낮아 해당 제도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더불어 영아 자녀돌봄에 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Ⅴ-2-47〉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3.2	54.7	42.1	100.0(1,400)	20.0	11.1	68.9	100.0(45)	3.7
지역 규모									
대도시	4.1	53.0	42.9	100.0(560)	21.7	17.4	60.9	100.0(23)	3.4
중소도시	2.9	56.3	40.8	100.0(595)	17.6	5.9	76.5	100.0(17)	4.1
읍면지역	2.0	54.7	43.3	100.0(245)	20.0	0.0	80.0	100.0(5)	4.0
X^2(df)	3.617(4)				2.318(4)				1.6
자녀 수									
1명	4.0	51.9	44.1	100.0(601)	16.7	4.2	79.2	100.0(24)	3.8
2명	2.2	56.1	41.7	100.0(631)	35.7	21.4	42.9	100.0(14)	3.2
3명 이상	4.2	59.5	36.3	100.0(168)	0.0	14.3	85.7	100.0(7)	4.4
X^2(df)	7.281(4)				7.741(4)				2.2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4.9	57.2	37.8	100.0(283)	28.6	14.3	57.1	100.0(14)	3.5
만1세 (12~24개월 미만)	3.3	52.7	43.9	100.0(419)	21.4	14.3	64.3	100.0(14)	3.6
만2세 (24~36개월 미만)	2.9	54.7	42.4	100.0(382)	18.2	9.1	72.7	100.0(11)	3.7
만3세 (36~44개월 미만)	1.9	55.1	43.0	100.0(316)	0.0	0.0	100.0	100.0(6)	4.5
X^2(df)	6.775(6)				3.898(6)				0.8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3.0	54.9	42.1	100.0(820)	20.0	8.0	72.0	100.0(25)	3.8
반일제 이상 학원	12.5	50.0	37.5	100.0(8)	100.0	0.0	0.0	100.0(1)	1.0
비혈연 개인양육	15.8	52.6	31.6	100.0(19)	0.0	33.3	66.7	100.0(3)	4.0
혈연 개인양육	0.0	68.2	31.8	100.0(44)	-	-	-	-(0)	-
부모 직접 돌봄	3.1	53.7	43.2	100.0(488)	20.0	13.3	66.7	100.0(15)	3.8
기타	4.8	47.6	47.6	100.0(21)	0.0	0.0	100.0	100.0(1)	4.0
X^2(df)	16.909(10)				6.717(8)				1.1
모 취업 상태									
취업	5.2	57.0	37.8	100.0(542)	14.3	10.7	75.0	100.0(28)	3.9
휴직	2.7	56.9	40.4	100.0(255)	42.9	0.0	57.1	100.0(7)	3.4
학업	0.0	58.8	41.2	100.0(17)	-	-	-	-(0)	-
미취업	1.7	51.5	46.8	100.0(586)	20.0	20.0	60.0	100.0(10)	3.6
X^2(df)	18.720(6)**				4.185(4)				0.3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5.2	64.9	29.9	100.0(518)	18.5	7.4	74.1	100.0(27)	3.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5.0	44.3	50.7	100.0(140)	28.6	14.3	57.1	100.0(7)	3.4
자영업주/고용주	0.0	34.7	65.3	100.0(72)	-	-	-	-(0)	-
무급가족종사자	1.5	46.3	52.2	100.0(67)	0.0	0.0	100.0	100.0(1)	5.0
미취업	1.7	51.7	46.6	100.0(603)	20.0	20.0	60.0	100.0(10)	3.6
X^2(df)	69.401(8)***				2.207(6)				0.5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5.2	63.7	31.1	100.0(524)	14.8	7.4	77.8	100.0(27)	3.9
임금근로자(시간제)	5.2	47.8	47.0	100.0(134)	42.9	14.3	42.9	100.0(7)	3.0
자영업주/고용주	0.0	34.7	65.3	100.0(72)	-	-	-	-(0)	-
무급가족종사자	1.5	46.3	52.2	100.0(67)	0.0	0.0	100.0	100.0(1)	5.0
미취업	1.7	51.7	46.6	100.0(603)	20.0	20.0	60.0	100.0(10)	3.6
X^2(df)	60.931(8)***				4.864(6)				1.2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8.3	60.9	30.8	100.0(156)	7.7	7.7	84.6	100.0(13)	4.2
민간 대기업	6.3	56.3	37.5	100.0(64)	0.0	0.0	100.0	100.0(4)	4.8
민간 중견기업	7.8	66.7	25.5	100.0(51)	25.0	0.0	75.0	100.0(4)	3.5
민간 중소기업	4.9	62.8	32.2	100.0(183)	33.3	11.1	55.6	100.0(9)	3.1
개인사업체	1.8	50.4	47.9	100.0(282)	40.0	20.0	40.0	100.0(5)	3.2
기타	0.0	52.5	47.5	100.0(61)	-	-	-	-(0)	-
미취업	1.7	51.7	46.6	100.0(603)	20.0	20.0	60.0	100.0(10)	3.6
X^2(df)	52.819(12)***				7.730(10)				1.5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p < .01$, $^{***}p < .001$

나) 육아기 돌봄 지원 관련 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또한 이용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미이용 46.1%, 해당사항 없음 42.9%). 그러나 이 정책 또한 이용한 사람의 만족도는 61.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정규직 임금근로자: 20.1%, 전일제 임금근로자: 20.6%). 비정규직·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4.3%, 시간제 임금근로자: 11.9%) 자영업주/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해당 제도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자영업주/고용주: 4.2%, 무급가족종사자: 4.5%). 모 사업장 형태별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종사자가 34.6%로 이용률이 가장 높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경우도 근무환경에 따른 이용 편차를 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Ⅴ-2-4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11.0	46.1	42.9	100.0(1,400)	22.7	15.6	61.7	100.0(154)	3.7
지역 규모									
대도시	12.1	46.3	41.6	100.0(560)	20.6	13.2	66.2	100.0(68)	3.7
중소도시	10.9	46.1	43.0	100.0(595)	24.6	20.0	55.4	100.0(65)	3.7
읍면지역	8.6	46.1	45.3	100.0(245)	23.8	9.5	66.7	100.0(21)	3.8
X^2(df)	2.535(4)				2.524(4)				0.1
자녀 수									
1명	11.3	45.4	43.3	100.0(601)	19.1	16.2	64.7	100.0(68)	3.8
2명	11.1	46.3	42.6	100.0(631)	22.9	14.3	62.9	100.0(70)	3.8
3명 이상	9.5	48.2	42.3	100.0(168)	37.5	18.8	43.8	100.0(16)	3.1
X^2(df)	0.662(4)				3.071(4)				2.2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3.1	45.6	41.3	100.0(283)	24.3	18.9	56.8	100.0(37)	3.6
만1세 (12~24개월 미만)	9.8	41.1	49.2	100.0(419)	17.1	17.1	65.9	100.0(41)	3.8
만2세 (24~36개월 미만)	11.8	47.9	40.3	100.0(382)	20.0	13.3	66.7	100.0(45)	3.9
만3세 (36~44개월 미만)	9.8	51.3	38.9	100.0(316)	32.3	12.9	54.8	100.0(31)	3.4
X^2(df)	12.474(6)				3.294(6)				0.9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12.4	48.4	39.1	100.0(820)	24.5	14.7	60.8	100.0(102)	3.7
반일제 이상 학원	12.5	62.5	25.0	100.0(8)	0.0	0.0	100.0	100.0(1)	4.0
비혈연 개인양육	31.6	21.1	47.4	100.0(19)	0.0	16.7	83.3	100.0(6)	4.5
혈연 개인양육	11.4	65.9	22.7	100.0(44)	20.0	20.0	60.0	100.0(5)	3.8
부모 직접 돌봄	7.4	42.6	50.0	100.0(488)	19.4	16.7	63.9	100.0(36)	3.8
기타	19.0	14.3	66.7	100.0(21)	50.0	25.0	25.0	100.0(4)	2.8
X^2(df)	45.635(10)***				5.368(10)				0.9
모 취업 상태									
취업	18.6	53.5	27.9	100.0(542)	19.8	14.9	65.3	100.0(101)	3.8
휴직	11.4	47.1	41.6	100.0(255)	31.0	13.8	55.2	100.0(29)	3.7
학업	5.9	47.1	47.1	100.0(17)	0.0	0.0	100.0	100.0(1)	5.0
미취업	3.9	38.9	57.2	100.0(586)	26.1	21.7	52.2	100.0(23)	3.4
X^2(df)	125.502(6)***				3.406(6)				0.8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20.1	58.7	21.2	100.0(518)	19.2	13.5	67.3	100.0(104)	3.9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4.3	38.6	47.1	100.0(140)	35.0	20.0	45.0	100.0(20)	3.2
자영업주/고용주	4.2	31.9	63.9	100.0(72)	33.3	33.3	33.3	100.0(3)	2.7
무급가족종사자	4.5	43.3	52.2	100.0(67)	33.3	0.0	66.7	100.0(3)	3.7
미취업	4.0	39.1	56.9	(603)	25.0	20.8	54.2	100.0(24)	3.5
X^2(df)	195.506(8)***				6.344(8)				2.1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20.6	58.2	21.2	100.0(524)	22.2	13.9	63.9	100.0(108)	3.8
임금근로자(시간제)	11.9	39.6	48.5	100.0(134)	18.8	18.8	62.5	100.0(16)	3.6
자영업주/고용주	4.2	31.9	63.9	100.0(72)	33.3	33.3	33.3	100.0(3)	2.7
무급가족종사자	4.5	43.3	52.2	100.0(67)	33.3	0.0	66.7	100.0(3)	3.7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미취업	4.0	39.1	56.9	100.0(603)	25.0	20.8	54.2	100.0(24)	3.5
X^2(df)	199.150(8)***				2.985(8)				0.8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34.6	46.8	18.6	100.0(156)	16.7	16.7	66.7	100.0(54)	4.0
민간 대기업	25.0	51.6	23.4	100.0(64)	31.3	12.5	56.3	100.0(16)	3.6
민간 중견기업	9.8	58.8	31.4	100.0(51)	0.0	20.0	80.0	100.0(5)	4.2
민간 중소기업	13.7	61.7	24.6	100.0(183)	28.0	12.0	60.0	100.0(25)	3.6
개인사업체	9.6	46.8	43.6	100.0(282)	22.2	11.1	66.7	100.0(27)	3.5
기타	4.9	47.5	47.5	100.0(61)	66.7	33.3	0.0	100.0(3)	2.0
미취업	4.0	39.1	56.9	100.0(603)	25.0	20.8	54.2	100.0(24)	3.5
X^2(df)	210.560(12)***				9.973(12)				1.7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 $p < .001$

여타 시간 지원 정책의 이용비율이 낮았지만 가족돌봄휴직의 경우는 이용률이 1.2%로 특히 더 낮았다. 그러나 해당 정책의 경우도 사용한 사례가 매우 적은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만족도가 64.7%로 높게 나타나 시간 지원 정책의 경우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 정책의 경우 모 근무 및 고용형태 별로는 임금근로자가 다른 유형의 근로자 보다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이용률은 저조하다(정규직 임금근로자 이용 : 2.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이용 : 2.1%, 전일제 임금근로자 이용 : 2.1%, 시간제 임금근로자 이용 : 2.2%). 모 사업장 형태별로는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이용 비율이 4.7%로 높게 나타나 여타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는 비교적 해당 정책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49〉 가족돌봄휴직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1.2	54.5	44.3	100.0 (1,400)	23.5	11.8	64.7	100.0(17)	3.6
지역 규모									
대도시	1.4	52.3	46.3	(560)	12.5	25.0	62.5	100.0(8)	3.6
중소도시	0.8	57.5	41.7	(595)	40.0	0.0	60.0	100.0(5)	3.6
읍면지역	1.6	52.2	46.1	(245)	25.0	0.0	75.0	100.0(4)	3.8
X^2(df)	4.522(4)				3.332(4)				0.0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자녀 수									
1명	0.7	52.9	46.4	(601)	0.0	0.0	100.0	100.0(4)	4.3
2명	1.3	55.0	43.7	(631)	25.0	12.5	62.5	100.0(8)	3.8
3명 이상	3.0	58.3	38.7	(168)	40.0	20.0	40.0	100.0(5)	3.0
X^2(df)	8.409(4)				3.535(4)				1.1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4	56.2	42.4	(283)	0.0	0.0	100.0	100.0(4)	4.0
만1세 (12~24개월 미만)	1.7	52.0	46.3	(419)	42.9	14.3	42.9	100.0(7)	3.3
만2세 (24~36개월 미만)	1.3	55.0	43.7	(382)	20.0	0.0	80.0	100.0(5)	4.0
만3세 (36~44개월 미만)	0.3	55.7	44.0	(316)	0.0	100.0	0.0	100.0(1)	3.0
X^2(df)	4.297(6)				12.143(6)				0.5(a)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1.2	54.5	44.3	(820)	30.0	10.0	60.0	100.0(10)	3.6
반일제 이상 학원	0.0	75.0	25.0	(8)	-	-	-	-(0)	-
비혈연 개인양육	5.3	52.6	42.1	(19)	0.0	0.0	100.0	100.0(1)	4.0
혈연 개인양육	0.0	68.2	31.8	(44)	-	-	-	-(0)	-
부모 직접 돌봄	1.0	53.1	45.9	(488)	20.0	0.0	80.0	100.0(5)	3.8
기타	4.8	52.4	42.9	(21)	0.0	100.0	0.0	100.0(1)	3.0
X^2(df)	10.392(10)				9.080(6)				0.1
모 취업 상태									
취업	2.2	59.0	38.7	(542)	25.0	16.7	58.3	100.0(12)	3.6
휴직	1.2	56.9	42.0	(255)	0.0	0.0	100.0	100.0(3)	4.0
학업	0.0	58.8	41.2	(17)	-	-	-	-(0)	-
미취업	0.3	49.1	50.5	(586)	50.0	0.0	50.0	100.0(2)	3.5
X^2(df)	23.034(6)***				2.866(4)				0.1(a)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2.1	66.8	31.1	(518)	9.1	18.2	72.7	100.0(11)	3.9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1	46.4	51.4	(140)	66.7	0.0	33.3	100.0(3)	2.7
자영업주/고용주	0.0	30.6	69.4	(72)	-	-	-	-(0)	-
무급가족종사자	1.5	47.8	50.7	(67)	0.0	0.0	100.0	100.0(1)	4.0
미취업	0.3	49.4	50.2	(603)	50.0	0.0	50.0	100.0(2)	3.5
X^2(df)	74.108(8)***				6.094(6)				0.7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2.1	65.5	32.4	(524)	9.1	18.2	72.7	100.0(11)	3.9
임금근로자(시간제)	2.2	50.7	47.0	(134)	66.7	0.0	33.3	100.0(3)	2.7
자영업주/고용주	0.0	30.6	69.4	(72)	-	-	-	-(0)	-
무급가족종사자	1.5	47.8	50.7	(67)	0.0	0.0	100.0	100.0(1)	4.0
미취업	0.3	49.4	50.2	(603)	50.0	0.0	50.0	100.0(2)	3.5
X^2(df)	64.788(8)***				6.094(6)				0.7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9	67.3	30.8	(156)	0.0	0.0	100.0	100.0(3)	4.3
민간 대기업	4.7	54.7	40.6	(64)	0.0	33.3	66.7	100.0(3)	4.0
민간 중견기업	2.0	68.6	29.4	(51)	0.0	0.0	100.0	100.0(1)	5.0
민간 중소기업	2.7	64.5	32.8	(183)	20.0	20.0	60.0	100.0(5)	3.4
개인사업체	1.1	49.6	49.3	(282)	66.7	0.0	33.3	100.0(3)	2.7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기타	0.0	52.5	47.5	(61)	-	-	-	-(0)	-
미취업	0.3	49.4	50.2	(603)	50.0	0.0	50.0	100.0(2)	3.5
X^2(df)	50.626(12)***				8.487(10)				0.8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 p <.001

유연근무제 제도 또한 이용률이 11.4%로 낮으며 만족도는 67.5%로 높다. 유연근무제도 또한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모의 근로 환경에 따라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전일제 근로자의 이용률이 높고(정규직 임금근로자: 19.1%, 전일제 임금근로자: 18.1%),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16.4%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이용률이 비교적 높다. 한편, 모 사업장 형태별로는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종사자의 이용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았으나, 해당 제도는 민간 대기업의 종사자의 이용률이 2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기업이 근무 유형의 선택이 공공기관보다 다소 유연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2-50〉 유연근무제 정책 이용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전체	11.4	44.9	43.7	100.0(1,400)	12.5	20.0	67.5	100.0(160)	3.9
지역 규모									
대도시	12.5	45.4	42.1	100.0(560)	12.9	25.7	61.4	100.0(70)	3.8
중소도시	11.3	44.0	44.7	100.0(595)	11.9	14.9	73.1	100.0(67)	3.9
읍면지역	9.4	45.7	44.9	100.0(245)	13.0	17.4	69.6	100.0(23)	4.1
X^2(df)	2.160(4)				2.825(4)				0.9
자녀 수									
1명	12.6	43.4	43.9	100.0(601)	6.6	21.1	72.4	100.0(76)	4.0
2명	9.8	46.9	43.3	100.0(631)	17.7	16.1	66.1	100.0(62)	3.8
3명 이상	13.1	42.3	44.6	100.0(168)	18.2	27.3	54.5	100.0(22)	3.7
X^2(df)	3.793(4)				5.982(4)				0.6(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3.8	43.5	42.8	100.0(283)	12.8	28.2	59.0	100.0(39)	3.6
만1세 (12~24개월 미만)	10.7	43.7	45.6	100.0(419)	8.9	24.4	66.7	100.0(45)	3.8
만2세 (24~36개월 미만)	9.9	46.9	43.2	100.0(382)	13.2	13.2	73.7	100.0(38)	4.1
만3세 (36~44개월 미만)	12.0	45.3	42.7	100.0(316)	15.8	13.2	71.1	100.0(38)	4.0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X^2(df)	3.471(6)				5.062(6)				1.0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12.0	46.6	41.5	100.0(820)	14.3	16.3	69.4	100.0(98)	3.9
반일제 이상 학원	25.0	37.5	37.5	100.0(8)	50.0	50.0	0.0	100.0(2)	2.0
비혈연 개인양육	36.8	26.3	36.8	100.0(19)	0.0	28.6	71.4	100.0(7)	4.3
혈연 개인양육	13.6	63.6	22.7	100.0(44)	0.0	16.7	83.3	100.0(6)	3.8
부모 직접 돌봄	8.8	41.6	49.6	100.0(488)	9.3	27.9	62.8	100.0(43)	3.8
기타	19.0	33.3	47.6	100.0(21)	25.0	0.0	75.0	100.0(4)	3.3
X^2(df)	33.323(10)***				10.788(10)				1.7
모 취업 상태									
취업	17.5	50.6	31.9	100.0(542)	10.5	20.0	69.5	100.0(95)	4.0
휴직	13.3	48.6	38.0	100.0(255)	14.7	20.6	64.7	100.0(34)	3.7
학업	17.6	47.1	35.3	100.0(17)	0.0	0.0	100.0	100.0(3)	4.3
미취업	4.8	37.9	57.3	100.0(586)	17.9	21.4	60.7	100.0(28)	3.7
X^2(df)	97.089(6)***				2.835(6)				0.8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19.1	56.2	24.7	100.0(518)	12.1	18.2	69.7	100.0(99)	3.9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2.9	40.7	46.4	100.0(140)	0.0	33.3	66.7	100.0(18)	4.1
자영업주/고용주	12.5	30.6	56.9	100.0(72)	22.2	22.2	55.6	100.0(9)	3.9
무급가족종사자	4.5	41.8	53.7	100.0(67)	33.3	0.0	66.7	100.0(3)	3.3
미취업	5.1	38.1	56.7	100.0(603)	16.1	19.4	64.5	100.0(31)	3.8
X^2(df)	146.361(8)***				7.007(8)				0.4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18.1	56.5	25.4	100.0(4)	11.6	21.1	67.4	100.0(95)	3.9
임금근로자(시간제)	16.4	38.8	44.8	100.0(134)	4.5	18.2	77.3	100.0(22)	4.1
자영업주/고용주	12.5	30.6	56.9	100.0(72)	22.2	22.2	55.6	100.0(9)	3.9
무급가족종사자	4.5	41.8	53.7	100.0(67)	33.3	0.0	66.7	100.0(3)	3.3
미취업	5.1	38.1	56.7	100.0(603)	16.1	19.4	64.5	100.0(31)	3.8
X^2(df)	141.715(8)***				4.488(8)				0.4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8.6	53.8	27.6	100.0(156)	13.8	13.8	72.4	100.0(29)	4.0
민간 대기업	29.7	35.9	34.4	100.0(64)	15.8	21.1	63.2	100.0(19)	3.7
민간 중견기업	17.6	52.9	29.4	100.0(51)	22.2	22.2	55.6	100.0(9)	3.6
민간 중소기업	16.4	62.8	20.8	100.0(183)	16.7	23.3	60.0	100.0(30)	3.8
개인사업체	13.1	42.6	44.3	100.0(282)	2.7	24.3	73.0	100.0(37)	4.1
기타	8.2	47.5	44.3	100.0(61)	0.0	0.0	100.0	100.0(5)	4.2
미취업	5.1	38.1	56.7	100.0(603)	16.1	19.4	64.5	100.0(31)	3.8
X^2(df)	136.208(12)***				8.788(12)				0.6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 $p < .001$

그렇다면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형태는 무엇인가?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제도 유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43.8%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이용비율은 모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가장 이용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과 대조를 이룬다.

〈표 Ⅴ-2-51〉 이용한 유연근무제 유형

단위: %(명)

구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계(수)
전체	57.5	43.8	3.8	14.4	3.1	100.0(160)
모 취업 상태						
취업	57.9	43.2	4.2	13.7	3.2	100.0(95)
휴직	58.8	44.1	5.9	17.6	5.9	100.0(34)
학업	66.7	66.7	0.0	33.3	0.0	100.0(3)
미취업	53.6	42.9	0.0	10.7	0.0	100.0(28)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63.6	42.4	6.1	8.1	4.0	100.0 (99)
임금근로자(비정규직)	50.0	38.9	0.0	44.4	5.6	100.0(18)
자영업주/고용주	33.3	44.4	0.0	22.2	0.0	100.0(9)
무급가족종사자	0.0	100.0	0.0	33.3	0.0	100.0(3)
미취업	54.8	45.2	0.0	12.9	0.0	100.0(31)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66.3	41.1	5.3	12.6	4.2	100.0 (95)
임금근로자(시간제)	40.9	45.5	4.5	18.2	4.5	100.0(22)
자영업주/고용주	33.3	44.4	0.0	22.2	0.0	100.0(9)
무급가족종사자	0.0	100.0	0.0	33.3	0.0	100.0(3)
미취업	54.8	45.2	0.0	12.9	0.0	100.0(31)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82.8	27.6	3.4	13.8	3.4	100.0(29)
민간 대기업	57.9	52.6	0.0	5.3	5.3	100.0(19)
민간 중견기업	66.7	44.4	0.0	11.1	0.0	100.0(9)
민간 중소기업	56.7	50.0	3.3	10.0	6.7	100.0(30)
개인사업체	40.5	45.9	10.8	24.3	0.0	100.0(37)
기타	40.0	40.0	0.0	20.0	20.0	100.0(5)
미취업	54.8	45.2	0.0	12.9	0.0	100.0(31)

그 밖에 시간외 근로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허용 등의 제도 또한 이용한 비율이 극히 드물었다(시간 외 근로금지 : 7.1%, 야근근로·휴일근로 제한 : 6.9%, 수유시간 허용 : 2.5%). 그러나 여타 시간 지원 정책과 동일하게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 시간 지원 정책의 실질적 사용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표 V-2-52〉 시간외 근로금지,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허용 정책 이용 여부 및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자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평균
시간외 근로금지	7.1	49.3	43.6	100.0(1,400)	25.0	19.0	56.0	100.0(100)	3.6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6.9	48.9	44.3	100.0(1,400)	18.8	15.6	65.6	100.0(96)	3.8
수유시간 허용	2.5	49.0	48.5	100.0(1,400)	11.4	22.9	65.7	100.0(35)	4.0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

시간 지원 정책 중 영아자녀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1순위는 출산전휴휴가가 48%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18.5%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도 11.3%와 5.9%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간 지원 정책의 경우 모의 근로환경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커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감안하되, 해당 정책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V-2-53〉 영아자녀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간 지원 정책 1순위

단위: %(명)

구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가족돌봄휴직	시간외근로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제한	수유시간허용	유연근무제	계(수)
전체	48.0	0.4	11.3	1.3	18.5	5.9	5.2	1.4	1.1	0.6	0.4	5.9	100.0(1,400)
연령													
20대	51.6	1.6	16.4	0.0	16.4	3.1	4.7	0.8	0.8	0.0	0.0	4.7	100.0(128)
30대	47.8	0.3	10.8	1.3	18.7	6.3	5.5	1.4	1.2	0.7	0.4	5.5	100.0(1,134)
40대	46.4	0.0	10.1	2.2	18.8	5.1	3.6	2.2	0.7	0.0	0.7	10.1	100.0(138)
X^2(df)	24.638(22)												
자녀 수													
1명	51.1	0.5	11.1	1.0	18.8	4.0	4.3	1.0	0.7	0.5	0.5	6.5	100.0(601)
2명	46.6	0.3	10.5	1.6	17.9	7.3	6.2	1.9	1.6	0.6	0.2	5.4	100.0(631)
3명 이상	42.3	0.0	14.9	1.2	19.6	7.7	4.8	1.2	1.2	0.6	1.2	5.4	100.0(168)
X^2(df)	24.144(22)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47.3	0.7	13.4	1.4	19.4	5.3	5.7	1.4	1.1	0.7	0.7	2.8	100.0(283)
만1세 (12~24개월 미만)	49.2	0.0	12.2	1.4	15.5	6.0	5.3	1.7	1.4	0.2	0.7	6.4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47.4	0.3	10.2	1.3	19.9	6.3	5.5	1.0	1.0	1.0	0.3	5.8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47.8	0.6	9.5	0.9	19.9	6.0	4.4	1.6	0.9	0.3	0.0	7.9	100.0(316)
X^2(df)	23.983(33)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50.7	0.4	8.9	1.1	18.4	6.0	4.5	1.3	1.1	0.6	0.1	6.8	100.0(820)

구분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난임 치료 휴가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가족 돌봄 휴직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 근로·휴일 근로 제한	수유 시간 허용	유연 근무제	계(수)
반일제 이상 학원	62.5	0.0	0.0	12.5	0.0	0.0	12.5	0.0	0.0	12.5	0.0	0.0	100.0(8)
비혈연 개인양육	52.6	0.0	21.1	0.0	15.8	0.0	10.5	0.0	0.0	0.0	0.0	0.0	100.0(19)
혈연 개인양육	52.3	0.0	2.3	0.0	15.9	13.6	2.3	2.3	0.0	0.0	0.0	11.4	100.0(44)
부모 직접 돌봄	42.6	0.2	16.2	1.2	19.5	5.7	6.1	1.6	1.2	0.4	1.0	4.1	100.0(488)
기타	47.6	4.8	4.8	9.5	14.3	0.0	9.5	0.0	4.8	0.0	0.0	4.8	100.0(21)
X^2(df)	111.161(55)***												
모 취업 상태													
취업	50.9	0.4	6.6	0.7	21.0	6.6	4.1	1.5	0.9	0.9	0.2	6.1	100.0(542)
휴직	50.6	0.0	14.1	0.4	15.3	5.1	6.7	0.8	0.8	0.4	0.8	5.1	100.0(255)
학업	70.6	0.0	0.0	0.0	5.9	0.0	5.9	0.0	5.9	0.0	0.0	11.8	100.0(17)
미취업	43.5	0.5	14.7	2.2	17.9	5.8	5.6	1.7	1.4	0.3	0.5	5.8	100.0(586)
X^2(df)	53.681(33)*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53.5	0.4	6.0	0.2	21.2	5.6	5.0	0.6	0.2	1.0	0.2	6.2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45.0	0.0	12.1	1.4	18.6	6.4	4.3	1.4	2.9	0.7	1.4	5.7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43.1	0.0	11.1	2.8	15.3	9.7	6.9	5.6	1.4	0.0	0.0	4.2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50.7	0.0	23.9	0.0	9.0	6.0	3.0	1.5	1.5	0.0	0.0	4.5	100.0(67)
미취업	44.3	0.5	14.3	2.2	17.6	5.6	5.6	1.7	1.5	0.3	0.5	6.0	100.0(603)
X^2(df)	82.281(44)***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53.1	0.2	5.0	0.4	22.9	5.9	4.2	1.0	0.4	0.8	0.2	6.1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46.3	0.7	16.4	0.7	11.9	5.2	7.5	0.0	2.2	1.5	1.5	6.0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43.1	0.0	11.1	2.8	15.3	9.7	6.9	5.6	1.4	0.0	0.0	4.2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50.7	0.0	23.9	0.0	9.0	6.0	3.0	1.5	1.5	0.0	0.0	4.5	100.0(67)
미취업	44.3	0.5	14.3	2.2	17.6	5.6	5.6	1.7	1.5	0.3	0.5	6.0	100.0(603)
X^2(df)	95.783(44)***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57.7	0.0	3.8	0.6	23.1	3.8	5.8	0.0	0.0	0.6	0.6	3.8	100.0(156)
민간 대기업	46.9	0.0	4.7	0.0	28.1	9.4	1.6	0.0	0.0	3.1	1.6	4.7	100.0(64)
민간 중견기업	47.1	0.0	11.8	2.0	11.8	3.9	5.9	2.0	0.0	0.0	0.0	15.7	100.0(51)
민간 중소기업	58.5	0.0	6.0	0.0	20.8	6.0	2.7	0.5	1.1	0.0	0.0	4.4	100.0(183)
개인사업체	46.5	0.4	12.4	1.1	15.6	6.4	6.4	2.1	1.4	1.1	0.4	6.4	100.0(282)
기타	37.7	1.6	18.0	0.0	18.0	9.8	4.9	3.3	1.6	0.0	0.0	4.9	100.0(61)
미취업	44.3	0.5	14.3	2.2	17.6	5.6	5.6	1.7	1.5	0.3	0.5	6.0	100.0(603)
X^2(df)	99.194(66)**												

*p <.05, **p <.01, ***p <.001

4)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

영아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이용도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비용 지원 정책을 제외한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및 시간 지원 정책의 경우 이용률이 낮으

나 일단 이용한 이용자가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용 지원 정책과 같은 보편적인 정책을 제외한 다수의 정책들의 전반적인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정책이 아무리 다양하게 있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못한 수요자의 경우는 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이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86.9%에 달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영업주/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 경우 지원이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0.3%와 97%에 달한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정책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유형들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정책의 보완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 정책이 특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표 Ⅴ-2-54〉 영아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 충분성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13.1	86.9	100.0(1,400)
자녀 수			
1명	11.1	88.9	100.0(601)
2명	15.1	84.9	100.0(631)
3명 이상	13.1	86.9	100.0(168)
X^2(df)	4.117(2)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1.3	88.7	100.0(283)
만1세 (12~24개월 미만)	13.4	86.6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14.4	85.6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13.0	87.0	100.0(316)
X^2(df)	1.388(3)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13.9	86.1	100.0(820)
반일제 이상 학원	37.5	62.5	100.0(8)
비혈연 개인양육	21.1	78.9	100.0(19)
혈연 개인양육	18.2	81.8	100.0(44)
부모 직접 돌봄	9.6	90.4	100.0(488)
기타	38.1	61.9	100.0(21)
X^2(df)	23.318(5)***		
모 취업 상태			
취업	14.6	85.4	100.0(542)
휴직	13.3	86.7	100.0(255)
학업	17.6	82.4	100.0(17)
미취업	11.6	88.4	100.0(586)
X^2(df)	2.500(3)		

구분	예	아니오	계(수)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16.8	83.2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2.1	87.9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9.7	90.3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3.0	97.0	100.0(67)
미취업	11.8	88.2	100.0(603)
X^2(df)	13.959(4)**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15.8	84.2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15.7	84.3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9.7	90.3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3.0	97.0	100.0(67)
미취업	11.8	88.2	100.0(603)
X^2(df)	11.872(4)*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6.0	84.0	100.0(156)
민간 대기업	20.3	79.7	100.0(64)
민간 중견기업	11.8	88.2	100.0(51)
민간 중소기업	16.4	83.6	100.0(183)
개인사업체	13.1	86.9	100.0(282)
기타	3.3	96.7	100.0(61)
미취업	11.8	88.2	100.0(603)
X^2(df)	11.985(6)		

*p <.05, **p <.01, ***p <.001

영아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범주는 비용 지원 정책이 4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 정책이 35.4%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비용지원 정책의 경우 여타 정책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으나 금액의 충분성이나 질적인 측면이 현재로서는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편차는 모 근무형태와 사업장 형태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용지원 정책과 시간지원 정책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비율이 비슷하나(비용지원 정책 : 41.7%, 시간 지원 정책 : 40.6%),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54.0%가 비용지원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하였고, 34.5%만이 시간 지원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임금근로자 보다 시간적인 유연성이 좀 더 확보되므로 비용 지원 정책의 불충분한다고 좀 더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모 사업장 형태별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용 지원 정책에 비해 시간 지원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좀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비용지원 정책 : 38.9%, 시간 지원 정책 : 42.0%). 이는 앞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유연근무제도의 미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시간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풀이될 수 있다.

〈표 Ⅴ-2-55〉 영아 양육을 위한 정부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범주

단위: %(명)

구분	비용지원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정책	시간 정책	기타	계(수)
전체	46.7	15.2	35.4	2.7	100.0(1,216)
X^2(df)			4.488(6)		
자녀 수					
1명	44.8	14.4	37.6	3.2	100.0(534)
2명	45.7	16.6	35.3	2.4	100.0(536)
3명 이상	57.5	13.0	27.4	2.1	100.0(146)
X^2(df)			9.817(6)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47.0	13.9	36.7	2.4	100.0(251)
만1세 (12~24개월 미만)	44.6	15.7	36.4	3.3	100.0(363)
만2세 (24~36개월 미만)	45.6	16.8	34.6	3.1	100.0(327)
만3세 (36~44개월 미만)	50.5	13.8	33.8	1.8	100.0(275)
X^2(df)			4.516(9)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46.9	14.6	35.6	3.0	100.0(706)
반일제 이상 학원	100.0	0.0	0.0	0.0	100.0(5)
비혈연 개인양육	46.7	13.3	40.0	0.0	100.0(15)
혈연 개인양육	36.1	16.7	44.4	2.8	100.0(36)
부모 직접 돌봄	46.7	15.9	34.9	2.5	100.0(441)
기타	46.2	30.8	23.1	0.0	100.0(13)
X^2(df)			11.568(15)		
모 취업 상태					
취업	44.9	14.0	37.4	3.7	100.0(463)
휴직	48.4	14.0	35.7	1.8	100.0(221)
학업	57.1	7.1	35.7	0.0	100.0(14)
미취업	47.3	17.0	33.4	2.3	100.0(518)
X^2(df)			7.127(9)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43.4	13.2	39.9	3.5	100.0(431)
임금근로자(비정규직)	47.2	12.2	37.4	3.3	100.0(123)
자영업주/고용주	61.5	18.5	20.0	0.0	100.0(65)
무급가족종사자	46.2	18.5	32.3	3.1	100.0(65)
미취업	47.6	16.7	33.5	2.3	100.0(532)
X^2(df)			18.719(12)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41.7	14.1	40.6	3.6	100.0(441)
임금근로자(시간제)	54.0	8.8	34.5	2.7	100.0(113)

구분	비용지원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정책	시간 정책	기타	계(수)
자영업주/고용주	61.5	18.5	20.0	0.0	100.0(65)
무급가족종사자	46.2	18.5	32.3	3.1	100.0(65)
미취업	47.6	16.7	33.5	2.3	100.0(532)
X^2(df)	23.925(12)*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38.9	16.8	42.0	2.3	100.0(131)
민간 대기업	47.1	11.8	37.3	3.9	100.0(51)
민간 중견기업	33.3	20.0	44.4	2.2	100.0(45)
민간 중소기업	43.1	10.5	42.5	3.9	100.0(153)
개인사업체	55.1	15.9	27.8	1.2	100.0(245)
기타	40.7	6.8	42.4	10.2	100.0(59)
미취업	47.6	16.7	33.5	2.3	100.0(532)
X^2(df)	41.301(18)**				

*p <.05, **p <.01

영아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1순위는 정책 비용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이 3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책의 실질적 작동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29.0%로 나타났다. 정책사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미정착되었다는 비율도 17.2%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풀이하면 다양한 영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백화점 식으로 다양하게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영아 양육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작동하기에는 예산 투입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맥락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Ⅴ-2-56〉 영아 양육을 위한 정부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1순위

단위: %(명)

구분	정책이 중복되어 효과 미흡	정책에 대한 홍보 미흡	정책에 대한 설명 미흡	정책별 비용이 낮게 책정	정책의 실질적 작동 미흡	정책사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미정착	정책대상이 한정적어서 대부분 미해당	기타	계(수)
전체	2.7	6.7	3.1	31.9	29.0	17.2	8.7	0.6	100.0(1,216)

지금까지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이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해당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응답자들에게 추가 납세 의향을 물어본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8.7%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도 41.3%였다. 모 고용과 근무 형태 별로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각각 64.7%와 65.3%로 높았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54.4%가 추가적인 납세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모 사업장 형태별로는 민간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68.6%의 가장 높은 비율로 추가적인 납세 의향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표 Ⅴ-2-57〉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확대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 의향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58.7	41.3	100.0(1,400)
지역 규모			
대도시	55.9	44.1	100.0(560)
중소도시	60.7	39.3	100.0(595)
읍면지역	60.4	39.6	100.0(245)
X^2(df)	3.070(2)		
자녀 수			
1명	61.6	38.4	100.0(601)
2명	56.4	43.6	100.0(631)
3명 이상	57.1	42.9	100.0(168)
X^2(df)	3.557(2)		
모 취업 상태			
취업	60.9	39.1	100.0(542)
휴직	64.3	35.7	100.0(255)
학업	52.9	47.1	100.0(17)
미취업	54.4	45.6	100.0(586)
X^2(df)	9.009(3)*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64.7	35.3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57.9	42.1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56.9	43.1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55.2	44.8	100.0(67)
미취업	54.4	45.6	100.0(603)
X^2(df)	12.698(4)*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65.3	34.7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55.2	44.8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56.9	43.1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55.2	44.8	100.0(67)
미취업	54.4	45.6	100.0(603)
X^2(df)	15.027(4)**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67.3	32.7	100.0(156)
민간 대기업	60.9	39.1	100.0(64)
민간 중견기업	68.6	31.4	100.0(51)

구분	예	아니오	계(수)
민간 중소기업	63.4	36.6	100.0(183)
개인사업체	59.9	40.1	100.0(282)
기타	49.2	50.8	100.0(61)
미취업	54.4	45.6	100.0(603)
X^2(df)	15.700(6)*		

*p <.05, **p <.01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확대된 재정이 어떤 정책의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응답자들은 어린이집을 통한 기관 대리양육의 질적 개선과 가정 양육 지원의 두 가지 축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국공립 확충 등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 22.7%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조인력 증가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의 어린이집 인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2%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인상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요구도 5.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양육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비율도 21.8%로 높았다. 비용 지원과 더불어 가정 양육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 진행,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가정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7.4%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직접 돌보는 양육 유형이 선호되는 어린 영아 자녀일수록 가정 양육 지원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기관을 통한 서비스 중심의 정책은 영아 자녀의 생애 주기 별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V-2-58〉 확대된 정부 재정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정책 1순위

단위: %(명)

구분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충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국공립 확충 등)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가정양육 수당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물리적 보육환경 개선	어린이집 인적환경 개선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지원	보육서비스 다양화	보육재정 안정화	질높은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정 내 양육지원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기타 (아동수당 확대)	계(수)
전체	5.3	8.3	22.7	2.0	21.8	5.9	1.6	9.2	4.9	3.6	1.4	1.9	7.4	1.0	3.1	100.0(1,400)
지역 규모																
대도시	5.4	9.1	23.2	2.0	21.3	4.8	1.3	10.9	5.4	2.7	1.6	1.8	7.1	1.1	2.5	100.0(560)
중소도시	6.2	8.4	23.9	2.0	21.0	6.9	1.5	7.9	4.2	4.0	0.8	1.7	6.9	0.7	3.9	100.0(595)
읍면지역	2.9	6.1	18.8	2.0	24.9	5.7	2.9	8.6	5.3	4.5	2.0	2.9	9.4	1.6	2.4	100.0(245)
X^2(df)	28.881(28)															
자녀 수																
1명	4.7	8.0	25.3	2.5	21.0	4.7	1.3	7.7	5.3	2.8	1.5	2.5	8.8	1.2	2.8	100.0(601)
2명	5.9	8.6	21.2	1.6	23.0	5.5	1.7	11.7	4.1	4.1	1.1	1.6	6.0	0.8	3.0	100.0(631)
3명 이상	5.4	8.3	19.0	1.8	20.2	11.3	2.4	5.4	6.0	4.2	1.8	1.2	7.7	1.2	4.2	100.0(168)
X^2(df)	36.135(28)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3.5	8.5	23.7	0.7	25.8	5.7	1.8	5.7	3.5	2.8	1.4	1.8	12.0	0.7	2.5	100.0(283)
만1세 (12~24개월 미만)	4.8	6.4	23.2	1.7	26.7	6.7	1.2	8.4	2.6	4.1	1.2	1.0	7.9	1.4	2.9	100.0(419)
만2세 (24~36개월 미만)	5.5	9.9	22.0	2.6	17.0	5.0	1.3	9.9	7.6	4.2	2.1	3.4	5.5	1.0	2.9	100.0(382)
만3세 (36~44개월 미만)	7.3	8.5	22.2	2.8	17.4	6.0	2.5	12.7	5.7	2.8	0.6	1.6	5.1	0.6	4.1	100.0(316)
X^2(df)	75.580(42)**															
모 취업 상태																
취업	4.8	10.9	21.2	2.4	15.7	7.0	1.1	12.7	5.0	4.1	1.8	1.5	7.6	0.9	3.3	100.0(542)
휴직	5.9	8.6	20.8	2.0	26.7	7.1	3.1	6.3	4.3	2.4	0.8	1.6	7.1	1.6	2.0	100.0(255)
학업	11.8	5.9	23.5	5.9	5.9	0.0	0.0	0.0	11.8	0.0	5.9	5.9	11.8	5.9	5.9	100.0(17)

구분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충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 (국공립 확충 등)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가정 양육 수당 인상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물리적 보육 환경 개선	어린이집 인적 환경 개선	보육 교사 전문성 제고 지원	보육 서비스 다양화	보육 재정 안정화	질높은 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정 내 양육 지원 강화	육아 종합 지원 센터 확충	기타 (아동수당 확대)	계(수)
미취업	5.3	5.8	24.9	1.5	25.8	4.4	1.5	7.5	4.8	3.8	1.0	2.4	7.3	0.7	3.2	100.0(586)
X^2(df)	75.179(42)**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4.1	11.4	23.2	2.5	16.6	6.9	2.1	11.8	5.4	3.9	1.7	1.4	6.4	0.4	2.3	100.0(5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9.3	7.9	16.4	0.7	19.3	7.9	1.4	8.6	4.3	3.6	2.1	1.4	10.0	2.9	4.3	100.0(140)
자영업주/고용주	5.6	6.9	25.0	4.2	29.2	4.2	1.4	4.2	2.8	2.8	0.0	0.0	6.9	1.4	5.6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4.5	9.0	10.4	1.5	28.4	9.0	0.0	13.4	3.0	1.5	0.0	4.5	10.4	3.0	1.5	100.0(67)
미취업	5.5	5.8	24.9	1.7	25.2	4.3	1.5	7.3	5.0	3.6	1.2	2.5	7.5	0.8	3.3	100.0(603)
X^2(df)	87.263(56)**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3.8	10.7	22.5	2.5	16.8	7.4	2.1	12.0	4.8	4.2	1.9	0.8	6.9	0.4	3.2	100.0(524)
임금근로자(시간제)	10.4	10.4	18.7	0.7	18.7	6.0	1.5	7.5	6.7	2.2	1.5	3.7	8.2	3.0	0.7	100.0(134)
자영업주/고용주	5.6	6.9	25.0	4.2	29.2	4.2	1.4	4.2	2.8	2.8	0.0	0.0	6.9	1.4	5.6	100.0(72)
무급가족종사자	4.5	9.0	10.4	1.5	28.4	9.0	0.0	13.4	3.0	1.5	0.0	4.5	10.4	3.0	1.5	100.0(67)
미취업	5.5	5.8	24.9	1.7	25.2	4.3	1.5	7.3	5.0	3.6	1.2	2.5	7.5	0.8	3.3	100.0(603)
X^2(df)	94.373(56)**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5.8	12.2	26.9	1.9	16.0	6.4	3.2	8.3	3.2	5.1	2.6	1.9	3.2	0.0	3.2	100.0(156)
민간 대기업	1.6	15.6	28.1	1.6	15.6	4.7	1.6	7.8	6.3	4.7	6.3	0.0	4.7	0.0	1.6	100.0(64)
민간 중견기업	3.9	15.7	25.5	2.0	13.7	5.9	2.0	5.9	7.8	3.9	0.0	2.0	7.8	0.0	3.9	100.0(51)
민간 중소기업	3.8	11.5	20.2	2.2	19.1	7.1	1.1	13.1	6.6	2.2	0.5	0.0	7.7	1.6	3.3	100.0(183)
개인사업체	6.7	6.7	17.0	3.2	22.0	7.4	1.8	12.8	3.9	3.2	1.1	2.1	8.2	1.8	2.1	100.0(282)
기타	4.9	6.6	16.4	0.0	23.0	9.8	0.0	6.6	3.3	3.3	0.0	3.3	16.4	1.6	4.9	100.0(61)
미취업	5.5	5.8	24.9	1.7	25.2	4.3	1.5	7.3	5.0	3.6	1.2	2.5	7.5	0.8	3.3	100.0(603)

구분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충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 (국공립 확충 등)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가정 양육 수당 인상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물리적 보육 환경 개선	어린이집 인적 환경 개선	보육 교사 전문성 제고 지원	보육 서비스 다양화	보육 재정 안정화	질높은 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정 내 양육 지원 강화	육아 종합 지원 센터 확충	기타 (아동수당 확대)	계(수)
X^2(df)	111.656(8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2.0	4.0	20.0	8.0	36.0	8.0	0.0	0.0	0.0	0.0	0.0	0.0	12.0	0.0	0.0	100.0(25)
200만원~350만원 미만	7.4	6.2	19.2	1.4	28.9	5.5	0.7	6.7	4.6	3.0	1.2	3.0	7.9	0.7	3.7	100.0(433)
350만원~500만원 미만	5.5	7.9	26.6	1.4	19.9	6.0	1.8	9.0	5.1	3.9	1.2	0.9	7.6	1.2	2.1	100.0(433)
500만원~650만원 미만	2.9	10.9	22.7	2.6	17.5	6.6	1.7	11.5	4.3	2.9	2.0	2.3	7.2	1.7	3.2	100.0(348)
650만원~800만원 미만	3.4	11.2	24.7	3.4	11.2	3.4	4.5	13.5	6.7	4.5	2.2	1.1	5.6	0.0	4.5	100.0(89)
800만원 이상	2.8	8.3	19.4	2.8	19.4	5.6	2.8	12.5	6.9	8.3	0.0	1.4	5.6	0.0	4.2	100.0(72)
X^2(df)	99.440(70)*															

*p <.05, **p <.01

3.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정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분석을 시행한다. 첫째, 현재 이용하는 양육형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양육형태 만족도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보통/약간 만족/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자료를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현재 양육형태와 선호하는 양육형태 일치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와 선호 양육형태 일치 여부 자료를 사용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양육형태 만족도 분석

먼저 현재 이용하는 양육형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양육형태 만족도는 순위 만족도(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보통/약간 만족/매우 만족)로 조사되었으므로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서의 종속변수는 현재 이용 중인 양육형태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보통/약간 만족/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형태의 순서화(ordered)된 응답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응답에서 다음 응답으로의 순서가 있는 형태의 응답이므로 순서화 로짓 모델(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응답을 확률 개념으로 분석한다. 해당 모델은 일반적인 이항(binary) 선택이 아닌 순서화된 다항(polytomous) 선택을 분석하는 모델로 아래 식(1)과 같은 이항 로짓 모델(Binary logit model)로부터 순서화 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면 아래와 같다(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 2005: 142; 김나영 외, 2018: 73-74, 재인용).

$$y^{*} = \sum_{k=1}^{K} \beta_i x_{i+} \epsilon, \ \text{단}, \epsilon(0, \sigma^2) \quad (1)$$

y^{*}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이며, 관찰 가능한 응답 y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순서화 로짓 모델은 아래 식(2)와 같이 도출된다(이성우 외,

2005: 145; 김나영 외, 2018: 73-74, 재인용).

$$(2) \qquad \log[\frac{P(y \le j|x)}{1-P(y \le j|x)}] = \mu - \sum_{k=1}^{K} \beta_k x_k, \text{ 단, } j = 1, 2, \cdots, J-1$$

이에 따라 현재 이용 양육형태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준 요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여 순서화 로짓모델로 분석하였다.

$$DV1 = \alpha_0 + \alpha_1 CA + \alpha_2 WS + \alpha_3 CF + \alpha_4 IN + \alpha_5 EDU2 + \alpha_6 EDU3 + \alpha_7 ET + \alpha_8 NC + \epsilon$$

〈표 V-3-1〉 로짓모델 분석변수

변수명	내용		상세
DV1	현재 이용 양육형태 만족도		1 매우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CA	자녀 월령		
WS	취업상태(모)		0 미취업 1 취업
CF	기관 이용여부(막내자녀)		0 비기관 1 기관
IN	월 평균 수입		월 평균수입 자연로그 변환함(원 단위: 만원)
EDU1	최종학력(모)1)	고졸 이하	
EDU2		대졸	
EDU3		대학원 이상	
ET	추가세금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세금 징수 시 부담 여부 0 아니요 1 예
NC	자녀수		

주: 1) Reference: EDU1(고졸이하)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취업상태(모)(r=0.046, p<0.1), 월 평균 수입(r=0.0692, p<0.05), 자녀수(r=0.072, p<0.01) 등은 양육형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Ⅴ-3-2〉 양육형태 만족도 상관관계

	양육형태 만족도	자녀 월령	취업상태 (모)	기관이용여부 (막내자녀)	월 평균 수입	대졸	대학원 이상	추가세금	자녀수
양육형태 만족도	1								
자녀 월령	0.004 (0.886)	1							
취업상태 (모)	0.046* (0.09)	0.1988*** (0)	1						
기관 이용 여부 (막내자녀)	0.0379 (0.1614)	0.5596*** (0)	0.3415*** (0)	1					
월 평균 수입	0.0692** (0.0104)	0.0726*** (0.0072)	0.3897*** (0)	0.1366*** (0)	1				
대졸	0.0173 (0.5235)	-0.0266 (0.3263)	0.0138 (0.6095)	-0.0191 (0.4796)	0.0293 (0.2789)	1			
대학원 이상	0.0046 (0.8636)	0.0076 (0.7798)	0.0614** (0.0231)	-0.0212 (0.4326)	0.148*** (0)	-0.6151*** (0)	1		
추가세금	0.0393 (0.1462)	-0.0279 (0.3016)	0.0339 (0.2094)	0.0018 (0.9468)	0.0828*** (0.0022)	0.0549** (0.0422)	0.0106 (0.6963)	1	
자녀수	0.072*** (0.0077)	0.0216 (0.4244)	-0.0188 (0.4859)	0.0626** (0.0205)	0.0407 (0.1318)	0.0063 (0.8162)	-0.0702*** (0.0094)	-0.0394 (0.1448)	1

*p<.1 **p<.05 ***p<.01

순서화 로짓모델 분석 결과, 월 평균 수입, 추가세금 지불 여부, 자녀수는 양육형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3〉 양육형태 만족도 분석 결과

		계수(S.D.)	Odds ratio(S.D.)
자녀 월령		0.00 (0.00)	1.00 (0.00)
취업상태 (모)		0.05 (0.12)	1.05 (0.12)
기관 이용 여부 (막내자녀)		0.11 (0.13)	1.12 (0.14)
월 평균 수입		0.21* (0.12)	1.24* (0.15)
최종학력(모)1)	대졸	0.11 (0.15)	1.11 (0.17)
	대학원 이상	0.14 (0.22)	1.15 (0.25)
추가세금		0.18* (0.10)	1.19* (0.12)
자녀수		0.20*** (0.07)	1.22*** (0.09)
Pseudo R2		0.0051	
N		1,369	

주: 1) Reference: 고졸이하.
*p<.1 **p<.05 ***p<.01.

나. 실제/선호 양육형태 일치 여부 분석

해당 분석에는 실제 양육형태와 선호하는 양육형태가 일치하는가에 대한 여부 설문한 문항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응답이 '예/아니오'로 이루어진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기에 아래 로짓모델(logit model)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Gujarati 2011).

$$(1) \qquad P_i = E(y_i = 1 | x_i) = \frac{\exp(Z_i)}{1+\exp(Z_i)} \ , \ 0 < P_i < 1.$$

P_i 는 실제 양육형태와 선호 양육형태가 일치할 확률을 로지스틱 함수 (logistic function)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Z_i = \beta_0 + \sum_{j=1}^{n} \beta_j x_{ij} \ , \quad -\infty < Z_i < \infty. \tag{2}$$

x_j는 본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로 현재 자녀 월령, 취업상태(모), 기관 이용여부(막내자녀), 월 평균 수입, 최종학력(모),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세금 징수 시 부담 여부(추가세금)와 자녀수 등이다.

$$L_i = \ln\left(\frac{P_i}{1-P_i}\right) = Z_i. \tag{3}$$

또한 $\frac{P_i}{1-P_i}$는 실제 양육형태와 선호 양육형태가 일치할 확률에 대한 odds ratio로, 이는 일치할 확률과 불일치할 확률 간의 비율을 의미하며, 여기에 로그를 취한 L_i을 로짓(logit)이라고 하므로 식 (3)은 로짓모델(logit model)이 된다. 아래의 모형은 실제 양육형태와 선호 양육형태를 조사한 설문을 바탕으로 둘 사이의 일치여부를 조사 한 후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begin{aligned} DV2 = {} & \alpha_0 + \alpha_1 CA + \alpha_2 WS + \alpha_3 CF + \alpha_4 IN \\ & + \alpha_5 EDU2 + \alpha_6 EDU3 + \alpha_7 ET + \alpha_8 NC + \epsilon \end{aligned}$$

〈표 Ⅴ-3-4〉 로짓모델 분석변수

변수명	내용		상세
DV2	양육형태 일치여부		0 불일치 1 일치
CA	자녀 월령		
WS	취업상태(모)		0 미취업 1 취업
CF	기관 이용여부(막내자녀)		0 비기관 1 기관
IN	월 평균 수입		월 평균수입 자연로그 변환함(원 단위: 만원)
EDU1	최종학력(모) 1)	고졸 이하	
EDU2		대졸	
EDU3		대학원 이상	
ET	추가세금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세금 징수 시 부담 여부 0 아니요 1 예
NC	자녀수		

주: 1) Reference: EDU1(고졸이하),

분석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이하와 같다. 양육형태 일치 여부와 자녀월령(r=0.064, p<0.05), 최종학력(모) 대졸(r=0.0514, p<0.1)등의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취업상태(모)(r=-0.087, p<0.001), 월 평균 수입(r=-0.0961, p<0.001), 최종학력(모) 대학원 이상(r=-0.0531, p<0.05)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Ⅴ-3-5〉 양육형태 일치여부 상관관계

	양육형태 일치여부	자녀 월령	취업상태 (모)	기관이용여부 (막내자녀)	월 평균 수입	대졸	대학원 이상	추가세금	자녀수
양육형태 일치여부	1								
자녀 월령	0.064** (0.017)	1							
취업상태 (모)	-0.087*** (0.001)	0.1976*** (0)	1						
기관이용여부 (막내자녀)	0.0408 (0.127)	0.5515*** (0)	0.3414*** (0)	1					
월 평균 수입	-0.0961*** (0.0003)	0.0731*** (0.0062)	0.3891*** (0)	0.1357*** (0)	1				
대졸	0.0513* (0.0552)	-0.0262 (0.3264)	0.0109 (0.6839)	-0.0206 (0.4423)	0.0229 (0.3926)	1			
대학원 이상	-0.0531** (0.047)	0.0015 (0.9544)	0.064** (0.0167)	-0.0199 (0.4563)	0.1547*** (0)	-0.6246*** (0)	1		
추가세금	0.0023 (0.9328)	-0.0244 (0.3613)	0.0351 (0.1899)	0.0025 (0.9257)	0.0818*** (0.0022)	0.0475* (0.0758)	0.0165 (0.5377)	1	
자녀수	0.0345 (0.1964)	0.0218 (0.4148)	-0.0139 (0.6043)	0.0628** (0.0189)	0.0445* (0.0958)	0.0042 (0.8761)	-0.0645** (0.0159)	-0.0426 (0.1113)	1

p*〈 0.1 p** 〈 0.05 p*** 〈 0.01

로짓모델로 분석한 결과 자녀월령과 최종학력(모) 대졸인 경우는 양육형태 일치 여부에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상태(모)와 월 평균 수입은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월령이 높아질수록 실제/선호 양육형태가 일치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대졸인 경우에 고졸 보다 양육형태가 일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취업모인 경우 취업모 보다 양육형태가 일치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수입 변수의 경우 수입이 증가할수록 역시 양육형태 일치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3-6〉 양육형태 일치여부 분석 결과

		계수(S.D.)	Odds ratio(S.D.)
자녀 월령		0.01* (0.01)	1.01* (0.01)
취업상태(모)		−0.40*** (0.15)	0.67*** (0.10)
기관 이용 여부(막내자녀)		0.22 (0.16)	1.25 (0.20)
월 평균 수입		−0.43*** (0.17)	0.65*** (0.11)
최종학력(모)[1)]	대졸	0.33* (0.19)	1.39* (0.27)
	대학원 이상	0.06 (0.26)	1.06 (0.28)
추가세금		0.06 (0.13)	1.06 (0.13)
자녀수		0.12 (0.09)	1.12 (0.11)
Pseudo R^2		0.022	
N		1,400	

주: 1) Reference: 고졸이하.
p*〈 0.1 p** 〈 0.05 p*** 〈 0.01.

4. 소결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함의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현황과 근로상황을 통해서 모의 구체적인 근로 상황이 양육 형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맞벌이 혹은 모 홑벌이 가구의

근무시간·근무일수·긴급 돌봄 방법은 응답자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주/고용주, 미취업), 근무형태(전일제·시간제·자영업주/고용주, 미취업), 사업장형태(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개인사업체·기타)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 상황의 유연성이 가장 떨어지는 고용과 근무형태는 정규직과 전일제 취업모였고, 사업장 형태별로는 민간중견기업과 민간 중소기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부 홑벌이 가구의 응답을 통해서도 영아의 경우 부모의 직접 돌봄 선호에 가치와는 별개로 현재 고용 및 양육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임신·출산 직후 퇴직할 수밖에 없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녀수, 영아 자녀(연)월령 등 가구의 인적 구성도 중요하지만 양육을 책임지는 주 양육자의 근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영아 각 연(월)령별 주 양육실태와 선호형태의 차이 확인 및 주 양육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용한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영아 자녀의 경우 선호하는 주 양육과 실제 양육실태 전반에 걸쳐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조부모 순으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 자녀의 연(월)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에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연령 별로 주 양육 실태와 선호형태의 일치 여부를 보았을 때, 모두가 선호하는 양육형태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 양육 실태 및 선호 양육형태에 대한 모두 각 양육형태 별 차이는 고용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 양육 실태와 선호 양육형태에 대한 일치여부에 대한 결과는 모의 근로상황(취업상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근무형태(전일제, 시간제), 사업장형태 등 고용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가령, 시간적 유연성이 떨어지는 민간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전일제 취업모의 경우 시간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렵고 근로시간이 길어 부모의 직접 돌봄 보다는 어린이집에 주 양육을 위탁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다는 가정이 가능한 것이다. 주 양육형태 만족도 조사결과 부모가 직접 돌봄을 하는 주 양육형태의 경우 주 양육형태와 선호양육형태가 불일치한 그룹일수록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

타난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정을 더욱 강하게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영아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강하게 선호하나 모의 근로 상황이 이러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없었을 경우 선택된 주 양육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영아 자녀의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는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과 동시에, 보완 시 각 정책별로 개선 방향의 노선을 달리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은 비용지원 정책의 경우 다수 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그러나 정책 개선 요구에서 비용 지원 정책이 가상 우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 지원 정책에 대한 비용 확대 및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높았다는 것은 특히 공보육 확대를 통해 기관을 통한 질적 서비스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비스(프로그램) 지원정책의 경우 소수가 이용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매우 높았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들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양적 질적 확대정책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시간 지원 정책의 경우 이용비율이 매우 낮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을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다수의 고용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영아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서는 시간 지원 정책이 핵심이다. 따라서 해당 정책의 편차 줄이는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시간 지원 정책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는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

VI

영아 양육 심층면담

01 영아 부모 면담

02 육아종합지원센터 면담

03 소결

Ⅵ. 영아 양육 심층면담

본 장에서는 영아 양육 부모, 영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농어촌가구와 같이 사례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구를 포함하여 보다 실질적인 영아 양육지원의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1. 영아 부모 면담

영아 부모 대상 심층면담은 경기도 거주자 2회(중소도시/읍면), 서울시 거주자 1회, 대전시 거주자 1회, 현재까지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영아 어머니 7명, 영아 아버지 1명으로 총 8명이 참여하였고,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표 Ⅵ-1-1〉 영아 부모 면담대상자 배경

구분	면담자	자녀수	자녀 월령 (성별)	양육형태	취업상태	거주지역	비고
1차	영아 어머니 A	2명	32개월(남아) 10개월(여아)	어린이집 가정양육+ 조모 도움	육아휴직	경기도 과천시	육아휴직 4년째
	영아 어머니 B	2명	35개월(남아) 13개월(남아)	어린이집+ 외조모 도움	주부	경기도 성남시	육아휴직 어려워 퇴사
	영아 어머니 C	1명	1개월(여아)	가정양육+ 외조모 도움	대학원생	경기도 성남시	출산휴학, 친정거주
2차	영아 어머니 D	1명	12개월(여아)	가정양육+ 외·조부모 도움	육아휴직	서울시 용산구	
	영아 어머니 E	1명	4개월(남아)	가정양육+ 외조부모 도움	육아휴직	서울시 성동구	
3차	영아 어머니 F	1명	28개월(남아)	어린이집+ 가정양육	회사원	경기도 양평군	육아휴직 후 이직
	영아 어머니 G	2명	26개월(여아) 16개월(남아)	어린이집+ 가정양육	육아휴직	경기도 양평군	육아휴직중, 주 2-3회 부업
4차	영아 아버지 H	1명	5개월(남아)	가정양육	연구원	대전시	모 육아휴직중

1) 면담 대상자 배경 및 양육형태

면담대상의 자녀 월령은 생후 1개월부터 35개월까지였으며, 자녀수는 모두 1~2명이었다. 자녀가 만1세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육아휴직중이었으며, 영아 어머니 1명은 둘째 자녀의 출산휴가 후에 사내 분위기 상 육아휴직이 어려워 퇴사하였고, 대학원생 1인은 교내 출산휴학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 저희 학교가 두 번 정도 휴학할 수 있는데. 그 두 번 이외에 출산휴학 1년이 또 있어요. 두 번 다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학교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1년 정도 출산 휴학이 따로 있었어요. 원래는 지도 교수님 사인 받는 절차가 있는데 출산 휴학은 (사인 절차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영아 어머니 C)

자녀 양육형태를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가정양육이 대부분이었다. 생후 1년이 지난 영아는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보조적인 도움으로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주양육자 외에 조부모 도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요즘은 친정엄마보다 친정아빠가 더 한가롭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 아빠가 몇 시간 애를 잠깐 볼 수 있거든요. 아빠가 트림도 잘 시켜주고. 힘도 있으시고 애도 잘 안으시고. 친정부모님 안계셨으면 상상이 안돼요. (영아 어머니 E)

> 저희는 시부모님도 자주 봬요. 일주일에 두 번 오시는데 오시면 저는 자요. 같이 놀러 다니고. 안 그러면 손이 없어서 우리 둘이 못 가요. 다 같이. (영아 어머니 D)

> (시댁 갔을 때) 시부모님이 봐주시니까 확실히 몸이 편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봐주시는 게. 어머니가 제가 봐줄 테니까 나갔다 오라고.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쐬고. (영아 어머니 E)

> 저희는 (할아버지가) 픽업해줘요. 근데 그걸 요일을 나눠야 해요. 한 사람이 하면 못 쉬니까. (중략) 애 하나 키우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영아 어머니 D)

> 친정엄마도 힘드시니까.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고. 병원 다니시거든요. 팔어깨랑 목도 아프고. 당연히 아프죠. 애를.. 그런 거보면 내가 너무 못할 짓이다 싶고. (영아 어머니 E)

> 저는 친정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몸이 약하셔서 힘들어하시고. 애들 맡기고 하기가 좀. 아무래도 같이 사는데 맡기기까지 하면 불효 같아서. (영아 어머니 G)

2) 지역 육아인프라 및 이용 정책

1차 면담은 경기도 성남과 과천지역 거주 영아 어머니 3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역 내 육아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으며 장난감도서관, 놀이방, 맘까페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경기도 성남지역 거주 영아 어머니는 지역의 공공 육아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평가했으며, 만족도가 높은 이용 정책은 장난감도서관과 성남시 놀이방 사업이었다. 장난감도서관은 연 이용비용이 1만원이며 자주 이용하고 있고, 성남시민만 이용가능한 놀이방도 하루 3타임 이용 가능하여 주변의 영아 어머니들과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다만,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상시신청이 가능하지 않아 정보에 취약한 부모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후 1개월된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1인은 장난감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면담을 통해 처음 접하여 출생신고 시 이러한 정보 안내가 있기를 희망하였다.

> 성남도 장난감 도서관. 신청하면 지점마다 있는데, 분당구청. 성남시청. 지점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신청하고 추첨되면 일 년에 만원으로 장난감 빌릴 수 있고 놀이방 시설도 그냥 이용할 수 있고. 하루에 3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등본 이런 거 확인하고 입장할 수 있거든요. (영아 어머니 B)

>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 가끔 들어가 봐요. 첫째 때는 (장난감 대여를)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이용을 해가지고. 처음 3개월, 6개월, 9개월 이때 소리 나는 거 많이 들려줘가지고 좋았거든요. (영아 어머니 B)

경기도 과천지역 거주 영아 어머니는 동마다 맘까페가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과 놀이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 어머니들이 시간제보육을 많이 이용하며 시간제보육이 시민회관 안에 위치하여 아이 맡기고 어머니 모임을 갖기도 유용하다고 하였다. 다만, 과천지역은 소아과가 부족하여 분당에서 소아과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 과천시 자체가 좁으니까 좁아서. 주민센터, 맘카페 같은 게 많아요. 동 마다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있어서 장난감 도서관도 있고 연 1년에 만원이거든요. 회원비가. 만원내고 일 년 동안 장난감을 한 번에 두 개씩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놀이방이 따로 있어서. 그것도 연 만원이에요. 타임이 있어요. 5타임 정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시간씩 놀 수 있어요. 자유롭게. 드는 비용 없이. (영아 어머니 A)

> 옆 동네에는 시간제 보육이 있어요.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학습지같이 공부도 좀 가르쳐주세요. 어린이집처럼. 시간당 4천원에. 잠깐잠깐 맡기는 거는 저처럼 시댁이 가까이 없으면 저의 주변 엄마들은 많이 맡기더라구요. 급할 때 갑자기 가게 될 때. 병원가고 그럴 때. (영아 어머니 A)

2차 면담은 서울시 거주 영아 어머니 2인을 면담하였는데,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서울시 차원의 육아정책도 활발히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구별로 시책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용산구 거주 생후 3개월 영아 어머니는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이 보건소 파견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주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였다. 서울시의 물품지원 사업으로 출산선물세트[25]도 유용했는데, 물품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더라면 더 필요한 물품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생후 12개월 영아 어머니는 출산선물세트가 당시에 지원이 없었다고 하였다. 즉, 면담대상자의 자녀의 월령차이가 9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 정책이 차이가 있어 다양한 정책이 보완·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금지원은 출산축하금(첫째자녀) 1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양육수당 20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물품지원은 서울시 출산선물세트 A(수유),B(건강),C(외출) 중 B세트인 건강용품을 수령하였다. 서비스 중에서는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이 가장 실질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대여 이용하고 있으며, 산후도우미 제도는 인지는 했으나 국가지원금에 더해 개인부담금도 적지 않다고 하여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애기 태어나고 한 달 이내에 약속을 잡으면 보건소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아기발달 상황도 봐주고 해요. 2시간 정도 봐줬는데 좋았어요. 애기 키, 몸무게 봐주고 그 다음에 저랑 남편한테 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중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애착 관계나 아기 울 때는 너무 흔들면 안 되고 이렇게 달래줘라 가르쳐주고. (영아 어머니 E)

> 서울시에서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주는데요. A, B, C세트가 있는데 A세트는 수유세트라고 해가지고 수유용품들 위주로 해서 주는 거고. B세트는 건강세트라고 해서 체온계, 코 애들 빼는 거, 목욕 온도 재는 거, 그 다음에 면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주는 거였고. C세트

25) 서울시 출산선물세트 A(수유),B(건강),C(외출)로 구분되며, B세트는 건강용품으로 체온계, 콧물제거기, 목욕온도계 등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C세트는 외출용품으로 아기띠 등의 물품으로 구성됨.

> 는 외출세트라고 해가지고 애기 아기띠 같은 거랑 외출할 때 필요한 것 주는 건데 저는 건강세트 받았어요. 건강세트 받은 이유는 이거를 주는 걸 굉장히 나중에 알아가지고 미리 알았더라면.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였어요. (영아 어머니 E)

성동구 거주 영아 어머니는 현금지원은 첫째자녀라서 출산지원금이 없었고, 양육수당도 2018년에는 소득기준에 맞지 않아 미지원대상이었고, 2019년부터 수령하고 있었다. 현재 육아휴직중으로 육아휴직급여가 2018년보다 수령액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 증가하였다. 그 외 전기세 감면[26]지원 받고 있으며, 서비스 지원은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은 보건소에 신청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고, 성동구 내 장난감대여가 3곳에서 가능한데 장난감대여를 자주 이용하며, 내년도 복직을 염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중이나 맞벌이임에도 자녀가 1명으로 최소 1년 이상 입소대기가 예상되고 있다.

> 서울시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다는 성동구에 사는데, 우선 저는 못 받은 게 많아요. 용산구 되게 부러운 게 첫 아이부터 출산축하금 주는데, (성동구는) 둘째부터 주는데 굉장히 소량 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받았고요. 장난감 세상이라고 해서. 거기 구립 유치원, 우리 어린이집 위에 따로 있어요. 거기가 성동구는 3개가 있는데 금호에 하나 있고 옥수에 하나 있는데. 옥수가 저희 집 옆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위에 있어가지고 단지 내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일치감치 썼고. (중략) 어린이집 대기 넣어놨는데 그게 세상 제일 불만이에요. 나는 복직하기 전에 애를 못 맡기고 갈 것 같아요. 우선 대기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전기세 감면은) 출생신고 하니까 자동으로 됐어요. (영아 어머니 D)

3차 면담은 경기도 양평군 거주 영아 어머니 2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주지 특성상 육아인프라를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놀이공간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보고하였다.

> 불편한 거는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없는 거. 가까이에 나가서 뭘 사 먹거나 가까운데 놀이터가 없고. 차를 타고 가야지만 갈 수 있으니까. (영아 어머니 F)

> 놀이터라든지. 애기들 놀 수 있는 복지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아파트 단지는 건너면 있고 건너면 있더라고요. 놀러 가보니까 친구네. 그런 건 부럽더라고요. 애기들 놀이시설이 너무 없어서. (영아 어머니 G)

> 키즈카페가 가까운 데 없고. 시내 넘어서 가야하고. 그나마 괜찮은 데 가려면 용문이나 서울

26) 출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로 연결되어 지원 받음

> 쪽으로 나가야 하니까. 거의 집에서 많이 있어서 그게 답답하고. 교육 쪽으로도 요즘 방문 학습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집은 안 오더라고요. 열 군데를 전화해봤는데. (영아 어머니 G)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영아 어머니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유아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표준보육시간 외 에도 보육을 제공하고 있고 원장님이 부모교육을 실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지원을 통해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이직 후 퇴근이 늦어지더라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단은 불편한 점에서 사교육이라든가 그걸 따로 하기 어렵잖아요. 주로 제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보고 듣고 배워도. 그래도 어린이집에서는 스케줄이 있고 체계적이라고 해야 하나. 깜짝 놀라거든요. 뭐 하나 배워서 오고 말도 빨리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집에 안 놔두고 보내길 잘했다 해서. 많이 만족하고 있는 편이에요. (영아 어머니 F)

> 특히 음식이 좋아요. 상도 받았어요. 저녁까지 먹고 오거든요 늦게 오니까. 저녁까지 먹여주세요. (영아 어머니 F)

> 항상 충분히 보시고 오라고. 늦으면 아우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밥 잘 먹고 일단 맘이 편하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요즘 애들 똑똑하잖아요. 딱 왔을 때 안 가려고 하고 선생님 보자마자 안기고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바깥 일 볼 때도 편하게. (영아 어머니 G)

> 네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체험활동가서 실시한 부모교육이) 많이 도움 됐어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프린트물 해 오셔서. (영아 어머니 G)

> 우연히 어린이집 있는 걸 알고. 원래 너무 어려서 안 보내려고 했어요. 보내볼까 하다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보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죠. (영아 어머니 F)

양평군에서는 물품지원이 없고 현금지원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1인은 첫째 100만원을 지급 받았고, 둘째 300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300만원의 경우 연 100만원씩 분할 수령하도록 하여 양평군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가정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부터 양평군 내 출산 지원금 수령액 기준이 높아져 현금 지원에 대해 영아 아머니들이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 올해부터 양평이. 첫째가 이백인가 삼백이래요. 서울은 현금 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친구들은) 출산 키트. 친구들 보니까. 배냇저고리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현금으로. 통장으로 쏴줘요. 제일 좋더라고요. (영아 어머니 G)

서비스 지원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심층면담에서 처음 접하였고 아이 돌보미는 들어보았지만, 근처 지역인 남양주, 구리 쪽에만 위치에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돌보미는 들어봤는데. 양평 지역에 종사 안 하시고. 남양주 구리 쪽에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필요해서 알아봤었는데. (영아 어머니 G)

> 그나마 보건소에만 있어요. 장난감 도서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진짜 몇 개월 단위도 있고. 하루씩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영아 어머니 G)

> 놀이터라든지. 애기들 놀 수 있는 복지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아파트 단지는 건너면 있고 건너면 있더라고요. 놀러 가보니까 친구네. 그런 건 부럽더라고요. 애기들 놀이시설이 너무 없어서. (영아 어머니 G)

4차 면담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영아 아버지 1인을 면담하였는데, 세종시에서 자녀를 4개월 양육하였는데 육아 인프라와 편의시설 이용이 어려워 대전시로 이사를 하였다. 대전시의 경우 이웃 간의 모임 형성이 활발하다고 하였다.

>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말씀하신 긴급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이를 키우다보니 혼자 키우는 게 심심하잖아요. 관편동에서는 잘 돼 있어서. 오늘은 내가 선생님이 돼서 애들 모아놓고 같이 장난치고 게임하고 놀고. 그것이 품앗이 육아. 대전은 도시라 그런 게 잘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영아 아버지 H)

현금지원은 첫째 자녀에게 120만원을 일괄로 지급하였고 물품지원은 출산 키트를 받았지만 이미 준비한 것을 받게 되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 (출산축하장려금에 대해서) 지금은 이사해서 대전에 살고 있는데. 당시 세종에 살고 있었어요. 이사 얘기하면서 대전으로 갈까 하는데. 출산 세종시가 120만원 크더라고요. 그럼 여기 있자. (영아 아버지 H)

> 받았어요. 온도계는 아닌데. 받았기는 받았는데 별 쓸모 있다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될 정도니까. (영아 아버지 H)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난감 도서관은 알고 있어도 세종시 특성상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힘들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용 측면에서는 전기세 감면과 세종시에서 제공되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 있었다. 내년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은 들어봤을 수 있는데. (영아 아버지 H)

그 당시에는 (장난감 도서관)멀어서 안 갔어요. 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영아 아버지 H)

세종 시에서 (산후조리비용을) 퍼센트 지로 쿠폰처럼 줘서. 전체가 100만원이면 저희는 40~50만만 내고. (영아 아버지 H)

3) 영아자녀 양육현황 및 어려움

가) 육아정보 이용

육아정보는 정부의 공공 전달체계에서 전문적이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얻길 기대했으나 충족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네이버, 온라인 맘까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검색한 정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친구를 통해 정보를 일부 공유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생신고와 연동한 육아정책정보 전달이나 이용가능 정책에 대한 사전 파악이 된다면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인스타그램도. 엄마들이 정보가 계속 몰랐던 정보도 맘까페 통해 많이 알 수 있고. 신용도 되게 높아요. (영아 어머니 B)

우리 신랑은 아이 재우는 법. 아이는 밤에 왜 우나요. 네이버랑 소통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교육시켜줬다며. 모유수유 하는 것도. (영아 어머니 C)

그걸 인터넷으로 찾는 거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죠. (중략) 바로 연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되게 힘들게 알아봤어요. 맘카페 가서. 이런 건 어떻게 이용해요 해서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연결했거든요. (영아 어머니 A)

세종맘 카페 가입해서. 그런데 그룹이 만들어진다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영아 아버지 H)

아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모유수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고. 잘하고 있나. 이 자세가 맞나.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고. 조리원에 있잖아

요. 일주일동안. 본인은 거기서 가르쳐줄 줄 알았나봐요. 모유수유를 하는 방법을. 그냥 먹이세요. 하고 아이 갖다 주는데 어떻게 내가 먹이냐고. 알려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오는 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배우는 것보다. (영아 아버지 H)

임산부 뱃지 수령을 위해 만난 보건소 직원이나, 출생신고를 위해 만난 담당 공무원의 대부분이 육아정책이나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못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생후 1개월 된 영아 어머니의 경우, 개인 성향 상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선호하고, 전화이용은 편하나 웹기반의 SNS 이용을 잘 하지 않아 출생신고 시 안내받은 현금지원정책(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외에는 정보에 많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변에서 들은 정보로 이용신청을 해보려 해도 신청방법이 복잡하여 신청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모바일 혹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영아 어머니를 위해서는 공인된 채널을 통한 온/오프라인 정보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고, 특히 출생신고와의 연동되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데 저는 맘카페를 안 하니까. 친구가 알려주지 않으면 장난감 빌리는 것도 몰랐을 거구. (출산지원금 받으러 갔을 때) 쭉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신랑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그런 거 지원금 받는 걸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돈 받는 것만. 돈 받는 것만 신청하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대.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남편은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라고 정보만. (영아 어머니 C)

접근성이 쉬우면 급할 때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막상 어렵다 생각이 딱 드니까 아예 안 해버리고. (영아 어머니 B)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도 모르겠고 책자를 봤는데도 모르겠고 신랑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모르겠고. (중략) 이용한다더라. 무료라더라. (신청방법) 잘 모르겠고. 이용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궁금한데. (중략) 하려면 소득 이거 따지고. 알 게 너무 많아서 난 모르겠다. (공무원도) 설명해주시면서도 잘 모르셨어요. 애매해가지고. 그럼 나도 애매해. 그래서 포기했죠.(영아 어머니 C)

사실 저는 핸드폰 잘 사용 못해가지고. 전화로 다. 최소 전화로라도 됐으면. 애기 데리고 나가려면 그게 또 일이니까. (영아 어머니 C)

저번에 유축기 보건소에서 빌렸는데 친정엄마가 근처에 있어서 받아오려고 했는데 (산모)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결국 신랑이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편리한 게 없어요. 직접 가는 거 아니면 속 터져요. (영아 어머니 C)

제 생각에는 맘카페는 내가 이용했으니까 쉬운 말로 알려주는 거죠. 거기서 이거 뗀 다음에 이렇게. 거기는 소득분위 어쩌고. 반은 포기.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맘카페가 최고. 말 같은 것도. (영아 어머니 A)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거 연락할 때도 특별히 안내해주는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무료로, 유축기가 준비 안 되어있어서 보건소에서 유축기 대여했거든요. 그 유축기 대여가 한 달밖에 안돼요. 그것도 블로그 보고 알았어요. (영아 어머니 E)

또한 자녀양육 관련 이용 가능한 정책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가정 내 재정이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레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하는 정책이 시행 중임에도 영아 어머니가 안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접종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서울시 출산선물세트가 제공된다는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육아용품 준비 시에 해당용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텐데, 육아용품을 거의 구비한 상태에서 시에서 출산선물세트가 제공되고 종류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저 같은 경우엔 잘 놓쳐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니까. 계속 놓치는데 쭉 표를 받았는데 단계별로 예방접종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접종시기 알람을 주면) 그러면 괜찮을까. 보건소에서 (접종시기) 알람을 준다면 좋을 텐데. (영아 어머니 C)

줘요 줘. 6개월 되면 알림이 와. (영아 어머니 B)

날 챙겨주는 구나.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알려줄 거야라고 알았으면 불안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아 어머니 C)

(출산선물세트를) 건강세트 받은 이유는 이거를 주는 걸 굉장히 나중에 알아가지고 미리 알았더라면.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였어요. 안내가 나중에 되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알았냐면 블로그 보고 알았어요. (영아 어머니 E)

(출산키트) 쓸모 있다고 그런 것도 없고. 이미 있거나 다 누구나 준비하는 건데. (영아 아버지 H)

그리고 다른 거 또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정보 제공이. 육아정책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주 듣는 건 몇 가지뿐이고. 모르는 게 대부분인데. 정보가 좀 더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말고 다른 차선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어린이집밖에 모르기 때문에. 문화센터라든지.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

고 들어야 신뢰가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 있다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다. (영아 아버지 H)

나) 긴급 및 일시적 돌봄 (시간제보육, 아이돌보미 등 포함)

영아부모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조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친정엄마. 시부모님은 일하셔가지고. (영아 어머니 B)

옆 동네에는 시간제 보육이 있어요.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학습지같이 공부도 좀 가르쳐주세요. 어린이집처럼. 시간당 4천원에. 잠깐잠깐 맡기는 거는 저처럼. 시댁이 가까이 없으면 저의 주변 엄마들은 많이 맡기더라구요. (영아 어머니 A)

애를 잠깐 맡기고 갈 수 있는 센터가 없으니까. (영아 어머니 D)

영아 자녀가 두 명인 가정에서는 어린이집 등하원 상황처럼 매일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0세 영아를 데리고 2~3세 영아를 씻기고, 먹이고, 차에 태워서 등원시키는 상황은 잠시지만 매일 반복되어 육아로 인해 가장 스트레스 받고 지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잠시 누가 집에 방문해서 조금의 도움만 받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육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도움을 받기 위해 시간당 만원 이상의 고비용을 지불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 짧게 일할 도우미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런 이유로 두 자녀 양육은 너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보로 가는 거리가 아니면 차로 가야하는데. 진짜 애 안고 그 애를 들어서 카시트에 앉히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 가방 들고 낮잠 자고 이러면 너무 힘들고. 옷을 다 입혀야 하고. 텔레비전을 틀 수 밖에 없고. 아침밥을 먹을 수가 없어. 부랴부랴. 너무 힘들어 진짜. 사람이 잠깐잠깐 봐줘도 너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영아 어머니 A)

이렇게 잠깐잠깐 봐주는 사람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30분 봐주는데 만원 주기도 되게 세잖아요. 그렇다고 5천원 번다고 누가 하겠어요. (영아 어머니 B)

보통 6시간. 4시간. 사람 구한다고 해도. 그 이상 하기를 원하지. 한두 시간 봐주는 건 거의

없으니까.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영아 어머니 A)

그게 어려운 게 어린이집 등원 시키고 하는 건 비슷하니까. 다 그 시간이니까. 그 집집마다 사람을 공급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는 하고. 이때가 지옥의 타임인 거잖아요. (영아 어머니 B)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라는 생각이. 애가 6살 지나면 괜찮아진대. 몇 년 남았네. (영아 어머니 A)

저는 도우미 같은 거? 쉽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플 때. 급하면 부탁해서 시어머니 모시긴 하는데 매번 그럴 순 없고. 아무튼 그럴 때 항상 불안함을 갖고 일을 하니까. 아프고 열나면 오늘은 누구한테 가지 하고.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영아 어머니 F)

다)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등의 임신출산기 지원, 보건소 사업 이용, 예방접종, 지역 소아과 등 다양한 욕구가 나타났다.

먼저, 지역에서의 이용현황은 최근 소아과 진료비가 1회 천원 이하로 생후 12개월 미만 진료비가 더 저렴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천지역은 소아과가 부족하고 소아응급실이 없어 분당 지역 소아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평군의 경우에는 병원이 시내에 있어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거나 서울로 가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금액이 12개월 미만이면 900원 이렇게 나오던데. 동전으로 나오던데요. 12개월 미만은. 60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소아과 진료비가. 그게 얼마 안됐어요. 지갑이 없어서 카드 냈더니. 소아과에서 동전 갖고 다니세요 하더라고요. 12개월이니까 끝났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불과 한두 달 정도 전에도 안됐는데 이번부터 바뀌었어요. 12개월 미만. 이렇게 1000원 미만으로 들더라고요. 약값이 더 들겠죠. (영아 어머니 A)

과천시에는 소아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분당으로. 아니면 인덕원 쪽으로 넘어가거나. 응급실은 특히나 (분당)서울대병원가요. 소아과가 특히나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아 어머니 A)

병원도 차를 타고 가야지만. 시내를 가든지 해서. (영아 어머니 F)

주말이나 6시 이후에 야간 진료하는 데가 없어서. 서울로 저는 항상 나갔거든요. 아산병원으로. 아기 40도로 고열로. 올라가서. 아플 때가 제일 힘들고. (영아 어머니 G)

의료비는 딱히 안 들고. 예방접종도 다 국가 지원이고. 돈 들어가는 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니까. 의료비는 딱히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아 어머니 G)

'똑딱이어플'을 적극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어플을 통해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진료대기를 걸 수 있는 것으로, 가정에서 모바일로 소아과 진료대기를 걸고, 일정 대기인원이 남았을 때 집에서 출발하여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료를 보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 차로 20분. 똑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똑딱이로 접수를 하고 연계된 병원이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병원 이용하면은 대기를 걸어놔요. 접수를 하면, 집에서. 대기 10명이든. 모든 병원이 되어있는 건 아니라서. 진료과 상관없이 다 있어요. 내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가까운 근거리 병원이 쫙 나와요. 거리랑 지도부터 해서. 되게 좋아요. (어플 생긴지) 얼마 안 됐지. 모든 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아 어머니 A)

> 20명 대기하고 있으려면 애가 아픈데. 훨씬 좋죠. 접수하고 집에서 대기하다 시간 맞춰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영아 어머니 A)

영아기에는 주로 가정 내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부모가 영아를 동반하여 외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아과를 방문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 사업'과 같은 가정방문형 의료건강서비스가 실질적 도움이 크며,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은 임신기에 사전 신청을 통해 생후 1개월 내 보건소에서 파견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고, 키, 몸무게 측정, 신생아 케어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 어머니는 보건소 임산부 뱃지 수령 시 해당사업 설명 듣고 신청하였으며, 가장 만족스런 이용정책으로 선택했다.

>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을 통해서 가정방문하여 2시간 정도 봐줬는데 좋았어요. 애기 키, 몸무게 봐주고 그 다음에 저랑 남편한테 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중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애착 관계나 아기 울 때는 너무 흔들면 안 되고 이렇게 달래줘라 가르쳐주고. (간호사 선생님이) 무엇보다 제가 모유를 하고 싶은데 애기가 잘 안 빤다고 하니까 모유수유 자세를 30분 정도 봐줬어요. 양쪽 무는 걸 봐주고 유축해가지고 모유양도 봐주고. 아쉬웠던 것은 다음 아기, 일정이 되게 빡빡하대요. 급하게 나가셔가지고 다음 사람이 전화해서 조금 늦는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급하게 나가셨는데. 그 시간 term을 조금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아 어머니 E)

> 보건소에 임산부 뱃지 받으러 가면, 거기서 저를 등록을 해요. 예정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키, 몸무게 이런 걸 체크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얘기를 해줘요.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이 있는데 간호사 오는 거를 하겠느냐 물어서 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우울증 체크를 했어요. 우울증 체크를 한 게 아기 낳고 나서도 또 우울증 체크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울 정도가 심하면 거기서 한 10번인가 가정방문을 해준데요. 근데 이상이 없으면 그냥 1번만 하는 거고. (영아 어머니 E)

또한 의료서비스 중 예방주사에 대한 의료비용 지원 역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에서 예방주사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 좋았던 거는 주사를 다 국가에서 맞춰주더라고요. 되게 놀랬어요. 병원비가 500원 나와요. 이런 건 나라에서 잘 하고 있구나. 우리가 몰랐는데 잘해주고 있구나. 스케줄도 국가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영아 아버지 H)

> (육아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기저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다 큰 돈 아니지만. 흘러가는 생각으로. 다른 건 국가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의료비용에 있어서. 놀랬다고 했잖아요. 놀랄 정도로. (영아 아버지 H)

라) 영아 부모의 이용 공간 부족

영아자녀를 데리고 갈 곳도 부족하고, 영아를 맡아주면서 잠시 휴식할 공간도 부족한데, 특히 교통편의 한계, 공간의 부족, 외출 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영아 어머니에게 육아 외에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갈 데가 없어서) 애기 데리고 갈 때 돈이 들어요. 매일 매일. 마트를 가요. 백화점도 가고. 아울렛도 가고. 엄마집도 가고. 동네도 한 바퀴 돌고. (영아 어머니 D)

> 엄마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감염 위험 때문에 아무데서나 만나기가 겁나잖아요. 외출할 때도. 조리원 동기들이랑 만나자 만나자 하는데. 어디서 막상 만나려고 하니까 이정도만 되도 괜찮은데. 백일 된 아이들은 사실상 잘 앉을 수 없을뿐더러, 식당에서 마냥 안기도 그렇고 유모차에 눕혀있기도 그렇고.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영아 어머니 E)

> 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한 게 7개월이에요. 그때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카시트 태우고서도 난리를 치기 때문에. 운전을 원래 하던 엄마들 아니면 운전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견디고 나가는 게 얘를 적응시켜주자 하고 스파르타로 나간 건데. 사실 엄마들이 애랑 단둘이 나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단절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안 돼서. 만나는 친구들은 원래 운전을 했던 친구들이라. 애가 울어도 데리고 나가니까. 그래서 나오지. 18개월 될 때까지도 운전 안 해서 (집밖에) 못나온 친구도 있어요. (영아 어머니 D)

> 저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가 둘이니까 하원하고 나면 너무 늦으니까. 맡길 수가 없으니. 시에서 하는 필라테스랑 요가가 있는데 옆에 놀이방이 있는데, 경쟁률이 엄청 세요. 그 프로그램이 하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고. 수영도 있고 했으면 좋겠고. 그림 그리는 취미생활 같은게. 아기랑 엄마랑 같이 하면서 아기는 옆에서 돌봐주고. 난 뭘 배울 수 있고. 그러면은 좀 더 힐링이 되지 않을까. (영아 어머니 A)

아내가 우울증이랑도 관련 있긴 한데. 아내가 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 걸 못하잖아요. 애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홈플러스 이런 데서 문화센터 이런 걸 하잖아요. 엄마를 위해서 요가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애가 있으니까 못해요. 이런 걸 커뮤니티 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사이에 엄마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영아 아버지 H)

마) 아버지 육아역량 제고

아버지의 육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 육아에 대한 부모교육 경험도 없고, 임신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여 아이와 놀아주는 것 외에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신랑도 육아를 같이 하고는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데 모르는 거죠. 새벽에 기저귀만 계속 쌓여요. 애기는 뭐 계속 싸죠. 근데 기저귀만 밤새 간 거예요. 울면 기저귀인가 해서. 기저귀 가는 거만 배워서. 밤새 기저귀만 갈아요. 기저귀도 비싼데. 애는 계속 울었어. (영아 어머니 C)

남자들은 더 모르는 게 우리는 맘카페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데. 남자들은 게임만 하지. 야구만 볼 줄 알지. 아예 백지상태인거예요. (영아 어머니 A)

아빠 교육 시켜야 해. 아빠 교육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엄마가 산후우울증이 안 오죠. 아빠가 기저귀만 갈지 않고 마사지도 해주고 잘 볼 수 있게. 왜 울까. (영아 어머니 C)

저는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다른 아빠들보다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애들 많이 좋아하고. 제가 약 먹는 게 있어서 모유수유를 못했는데 남편이 깨서 모유주고. (영아 어머니 A)

남편도 인터넷 통해서 많이 알았겠죠? 주변에 아빠가 이미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미 관심이 많아서 아이를 좋아하고 많이 안으려고 하고. 계속 경험을 하니까 점점 더. 지금도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젖병도 닦아주고 이유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영아 어머니 A)

9대 1? 거의 다 제가 해요. 바쁠 땐 바쁘고 안 바쁠 땐 괜찮은데. 애가 잘 안 따라서. (영아 어머니 F)

예전에는 많이 도왔는데 지금은 많이 바빠서. 한 7대 3? 제가 7. 남편이 3. (영아 어머니 G)

저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거의 90은? 아내가 하지 않나. 95 정도 아내가? (영아 아버지 H)

바) 맞벌이 가정 지원

육아휴직자 중에는 복직 후 자녀돌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을지, 직장생활과 아이 돌봄을 잘 병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부분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 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하고, 재계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 두 가진데. 회사 일은 가서 하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managing을 할 수 있을지. 애 데려다 줄 때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해서 한 명은 데려다 주고 한 명은 픽업하고 하는 걸 해야 되나 걱정을 하지. (영아 어머니 D)

> (육아시간단축근무를 쓸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일찍 퇴근 한다고 해서 내 일의 양이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할당량이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같은 회사조차도 이런데. 대기업이나 사무직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할 일을 다 못하면. 전화를 계속 받아야 한다거나. 그러면 진짜 눈치 많이 받겠다 싶더라고요. (영아 어머니 E)

> (육아휴직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냥. (…) 오히려 회계일을 했으면 가능한 건데. 거의 혼자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일반 회사를 가니까 연결이 되가지고. 저만 빨리 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바짝 일하고 빨리 일하고 해서 자유스러웠을 것 같은데. 일반 회사로 옮기니까. (못 쓴다) (영아 어머니 F)

> 얘기 들어보니까. 친한 분이 계시니까 얘기 들려오는 바로는. 대체 인력을 했는데 정규직 형태로 했다. 계약직이면 좋은데. “제가 돌아가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하니. “그게 좀” 이렇게. 그래서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영아 어머니 G)

> 필요한 정책이 유연근무제. 애기 낳으면 초반에는 빨리 퇴근해주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 밀어줘야 하지 않나. (영아 아버지 H)

> 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시간적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이랑 있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일찍 퇴근해도 6시니 봐도 2시간. (영아 아버지 H)

> 사실 제 아내는 비정규직이거든요. 영어 강사로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공무원 규정 따르니까. 아내도 학교에서 기간제 중에 육아휴직을 쓴 거고. 그래서 하는 말이 만약에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안하지 않을까. 제가 그러진 않을 거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회사에. 저도 비정규직으로 있었거든요 처음에. 결혼할 때. 지금은 정규직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쓴다고 상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영아 아버지 H)

> 비정규직 상태에서는 제 계약 기간 내에 쓰는 거니까. 재계약에 있어서 평가가 갈 건데. 나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의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이거 쓰면 회사 그만 다닌 다는 소리 아닌가. 인식적으로. (영아 아버지 H)

4) 정책 개선요구

가) 육아전문가 및 의료서비스(의료전문가) 활용 확대

영아자녀를 동반하여 외출이 쉽지 않으므로 온라인이나 전화로 문의 가능하되, 전문성 있는 상담자가 필요하며, 육아방법이나 의료적인 측면은 가정방문형 전문가서비스이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아 어머니들은 보건소, 주민센터 등의 공무원들이 육아 관련 제도를 잘 모르고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영아기, 특히 출산이후 생후 1년까지는 부모의 역량이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고, 자녀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본욕구조차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산후우울에 대해 남편들이 기본지식이 없다보니 아내를 대할 때 배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육아와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접촉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육아방법이나 육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줄 수 있는 전문가, 의사 및 간호사 혹은 모유수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저는 간호사 (가정)방문하는 거 좋았어요. (간호사) 앞에서 울었거든요. 집에 온지 100일밖에 안 돼서. (간호사가) 남편이 이럴 때 잘해야 된다고. 제 신랑은 전문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믿는 스타일이여서. 간호사가 '출산 100일까지는 정말 우울감이 있다. 되게 왔다 갔다 한다. 정상이다.'라고. 병원에 가볼 필요가 있지만 정상이니 그 얘기하고 나서는 조심하더라고요. (영아 어머니 E)

> 신랑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 말이 원칙이 되거든요. 우리는 둘 다 이쪽에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저랑 신랑은 굉장히 명백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 간호사나 의사선생님, 아니면 조리원 선생님들 얘기가 기준이 되어있거든요. 뭘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며 병원에 가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전문가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아 어머니 E)

> 애기가 막 크게 울고 그러면. 남자애니까 목청이 크잖아요. 울면 막 안절부절 하면서 왜 울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단 말이야. 그냥 어디 물어볼 때 있으면 좋겠다고. (영아 어머니 E)

> 저도 그걸 동의하는 게 친구들이 (전공자인)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데가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알아요? 맘카페. (영아 어머니 D)

> 처음에 나는 애 낳기 전에, 낳고 나서 초반에는 맘카페에서 찾아보고 했는데, 키우다보니까

> 거기에 틀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키운 것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적인 게 아니라. (영아 어머니 E)

> 전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어플이라도 있으면. 게시판에 댓글 달아서 상담해주는 것만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영아 어머니 D)

> 네. 아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모유수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고. 잘하고 있나. 이 자세가 맞나.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고. 조리원에 있잖아요. 일주일동안. 본인은 거기서 가르쳐줄 줄 알았나봐요. 모유수유를 하는 방법을. 그냥 먹이세요. 하고 아이 갖다 주는데 어떻게 내가 먹이냐고. 알려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오는 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배우는 것보다. (영아 아버지 H)

현재로서는 예방접종 시 소아과를 방문하여 의사와 진료를 겸해 궁금한 점을 일부 해결하거나, 적정한 접촉기회가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통상 온라인 맘까페에 의존하는 경향 짙어진다고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영아기 혹은 생후 6개월까지라도 3번이라도 전문가를 쉽게 만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희망하였다. 더불어 모유수유협회 등의 전문가 집단과의 접촉기회도 주어지길 희망하였다.

> 특히 초반에 영아한테 필요하지. 좀 지나면 필요하지 않아서. 영아한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접촉할 일 있으면. 예방접종 하러갈 때 우리는 메모지에 질문을 다 써서 가거든요. 변이 묽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팔이 휘어보인다거나 하는 걸 다 써서 가서 한 달에 한 번 이라도 충분해요. 요즘은 예방접종이 2개월, 4개월 뜨니까 요즘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6개월까지만 이라도. (영아 어머니 E)

> 내가 하나 활용하는 게 대한 모유수유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약을 먹게 되었을 때 이런 성분 먹어도 되는지 보고. 그 협회해서 알려주거든요. 모유수유 관련된 거는 거기에서 답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가 많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아 어머니 E)

> 간호사 가정방문 서비스 진짜 가능하면 6개월 이하 애들 있는 가정에 3번 정도 방문해주면 좋겠어요.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 그때 방문한 거는 조리원에 갓 나와서 집에 온 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후 한 달 이내에만 와요. 한 달 지나면 서비스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 제왕절개하면 일주일 병원에 있죠. 2주 조리원에 있죠. 그럼 한 3주 지나서 가니까. (영아 어머니 E)

상시적 접근성이 높은 소아과가 지역에 더 많아지고, 소아응급실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영아자녀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똑딱이어플' 등이 보편적으

로 되었으면 좋겠고, 가입병원이 늘어나서 많은 병원을 이런 모바일 진료대기 방식으로 이용가능하기를 희망하였다.

서울시 아기건강첫걸음 사업과 같은 가정방문형 의료서비스는 적어도 생후 6개월까지 3회 정도의 가정방문서비스가 생긴다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방문시간도 2시간 기준인데, 앞 뒤 스케줄이 꽉 차 있어 2시간 이상 이용이 어려웠던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고, 보다 넉넉한 이용시간을 요구하였다.

보건소 서비스 중 모유수유자세를 봐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나, 보건소를 내원해야만 이용 가능하여 어린 영아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도 영아기임을 고려하여 가정방문형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 모빌 같은 거 어떻게 봐야하는 지 이런 것들 알려주니까. 그건 되게 좋았어요. 간호사 와주는 거.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유수유 자세를 봐준대요. 그런데 문제는 아기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야되잖아요. 보건소로 가야되니까. 어린 애를 데리고 가기가 좀. 밖에 외출 잘 안 하는데. 겨울이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못 갔어요. (영아 어머니 E)

한편,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이 보편화되었음에도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법정예방접종 항목이 아니면 유료로 수십만 원까지 지출할 상황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예방접종 또한 보다 폭넓게 보장되는 것을 희망하였다.

> 국가에서 받고 있는 건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 하지만 돈으로 내는 것도 꽤 많다는 거. 근데 그게 뭐 1-2주씩만 하는 게 아니라 맞다보면 가격이 더 넘어가요. 꽤 많아요. (영아 어머니 E)

> 왜냐하면 그게 종류가 있는데 뭐를 하면 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로타바이러스 약을 한 번에 10만원씩이니까. 30만원을 내고 3번을 먹어야 됐었고. 두 번 먹는 거는 27만원. (영아 어머니 D)

> 남편이랑 되게 고민했던 게 그 수막구균인가. 그거는 주사 1대 당 20만원인가. 그런 건데 3번을 맞아야 된대요. 그러면 60만원이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랑 얘를 데리고 외출 안 하는 걸로. 좀 더 나중에 맞추는 걸로. (영아 어머니 E)

> 2개월, 6개월, 뭐 돌 이렇게 맞는대요. 보통 두 번은 맞아야 돼서. 오빠가 6개월 전까지 외출 자제하고 7개월 때 맞추자고. 가격이 생각보다 큰돈이 나가니까 예방접종도 그렇더라고요. (영아 어머니 E)

나) 육아정보 이용 개선

임신등록이나 출생신고처럼 부모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과 연동하여 육아정보가 제공된다면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정책도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매우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다 알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도입으로 임신등록이나 출생신고 시 임신 및 출산 서비스를 사전안내 받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면담결과를 보면 부모들이 체감하는 수준에서는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육아정책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주 듣는 건 몇 가지뿐이고. 모르는 게 대부분인데. 정보가 좀 더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중략) 그런 부분 있다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다. 조카 어린이집 가는 걸 보니 아파 오더라고요. 병에 걸리고. 그런 것들이 도움 되지 않을까. (영아 아버지 H)

다) 산전교육 및 부모교육

임신기부터 산전교육으로서 부모 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여러 참석자가 공감하였다. 또한 임신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버지를 위한 임신체험이 저렴하게 가능하기를 희망하였는데, 민간에서 임신체험을 하려면 비용이 고가여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다음 주에 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되는데. (알려주는) 스텝이 있어야 하는데. 진행이 잘 되어야 하는데. 저번 주에 왔을 때 (이번 주에 교육이 있다고) 알려주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그런 느낌. 다음 주에 다시 와야겠다. 이런 느낌. (영아 어머니 C)

> 부모교육이 과천시에는 많아요. 주말마다. 신청을 해서 가야 하는데 안 가게 돼요.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때는 모르잖아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아 어머니 A)

> 저는 애기가 완전 애기니까 친구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애가 울게 될 시기가 있을 때 좀 뭐지. 육아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임신 때 나라가 출산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태어나서 1-2주는 잘 자지만 3주 때부터는 성장통도 오고 울기 시작하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데 네이버가 육아도우미가 되지 정부가 육아도우미가 되지 않죠. (영아 어머니 C)

> (부모교육을) 남자들도 받고. 제가 출산이 너무 힘들어서 신랑이 이런 거 체험(임산부체험)

> 할 수 있는 거 찾아봤어요. 체험 시켜야겠다. 그 체험도 엄청 쉽지가 않아요. 하는데도 많지가 않고.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진통 너무 체험시키고 싶어서 봤는데. 비싸서 연예인들이나 하지. 공짜가 아니었어요. 나라에서 뭔가 하는 데가 있으면 신랑을 경험시키고 싶었는데. 교육에 다 포함되어서. 임신이 얼마나 무거운지.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냥 손잡아주고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아 어머니 C)

더불어 실전 육아에 접어들어서야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양육역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신생아를 케어하고 영아 자녀를 기르는 것이 쉽지 않고, 조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주변에 부모 외의 도와줄 성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게다가 이미 육아가 시작되고 나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므로 임신기가 중요한 부모교육의 시기로 인식되었다.

> 육아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임신 때 나라가 출산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태어나서 1-2주는 잘 자지만 3주 때부터는 성장통도 오고 울기 시작하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데 네이버가 육아도우미가 되지 정부가 육아도우미가 되지 않죠. (영아 어머니 C)

> 모유수유 하는 것도. 유튜브 강사님이 알려주고. 난 오프라인이 좋은데. 직접적으로 만나서 말로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면 쉽게 접근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있었지만 접근을 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고. (영아 어머니 C)

> (부모교육도) 다음 주에 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되는데. 스텝이 있어야 하는데. 진행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럼 저번 주에 왔을 때 알려주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그런 느낌. 다음 주에 다시 와야 겠다 이런 느낌. (영아 어머니 C)

> 저도 원래 임신 안 하고 싶었는데. 임신을 책으로 배웠어요. 출산 임신 기쁨이 책에 있구나. 그러면 임신하면 좋겠다. 그게 교육이 되면 임신이랑 결혼 안하려고 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아이에 대한 기쁨이 엄청나긴 하거든요. 제가 글로 배우지 않았다면 몰랐고 너무 좋아. 이렇게만 했다면 몰랐을 텐데. 나라에서 아기 무조건 많이 낳아라 하지 않고 (부모)교육으로 알려주고 하면. (영아 어머니 C)

> 부모교육이 과천시에는 많아요. 주말마다. 신청을 해서 가야 하는데 안 가게 돼요.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때는 모르잖아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영아 어머니 A)

라) 아버지 육아 활성화

아버지 육아는 당연한 것임에도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라

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하였다. 육아에 열의가 있으면서도 아버지 본인도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자신을 때론 민망하게 바라보기도 하며, 친정어머니조차도 남편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등 아버지의 육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공동육아로서 접근되고 환영받는 분위기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남편이 도와주다가도 뜬금없이 밥을 먹다가 한숨을 쉬어요. '왜'라고 물어보니 자기가 한심에 보인다는 거야. 육아에 열정을 쏟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게 그니까 육아를 하는 게 그렇게 뭐 남자가 하는 게 보기 싫은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 보기에 약간 민망하다고 해야 하나. 정상적이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가 육아에 참여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나 봐요. 사회적 인식이.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은 굉장히 의욕이 많거든요.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주변의 인식 때문에 자제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아 어머니 E)

육아휴직제도가 많은 부분 개선되어 육아휴직급여도 올라가고, 이용자도 확대되어가나, 아직까지도 육아휴직급여가 소득대체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아버지 육아휴직은 부담스러운 선택이므로 아버지 육아휴직을 길게 쓰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 육아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휴가나 주말에만 보니까. 육아휴직 시켜주고 싶은데 받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하라고 하고 싶지만 다시 (복직) 갈 수 있을지 모르니. (영아 어머니 B)

> 한 달 두 달만이라도 (아빠육아휴직) 하고 싶은데. 리스크가 너무 커. 그러면 생활비랑 모든 것들이. (영아 어머니 C)

> 진짜 남자 육아휴직 쓰기 어렵고 우리도 쓰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놀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연장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제 친구도 은행원 다니는데 자기가 육아휴직 하고 들어가려면 어플라이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원래 본사에 있는데 지점으로 간다거나 불이익을 받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받게 되니. 보장이 안돼서. (영아 어머니 D)

자녀의 아버지가 자녀 출생 후 짧은 기간이라도 오롯이 육아에 전념하는 기간을 가지면 육아가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공동양육의 시작점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15일 정도의 단기 아빠육아체험휴가를 강제 할당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만

약 아빠육아체험휴가가 시행된다면 해당기간에 어머니들은 힐링여행이나 부모교육 받을 기회를 주는 등 아빠가 오롯이 자녀육아를 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남자 육아체험 기간을 못해도 보름 이정도로.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달 두 달이 너무 길어서 부담스러우면 보름정도라도.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도 열심히 봐주고. (영아 어머니 C)

> 남자들이 육아휴직 쓰기 어려우니 육아체험 기간을 주면. 내가 육아하지 않겠다 이런 말 이제 하지 않고. (영아 어머니 B)

> 그래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엠티 같은 거 가고. 여행가고. 집에 있으면 엄마들이 하게 되니. 체험기간에는 온전히 아빠만 할 수 있게. (영아 어머니 A)

> (예전에) 연수원 너무 좋았거든요. 2박 3일 동안 공부를 하고 남이 해준 밥 먹고. 너무 좋았어요. 엄마들도 그런 시간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육아 관련 교육을 간단하게 하고. (영아 어머니 A)

>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영아 어머니 A,B,C)

> 이런 제도가 생기면 셋째까지도. 이런 제도가 생기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생각도 못했어요. 얘기 하면서 보니깐 내가 힘들었겠구나 생각 드는 게. 개선방안, 내 현실을 파악할 시간도 없었어요. (영아 어머니 B)

> 아직까지는 주위에 남자 연구원이 장기로. 1년까지 육아휴직 쓴 전례는 없었다고 들었어요. 서로 먼저 해라 선배가 먼저 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영아 아버지 H)

자녀양육에 의욕이 넘치는 아빠도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여 본인의 관심도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아버지가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사회 전체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나는 영아양육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큰 게 남성 육아휴직 그거를 옹호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게 도와준다의 의미인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고 제 남편이 많이 하지만 정말 자기가 정말 잘 한다. 해준 게 50%이상이 아닌데도 했다고 하고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50%한다고 하면 굉장히 적게 한다라고 보면서 남자가 50%하면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아예 육아 전담을 하는 인식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엄마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영아 어머니 D)

> 우리 남편은 (육아휴직하고) 너무 집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집에 하루종일 (아이 보

며) 있는 게 너무 우울해 보인데요. (영아 어머니 D)

우리 엄마조차도. 친정엄마 조차도.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인 걸 싫어해요. '네가 더 해라'라고. 약간 엄마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대 간에 아직까지. 남자가 육아 접촉을 하는 걸 싫어하고.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우리 여동생 신랑도 80년대생 초반이에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주말은 자기가 보지만 평일에는 엄마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가사는 도와주지만 육아는 엄마가 하는 거지. 라고. (영아 어머니 E)

한편 육아휴직 기간에 연수 등을 하면서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회사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보내주니까 가라 하는 분위기라 생각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그걸 육아휴직이랑 엮어서 하면 휴직기간을 확 늘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아이한테 미안하긴 한데(웃음). 회사에서 몇 년간 보내주는 연수기간에 육아휴직을 붙여서 나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1년 동안 쓸까. (영아 아버지 H)

마) 돌봄서비스 개선 (시간제보육, 아이돌보미 등)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 줄 곳이 부족하고, 있더라도 신청을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아이돌보미 사업도 긴급돌봄 필요시 이용하기가 어렵고, 시간제 보육에 비해 비싸게 인식되며, 민간돌보미 이용금액과 비교할 때도 금액적인 이점이 없는 것으로 영아 부모에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돌보미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더라도 질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이를 '복불복'이라고 언급하였다.

저는 애기가 아직 어리잖아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맡기는 거. 말씀드린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상황인데. 급하게 어딜 가야 돼요.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고. 만약 시어머니가 안 된다하시면. 그러면 저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와서 시간당 얼마씩 드리면서 편하게. 믿고 맡겨야 되니까.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어플이 생겼대요. 대학생들 알바처럼 시간당 보육할 수 있는 그게 생겼는데. 그거 말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시간당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대학생들은. 그 어플보면은 사진도 다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등급식으로 나온대요. 이용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핸드폰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아 어머니 A)

(아이돌보미도) 있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해야 하고. 또 그런 걸 하려면 또 뭐지 소득에 따라

서도 가나다라 등급인가. 이용은 안 해보고 알아봤거든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는데, 아 뭔가 믿음이 안가고 잘 몰라요. 아줌마가 대답하는 식으로. 정보 도우미도 일도 많잖아요. 저도 하다 중간에 안했어요. (영아 어머니 B)

제 주변에는 첫째 딸 산후조리원 안가고 (공공산후도우미를) 이용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도가 안 높아서 중간에 끊고 사설업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아 어머니 B)

(아이돌보미가) 소득으로 나뉘잖아요. 그게 금액이 사설이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그만큼 돈을 많이 내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랑 사설에서 하는 거랑 크게 차이 안 나서 사설로 하는 것 같아요. (영아 어머니 C)

처음에는 별로다. 해서 바꿨는데. 정부에서 관리만 하는 거지. 사람 교육에 대한 책임은 없어서. 처음에 정부 소개로 왔는데. 산후조리사 첫 번째 별로라서 바꿔 달라 해서. 두 번째 분은 좋았는데. 서비스 전반에선 좋았는데 사람이 복불복인 것처럼. 어떤 분이 올지 모르니. 그래도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해요. 산후 도우미 지원. (영아 아버지 H)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주변에 돌보미들이 부모가 없을 때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놀이터 같은 곳에서 잡담을 하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여 안심할만한 돌봄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도 있었다. 또한 전문성 부족, 편의성 부족, 신청이 어려운 점이 가장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영아 어머니들은 정부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최근 발생함에 따라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면서도, 핸드폰으로 신청가능한 공공서비스가 있기를 희망하였다.

동네에서 (사설 도우미) 이모를 고용해서 쓰는데 이모들이 모여가지고 애들은 멍때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애 맡기면 저러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엄마의 걱정인 거죠. (영아 어머니 D)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고. 그게 많은게. 저희 아파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외출할 때 보면은 (도우미 이모들이) 밑에 로비에 다 나와가지고 자기들 있고 애는 나몰라라하고 미세먼지 가득한데 애 업고 나와서. 애 자게 하려고 밖에 나와서. 이모들이. 그런 거 보니까 화딱지가. (영아 어머니 E)

아이돌보미만 그 학대 사건 없었으면. 내가 돈 지원 못 받는 거라도. 그 사건까지 발생하고 나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켰던 정부를. 보면은 학대 사건이 애 먹이고 재울 때 생기는 게. 내가 봐도 먹이고 재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영아 어머니 D)

바) 맞벌이가정 어린이집 입소순위 현실화

맞벌이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실제 맞벌이가 아님에도 서류상으로 맞벌이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맞벌이가정은 입소순위에서 별달리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민간베이비시터와 공공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다. 이에 실수요자인 맞벌이가정에서 어린이집을 통해 영아 자녀돌봄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입소순위가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 어린이집 대기가 가장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들 위장 취업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200점은 점수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순번이 줄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플라이 하는 중에도 취업모가 돼요. 증빙을 하면 그렇게 되고. 저희 동네 특징인데. 외국 사람이 많이 사는데. 외국 사람이 먼저라서 저희는 못 들어가고. 다문화가 처음에 할 때랑 달리 특권이 되가지고. (영아 어머니 D)

> (어린이집 대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는 취업모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가야 하는데. 안 그랬을 때 대안이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육아휴직을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연달아 쓰면 근데 그 문제는 남편이 육아휴직 쓰면 회사에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몰라서 조금 그러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복직을 하면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갈 수 있거든요 순번이. 그런데 올해 가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어린이집) 적응을 시키고 (회사에) 나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지 어린이집 가면 새로운데. 남편이 6개월만 (육아휴직) 써주면 애 적응까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6개월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영아 어머니 D)

> 어린이집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저도 대기 없이 들어와서 괜찮았는데. 저기 남양주 구리만 가도 보낼 때가 없어서 못 보낸다고….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사 생각 있어서 알아볼까 했는데. 애가 2명이라도 못 보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영아 어머니 F)

사) 육아휴직 확산 및 의식 개선

면담참여자 중에는 업종 특성상 육아휴직이 자유로워서 자녀 2명을 연달아 2년씩 휴직을 하여 4년째 육아휴직중인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회사 차원에서는 육아휴직이 가능함에도 부서 내에서 출산휴가만 허용하고 육아휴직은 단 한명도 사용한 경우가 없어서 둘째 자녀 출산 후 퇴사한 경우가 있었다. 여전히 업종에 따라,

또 같은 직장 내에서도 부서장에 따라 육아휴직 실제 사용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있었다.

> 첫째 2년 했고. 이제 둘째 2년. 지금 4년차에요. 내년 3월까지 휴직중이에요. 남자들도 처음에는 많이 못 썼는데 요즘에는 많이 쓰는 추세에요. 2년 쓰고 또 2년 연달아 쓰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영아 어머니 A)

> 일하다가 작년 12월에 그만뒀어요. 저희는 출산휴가만 하고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해서. 3개월만 쉬고 바로 복직했거든요. 그때부터 친정엄마가 봐주고. 그러다 둘째가 생기고 만삭될 때까지 다니다가. 도저히 엄마가 둘을 봐줄 수 없으니 다른 사람 손 벌리느니. 그냥 그만두자. (중략) 회사가 꽤 크거든요. 중견기업. 그런데도 부서 담당 임원이 여자 분이신데 육아휴직을 허락을 안 해주세요. (중략) 부서에 육아휴직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음에 인사팀이랑 싸워서 하려고 했는데. 애 3명 있는 차장님도 3개월 쉬고 나오고 3개월 쉬고 나오고 해서. 제가 명함도 낼 케이스가 안 되서. (영아 어머니 B)

>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죠. 어차피 대체 인력은 서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 붙여서 쓰겠다고 하고. (영아 어머니 F)

> 네. 내부적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인력 충원해서 하고 계신다고는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말을 돌아오라는 데. 내가 가면 그러면 그분이 그렇잖아요. 입장이. (영아 어머니 F)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육아를 하는 것이 노는 것이 아님에도 육아휴직을 쉬는 것으로 보는 직장 내 인식이 있고, 아버지도 육아휴직 한 아내가 퇴근 없이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식이 있다. 휴직이라는 용어가 '쉬는 인상'을 강하게 주므로 육아휴직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내가 해보니까 육아휴직을 쉰다고 생각할 때. '좀 쉬고 와'라고. '잘 쉬고 있냐고'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난 정말 쉬고 싶은데. 쉰 적이 없는데. 오히려 회사 다니면 출퇴근이라도 명확하게 있고. 이건 닫을 수도 없고. (영아 어머니 E)

> 아무튼 쉰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 'parental leave'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르겠어. 휴직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다른 이름을 할 순 없나. 육아를 위해서 일을 쉰다고 보면 되지만 그렇게 인식을 안 하니까. 그렇게 휴직을 생각하지 않고. (영아 어머니 E)

> (중략) 복직 마음먹기도 힘든데 1~2년 쉬었다 다시 복직해서 생활한다는 게. 주변에서도 보면 주변 사람 시선도 곱지도 않은 것 같고. 거의 복직 안 하거나 해도 6개월 버티는 게 힘들다고. (영아 어머니 G)

아) 양육수당 및 인프라 구축

자녀 양육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현금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인프라 구축에 보다 더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이 수입에 따라 실질적으로 받는 도움이 다르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돈만 늘려서 하면 안 돼요. 독일의 방향이 그래요. 양육수당 폐지했던 게 인프라. 그러니까 그 돈으로 시설을 더. 그래야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애만 낳고 방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 터키 계열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게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 몇 푼 주는 것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고 엄마들 갈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아 어머니 E)

> 저는 제일 불만이었던 게 출산정책을 위해서. 30만원.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누군가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주던지.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증세를 위해 쓰이는 곳이 필요하다면. 애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아 아버지 H)

>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느끼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느낌은 저희 둘 다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30만원. 한 달에 커피값 30만원 넘게 쓰니까. 그와 반대로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체감하는 건 확실히 다를 거라 생각해요. 차라리 선별적으로. 저희는 30만원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영아 아버지 H)

자) 영아 어머니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육아 배려 문화 정착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나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산고를 겪어보니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사회나 정부가 과연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의구심이나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아직도 엄마가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나라에서 뭘 도와줘야할까. 나는 그냥 나라는 나를 버렸구나 생각을 했고. 내가 애 낳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나라에 일조 하네 마네. 개인 입장에서는 애 안 낳는 게 낫다고 생각들어서 (영아 어머니 D)

> (둘째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줬으면 좋겠다고 장려하고 마치 여자들에게 아이 낳는 것을 의무화 시키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출산이 힘든 거에 대해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내 아이를 (국가에) 등록시키면 그때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나에게는 아무. 출산한 건 난데. 이 아이를 이 나라에 해줬는데. 등록시켜줬는데. 그걸 그렇게 바란다면서 아이에 대한 도움만 주고 아동수당같은 거. 실질적인 고통을 겪는 나에게. 꽃다발을 준다거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는 게 없어요. (영아 어머니 C)

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낳아라. 잘 생각하고. 아이 얻는 기쁨이 너무 크지만, 그건 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안에서 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자연분만도 제왕절개 다 위험한데 위험성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극심한 배신감이 (산고를 겪는) 15시간동안 느꼈어요. 나라에서 왜 이걸 금지하지 않고. 이렇게 아픈데. 아직 안 낳은 친구들에게 이거 너무 끔찍한거다.. (영아 어머니 C)

(나라는) 키우는 것도 도와주지 않았어. 모유수유하는 걸 유튜브로 배웠고 출산 역시 유튜브로 배웠고 나라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카드를 발급시켜 주고. 아동수당을 줬지만. 엄마인 나에게 더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애기 낳을 때도 했어요. 15시간동안. 이것을 나라에서 왜 장려하는가. 이 고통스러운 걸 숨긴 체. (영아 어머니 C)

근데 아직도 광고 같은 거 맘에 안 들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광고 같은 거 보면 남성 육아휴직 하는데. 육아 참여도 진짜 뭔가 아직 도와준다는 인식인 것 같아. 가사분담 일처럼. 참여율이 아니라 분담률로 한다거나.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도와준다는 인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영아 어머니 E)

엄마로서 육아와 커리어 사이에서의 어려운 마음이 들고, 자녀를 돌보다 보면 자기 식사조차 챙기기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육아를 배려하는 사회문화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고 하였다. 육아정책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완되고 확충되었지만, 정작 어머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산후우울증 등에 산후질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며,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점에서 엄마들의 정서를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녀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어머니들을 상담해주는 어떤 장소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육아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정서적 환기를 시키고, 산후우울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있다.

애랑 있으면 (엄마가) 못 먹으니까. 이제 아침은 좀 먹는데. 그 전에는 아침 점심 건너 뒤고 저녁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프니 밤에. 제 여동생이 (아이 낳고) '배고파 배고파' 했던 게 이해가 안됐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배가 고파요. 애 챙기느라고. (영아 어머니 E)

> 저 우울증이 와가지고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우울증 오기 직전에. 애를 혼자 봤는데. 돌쯤 되니까 극에 달하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달라붙으니까. (중략) (영아 어머니 F)

> 엄마들이 좋아야 애들이 더 잘 크잖아요. 저는 언니랑 키우면서 육아 스트레스도 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푸는데 아닌 엄마들은 혼자 우울증을 풀어야 해요. (영아 어머니 A)

> 그게 그대로 아이한테 가고.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그걸 잘 접근할 수 있게끔. 꼭꼭 숨겨놓으니 잘 찾지 않는 이상. 내가 우울하니 해소해야지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오히려 접근하기 쉽게 만들면 우울할 때 더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영아 어머니 B)

> 강압적인 거는 좋지 않지만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 심리를 점검할 수 있는 걸 보건소에서 체크할 수 있게 하면 내 상태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고. 애기도 같이 나가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애기를 봐주거나 해야 하는데. (상담시간에는) 아이도 맡기고 엄마는 상담 받고. 그러면 우울이 더 심하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영아 어머니 C)

> 지금은 관편동에 이사한 것도 처형이 거기 살아서. 얘기 할 사람 한 명 있다는 게. 아내랑 매일 싸우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하루종일 아이랑만 얘기 한다고. 집에 가서 TV보고 누워 있으면 나랑 얘기 좀 하라고 해요. (영아 아버지 H)

차) 지역별 인프라 격차 해소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영아 어머니들은 관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 도서관 등의 육아인프라가 부재한 반면 서울 등 대도시에는 해당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읍면지역의 영아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또한 놀이터가 잘 갖춰진 아파트 주거지역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육아환경이 좋다는 평에 세종시에 거주하다 편의시설이 충분치 않은 불편감으로 인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전시로 이사한 사례가 있다. 육아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평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편의시설이 충분치 않을 경우 아이를 키우며 지내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육아인프라의 격차, 도시 간에도 주거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하여 아이를 키우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공공 육아인프라의 경우 지역별로 고른 안배와 설치가 필요하다.

> 정부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난감 도서관 이런 게. 양평군 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료도 있지만 일 년에 만원이라고 해서 놀랐거든요. 한 달에 만 원

도 아니고? 한 달에 만 원도 싼데. 경쟁률도 있긴 하지만 애들은 금방 질려 하잖아요. 이거 빌렸다 저거 빌렸다 하는데. 우리는 사고. 인터넷에 따로 대여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해봤는데 너무 일이에요. 배송 큰 거 받아서 제가 다시 싸고. 보내야 하고. 비용도 비용이고. 그런 게 하나 군에 설치되면 얼마나 좋을까. (영아 어머니 G)

저는 조만간 이사 갈 계획 있어요. 아파트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놀이터가 제일 커요. 여기는 밖에서 놀아도 되긴 하는데 친구 없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흙바닥이고 해서. 애들 놀기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예 아이가 크면 뛰어놀겠는데. 아직까지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단지 있고 놀이터 푹신한 데서 놀 수 있게. 갈 예정이에요. 근데 저는 어차피 회사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고. (회사 옆에 위치한 지금의) 어린이집은 계속 보낼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옮기려고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옆에 있으니까. (영아 어머니 F)

아니요. 대전으로 (이사했어요). (세종시가) 애 키우기 좋다고 얘기를 해서 막상 키워봤는데.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 단지잖아요. 마트에 사러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아내가. 운전을 해서 가야하고. 유모차를 끌고 한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관평동인데 마트 있고 슈퍼 있고. 아내가 커피 사러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아 아버지 H)

불편한 점 때문에 이사를 갔어요. (세종시가 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아 아버지 H)

2. 육아종합지원센터 면담

영아 양육지원체계 개선요구 및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보육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Ⅵ-2-1〉 육아종합지원센터 면담대상자 배경

면담 일정		
면담일	2019. 05. 24(금) 10:00~13:00	
대상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서울시 Y구	
면담대상자 배경		
구분	A	B
직위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경력	어린이집 원장(정년 퇴직)	-

1) 현황

서울시 Y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a동과 b에 위치해 있으며 a동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487.83㎡ 규모이다. a센터와 b센터의 규모는 같으나 a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져 b센터 이용자가 더 많다.

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육아관련 정보제공을 진행하고 있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시간제 보육, 장난감 도서관, 맘든든센터 열린육아방, 상담실, 세미나실 등이 있다. 장난감 도서관은 a동 1곳과 b동 2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맘든든센터 열린육아방은 현재 4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0~5세 영유아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안심 놀이공간으로 학부모의 자조모임 및 공동체도 만들 수 있다.

2) 시간제 보육 개선 의견

시간제 보육은 출산 시 양육정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이용 지역에는 제한이 없고, 월 80시간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보다 저렴한 이용 요금 등과 같은 이유로 부모들이 시간제 보육을 선호한다. 주로 이용하는 유형은 외벌이 전업모, 조부모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12~30개월 영아들을 2~4시간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8시간을 맡기는 이용자들도 있다.

시간제 보육의 경우 아이들이 적응기간도 없이 센터에 맡겨지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동 중심 시각으로 시간제보육을 재편하고 아이돌보미 활성화, 양육수당 재편 및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제공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정말 가장 좋은 건 보육 도우미 제도가 활성화 되어서 가정에 가서 돌봐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 그건 또 예산의 문제인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 A센터장)

> 양육수당 가지고 보육 도우미 제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부모가 조금 더 내고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아무리 저출산이라고 해도 아이를 키우는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은 부모한테 조금 더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A센터장)

> 어린이집이 안전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적응기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두고.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A센터장)

3) 정책 개선 요구

저출산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으며 파견 대체교사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에 대한 스크리닝이 없어 질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 인식 변화, 대체교사 휴게시간 보장, 어린이집 상시 보조인력, 평가인증 지표화 교육 의무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저출산 때문에 무상보육 실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해결 안 되잖아요. 10년이 넘었어도.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패러다임을 바꿔서 인식 변화를 시켜야 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왜 아이를 안 낳는지에 대한 걸 깊이 생각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A센터장)

> 대체교사도 어린이집에 몇 인 이상은 한 명, 상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딱 파견을 해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A센터장)

> 센터에서 인력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센터장 한 명이 법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체교사 한 명을 파견시켰어요. 파견 시켰는데 거기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을 안 준 거예요. 그 대체교사는 누구하고 근로계약을 맺냐면 센터장하고 근로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A센터장)

> 센터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평가인증) 지표만 봐도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의존들 하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 B보육전문요원)

4) 육아종합지원센터 발전 방향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원장과 교사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 지금은 거의 다 의무교육이에요. 안전교육, 아동학대 교육 그런 교육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의 질을 높이려면 상호작용 기법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A센터장)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에서 온 사업, 복지부에서 온 사업, 그냥 그거 받아서 실행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학을 한다거나 하는 걸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야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A센터장)

3. 소결

이상의 심층면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영아 부모의 경우 육아전문가를 활용한 부모 역량 강화, 산전 및 부모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출산 이후 영아기는 부모의 역량이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로 자녀와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양육에의 어려움 어느 때 보다도 크다. 또한 영아를 데리고 나가 서비스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온라인 상담, 전화, 혹은 가정방문형)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 육아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아버지 육아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아버지 육아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며 육아 관련 지식 또한 현저히 부족하므로 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 줄 장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개선,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을 요구하였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순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아 어머니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육아 배려 문화 정착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나 사회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이지만 정작 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고, 산후우울증 등의 산후질환에 대해서 관심과 개입 필요하며 어머니의 정서를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들의 경우 시간제 보육을 아동 중심적 시각으로 재편하고 개선할 필요를 제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상시 보조인력을 관리하고 대체 교사 휴게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Ⅶ

결론 및 제언

01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
02 정책 부문별
03 근로유형별
04 종합적 정책 방안

Ⅶ.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영유아에 대한 공적 이전 수준이 낮다. 총액의 배분에 있어서 0~5세 23%, 6~11세 38%, 12~17세 39%로 나타나, 0~5세를 대상으로 한 공적 이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고제이·고경표, 2017: 93).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지원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에 앞서 영아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취업모와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미취업모 일평균 6시간 23분, 취업모 일평균 7시간 38분으로 나타나,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시간 15분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미취업모 일평균 6시간 12분, 취업모 일평균 7시간 51분인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의 경우 일 평균 1시간 39분의 보육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만 1세의 경우, 미취업모 6시간 23분, 취업모 7시간 26분으로 1시간 3분의 차이가 있으며, 만 2세의 경우, 미취업모 6시간 24분, 취업모 7시간 46분으로 1시간 22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인 경우라도 (자녀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아플 때의 주된 돌봄제공자가 본인 혹은 배우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62.1%(긴급 시), 66.4%(아플 때)로 높게 나타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돌봄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일시적인 보육지원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즉각적이고 신속한 돌봄제공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에 대한 신뢰문제 등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정책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영아 자녀의 경우 선호하는 주 양육과 실제 양육실태 전반에 걸쳐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조부모 순으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 자

녀의 연(월)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연령 별로 주 양육 실태와 선호형태의 일치 여부를 보았을 때,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관련 변수 - 취업상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근무형태(전일제, 시간제), 사업장형태 등 - 에 따라 주 양육 실태와 선호 양육형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제언을 위한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발달 상황을 고려한 영아의 돌봄 수요의 특성은 **'전일적 돌봄'**과 **'부모의 직접 돌봄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만 0세의 경우는 이러한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2015, 2018년), 만 0세의 경우 기관보다는 자녀 어머니 혹은 조부모/친척의 돌봄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양육자가 실제 선호하는 형태로 부모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만 0세와 만 1세~2세의 **돌봄 수요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 0세의 경우는 부모의 직접 돌봄 특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만 2세의 경우 (전체 가구 대상일 때) 기관이용률은 59.1%로 조사되었고, 맞벌이부부 대상일 때는 63.6%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에 대한 선호가 점차 증가하였다(만 1세 어린이집 선호 : 37.8%, 만 2세 어린이집 선호 : 62.4%).

셋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선호 양육 형태와 **실제 양육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영아에 대한 가장 주된 양육형태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직접 돌봄과 어린이집을 통한 양육에 대한 선호와 실태 간의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만 0세의 경우 부모의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실제로 이러한 형태를 선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러한 격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양육자의 취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린이집을 통한 대리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 2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통한 대리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 대상일 때는 59.1%로 조사되었지만 맞벌이부부 대상일 때는 63.6%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전일제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는 **영아 돌봄에 주어진 자원이 다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가장 부족한 자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시간자원**이다.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하루 중 다수의 시간을 노동을 위해 소비하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결과 비정규직, 시간제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정규직·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기관 양육 비율이 높았다(만 1세 :정규직 임금근로자 : 64.3%, 전일제 임금근로자 : 64.3% / 만 2세 : 정규직 임금근로자 : 91.6%, 전일제 임금근로자 : 92.2%).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맞벌이 부부 대상 조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주된 이유가 '자녀양육 및 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임금근로자 맞벌이 부부에게는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확보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제와·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주/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같은 형태의 시간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일상적인 돌봄을 위한 시간자원은 전일제 임금근로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번 지적된 것과 같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시간 지원 정책이 고용보험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해당 정책의 이용률이 높았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이용률이 확연히 떨어져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 군과 대조를 이뤘다(정규직 임금근로자 : 75.5%, 전일제 임금근로자 : 76.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33.6%, 시간제 임금근로자 : 29.1%). 특히, 비정규직·시간제 임금근로자, 자영업주/고용주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군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남성 양육자가 영아 시기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물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경우도 해당 제도의 수혜를 받았다는 비율이 34.2%에 불과했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이용률은 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비율이 50.7%로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정책의 수혜를 받은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영아 돌봄에 남성 양육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영아에 대한 정책 현황 검토 결과 **정책의 수는 매우 다양하지만 정책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아울러 개별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들은 정책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은 **비용·현물 지원 정책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정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책 개선 요구에서는 비용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한 정책 부문**이라고 수요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 양육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비용에 비해 지원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김을 의미함으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의 **현금성 지원 정책의 전면적 검토와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질적 내실화 차원에서도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린이집을 통한 대리 양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보육 확대를 통해 기관을 통한 질적 서비스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비스(프로그램) 지원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해당 센터 중심으로 공급되는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책대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접근성의 향상에 대한 지적**이 높은 바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 지원 정책**의 경우 이용 비율이 낮았고 해당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고용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영아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서는 시간 지원 정책이 핵심이**다. 따라서 해당 정책의 경우 **양육자의 고용현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편차를 줄이는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

첫째, 영아 양육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양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성장발달 측면에서 본다면 영아는 유아와 질적으로 다른 발달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돌봄 측면에서 본다면 전일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영아 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모직접양육을 선호 및 선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만 0세의 경우 부모직접 양육이 58.7%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양육형태로도 6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대상자인 영아뿐만 아니라 양육자인 부모의 입장에서도 첫 자녀일 경우 생애 처음으로 자녀를 돌보게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양육시기이므로 무엇보다도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영아 연령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양육지원 정책의 수립은 물론이고 기존의 지원 정책들을 영아 및 영아 양육가구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개편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책 추진하되 정책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 0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 및 개인양육 외에도 양육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부모직접돌봄을 선택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관보육의 비중이 높은 만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부문별

본 절에서는 정책부문별로 봤을 때 각 부문에서 수요도가 높은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비용(현물)지원 정책

비용지원의 경우, 정책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정책을 적절하게

선별하여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아 양육을 위한 정부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216명 중 31.9%의 응답자가 '정책별 비용이 낮게 책정'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지원 비용수준을 높이는 것이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모든 비용(현물)지원정책의 지급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정책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낮은 현재의 비용지원 정책을 선별하여 – 예를 들면,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지원 – 이들을 통합 및 폐지함으로써 인지도 및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정적인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정책수요자들은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정책의 선별을 통한 통폐합으로 절감한 비용은 수요가 높지만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은 정책 확대에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양육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비용지원 정책 중에서 **출산장려금**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그 수준을 높여 준다면 영아 양육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활용과 운영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비용을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지급은 일시 혹은 분할로 하고 있으며 그 총액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혹은 영유아인구에 따라 그 총액에 있어서 차이가 많으며 특히 재정자립도 수준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영유아 양육을 위한 열악한 인프라와 낮은 출산장려금 지급 등으로 영아부모 입장에서는 더욱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지급 금액이 일정 수준[27]이 되는 경우 지출이 많은 영아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 수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비용지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비용 지원을 통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27)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일시불로 지급될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서비스지원 정책

서비스지원의 경우, 매우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만족도를 보이는 정책이 많고, 비용(현물)/서비스/시간정책의 범주로 놓고 평가했을 때 불충분한 정책 부문으로 비용(현물)지원 정책(46.7%), 시간정책지원(35.4%)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지원 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5.2%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서비스지원 정책의 다양화 혹은 확대보다는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 있는 질 향상 그리고 입소대기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 내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일부 정리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 보육사업**의 경우 인지도 및 활용도(만족도)가 정책수요자들에게 매우 낮아 사업의 유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해당 사업의 시행여부를 인지하고 있는 수요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업 시행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이동 시간, 이동 수단 등의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영아를 둔 부모의 경우 활용이 용이하지 않고, 아울러 기존에 교류가 없던 완전히 낯선 돌봄제공자에게 영아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난감 및 도서대여**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 및 만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지역별로 접근성이 높은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제공 장소 수를 확대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동시에 장난감 뿐만 아니라 도서, 출산용품 등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출산 및 육아용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제공 장소 수와 제공 물품 확대를 위해서 현재에도 일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민센터와 지역 정보문화도서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다만 이와 같이 운영주체를 이관하는 경우 문화관리 관련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는 정보문화도서관과 보육 관련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간의 예산 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끝내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맞벌이 가구에게 가장 어려

운 문제는 육아서비스 지원 기관에의 입소대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출생할 때부터 입소대기를 신청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입소가 확정되지 않아 양육에의 부담을 직장복귀 전부터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소대기 기간과 직장복귀 시일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아울러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임박한 **입소대기 맞벌이 가구**에는 해당 서비스를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의 경우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해당 서비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홍보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휴가·휴직지원 정책

일시적이고 위급한 상황에는 결국 월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고, 정책은 이를 뒷받침 해 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아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에 한하여 **'긴급조퇴(결근)'**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연 3~4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의 경우, 자유로운 사용여부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업종의 특성상 육아휴직의 사용이 업무 능력(전문성) 저하를 초래하거나, 원래의 업무 혹은 직장 자체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하여 결국 제도사용이 개인의 전반적인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력유지와 돌봄시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인지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보다 **활성화**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과거보다 남성들의 육아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바, 이들의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성들의 육아관련 휴가·휴직사용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향후 일정시점까지는 **남성의 이들 제도 활용을 보다 더 강제**할 필요가 있다. 남성 육아관련 휴직을 강제 할 당한 해외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1974년 세계 최초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 1995년부터는 부모육아휴직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면서 최소 30일

동안 부부가 아이를 돌보아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를 강제하였다. 그 후 2002년에는 60일로 할당 일수를 확대하고 고용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한 사람에게 차별 행위를 하면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였다. 이때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위 "라테파파(Lattepapa)"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특히 2016년부터는 할당 일수가 90일로 확대되었다(홍희정, 2019). 스웨덴 사회보험청이 아버지 할당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육아 휴직 활용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8]. 현재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480일간 부부가 육아휴직제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은 부부가 각각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송지원, 2018).

노르웨이는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한 최초 국가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따라 46주와 56주로 나뉜다. 1993년에 도입하기 시작하여 각 부모에게 할당된 10주씩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부부끼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부모할당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4% 미만에 그쳤다. 하지만 할당제 도입 후 현재는 유급육아휴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중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송지원, 2018), 육아휴직자 중 남성근로자의 비율은 40.8% 였다(윤지영, 2018). 또한, 아버지 할당제 10주 이외에 아버지의 날(Daddy Days)로 자녀가 태어난 후 2주를 휴직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Blum, Koslowski, Macht & Moss, 2018: 314).

또한 아이슬란드는 2003년에 제도개정을 통해 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를 모두 포함하여 "출산휴가제도(Birth Leave)"로 개정하고 총 9개월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소위 "3+3+3 제도"로 부부에게 각각 3개월씩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별권리로 할당하고 있으며, 잔여 3개월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출산/부성휴가기금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데 아버지 할당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여 남성들의 휴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책효과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1) 육아정책연구소 해외육아정책동향, 아버지 할당제 개혁에 따른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 증가. http://www.kicce.re.kr/kor/reference/01_02.jsp?mode=view&idx=28711&startPage=0&listNo=1174&code=trend02&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 (2019년 11월 19일 인출)

분석되었다(홍승아, 이인선, 2012)[29].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정부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이들 제도 사용률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경우 이미 퇴사를 염두에 두고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사업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아닐 경우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남성 육아휴직 관련 제도에 대한 강제성 부과가 남성의 육아참여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도 마련된 관련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 기타

심층면담을 통하여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정방문(부모)교육프로그램** 시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유사 사업으로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30]'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2013년부터 실시하여 확대해 온 사업으로 임산부가 산전·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관리가 필요한 산모 및 영아부모에 대한 지속방문을 사업의 주요 부문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인 자녀 양육지원과는 그 방향성에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편방문교육서비스를 공공사업의 성격으로 별도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2020년부터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이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29) 2015년 OECD Family database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남성 비율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은지 외, 2018).

3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 모든 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조기 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에 따라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애 초기 지역사회 보건사업임 https://ourbaby.seoul.kr/project/introduction/01 (2019년 10월 1일 인출.).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건의료 관점에서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한 부모에게 있으므로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른 시스템에서 별도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영아 전문 병원이나 응급실의 경우 지역별 구축에의 격차가 큰 서비스로 나타났는데, 영아기의 경우 응급실 등의 이용이 빈번하여 의료수요가 높은 시기이므로 보건소 설치, 의료인 배치 등과 같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할 때, 영아를 주요 수요 지표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소, 주민센터 등 방문 시 이루어지는 서비스나 교육프로그램이 많은데 영아를 둔 부모의 경우 외출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가정방문프로그램 등으로 흡수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서 비용지원에서 언급한 출산장려금,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은 수요가 높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운영여부,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의 지역적 차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절한 수요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정지원은 최소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원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아인구 비중, 지역 규모, 재정상태 등에 따라 영아 혹은 영아부모에 대한 자체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서울 K구[31]의 경우,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7.92, 영유아 보육 및 교육예산 비중(2018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11.55%,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자체사업비 비중은 3.35%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 N시의 경우,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1.67, 영유아 보육 및 교육예산 비중(2018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3.77%,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자체사업비 비중은 0.59%로 나타났다[32]. 하지만 1가구당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

3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서는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나, 본 고에서는 개별 지자체 간의 비교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득이 이니셜 처리하였음.

32) 지방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김나영 외(2018)의 부록 표 38, 부록 표 42, 부록 표 43 참조.

만, 부모/인구/가족교육 및 행사 등의 부대 프로그램 제공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 각 지역 간략(일부) 예산서 표 참조).

따라서 운영을 위한 재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라도 국비 혹은 광역시·도비를 편성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초지방자치단체부터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 부모의 양육을 지역차이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하여 영아지원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 재정자립도, 영아인구, 가임가구(모 연령기준)비중, 지역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영아양육지원 특별 지역 선정 지표'를 산정하고, 지표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국비 혹은 광역시·도 사업비를 편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영아 양육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Ⅷ-2-1〉 영아지원 지역 선정 지표

지표명	산출식	내용
영아인구비중	$\frac{\text{영아인구수}}{\text{지자체 전체인구수}} \times 100$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총 인구에서 영아인구 비중 산출
가임여성인구(20~40대) 비중	$\frac{\text{20~40대여성인구수}}{\text{지자체 전체인구수}} \times 100$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총 인구에서 20~40대 여성인구 비중 산출
재정자립도	$\frac{\text{자체수입}}{\text{지자체예산규모}} \times 100$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대비 수입규모를 비교하여 재정자립도의 수준을 산출
자체보육사업 예산비중	$\frac{\text{자체보육사업규모}}{\text{지자체 예산규모}} \times 100$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대비 자체보육사업의 규모를 산출

마. 종합

앞서 살펴본 정책부문별 개선 방향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Ⅷ-2-2〉와 같다. 비용(현물)지원에 있어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대신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의 상승을 상쇄시킨다. 서비스지원에서는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은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수요자들의 요구가 높은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휴가·휴직지원의 경우 남성의 사용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기타 정책으로는

부모교육과 같은 교육사업을 확대하여 양육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표 Ⅶ-2-2〉 정책부문별 정책개선 방향

정책 부문	주요 개선 방향
비용(현물)지원	- 정책항목 유지하되 차등지원 하거나 일부 정책 통폐합 하여 정책 만족도 제고 필요 - 국비 혹은 시·도비 편성을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확대(출산장려금 등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서비스지원	- 인지도 및 활용도 낮은 정책 통폐합(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제공 서비스 통폐합) - 서비스 질 향상 - 입소대기 해소(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활용)
휴가·휴직지원	- 정책 활용도 제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활용도 제고) - 남성사용(할당제) 확대 - 관련 제도 신설(긴급조퇴(결근) 연3~4회)
기타	- 교육 및 방문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부모교육, 육아도움 가정방문교육 및 서비스)

3. 근로유형별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필요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정책 수요자들의 유형을 취업여부, 육아지원서비스 기관 이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아래 [그림 Ⅶ-3-1]과 같이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Ⅶ-3-1] 수요자 근로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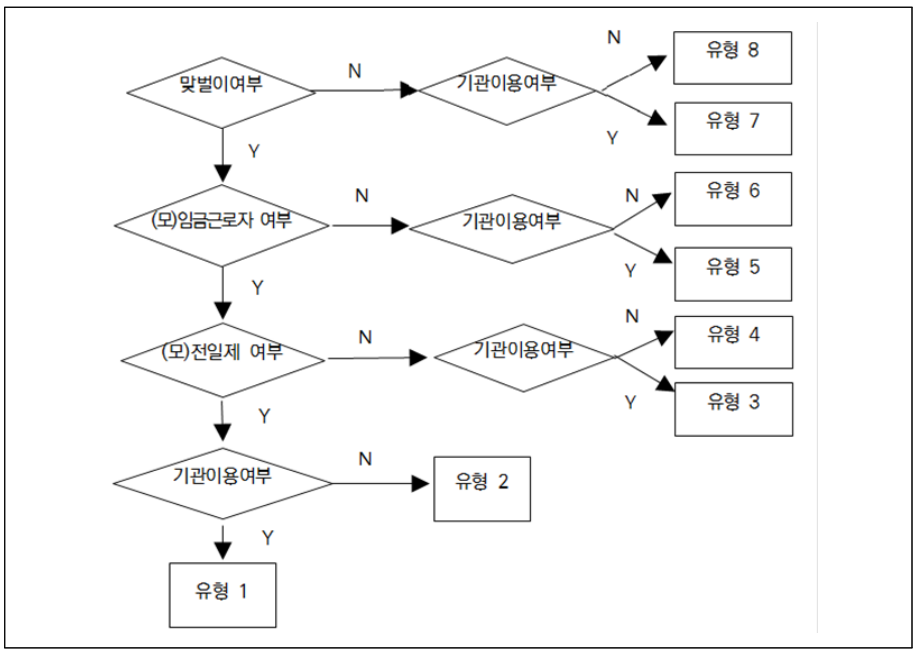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진 작성.

맞벌이 가구이면서 자녀 어머니가 전일제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보육서비스 기관이용자는 유형1, 기관 미이용자는 유형2로 분류하였다. 유형3은 맞벌이 가구이면서 자녀 어머니가 시간제 임금근로자로 보육서비스 기관이용자일 경우이고, 유형4는 기관 미이용자이다. 다음으로 맞벌이 가구이면서 자녀 어머니가 비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보육서비스 기관이용자는 유형5, 기관 미이용자는 유형6으로 분류하였다. 유형7은 (부)홑벌이 가구이면서 보육서비스 기관이용자일 경우이고, 유형8은 기관 미이용자이다.

각각의 유형에 요구되는 정책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Ⅶ-3-1〉과 같다. 근로유형별로 다소 상이한 영아 양육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부록 표 18~표 25 참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맞벌이 가구이면서 자녀 어머니가 전일제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보육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유형1의 경우, 근로시간만큼의 기관보육이 제공되지 않아 보조양육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보육시간의 연장 혹은 추가

적인 보조양육서비스 비용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유형2의 경우, 맞벌이 전일제 임금근로자이지만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의 양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지원이 필요하다. 유형 3과 4는 맞벌이 (모)시간제 임금근로자로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정책의 사용할 수 없는 집단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라도 이들 집단에 대한 육아관련 휴가·휴직사용을 확대하여 부모직접돌봄에 대한 선택권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유형5~유형8의 경우, 자녀 어머니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형태의 경제활동 참여자이거나 미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아버지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형6과 유형8의 경우 기관 외, 특히 가정 내 돌봄을 할 경우 양육자가 부정기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기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일시보육지원이 필요하다.

〈표 Ⅶ-3-1〉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방향

수요자 유형/ 정책부문	비용(현물)지원	서비스지원	휴가·휴직제도
유형 1	- 시간연장 보육지원 혹은 보조양육에 대한 비용 지원	- 입소대기 완화(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의 유연한 확대)	- 긴급조퇴(결근)제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활성화 - 남성의 육아휴가·휴직제 활용 제고
유형 2	- 기관 외 양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		
유형 3			- 육아휴가·휴직제 활용 제고 - 긴급조퇴(결근)제도
유형 4			
유형 5			-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제고
유형 6		- 부정기적 일시보육 지원	
유형 7	- 기관이용 차등적 지원		
유형 8		- 부정기적 일시보육 지원	

4. 종합적 정책 방안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책의 중요 방향성을 1)자녀의 연령, 2)가구특성, 3) 정책부문 등의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우선 영아 연령 및 가구특성을 기준으로 각 집단별 중요 정책부문을 다음 〈표 Ⅷ-4-1〉과 같이 살펴본다. **만 0세**의 경우 **'부모직접 돌봄 강화'**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하여 근로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맞벌이 전일제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지원정책(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1순위, 다음으로 서비스(프로그램)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으로 맞벌이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서비스(프로그램)정책에 대한 지원 강화를 1순위로 두고, 시간지원정책 확대를 그 다음 순위로 삼는다. 맞벌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시간지원정책 확대, (부)홑벌이인 경우 서비스(프로그램)정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어 각 집단의 영아 양육을 지원한다.

만1~2세의 경우 **'다양한 양육지원 수요 포용'**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하고, 전반적으로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강화를 1순위로 제시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맞벌이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시간지원정책(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맞벌이 시간제 임금근로자/맞벌이 비임금근로자/홑벌이 의 경우, 서비스(프로그램)정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다음순위의 중요한 정책으로 두어 각 집단의 영아 양육을 지원한다.

〈표 Ⅷ-4-1〉 영아 연령 및 가구 특성에 대한 정책 중요도

연령			만 0세			만 1~2세		
정책목표			부모직접 돌봄 강화			다양한 양육지원 수요 포용		
가구근로특성/정책부문			비용지원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	시간지원 정책	비용지원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	시간지원 정책
맞벌이	임금 근로자	전일제		◑	●	●		◑
		시간제		●	◑	●	◑	
	비임금근로자		◑		●	●	◑	
홑벌이			◑	●		●	◑	

주: ● 1순위 중점 정책부문, ◑ 2순위 중점 정책부문.

다음으로 정책중요도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각 집단별로 다음 〈표 Ⅶ-4-2〉와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공통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국공립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외에 영아기 양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의 차원에서 **'영아수당(가칭)'**을 신설하여 비용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 해소 방안 마련을 들 수 있다. 비용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수당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만 1세부터는 기관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만 0세와 만 1~2세로 재구분하고 만 0세에 대해서 기존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통합한 '영아수당'을 제공하고, 만 1~2세의 경우는 기존 지원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육정보제공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도 높은데, 대부분의 양육자들의 경우 블로그나 인터넷카페와 같은 개인들이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 신뢰도 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합**양육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부처에서 구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정보제공을 위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 양육정보 습득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개별 어린이집이나 드물게 지역 보건소에서 제공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주민센터, 지역정보도서관, 관내 대학교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만 0세 자녀를 둔 경우 자녀를 동반하여 이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정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관련 유사 사업으로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편 방문교육서비스를 공공사업의 성격으로 별도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2020년부터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이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건의료 관점에서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한 부모에게 있으므로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른 시스템에서 별도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녀연령 및 가구근로유형별 세부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부모의 직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만 0세의 경우, 맞벌이 전일제 임금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돌봄시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육아휴직의 사용을 보다 강화**하고, 자녀 아버지의 경우는 육아휴직 할당제를 두어 반드시 일정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기관의 이용가능 시간이 대부분 근로시간 보다 짧아 보조적인 양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의 경우 연장반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본반 하원 이후 보조적인 양육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비용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맞벌이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 등의 제도 이용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시간정책 이용 대상자 확대를 통한 제도사용의 보편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집단의 경우 직접 돌봄을 위한 시간 활용이 전일제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 바, 어린이집 연장반 혹은 보조양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지원 마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맞벌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등의 시간정책 활용도 제고하여 양육의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직접 돌봄을 할 경우 **'영아기 특별 추가 양육수당'** 지급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하여 발생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특히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양육의 부담을 덜고 양육자의 개별시간을 다소나마 확보해 줄 수 있는 (일시)보육지원, 장소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만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다양한 양육지원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맞벌이 전일제 임금근로가구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시간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의 양육형태 조합에 있어서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긴급조퇴(결근)'**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연 3~4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맞벌이 가구임에도 보육서비스 기관의 입소대기가 길어질 경우 단기간에 한해서라도 보육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과 보육

서비스 기관이용 시간 차이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개별 가구의 보조양육 서비스 활용 비용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 홑벌이 가구라고 하더라도 자녀 아버지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남성육아 참여를 고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집단에서 자녀 어머니의 가정 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부정기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기고 개인 시간을 가짐으로써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일시보육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시보육 제공 시 비슷한 양육시기에 있는 자녀 어머니들의 모임이나 여가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표 Ⅶ-4-2〉 영아 연령 및 가구근로형태별 세부 정책방안

연령			만 0세	만 1~2세
정책목표			부모직접 돌봄 강화	다양한 양육지원 수요 포용
공통			• **국공립시설 확충** • **보육서비스 질 개선**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 영아수당 신설 • 부모교육 내실화: 가정방문교육 프로그램 강화(ex. 서울아기첫걸음사업 벤치마킹) • 통합양육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 장난감 및 도서대여 시설 확충	
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 전일제	• **육아휴직·(배우자)출산전후휴가 활용도 제고**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강화** • **긴급조퇴(결근)제도 신설** • **입소대기자 지원을 위한 일시돌봄지원 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보조양육에 대한 비용 지원
		시간제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이용 대상 확대** • 영아기 특별 추가 양육수당 신설(가구소득별 차등지급)(부부 시간제 임금근로자)	• 영아기 특별 추가 양육수당 신설(가구소득별 차등지급)
	비임금근로자		• 영아기 특별 추가 양육수당 신설(가구소득별 차등지급)(부부 비임금근로자)	
홑벌이			•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긴급(일시) 보육서비스 제공 활성화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강화 •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긴급(일시) 보육서비스 제공 활성화

주: 굵은 글씨는 우선 추진 정책을 의미함.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8).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7. 29).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10. 1).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고제이·고경표(201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경숙(2008).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 특성과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29-255.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7).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2014). 초저출산 농촌지역의 자녀필요성 결정요인 분석: 청도군 기혼여성 사례. 농촌경제, 37(3), 125-144.

김나영·김은설·이재희·이혜민(2018).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의 설치효과 및 만족도 분석과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영미·류연규(2014).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양육 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환경의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9, 215-236.

김윤정·문순영(2009). 영유아 돌봄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8(2), 221-259.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153-176.

김은정·이진숙·최인선(2014).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지·강민정·최윤정·최진희·이성희·성경·배주현(2018).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정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훈·이지영·성지현(2013).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관련 변인이 2세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4(6), 77-96.

김진미(2014). 영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형태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86, 239-258.

류연규(2007).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탈가족화 수준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0, 259-286.

방경숙(2011). 산모의 산후우울 여부에 따른 영아의 기질과 건강문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4), 444-450.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2018a).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8b). 보육정책 DW 시스템(2018. 11. 기준).

보건복지부(2019a).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9b). 2018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11. 22). 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4. 25).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7. 19).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송지원(2018).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육아휴직제도 및 사용실태. 국제노동브리프, 16(1), 65-72.

심순희·김수영(2015). 영아보육교사의 개인 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전문성 인식 차이 및 관계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7(1), 1-17.

여성가족부(2006). 새싹 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 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 3. 12),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이 달라집니다!.

유해미·배윤진·김문정(2014).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Ⅳ):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이규림·이민경(2016).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연구 :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윤지영(2018).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보장법연구, 7(2), 139-166.

이경하·서소정(2012).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53-77.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엄지원·정주영(2014). 영아보육 질 제고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여종일·엄지원(2012). 2013~2017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 육아정책연구소.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이영환·오미연(2006).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9(3), 47-62.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Ⅱ) : 가정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윤진·김희수(2017).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

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장수정(201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 연구: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2), 1-31.

전상민(2011).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만 2세 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77-101.

최상설(2018). 영아기 돌봄유형이 영아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내 돌봄과 어린이집 돌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8(1), 53-76.

최상설··홍경준(2012).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아기 돌봄유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3), 29-57.

최윤경·이정원·박진아·송헌재·이동하(201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효과성 분석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통계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7. 1).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황성온·황지온(2015).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 간의 인과적 종단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6(4), 163-176.

홍승아·이인선(201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희정(2019).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9, 109-121.

Blum, S., Koslowski, A., Macht, A., & Moss, P. (Eds.). (2018). 14th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8.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Garcia, C. V., Woodard, P. M., Titus, S. J., Adamowicz, W. L., & Lee, B. S. (1995). A Logit Model for Predicting the Daily Occurrence of Human-Caused Forest Fires. *International Journal of Wildland Fire. 5*(2), 101-111.

Gujarati, D. (2011). *Econometrics by Example*. Palgrave Macmillan.

Kremer, M. (2006). The politics of ideals of care: Danish and Flemish

child care policy compared.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 13*(2), 261-285.

Tronto, J. C. (2014). 돌봄 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김희강. 나상원 역). 서울: 아포리아. (2013년 원저 발간)

〈온라인 자료〉

e-나라지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2 (2019. 7. 17. 인출)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19. 6. 18. 인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임신출산육아기지원 근로자 지원. http://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2019. 7. 2 인출)

공공데이터포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https://www.data.go.kr/dataset/15024860/fileData.do (2019. 7. 17. 인출)

국민건강보험, 2018년 의료급여 주요통계 https://www.nhis.or.kr/menu/boardRetriveMenuSet.xx?menuId=F3323 (2019. 7. 17. 인출)

국회의원 윤소하 보도자료(2018. 10. 30). [2018년 국정감사] 다문화가정자녀 방문교육서비스 대기자 8천명. http://yunsoha.kr/xe/act_03/11510 (2019. 7. 17 인출)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본격 시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207 (2019. 7. 17. 인출)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관련 통계('18.12월).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8&CONT_SEQ=293152 (2019. 4. 19. 인출)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1&CONT_SEQ=305372 (2019. 7. 17. 인출)

복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02&searchCnDivCd=&welInfSno=

63 (2019. 3. 5. 인출)

복지로, 공동육아나눔터.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65 (2019. 3. 5. 인출)

복지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26 (2019. 7. 2 인출)

복지로,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308 (2019. 7. 2 인출)

복지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001&welInfSno=12399 (2019. 3. 5 인출)

복지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25 (2019. 7. 2 인출)

복지로, 다문화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28 (2019. 7. 2 인출)

복지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27 (2019. 7. 2 인출)

복지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직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437 (2019. 7. 2 인출)

복지로, 발달재활서비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8 (2019. 7. 2 인출)

복지로, 보육료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2019. 3. 8 인출)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56 (2019. 7. 2 인출)

복지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237 (2019. 7. 2 인출)

복지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36 (2019. 7. 2 인출)

복지로,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6 (2019. 7. 2 인출)

복지로, 시간제보육.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12397 (2019. 3. 5 인출)

복지로,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301 (2019. 3. 5. 인출)

복지로, 양육수당.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2019. 3. 8. 인출)

복지로,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245 (2019. 3. 5 인출)

복지로,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6378 (2019. 7. 2 인출)

복지로, 언어발달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9 (2019. 7. 2 인출)

복지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250 (2019. 7. 2 인출)

복지로,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02&searchCnDivCd=&welInfSno=43 (2019. 3. 5. 인출)

복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32 (2019. 3. 5 인출)

복지로,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315 (2019. 7. 2 인출)

복지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299 (2019. 7. 2 인출)

복지로, 장애아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293 (2019. 7. 2 인출)

복지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40 (2019. 7. 2 인출)

복지로, 장애아동수당.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31 (2019. 7. 2 인출)

복지로, 장애아동입양 양육 보조금.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8 (2019. 7. 2 인출)

복지로,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2 (2019. 7. 2 인출)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searchCnDivCd=&welInfSno=50 (2019. 3. 5 인출)

복지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360 (2019. 7. 2 인출)

복지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235 (2019. 7. 2 인출)

복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2 (2019. 7. 2 인출)

복지로, 해산급여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283 (2019. 7. 2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통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2019. 10. 10.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 (2019. 7. 2 인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안내. https://ourbaby.seoul.kr/project/introduction/01 (2019년 10월 1일 인출.)

아동수당, 연혁 http://www.ihappy.or.kr/info/intro.php (2019. 10. 1 인출)

아동수당, 자주하는 질문 11번 http://www.ihappy.or.kr/faq/faq.php (2019. 10. 7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주요통계 이용자 현황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 (2019. 6. 25. 인출)

연합뉴스(2019. 4. 2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수급자 작년 12월 1천명.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5200017 (2019. 7. 17. 인출)

육아정책연구소 해외육아정책동향, 아버지 할당제 개혁에 따른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 증가. http://www.kicce.re.kr/kor/reference/01_02.jsp?mode=view&idx=28711&startPage=0&listNo=1174&code=trend02&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 (2019. 11. 19 인출)

정부24, 한부모 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000000302080 (2019. 7. 2 인출)

질병관리본부, 2019년 1~2분기 백신별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 현황 https://nip.cdc.go.kr/irgd/support.do (2019. 7. 17. 인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배우자출산휴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1&cciNo=2&cnpClsNo=1 (2019. 10. 1 인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4&cciNo=2&cnpClsNo=1 (2019. 10. 1 인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유산·사산휴가의 사용.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79&ccfNo=3&cciNo=2&cnpClsNo=1 (2019. 10. 1 인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육아휴직 신청.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1

(2019. 10. 1 인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출산휴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79&ccfNo=3&cciNo=1&cnpClsNo=1 (2019. 10. 1 인출)

통계청,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385&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2015_009 (2019. 7. 17. 인출)

통계청, 국민기초생활급여-급여종류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12&conn_path=I2 (2019. 7. 17. 인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년 상반기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실적 Report. http://www.kihf.or.kr/lay1/program/S1T62C69/photo/arlim/hongbo/view.do?article_seq=1112291&cpage=&rows=12&condition=&keyword= (2019. 8. 16 인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소개. http://www.kihf.or.kr/lay1/S1T247C248/contents.do (2019. 7. 17. 인출)

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보육 현황 http://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4.jsp (2019. 11. 30. 인출)

Abstract

Analysis the demand of supports for raising infants and planning for comprehensive response policies

Nayoung Kim, Sunyoung Hwang, Jiwon Eo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mand of infant childcare support and establish the comprehensive response plan. To do this, the study identifies the history of domestic infant childcare and support policy and examines the infant childcare related data from the previous childcare support surveys, such as National Childcare Survey (2015, 2018). In addition, with parents of infants, the study performs both the survey for infant childcare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childcare service and residential area to investigate general demand, and the in-depth interview.

As a result, the study suggests several comprehensive policies to strengthen the direct childcare by parents for infant under 1 year old, and to accept various demand of childcare support for infants. For infant under 1 year old, the use of parental leave should be enhanced and in particular, it is needed to make fathers use parental leave for a certain period to increase the childcare participation of males continuously. Moreover, in case of (parents) direct childcare, the income preservation needs to be considered through 'special additional childcare allowance for direct childcare' and for single income household, it is needed to

strengthen various services to support home childcare. To respond the demand of various childcare supports of the household who cares infants 1~2 years old,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e selection rights for the use of time policies freely such as shortening working hours during childcare period, flexible working system, and so on. Also, the study suggests 'Urgent Early Leave' which is a time policy for working parents to have 3~4 times leaves a year for the purpose of taking care of their child under emergency. In addition, for dual income households who return to work after finishing the parental leave, and have the long-waiting period for childcare service institution, it is needed to establish 'Temporary childcare support service' more actively. As part-time workers do not join the Employment Insurance, dual income households with one part-time worker are on a blind spot for the use of the time policies, and thus it is needed to accomplish the generalization of the policies by expanding the policy target.

Keyword: Taking care of infants, support demand for raising infants, comprehensive policies

부록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영아 대상 양육지원 정책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영아를 양육하는 정책 수요자들의 실질적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영아를 위한 좀 더 나은 양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백 선 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선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면접중단
2. 여

선문2.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총 몇 명입니까?
1. 자녀 있음 (　　)명
2. 자녀 없음 →면접중단

선문3. 귀댁 자녀의 출생년월은 각각 어떠합니까?
※ 가구 내 첫째자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자녀 1 (　　)년 (　)월
2. 자녀 2 (　　)년 (　)월
3. 자녀 3 (　　)년 (　)월
4. 자녀 4 (　　)년 (　)월
5. 자녀 5 (　　)년 (　)월

선문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 (　　)시·도
2. (　　)구·군

선문5. 귀하의 현재 취업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취업
2. 휴직
3. 학업
4. 미취업

[카테고리 단독 : Ⅰ. 응답자의 일반특성]

문1. 현재 귀댁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 떨어져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포함(예: 주말 부부, 외국에 나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 등)
※ 떨어져 산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가족의 가계 지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제외
※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제외(예: 입주 돌보미 등)
1. 자녀의 부
2. 자녀의 모
3. 자녀의 조부
4. 자녀의 조모
5. 자녀의 외조부
6. 자녀의 외조모
7. 그 외 친인척 (　　)명

문2. 지난 한달 간 귀댁의 수입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수입원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본인의 근로소득
2. 배우자의 근로소득
3. 금융소득(이자, 주식 배당금 등)
4. 부동산 소득(지대, 임대료 등)
5.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사회보장급여, 보육료지원/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포함)
6. 기타보험 및 연금소득
7. 기타 (　　)

문3. 위에 해당하는 수입원을 모두 합쳐서 귀댁의 한 달 평균수입은 얼마입니까?
1. 월 (　　) 만원

[카테고리 단독 : Ⅱ. 양육자(부/모)의 고용상태]

//선문5= 1. 취업 & 2. 휴직인 경우만 질문//
[카테고리(문4-1~문4-4) : **본인**의 근로 환경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1. 귀하의 취업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임금근로자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등) ②자영업주 또는 고용주 : 내 사업을 한다(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십장(오야지), 농림수산업, 행상 및 노점상 등) ③무급가족종사자 :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1.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 → 문4-4
3. 무급가족종사자 → 문4-4

//문4-1=1인 경우에만 질문//
문4-2. 귀하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

//문4-1=1인 경우에만 질문//
문4-3. 귀하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전일제
2. 시간제

문4-4.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2. 민간 대기업
3. 민간 중견기업
4. 민간 중소기업
5. 개인사업체
6. 기타 ( )

//문1=1을 선택한 경우에만 배우자 관련 질문(문5-1~문5-5)해주세요//
[카테고리(문5-1~문5-5) : **배우자**의 근로 환경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1. **배우자**의 현재 취업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취업
2. 휴직
3. 학업 →문6
4. 미취업 →문6

문5-2. **배우자**의 취업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임금근로자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등) ②자영업주 또는 고용주 : 내 사업을 한다(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십장(오야지), 농림수산업, 행상 및 노점상 등) ③무급가족종사자 :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1.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 →문5-5
3. 무급가족종사자 →문5-5

/문5-2=1인 경우에만 질문//
문5-3. **배우자**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

/문5-2=1인 경우에만 질문//
문5-4. **배우자**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전일제
2. 시간제

문5-5. **배우자**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2. 민간 대기업
3. 민간 중견기업
4. 민간 중소기업
5. 개인사업체
6. 기타 ( )

[카테고리 단독 : Ⅲ. 가구의 고용형태별 근로환경]

//문6~문11은 선문5=1,2인 경우 질문//

문6. 귀하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주간에 근무한다
2.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야간에 근무한다
3.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한다 →문8
4. 주 또는 달별로 스케줄 근무를 한다→문9
5. 출퇴근은 하되, 정해진 시간 없이 유연근무를 한다 →문9
6. 프리랜서로 근무한다 →문9
7. 기타 ( ) →문9

문7. 귀하의 주중(월~금 기준) 평균적인 출퇴근 시각은 몇 시입니까?
※ **24시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오후 1시→13시
1. 평일 출근시각 ( )시 ( )분
2. 평일 퇴근시각 ( )시 ( )분

문8. 귀하는 주중(월~금 기준) 평균적으로 며칠을 근무하십니까?
1. 주5일 근무
2. 주4일 근무
3. 주3일 근무
4. 주2일 근무
5. 주1일 근무

문9.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10

문9-1. 보통 한달 간 주말(토~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날은 며칠 정도입니까?
1. 한 달에 ( )일

문10. 보통 한 달간 하루에 10시간 이상(장시간 근로) 일하는 날은 며칠 정도입니까?
1. 한 달에 ( )일

문11. 자녀가 아프거나(예, 전염병으로 인해 기관등원 불가) 양육자의 긴급한 상황(예: 양육자의 갑작스런 야근 혹은 출장, 주양육자의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 지원이 필요할 때 자녀 돌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가를 씀
2. 자녀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
3. 시간제 보육 이용
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5. 기타(　　)

//문12~문14는 선문5=3,4인 경우 질문//

문12.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1. 어머니가 그만둔 적 있음
2. 아버지가 그만둔 적 있음
3.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있음
4.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없음 →문15

//문12=1,3만 질문//

문13. **자녀의 어머니**가 직장을 최초로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자녀의 시기가 겹치는 경우(예: 첫째자녀의 취학 이후와 둘째 자녀의 임신 시기가 겹침) **가장 주된 이유**가 된 자녀의 시기를 선택해주십시오.

구분	임신했을 때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만1세 이전	만1~2세 때	만3세~취학 전까지	취학 이후
	1	2	3	4	5	6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문12=2,3만 질문//

문13-1. **자녀의 아버지**가 직장을 최초로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자녀의 시기가 겹치는 경우(예: 첫째자녀의 취학 이후와 둘째 자녀의 임신 시기가 겹침) **가장 주된 이유**가 된 자녀의 시기를 선택해주십시오.

구분	임신했을 때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만1세 이전	만1~2세 때	만3세~취학 전까지	취학 이후
	1	2	3	4	5	6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문14.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 직장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어려워서
2. 소득보다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비용이 커서
3. 직장 일보다 육아를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4.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5. 일이 많아서 육아에 지장을 주어서
6. 육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7. 직장 내 육아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8. 동시에 여러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서
9. 기타 ( )

[카테고리 단독 : Ⅳ. 영아 양육지원 정책]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답해주십시오)

문15. 다음의 **비용지원 정책**들에 대해 이용 여부와, 이용하신 경우 만족도를 응답해주십오.

※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답해주십시오

구분	이용 여부		만족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2	1	2	3	4	5
1. 아동수당							
2.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3.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시 지원)							
4. 아이돌봄서비스							
5.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6. 시간제보육							
7.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16. 다음의 **비용지원 정책** 중에서 영아자녀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3가지**는 무엇입니까?

1. 아동수당
2.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3.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 지원)
4. 아이돌봄서비스
5.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6. 시간제보육
7.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17. 다음의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들에 대해 이용 여부와, 이용하신 경우 만족도를 응답해주십오.

※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답해주십시오

구분	이용 여부		만족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2	1	2	3	4	5
1.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장난감도서관 포함)							
2.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용							
3. 표준모자 보건수첩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5. 부모교육							
6. 공동육아나눔터							

문18. 다음의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중에서 영아자녀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3가지**는 무엇입니까?

1.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장난감도서관 포함)
2.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용
3. 표준모자 보건수첩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5. 부모교육
6. 공동육아 나눔터

//문17-1.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여부 = 1. 이용함 경우만 질문//

문 19-1.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실 때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셨습니까?
1. ( )

//문17-1.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여부 = 2. 이용하지 않음 경우만 질문//

문 19-2.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센터의 존재 여부를 몰라서
2. 센터의 접근성(거리, 교통 등)이 떨어져서
3.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4.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해서(이용시간, 이용방법 등)
5. 기타( )

문 20.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보통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21. 부모 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공공기관(주민센터, 지역사회 도서관(시립, 구립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 교육기관(평생교육원, 대학교 등)
3. 보육서비스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4. 기타( )

문 22. 부모교육이 어떤 시간대에 제공되어야 참석이 용이하십니까?
1. **주중(월~금)** 08:00~12:00
2. **주중(월~금)** 12:00~18:00
3. **주중(월~금)** 18:00~22:00
4. **주말(토~일)** 08:00~12:00
5. **주말(토~일)** 12:00~18:00
6. **주말(토~일)** 18:00~22:00

문23. 다음의 **육아관련 휴가·휴직 제도**들에 대해 이용 여부와, 이용하신 경우 만족도를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이용 여부			만족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3	4	5
1. 출산전후휴가								
2. 유산·사산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난임치료휴가								
5. 육아휴직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24. 다음의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들에 대해 이용 여부와, 이용하신 경우 만족도를 응답해주십오.

구분	이용 여부			만족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3	4	5
1.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2. 가족돌봄휴직								
3. 시간 외 근로 금지								
4.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5. 수유시간 허용								

문25. 귀하께서는 **탄력제, 시간선택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분	이용 여부			만족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3	4	5
1. 유연근무제 (탄력제, 시간선택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문25. 이용여부=1.이용함인 경우 질문//
문25-1. 귀하께서 이용하신 **유연근무제는** 다음 중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이용하신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4.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5.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문26. 다음 정책 중에서 영아자녀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3가지**는 무엇입니까?
1. 출산전후휴가
2. 유산·사산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난임치료휴가
5. 육아휴직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8. 가족돌봄휴직
9. 시간 외 근로 금지
10.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11. 수유시간 허용
12. 유연근무제(탄력제, 시간선택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문27. 귀하께서는 영아 양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 문28
2. 아니오

문27-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특히 정부의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책 범주는 무엇입니까?
1. 비용지원 정책
2.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정책
3. 시간 정책
4. 기타(　　)

문27-2. 귀하께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1. 정책이 중복되어 효과 미흡
2. 정책에 대한 홍보 미흡
3. 정책에 대한 설명 미흡
4. 정책별 비용이 낮게 책정
5. 정책의 실질적 작동 미흡
6. 정책 사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미정착
7. 정책대상이 한정적어서 대부분 미해당
8. 기타( )

[카테고리 단독 : Ⅴ. 응답자의 양육실태와 선호형태]

문28. 귀하의 자녀를 양육하는(했던) 형태는 무엇입니까? (막내 자녀 생년월 정보 제시 예: 2019년 5월생) 자녀 연령대별로 이용하신 주 형태와 보조 형태를 보기에서 골라 각각 기입해주십시오.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답해주십시오
▲연령대 내에서 주 양육형태가 달라진 경우, 더 오랜 기간 이용한 양육형태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보조양육형태는 이용한 것을 모두 고르고, 없을 때는 ⑫없음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막내 자녀의 출생연월이 2016년 9월 이전일 경우 만2세 부분에 24~36개월 당시 양육형태를 기입해주십시오.

[보기]

[기관이용]

① 어린이집

② 반일제 이상 학원(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③ 시간제 사교육기관(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비혈연양육지원서비스〉

⑥ 아이돌봄서비스 ⑦ 사설 베이비시터

〈혈연양육지원서비스〉

⑧ 조부모 ⑨ 기타친인척

[부모직접돌봄]

⑩ 부모가 직접 돌봄

[기타]

⑪ 기타 ⑫ 없음

구분	주 (단수)	보조 (복수)
만0세 (1~12개월 미만)		
만1세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만2세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문29. 귀하의 자녀 연령대별로 가구의 여건과 상관없이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하여 가장 선호하는 양육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제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기관이용]

① 어린이집

② 반일제 이상 학원(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③ 시간제 사교육기관(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비혈연양육지원서비스〉

⑥ 아이돌봄서비스 ⑦ 사설 베이비시터

〈혈연양육지원서비스〉

⑧ 조부모 ⑨ 기타친인척

[부모직접돌봄]

⑩ 부모가 직접 돌봄

[기타]

⑪ 기타 ⑫ 없음

구분	주(단수)	보조(복수)
만0세 (1~12개월 미만)		
만1세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만2세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문30. 귀하께서 자녀의 연령대별로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하여 해당 양육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 )

//문31~34는 문28에서 현재 주 양육형태가 ⑩현재 부모 직접 돌봄 임 경우만 질문//

문31. 귀하께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현재 (막내자녀 생년 제시) 자녀의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2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1.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해서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서
3. 비용 부담 때문에
4.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5.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7. 원하는 서비스의 대기가 길어서
8.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9. 영아 시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10. 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하여
11. 기타( )

문32.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조금 불만족
3. 보통
4. 조금 만족
5. 매우 만족

문32_1. 가정양육수당으로 적절한 금액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월 ( )만원

//문28. 보조양육형태가 있을 경우 질문//
문33. 귀하께서 주된 양육형태 외에 추가적인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양육 시간 외에 부모 개인시간의 확보를 위해서(병원, 약속, 휴식 등)
2. 육아의 체력부담이 커서
3.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4. 자녀에게 교육적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5. 기타

문34. 귀하께서 선택한 양육형태(주+보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조금 불만족
3. 보통
4. 조금 만족
5. 매우 만족

//문35~45은 문28에서 현재 주 양육형태가 ①어린이집 경우만 질문함//

문35. 귀하께서 어린이집을 현재 (막내자녀 생년 제시) 자녀의 주 양육형태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2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1. 근무 시간이 길어서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서
3. 직장에 복귀 혹은 취업하기 위해서
4. 비용 부담 때문에
5. 집 근처에 원하는 다른 서비스가 없어서
6.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7.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8. 원하는 다른 서비스의 대기가 길어서
9. 다른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10. 육아부담(신체적·정신적)을 완화하기 위해서
11. 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하여
12. 기타(　　)

문36.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국공립
2. 사회복지법인
3. 법인/단체 등
4. 민간
5. 직장
6. 가정
7. 부모협동

문37.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생후 (　　) 개월

문38. 귀하의 자녀께서 주중 평일(월-금) 평균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각과 하원하는 시각은 언제입니까?
※ **24시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오후 1시→13시
1. 평일 등원시각 ( )시 ( )분
2. 평일 하원시각 ( )시 ( )분

문39. 귀하의 자녀가 앞서 응답하신 어린이집의 평균 이용 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주당 평균 몇 회입니까?
1. 주당 평균 ( ) 회

//문28 보조양육형태가 있는 경우에만 질문//

문40. 귀하께서 주된 양육형태 외에 추가적인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2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1. 부모의 양육 시간 외에 개인시간 확보를 위해서
2.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3. 육아부담(신체적·정신적)을 완화하기 위해서
4. 근로시간이 어린이집 이용시간보다 길어서
5. 장시간 기관이용을 아이가 힘들어해서
6. 기타( )

//문28 보조양육형태가 있는 경우에만 질문//
문41.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몇 시간 입니까?
※ 선택하신 모든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한 총 시간을 기입해주십시오.

1. 주당 평균 이용시간 ( ) 시간

//문28. 보조양육형태가 있는 경우에만 질문//
문42.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하는 빈도는 주당 평균 몇 회입니까?
※ 선택하신 모든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한 총 횟수를 기입해주십시오.
※ 하루 동안 등원과 하원 도우미가 다를 경우 각각 1회로 보고, 하루 동안 동일한 기관이나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 1회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주당 평균 이용횟수 ( ) 회

문43. 양육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1. 중단할 생각 있음
2. 금액에 따라 다름
3. 관계없이 계속 어린이집 이용 →문53

문44. 가정양육수당이 얼마로 상향되면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까?(현재 가정양육수당 : 월 20만원/12개월 미만, 월 15만원/24개월 미만, 월 10만원/35개월 미만~취학 전)
1. 월 (　　) 만원

문45. 귀하께서 선택한 양육형태(주+보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조금 불만족
3. 보통
4. 조금 만족
5. 매우 만족

//문46~52는 문34에서 현재 주 양육형태가 ⑥ 아이돌봄서비스, ⑦ 사설 베이비시터, ⑧ 조부모, ⑨ 기타친인척 경우만 질문함//

//문28=⑧ 조부모 또는 ⑨ 기타친인척 경우만 질문//
문46. 혈연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누가 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주로 제공한 사람만 응답해 주시고, 주로 제공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친조부
2. 친조모
3. 외조부
4. 외조모
5. 부의 형제자매
6. 모의 형제자매
7. 기타 친족 (　　)

//문28=⑧ 조부모 또는 ⑨ 기타친인척 경우만 질문//
문47. 혈연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영아시기에는 기관이용보다는 개인양육서비스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2. 집 근처에 원하는 다른 서비스(예, 어린이집)가 없어서
3. 원하는 다른 서비스(예,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가 길어서
4. 각종 사건·사고(학대 문제, 차량 문제 등)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5. 기타(　　)

//문28=⑥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⑦ 사설 베이비시터 경우만 질문//
문48. 비혈연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영아시기에는 기관이용보다는 개인양육서비스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2. 집 근처에 원하는 다른 서비스(예, 어린이집)가 없어서
3. 원하는 다른 서비스(예, 어린이집)의 대기가 길어서
4. 기관양육의 각종 사건·사고(학대 문제, 차량 문제 등)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5.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예, 조부모)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6. 기타( )

//문28 보조양육형태가 있는 경우에만 질문//
문49. 귀하께서 주된 양육형태 외에 추가적인 보조 양육형태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2. 이용 중인 양육서비스가 종일로 제공되지 않아서
3. 이용 중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부담 완화를 위해
4. 자녀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위해
5. 기타( )

문50. 개인양육서비스로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1. 월 ( ) 만원

문51.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주중 평일(월-금) 기준 개인양육서비스를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얼마동안 이용하십니까?
※ 24시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오후 1시→13시

1. 시작시각 ( )시 ( )분
2. 종료시각 ( )시 ( )분

문52. 귀하께서 선택한 양육형태(주+보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조금 불만족
3. 보통
4. 조금 만족
5. 매우 만족

[카테고리 단독 : Ⅴ. 양육 비용]

문53. 귀 댁의 생활비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비용을 기입해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고,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

※ 가구 월평균 비용은 부모 등 성인과 모든 자녀에게 소용되는 비용으로 답변해 주세요.

항목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가구 월 평균비용
1)식비(외식비 포함)	- 가족전체가 함께한 외식비 등 포함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지불한 급간식비 등은 제외**	월 ( ) 만원
2)주거/관리비 (관리비,수도/광열비 , 월세)	-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 포함 - **집 전체의 수리, 건축비 등은 제외, 장사를 위한 임대료는 제외**	월 ( ) 만원
3)기기/집기	- 가구, 가전 등의 구매비 포함 - 아기 침대, 책상 등 포함	월 ( ) 만원
4)피복비	-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구매비 포함 - 자녀의 내의류 등 모두 포함 - 침구류 구매비 포함	월 ( ) 만원
5)보건/의료비	- 병원비, 약 구매비 포함 - 비타민, 한약 구매비 포함	월 ( ) 만원
6)교육/보육비	- 부모님의 교육비 포함 - 어린이집/유치원비용(급간식, 셔틀비 포함) 포함 -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사교육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포함	월 ( ) 만원
7)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 완구(장남감, 모빌, 보행기 등) 포함 - 도서(여가용 도서, 아동 전집 등) 포함 - 가족여행(교통/숙박/식음료 등 사용한 비용 전액) 포함 - 관람, 체험학습(영화, 스포츠, 공연, 박물관 관람, 키즈까페 등) 포함 **- 교재교구 구입비는 제외**	월 ( ) 만원
8)교통비	- 자동차 유지/유류비, 대중교통비 포함 **- 자동차구입비 제외** **- 자녀의 셔틀비용은 제외(교육비에 포함)**	월 ( ) 만원
9)통신비	- 핸드폰이용료,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	월 ( ) 만원

	- 휴대폰 구입비는 제외	
10)개인유지비	- 목욕용품, 바디로션, 기저귀, 물티슈, 세탁용품, 주방용품, 화장지, 화장품, 키친타월, 이미용 서비스 등 포함	월 ( ) 만원
11)금융상품비	- 저축(예금, 적금, 자녀명의 등) 및 보험(저축성 및 상해 등 각종 보험) 포함 - 이자 및 원금 납입금(주택 및 각종 대출 관련) 포함	월 ( ) 만원
12)이전지출비	-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포함 **- 자녀 돌봄을 대가로 드리는 용돈은 보육비로 분류하고 제외. 가족 내 이전 지출은 제외**	월 ( ) 만원
13)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용	- 주류 및 기호식품, 가사도우미 등 포함	월 ( ) 만원

문54. 귀 댁의 생활비 지출 중 가구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소요되는 항목별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 영아자녀의 월평균 비용은 영아자녀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귀댁 막내 영아자녀의 월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고,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

항목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영아자녀 월평균 비용
4)피복비 (가구 :)	-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구매비 포함 - 자녀의 내의류 등 모두 포함 - 침구류 구매비 포함	월 ( ) 만원
5)보건/의료비 (가구 :)	- 병원비, 약 구매비 포함 - 비타민, 한약 구매비 포함	월 ( ) 만원
6)교육/보육비 (가구 :)	- 부모님의 교육비 포함 - 어린이집/유치원비용(급간식, 셔틀비 포함) 포함 -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사교육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포함	월 ( ) 만원
7)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가구 :)	- 완구(장남감, 모빌, 보행기 등) 포함 - 도서(여가용 도서, 아동 전집 등) 포함 - 가족여행(교통/숙박/식음료 등 사용한 비용 전액) 포함 - 관람, 체험학습(영화, 스포츠, 공연, 박물관	월 ( ) 만원

	관람, 키즈까페 등) 포함 **- 교재교구 구입비는 제외**	
11)금융상품비 (가구 :)	- 저축(예금, 적금, 자녀명의 등) 및 보험(저축성 및 상해 등 각종 보험) 포함 - 이자 및 원금 납입금(주택 및 각종 대출 관련) 포함	월 ( ) 만원

문55. 현재 영아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3가지는 무엇입니까?

1. 식비(외식비 포함)
2. 주거/관리비(월세, 수도/광열비 등)
3. 기기/집기 (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등)
4. 피복비
5.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6. 교육/보육비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8. 교통/ 통신비
9.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10.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12.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주류, 담배 등)
14. 기타 ( )

문56. 귀하께서 자녀의 양육 시 가장 부담이 된다고 선택한 항목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1. 식비(외식비 포함) ( )
2. 주거/관리비(월세, 수도/광열비 등) ( )
3. 기기/집기 (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등) ( )
4. 피복비 ( )
5.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 )
6. 교육/보육비 (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 )
8. 교통/ 통신비 ( )

9.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 )
10.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 )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 )
12.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 )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주류, 담배 등) ( )
14. 기타 ( )

[카테고리 단독 : Ⅵ. 요구 및 개선]

문57. 영아가 있는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높음
	1	2	3	4	5	6	7
1.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예: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보육기관 제공기관 등 확대)							
2. 국공립 보육 기관 확대 (예: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확대)							
3. 취약보육 확대 (예: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4.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예: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낮춤,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급간식 지원비 향상, 통학차량, CCTV 등 안전확보)							
5. 보육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다양화(예: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등)							
6. 보육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예: 아이돌보미 인력교육 강화, 아이돌보미 인력 처우 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질 향상)							
7. 양육비 경감을 위한 비용 지원 확대(예: 가정양육수당, 아동양육수당, 보육료 등)							
8. 가정양육 지원 확대 (예: 가정 양육 기구 서비스 확충, 부모교육, 육아상담, 정보 제공 등 서비스)							
9.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예: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등)							
10.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실행 실질적 지원 강화(예: 미시행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휴직 확대 등)							
11. 남성의 양육참여 확대 (예: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지원 확대, 직장의 근로문화 개선)							
12. 양육자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예: 산후조리비용 지원확대, 임신 · 출산 진료비 확대 등)							
13. 자녀 양육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예: 영유아 검진비 지원 확대, 국가예방접종비 지원확대, 어린이전용 공공병원 확대)							
14. 품앗이 육아,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예: 인력지원 확대, 공간 확대, 비용 지원 확대)							
15. 육아친화문화 조성 캠페인 확대 (예: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친화 문화 조성, 노키즈존 인식 개선)							

문58. 기타 자유롭게 영아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추가적 요구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남겨주십시오.

1. ( )

문59. 정부는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영아(36개월 미만)가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고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1. 이용 경험 있음→문60
2.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문61
3.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문61
4. 전혀 모름→문61

문60. 귀댁에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 연령이 어려 종일 기관 이용이 부담되어서
2. 자녀 양육 이외의 개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서
3. 예상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필요해서
4. 입소 대기 등 현재 종일제 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나,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생각이라서
5. 기타( )

문61. 향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보육 재정 확대에 추가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면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62. 다음 항목에서 확대된 정부 재정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정책을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사회서비스 공공 일자리 확충
2.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3.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4. 가정양육수당 인상
5. 보육교사 처우개선(급여인상, 근로시간 단축)
6. 물리적 보육 환경 개선(시설환경, 급식, 교재/교구 등)
7. 어린이집 인적 환경 개선(보조인력 증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8.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보육교사 양성 및 자격관리, 보수 교육체계 개선 등)
9. 보육 서비스 다양화(어린이집 이외 보육서비스 확대 등)
10. 보육재정 안정화
11. 질높은 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2. 가정 내 양육 지원 강화
13.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14. 기타(아동 수당 확대)

배문1.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 만(　　)세

배문2.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미혼
2. 기혼
3. 이혼 또는 사별

배문3.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2~3년제) 졸업
4. 대학교(4년제) 졸업
5. 대학원 졸업 이상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조사결과 부표

〈부록 표 V-1〉 지난 3개월 월평균 비용(1): 식비, 주거, 기기, 피복, 의료, 교육, 여가

단위: (명), 만원

구분	수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	여가/문화
전체	(1,400)	62.1	27.7	12.2	18.0	12.4	32.6	20.8
지역 크기								
대도시	(560)	64.1	27.8	13.8	18.9	13.3	37.2	22.4
중소도시	(595)	62.0	27.9	11.2	17.0	11.6	30.6	20.6
읍면지역	(245)	57.6	26.9	11.1	18.3	12.2	26.9	17.8
F		2.5	0.2(a)	2.9(a)	2.7	1.8(a)	8.0***(a)	5.1**(a)
자녀 수								
1명	(601)	58.2	25.7	12.5	17.4	11.5	22.5	19.9
2명	(631)	64.1	29.1	11.3	17.9	12.4	38.0	21.6
3명 이상	(168)	68.7	29.5	14.9	20.4	15.3	48.5	21.4
F		6.7**(a)	4.9**	2.2(a)	2.9	4.1*	46.6***(a)	1.4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283)	58.7	25.2	15.0	16.5	13.0	26.9	19.3
만1세 (12~24개월 미만)	(419)	62.0	27.6	11.3	17.7	11.8	28.1	19.8
만2세 (24~36개월 미만)	(382)	65.2	29.5	12.7	18.6	13.9	37.0	21.4
만3세 (36~44개월 미만)	(316)	61.5	27.9	10.5	19.0	10.8	38.4	22.7
F		1.6	2.3	2.9*(a)	1.9	2.8*(a)	8.7***	2.2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820)	61.7	28.3	11.8	18.7	12.0	36.3	21.5
반일제 이상 학원	(8)	56.3	22.5	8.3	13.9	16.4	21.3	13.5
비혈연 개인양육	(19)	85.8	42.8	31.9	25.2	14.1	113.8	39.3
혈연 개인양육	(44)	61.0	25.0	9.8	18.2	14.3	59.7	19.7
부모 직접 돌봄	(488)	61.9	26.5	12.1	16.3	12.6	21.1	18.9
기타	(21)	64.7	25.2	20.9	22.7	15.6	29.4	28.8
F		1.6(a)	2.9*(a)	4.7***(a)	3.5**(a)	0.6(a)	38.1***(a)	6.0***(a)
모 취업 상태								
취업	(542)	64.3	29.1	13.8	20.2	12.6	43.0	23.3
휴직	(255)	60.1	26.3	12.3	15.8	12.8	23.5	19.2
학업	(17)	59.4	27.6	9.7	15.3	19.2	39.1	17.8
미취업	(586)	61.0	27.0	10.9	17.0	11.9	26.8	19.3
F		1.0(a)	1.4	2.0(a)	7.6***(a)	1.5(a)	25.3***(a)	5.3**(a)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518)	63.1	28.4	13.9	19.3	13.2	39.8	22.7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40)	60.3	27.1	11.5	17.4	11.4	31.0	21.3
자영업주/고용주	(72)	72.3	32.3	12.0	18.5	12.1	36.0	23.0
무급가족종사자	(67)	57.2	24.6	13.3	17.8	11.5	26.1	16.9
미취업	(603)	61.0	27.1	10.9	16.9	12.1	27.1	19.3
F		1.9(a)	1.6	1.7(a)	2.1	0.6	9.0***(a)	3.4**(a)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524)	63.2	28.5	14.0	19.0	13.0	40.3	23.3
임금근로자(시간제)	(134)	59.8	26.8	11.1	18.4	12.1	28.4	18.8

구분	수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	여가/문화
자영업주/고용주	(72)	72.3	32.3	12.0	18.5	12.1	36.0	23.0
무급가족종사자	(67)	57.2	24.6	13.3	17.8	11.5	26.1	16.9
미취업	(603)	61.0	27.1	10.9	16.9	12.1	27.1	19.3
F		2.0(a)	1.6	1.9(a)	1.6	0.3	10.2***(a)	4.8***(a)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56)	67.6	30.4	15.2	19.6	14.1	40.5	23.3
민간 대기업	(64)	68.5	33.8	15.8	22.9	14.3	44.3	27.4
민간 중견기업	(51)	69.6	26.9	14.0	19.6	13.1	36.5	24.8
민간 중소기업	(183)	61.3	26.6	11.0	17.3	10.8	39.2	22.3
개인사업체	(282)	59.3	27.5	13.3	18.6	12.4	32.6	20.0
기타	(61)	61.8	25.7	12.0	16.6	13.1	31.1	19.4
미취업	(603)	61.0	27.1	10.9	16.9	12.1	27.1	19.3
F		1.5(a)	1.7	1.7(a)	2.6*(a)	1.0	5.6***(a)	3.2**(a)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	40.1	23.2	7.0	15.3	9.0	16.9	8.9
200만원~350만원 미만	(433)	51.9	25.2	10.0	14.7	11.3	19.4	19.4
350만원~500만원 미만	(433)	62.0	26.2	11.4	17.4	11.8	29.0	29.0
500만원~650만원 미만	(348)	70.1	29.4	14.0	19.8	13.9	41.2	41.2
650만원~800만원 미만	(89)	70.2	30.5	13.7	22.9	13.9	49.2	49.2
800만원 이상	(72)	82.8	41.7	22.5	27.1	14.4	77.1	77.1
F		16.9***(a)	9.6***(a)	5.9***(a)	15.0***(a)	2.0	46.8***(a)	46.8***(a)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2〉 지난 3개월 월평균 비용(2): 교통, 통신, 개인유지, 금융상품, 이전지출, 기타

단위: (명), 만원

구분	수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비	이전지출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
전체	(1,400)	23.3	16.7	12.7	89.9	21.5	11.8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3.1	16.6	13.0	88.0	21.5	12.5
중소도시	(595)	23.5	16.6	12.3	91.2	21.4	11.4
읍면지역	(245)	23.1	17.0	12.8	91.2	21.4	11.2
F		0.1	0.2	0.6	0.3	0.0	1.0
자녀 수							
1명	(601)	22.4	16.2	12.5	88.3	22.0	10.6
2명	(631)	23.8	16.6	12.5	91.8	20.6	12.4
3명 이상	(168)	24.3	18.8	14.1	88.5	22.8	13.9
F		1.2	6.4**	2.0	0.3	0.6	4.2*(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283)	22.5	16.6	14.3	86.1	21.8	11.5
만1세 (12~24개월 미만)	(419)	23.1	16.2	13.1	86.3	19.6	11.7
만2세 (24~36개월 미만)	(382)	23.6	17.6	12.3	94.2	21.8	11.9
만3세 (36~44개월 미만)	(316)	23.8	16.4	11.1	93.0	23.3	12.2
F		0.3	2.0	5.2**(a)	1.1	1.0	0.1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구분	수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비	이전지출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
어린이집	(820)	24.1	17.1	12.2	94.9	21.2	12.3
반일제 이상 학원	(8)	18.1	17.6	15.0	39.4	23.9	16.3
비혈연 개인양육	(19)	29.9	14.8	15.8	73.2	28.5	27.5
혈연 개인양육	(44)	23.8	15.1	15.5	121.8	29.4	17.0
부모 직접 돌봄	(488)	21.8	16.3	13.1	81.0	21.1	9.8
기타	(21)	21.2	12.4	12.5	71.6	18.1	12.4
F		1.7(a)	2.2*	1.7(a)	4.5***(a)	1.0	7.7***(a)
모 취업 상태							
취업	(542)	26.1	17.1	13.3	110.1	25.0	14.2
휴직	(255)	20.5	16.6	12.5	86.7	20.5	10.9
학업	(17)	17.8	15.4	14.2	75.4	14.9	10.6
미취업	(586)	22.0	16.4	12.1	73.1	18.8	10.0
F		7.8***	0.8	1.4(a)	22.4***(a)	4.8**	7.9***(a)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518)	25.4	16.7	13.1	111.1	25.7	13.7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40)	21.3	16.8	12.1	88.7	18.0	10.8
자영업주/고용주	(72)	26.6	18.9	14.7	96.3	24.6	14.4
무급가족종사자	(67)	19.7	16.5	12.6	72.9	17.7	12.5
미취업	(603)	21.9	16.4	12.2	73.2	18.7	10.1
F		4.3**	1.5	1.5(a)	18.2***(a)	5.2***	5.0***(a)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524)	25.0	16.8	13.3	111.3	25.8	13.8
임금근로자(시간제)	(134)	22.8	16.7	11.4	86.9	17.1	10.2
자영업주/고용주	(72)	26.6	18.9	14.7	96.3	24.6	14.4
무급가족종사자	(67)	19.7	16.5	12.6	72.9	17.7	12.5
미취업	(603)	21.9	16.4	12.2	73.2	18.7	10.1
F		3.3*	1.5	2.2(a)	18.6***(a)	5.7***	5.6***(a)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56)	24.0	15.1	12.6	116.4	24.9	14.9
민간 대기업	(64)	29.0	18.0	14.7	111.1	23.2	14.1
민간 중견기업	(51)	26.9	17.6	14.9	118.6	23.9	12.4
민간 중소기업	(183)	24.5	17.4	12.3	101.1	23.5	12.3
개인사업체	(282)	23.2	17.6	12.9	95.7	22.6	13.2
기타	(61)	22.6	15.5	13.8	81.1	24.8	10.3
미취업	(603)	21.9	16.4	12.2	73.2	18.7	10.1
F		2.2*	2.5*	1.2(a)	11.0***(a)	1.8	3.5**(a)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	12.2	17.4	8.0	30.7	12.2	3.8
200만원~350만원 미만	(433)	19.6	16.3	11.0	58.6	14.4	8.0
350만원~500만원 미만	(433)	22.6	16.4	12.2	84.6	19.1	11.1
500만원~650만원 미만	(348)	26.2	17.1	13.6	110.9	25.8	13.6
650만원~800만원 미만	(89)	30.0	17.5	15.4	134.6	36.9	21.3
800만원 이상	(72)	30.4	17.3	19.3	173.9	41.9	21.3
F		12.4***(a)	0.7	11.8***(a)	52.9***(a)	21.6***(a)	23.5***(a)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3〉 영아 자녀양육 월평균 비용: 피복, 의료, 교육, 여가, 금융상품

단위: (명), 만원

구분	수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비	금융상품비
전체	(1,383)	9.6	7.5	26.3	13.6	27.1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0.2	8.2	30.0	14.9	27.1
중소도시	(588)	8.9	7.1	24.6	13.0	25.5
읍면지역	(241)	9.9	7.1	22.1	12.0	31.0
F		4.0*	2.0	5.7**(a)	4.8**(a)	2.4(a)
자녀 수						
1명	(592)	9.5	6.9	22.9	13.7	25.7
2명	(625)	9.6	7.8	28.6	14.0	27.8
3명 이상	(166)	9.6	8.6	28.1	11.7	29.7
F		0.0	2.1	4.3*(a)	1.9	1.2(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277)	8.9	7.1	22.9	11.5	26.9
만1세 (12~24개월 미만)	(416)	9.8	7.2	24.1	13.6	25.5
만2세 (24~36개월 미만)	(375)	9.8	8.8	27.8	13.8	29.9
만3세 (36~44개월 미만)	(315)	9.6	6.8	29.9	15.2	25.9
F		0.8	2.5	2.9*	3.9**(a)	1.4(a)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809)	9.9	7.5	28.8	14.2	28.3
반일제 이상 학원	(8)	7.5	8.4	17.1	7.6	21.9
비혈연 개인양육	(19)	13.7	10.5	101.5	25.1	34.1
혈연 개인양육	(43)	9.3	7.3	52.6	12.2	41.7
부모 직접 돌봄	(483)	8.8	7.6	15.4	12.1	23.1
기타	(21)	13.0	8.4	19.2	20.0	38.5
F		3.1**(a)	0.4	40.5***(a)	5.7***(a)	4.2***(a)
모 취업 상태						
취업	(536)	10.1	7.3	35.1	15.0	30.4
휴직	(252)	8.9	8.0	19.0	12.7	27.0
학업	(17)	8.3	6.7	22.1	13.4	28.2
미취업	(578)	9.4	7.7	20.8	12.7	24.0
F		1.6	0.3	22.0***(a)	3.3*(a)	3.6*(a)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511)	10.0	7.7	33.8	14.6	30.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40)	9.1	6.9	25.4	13.3	28.1
자영업주/고용주	(71)	9.6	6.9	26.8	16.6	28.8
무급가족종사자	(66)	9.6	7.3	19.4	11.3	25.5
미취업	(595)	9.4	7.6	20.8	12.7	24.2
F		0.5	0.2	10.9***(a)	2.9*(a)	2.5*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518)	9.8	7.6	34.3	14.7	29.1
임금근로자(시간제)	(133)	9.7	7.5	22.9	13.1	32.4
자영업주/고용주	(71)	9.6	6.9	26.8	16.6	28.8
무급가족종사자	(66)	9.6	7.3	19.4	11.3	25.5
미취업	(595)	9.4	7.6	20.8	12.7	24.2

구분	수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비	금융상품비
F		0.2	0.1	12.2***(a)	3.0*(a)	2.7*(a)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55)	9.6	8.7	32.3	14.6	31.6
민간 대기업	(63)	12.4	9.0	36.0	19.1	33.8
민간 중견기업	(51)	10.8	7.2	36.8	14.5	32.7
민간 중소기업	(181)	9.2	6.8	34.2	14.8	29.0
개인사업체	(280)	9.4	6.8	26.4	13.0	26.7
기타	(58)	9.8	8.2	22.7	12.4	29.1
미취업	(595)	9.4	7.6	20.8	12.7	24.2
F		1.7(a)	1.0	6.8***(a)	2.9**(a)	2.2*(a)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10.8	6.7	19.6	8.1	13.0
200만원~350만원 미만	(425)	9.0	7.5	16.5	11.1	20.9
350만원~500만원 미만	(431)	9.1	7.1	23.5	13.5	27.5
500만원~650만원 미만	(345)	9.9	7.7	29.4	14.1	30.3
650만원~800만원 미만	(89)	11.3	8.3	39.4	18.6	37.6
800만원 이상	(71)	12.2	8.7	66.9	21.7	37.3
F		3.3**(a)	0.4	36.0***(a)	11.9***(a)	8.1***(a)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4〉 월 가구지출 대비 자녀양육비 평균비율: 피복, 의료, 교육, 여가, 금융상품

단위: (명), %

구분	수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비	금융상품비
전체	(1,383)	56.9	66.6	77.1	70.2	41.2
지역 크기						
대도시	(554)	57.6	66.6	78.5	71.7	41.7
중소도시	(588)	55.6	66.9	76.1	68.3	39.9
읍면지역	(241)	58.5	66.1	76.6	71.2	43.1
F		1.3	0.1(a)	0.7(a)	1.9	0.9
자녀 수						
1명	(592)	58.3	64.9	86.1	74.3	41.9
2명	(625)	57.5	69.6	74.7	69.5	40.8
3명 이상	(166)	50.0	61.8	59.0	57.9	40.1
F		6.7**(a)	6.6**(a)	44.2***(a)	19.2***(a)	0.2(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277)	57.4	63.5	72.4	67.7	43.9
만1세 (12~24개월 미만)	(416)	59.2	67.1	76.4	72.3	42.1
만2세 (24~36개월 미만)	(375)	56.4	67.4	78.2	70.3	39.7
만3세 (36~44개월 미만)	(315)	54.1	67.9	80.3	69.4	39.3
F		2.3(a)	1.4(a)	2.5(a)	1.3(a)	1.2
막내자녀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809)	56.3	68.7	80.0	70.4	40.1
반일제 이상 학원	(8)	61.1	68.3	73.8	71.0	71.3
비혈연 개인양육	(19)	63.0	75.4	87.1	68.0	54.9
혈연 개인양육	(43)	56.4	63.3	83.4	65.3	39.8
부모 직접 돌봄	(483)	57.8	63.2	70.5	70.1	41.6
기타	(21)	55.9	64.0	73.4	75.7	54.8
F		0.4(a)	2.7*(a)	4.7***(a)	0.4	2.7*
모 취업 상태						
취업	(536)	54.9	65.5	78.9	68.1	37.5
휴직	(252)	58.5	67.2	75.3	70.9	44.7
학업	(17)	59.6	68.2	64.5	80.8	46.7
미취업	(578)	58.0	67.4	76.5	71.5	43.0
F		1.8	0.5	1.4(a)	1.9	3.7*(a)
모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511)	55.7	66.3	79.4	68.6	39.1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40)	57.5	66.2	76.2	68.2	38.8
자영업주/고용주	(71)	53.3	61.3	74.5	72.3	42.9
무급가족종사자	(66)	58.6	68.4	72.5	70.2	43.7
미취업	(595)	58.0	67.5	76.2	71.7	43.1
F		0.9	0.8	1.0(a)	1.0	1.2
모 근무 형태						
임금근로자(전일제)	(518)	56.4	66.1	79.4	68.1	37.6
임금근로자(시간제)	(133)	55.1	67.0	76.2	70.2	44.9
자영업주/고용주	(71)	53.3	61.3	74.5	72.3	42.9
무급가족종사자	(66)	58.6	68.4	72.5	70.2	43.7
미취업	(595)	58.0	67.5	76.2	71.7	43.1

구분	수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비	금융상품비
F		0.9	0.8	1.0(a)	1.1	2.4*
모 사업장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	(155)	56.6	66.7	76.1	68.2	36.8
민간 대기업	(63)	58.5	66.8	73.2	67.4	39.2
민간 중견기업	(51)	58.3	67.0	76.4	64.7	38.7
민간 중소기업	(181)	55.7	69.5	84.2	71.7	40.8
개인사업체	(280)	55.4	63.7	77.3	69.7	41.0
기타	(58)	54.2	63.1	71.1	64.8	40.3
미취업	(595)	58.0	67.5	76.2	71.7	43.1
F		0.6	1.0(a)	1.7(a)	1.1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66.6	75.0	90.0	88.5	56.0
200만원~350만원 미만	(425)	62.8	70.5	79.8	76.2	47.7
350만원~500만원 미만	(431)	55.4	65.3	74.5	69.0	40.7
500만원~650만원 미만	(345)	54.0	63.6	75.4	66.2	36.4
650만원~800만원 미만	(89)	48.8	63.1	77.2	62.7	38.7
800만원 이상	(71)	52.3	67.5	82.2	64.5	27.4
F		8.3***(a)	3.2**	2.0(a)	7.8***(a)	7.9***(a)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5〉 양육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1순위)

단위: %(명)

구분	계	식비 (외식 포함)	주거 /관리비 (월세, 수도 등)	기기 /집기 (가전, 가구 등)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 통신비	개인유지비 (세탁, 미용, 기저귀, 화장품 등)	금융 상품 (어린이 보험, 저축 등)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부모님 용돈 등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 담배 등)	기타
전체	100.0(1,400)	24.6	5.0	1.1	2.1	4.6	24.0	2.6	0.3	8.3	5.4	20.1	1.5	0.1	0.3
모 취업 상태															
취업	100.0(542)	20.1	5.0	1.7	3.0	4.1	28.2	2.6	0.6	5.0	4.8	21.4	2.8	0.2	0.7
휴직	100.0(255)	22.0	5.1	0.8	1.6	7.1	20.0	1.6	0.0	12.9	8.6	19.6	0.8	0.0	0.0
학업	100.0(17)	41.2	0.0	0.0	0.0	5.9	23.5	0.0	0.0	5.9	5.9	11.8	5.9	0.0	0.0
미취업	100.0(586)	29.5	5.1	0.7	1.5	4.1	21.8	3.2	0.2	9.4	4.6	19.3	0.5	0.0	0.0
X^2(df)		78.414(3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00.0(25)	36.0	12.0	0.0	4.0	8.0	16.0	0.0	0.0	12.0	0.0	8.0	4.0	0.0	0.0
200만원~350만원 미만	100.0(433)	26.3	6.7	0.7	2.1	4.8	19.6	2.5	0.2	11.3	5.8	19.2	0.7	0.0	0.0
350만원~500만원 미만	100.0(433)	29.6	3.5	0.9	1.8	3.0	21.5	2.3	0.0	7.9	6.2	21.9	0.7	0.2	0.5
500만원~650만원 미만	100.0(348)	19.5	4.3	0.9	2.6	5.2	27.6	2.6	0.3	7.2	5.5	21.8	2.6	0.0	0.0
650만원~800만원 미만	100.0(89)	15.7	2.2	2.2	1.1	9.0	31.5	5.6	1.1	4.5	3.4	21.3	1.1	0.0	1.1
800만원 이상	100.0(72)	16.7	8.3	4.2	1.4	4.2	41.7	2.8	1.4	1.4	2.8	8.3	5.6	0.0	1.4
X^2(df)		120.152(65)***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6〉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계	필요성 낮음 ①	②	③	①+②+③	④	⑤	⑥	필요성 높음 ⑦	⑤+⑥+⑦	평균
전체	100.0 (1,400)	1.4	0.3	1.2	2.9	9.0	16.5	16.5	55.1	88.1	6.1
지역 크기											
대도시	100.0 (560)	1.3	0.4	1.6	3.2	9.6	14.3	19.1	53.8	87.1	6.1
중소도시	100.0 (595)	1.5	0.2	1.0	2.7	7.9	17.8	15.0	56.6	89.4	6.1
읍면지역	100.0 (245)	1.2	0.4	0.8	2.4	10.2	18.4	14.3	54.7	87.3	6.1
X^2(df)/F		10.539(12)									0.3
자녀 수											
1명	100.0 (601)	0.8	0.2	0.8	1.8	7.7	14.8	17.6	58.1	90.5	6.2
2명	100.0 (631)	1.6	0.5	1.3	3.3	9.0	16.8	16.3	54.5	87.6	6.1
3명 이상	100.0 (168)	2.4	0.0	2.4	4.8	13.7	21.4	13.1	47.0	81.5	5.8
X^2(df)/F		20.473(12)									7.6***(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00.0 (283)	1.1	0.4	0.0	1.4	9.2	17.0	15.5	56.9	89.4	6.1
만1세 (12-24개월 미만)	100.0 (419)	2.4	0.5	1.0	3.8	6.2	19.3	15.5	55.1	90.0	6.1
만2세 (24-36개월 미만)	100.0 (382)	0.8	0.3	2.4	3.4	9.4	13.1	14.7	59.4	87.2	6.2
만3세 (36-44개월 미만)	100.0 (316)	0.9	0.0	1.3	2.2	12.0	16.5	20.9	48.4	85.8	6.0
X^2(df)/F		34.628(18)*									1.2
모 취업 상태											
취업	100.0 (542)	1.3	0.2	0.4	1.8	8.7	15.5	16.8	57.2	89.5	6.2
휴직	100.0 (255)	1.6	0.0	1.2	2.7	10.2	15.3	16.9	54.9	87.1	6.1
학업	100.0 (17)	5.9	0.0	11.8	17.6	0.0	17.6	11.8	52.9	82.4	5.7
미취업	100.0 (586)	1.2	0.5	1.7	3.4	9.0	17.9	16.2	53.4	87.5	6.0
X^2(df)/F		29.089(18)*									1.4(a)

주: 1) 1(필요성 낮음) ~ 7(필요성 높음)의 7점 척도에 응답한 결과임.
2)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기관 제공기관 확대 등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7〉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국공립 보육기관 확대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계	필요성 낮음 ①	②	③	①+②+③	④	⑤	⑥	필요성 높음 ⑦	⑤+⑥+⑦	평균
전체	100.0 (1,400)	0.7	0.3	0.8	1.8	5.6	9.7	16.1	66.8	92.6	6.4
지역 크기											
대도시	100.0 (560)	0.5	0.7	1.4	2.7	6.6	9.1	16.8	64.8	90.7	6.3
중소도시	100.0 (595)	1.0	0.0	0.0	1.0	4.5	10.1	15.5	68.9	94.5	6.4
읍면지역	100.0 (245)	0.4	0.0	1.2	1.6	5.7	10.2	16.3	66.1	92.7	6.4
X^2(df)/F		19.158(12)									1.8(a)
자녀 수											
1명	100.0 (601)	0.5	0.2	0.5	1.2	6.0	7.8	16.3	68.7	92.8	6.4
2명	100.0 (631)	0.5	0.3	0.8	1.6	4.4	10.8	15.5	67.7	94.0	6.4
3명 이상	100.0 (168)	2.4	0.6	1.8	4.8	8.3	12.5	17.9	56.5	86.9	6.1
X^2(df)/F		22.827(12)*									8.3***(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00.0 (283)	1.1	0.0	1.4	2.5	4.2	9.5	15.5	68.2	93.3	6.4
만1세 (12-24개월 미만)	100.0 (419)	0.7	0.7	0.0	1.4	4.1	9.8	18.4	66.3	94.5	6.4
만2세 (24-36개월 미만)	100.0 (382)	0.3	0.0	1.3	1.6	6.3	9.2	14.1	68.8	92.1	6.4
만3세 (36-44개월 미만)	100.0 (316)	0.9	0.3	0.6	1.9	7.9	10.4	16.1	63.6	90.2	6.3
X^2(df)/F		22.083(18)									1.1
모 취업 상태											
취업	100.0 (542)	1.1	0.2	0.7	2.0	6.3	10.0	16.6	65.1	91.7	6.3
휴직	100.0 (255)	0.8	0.0	0.0	0.8	5.9	10.2	15.7	67.5	93.3	6.4
학업	100.0 (17)	0.0	0.0	0.0	0.0	0.0	5.9	5.9	88.2	100.0	6.8
미취업	100.0 (586)	0.3	0.5	1.2	2.0	4.9	9.4	16.2	67.4	93.0	6.4
X^2(df)/F		12.826(18)									1.4(a)

주: 1(필요성 낮음) ~ 7(필요성 높음)의 7점 척도에 응답한 결과임.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8〉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계	필요성 낮음 ①	②	③	①+②+③	④	⑤	⑥	필요성 높음 ⑦	⑤+⑥+⑦	평균
전체	100.0 (1,400)	0.3	0.1	0.4	0.9	4.2	7.9	16.2	70.8	94.9	6.5
지역 크기											
대도시	100.0 (560)	0.7	0.2	0.4	1.3	5.2	7.1	16.4	70.0	93.6	6.5
중소도시	100.0 (595)	0.0	0.2	0.5	0.7	3.5	7.6	16.6	71.6	95.8	6.5
읍면지역	100.0 (245)	0.0	0.0	0.4	0.4	3.7	10.6	14.7	70.6	95.9	6.5
X^2(df)/F		11.941(12)									1.0(a)
자녀 수											
1명	100.0 (601)	0.2	0.2	0.7	1.0	4.2	6.2	15.6	73.0	94.8	6.6
2명	100.0 (631)	0.3	0.2	0.2	0.6	3.8	9.5	15.5	70.5	95.6	6.5
3명 이상	100.0 (168)	0.6	0.0	0.6	1.2	6.0	8.3	20.8	63.7	92.9	6.4
X^2(df)/F		13.141(12)									2.1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00.0 (283)	0.7	0.0	0.7	1.4	3.5	9.2	12.4	73.5	95.1	6.5
만1세 (12-24개월 미만)	100.0 (419)	0.5	0.2	0.2	1.0	3.8	7.9	16.9	70.4	95.2	6.5
만2세 (24-36개월 미만)	100.0 (382)	0.0	0.3	0.3	0.5	3.9	6.8	15.2	73.6	95.5	6.6
만3세 (36-44개월 미만)	100.0 (316)	0.0	0.0	0.6	0.6	5.7	8.2	19.9	65.5	93.7	6.4
X^2(df)/F		18.243(18)									1.2
모 취업 상태											
취업	100.0 (542)	0.2	0.2	0.7	1.1	4.1	8.7	15.5	70.7	94.8	6.5
휴직	100.0 (255)	0.0	0.0	0.4	0.4	4.7	4.7	15.7	74.5	94.9	6.6
학업	100.0 (17)	0.0	0.0	0.0	0.0	5.9	11.8	0.0	82.4	94.1	6.6
미취업	100.0 (586)	0.5	0.2	0.2	0.9	4.1	8.5	17.6	68.9	95.1	6.5
X^2(df)/F		14.066(18)									0.9

주: 1(필요성 낮음) ~ 7(필요성 높음)의 7점 척도에 응답한 결과임.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9〉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보육지원 서비스 질 제고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계	필요성 낮음 ①	②	③	①+②+③	④	⑤	⑥	필요성 높음 ⑦	⑤+⑥+⑦	평균
전체	100.0 (1,400)	0.1	0.1	0.4	0.6	5.4	13.3	18.8	61.9	93.9	6.4
지역 크기											
대도시	100.0 (560)	0.2	0.2	0.4	0.7	6.6	11.3	19.8	61.6	92.7	6.3
중소도시	100.0 (595)	0.2	0.0	0.7	0.8	4.7	14.5	18.5	61.5	94.5	6.3
읍면지역	100.0 (245)	0.0	0.0	0.0	0.0	4.5	15.1	17.1	63.3	95.5	6.4
X^2(df)/F		10.032(12)									0.2
자녀 수											
1명	100.0 (601)	0.2	0.0	0.2	0.3	4.0	12.1	17.8	65.7	95.7	6.4
2명	100.0 (631)	0.0	0.2	0.6	0.8	6.5	13.8	18.7	60.2	92.7	6.3
3명 이상	100.0 (168)	0.6	0.0	0.6	1.2	6.5	15.5	22.6	54.2	92.3	6.2
X^2(df)/F		16.511(12)									5.2**(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00.0 (283)	0.4	0.0	0.0	0.4	6.0	11.0	19.1	63.6	93.6	6.4
만1세 (12-24개월 미만)	100.0 (419)	0.0	0.2	0.7	1.0	5.3	14.8	16.5	62.5	93.8	6.3
만2세 (24-36개월 미만)	100.0 (382)	0.3	0.0	0.0	0.3	4.5	11.5	19.4	64.4	95.3	6.4
만3세 (36-47개월 미만)	100.0 (316)	0.0	0.0	0.9	0.9	6.3	15.5	20.9	56.3	92.7	6.3
X^2(df)/F		19.752(18)									2.0(a)
모 취업 상태											
취업	100.0 (542)	0.4	0.0	0.4	0.7	4.8	12.2	17.9	64.4	94.5	6.4
휴직	100.0 (255)	0.0	0.0	0.4	0.4	5.1	11.4	20.8	62.4	94.5	6.4
학업	100.0 (17)	0.0	0.0	0.0	0.0	5.9	11.8	5.9	76.5	94.1	6.5
미취업	100.0 (586)	0.0	0.2	0.5	0.7	6.1	15.2	19.1	58.9	93.2	6.3
X^2(df)/F		12.926(18)									1.5

주: 1) 1(필요성 낮음) ~ 7(필요성 높음)의 7점 척도에 응답한 결과임.
2) 아이돌보미 인력 교육 강화, 아이돌봄 인력 처우개선, 아이돌봄 인력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질 향상 등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10〉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양육비 경감을 위한 비용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계	필요성 낮음 ①	②	③	①+②+③	④	⑤	⑥	필요성 높음 ⑦	⑤+⑥+⑦	평균
전체	100.0 (1,400)	0.6	0.5	0.7	1.9	6.1	10.6	18.1	63.3	92.0	6.3
지역 크기											
대도시	100.0 (560)	0.7	0.9	0.5	2.1	7.3	10.0	20.2	60.4	90.5	6.3
중소도시	100.0 (595)	0.8	0.3	0.8	2.0	5.5	10.8	16.3	65.4	92.4	6.4
읍면지역	100.0 (245)	0.0	0.0	0.8	0.8	4.9	11.8	17.6	64.9	94.3	6.4
X^2(df)/F		12.168(12)									1.7
자녀 수											
1명	100.0 (601)	0.7	0.5	0.8	2.0	7.3	10.8	18.1	61.7	90.7	6.3
2명	100.0 (631)	0.6	0.5	0.6	1.7	5.2	10.8	17.6	64.7	93.0	6.4
3명 이상	100.0 (168)	0.6	0.6	0.6	1.8	5.4	9.5	19.6	63.7	92.9	6.4
X^2(df)/F		3.599(12)									0.9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00.0 (283)	0.7	0.4	1.4	2.5	5.3	8.8	18.0	65.4	92.2	6.4
만1세 (12-24개월 미만)	100.0 (419)	0.2	0.5	0.5	1.2	4.5	12.4	18.6	63.2	94.3	6.4
만2세 (24-36개월 미만)	100.0 (382)	1.3	0.3	0.5	2.1	5.5	10.7	15.7	66.0	92.4	6.4
만3세 (36-44개월 미만)	100.0 (316)	0.3	0.9	0.6	1.9	9.8	9.8	20.3	58.2	88.3	6.2
X^2(df)/F		24.136(18)									1.5
모 취업 상태											
취업	100.0 (542)	0.9	0.9	1.1	3.0	6.6	10.5	16.6	63.3	90.4	6.3
휴직	100.0 (255)	0.4	0.0	0.4	0.8	8.2	10.6	19.2	61.2	91.0	6.3
학업	100.0 (17)	0.0	0.0	0.0	0.0	5.9	0.0	11.8	82.4	94.1	6.7
미취업	100.0 (586)	0.5	0.3	0.5	1.4	4.8	11.1	19.1	63.7	93.9	6.4
X^2(df)/F		15.231(18)									1.5(a)

주: 1) 1(필요성 낮음) ~ 7(필요성 높음)의 7점 척도에 응답한 결과임.
2)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등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11〉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계	필요성 낮음 ①	②	③	①+②+③	④	⑤	⑥	필요성 높음 ⑦	⑤+⑥+⑦	평균
전체	100.0 (1,400)	0.3	0.2	0.9	1.4	4.2	11.3	15.7	67.4	94.4	6.4
지역 크기											
대도시	100.0 (560)	0.5	0.4	2.0	2.9	4.1	12.1	15.5	65.4	93.0	6.4
중소도시	100.0 (595)	0.2	0.2	0.2	0.5	5.2	10.3	16.5	67.6	94.3	6.4
읍면지역	100.0 (245)	0.0	0.0	0.4	0.4	2.0	11.8	14.3	71.4	97.6	6.5
X^2(df)/F											3.6*(a)
자녀 수											
1명	100.0 (601)	0.3	0.2	0.7	1.2	4.0	10.0	15.6	69.2	94.8	6.5
2명	100.0 (631)	0.2	0.3	1.1	1.6	4.0	11.1	15.2	68.1	94.5	6.4
3명 이상	100.0 (168)	0.6	0.0	1.2	1.8	6.0	16.7	17.9	57.7	92.3	6.2
X^2(df)/F											4.1*(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00.0 (283)	0.7	0.0	0.4	1.1	4.9	12.0	12.7	69.3	94.0	6.4
만1세 (12-24개월 미만)	100.0 (419)	0.0	0.5	0.7	1.2	2.1	10.0	17.2	69.5	96.7	6.5
만2세 (24-36개월 미만)	100.0 (382)	0.3	0.0	0.8	1.0	4.2	11.8	14.7	68.3	94.8	6.4
만3세 (36-47개월 미만)	100.0 (316)	0.3	0.3	1.9	2.5	6.3	11.7	17.7	61.7	91.1	6.3
X^2(df)/F											3.2*(a)
모 취업 상태											
취업	100.0 (542)	0.6	0.0	0.6	1.1	4.4	10.3	14.4	69.7	94.5	6.5
휴직	100.0 (255)	0.0	0.4	0.8	1.2	3.9	10.2	16.5	68.2	94.9	6.5
학업	100.0 (17)	0.0	0.0	0.0	0.0	5.9	0.0	0.0	94.1	94.1	6.8
미취업	100.0 (586)	0.2	0.3	1.4	1.9	4.1	13.0	17.1	64.0	94.0	6.4
X^2(df)/F											2.0(a)

주: 1) 1(필요성 낮음) ~ 7(필요성 높음)의 7점 척도에 응답한 결과임.
2)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등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12〉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남성의 양육참여 확대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계	필요성 낮음 ①	②	③	①+②+③	④	⑤	⑥	필요성 높음 ⑦	⑤+⑥+⑦	평균
전체	100.0 (1,400)	0.5	0.1	0.7	1.3	4.8	10.1	16.3	67.6	93.9	6.4
지역 크기											
대도시	100.0 (560)	0.9	0.2	0.9	2.0	5.4	9.6	18.6	64.5	92.7	6.4
중소도시	100.0 (595)	0.3	0.0	0.7	1.0	4.7	10.1	14.5	69.7	94.3	6.5
읍면지역	100.0 (245)	0.0	0.0	0.4	0.4	3.7	11.0	15.5	69.4	95.9	6.5
X^2(df)/F		11.154(12)									2.3(a)
자녀 수											
1명	100.0 (601)	0.3	0.0	0.7	1.0	3.5	9.5	16.8	69.2	95.5	6.5
2명	100.0 (631)	0.5	0.2	0.8	1.4	5.2	10.6	14.1	68.6	93.3	6.4
3명 이상	100.0 (168)	1.2	0.0	0.6	1.8	7.7	10.1	22.6	57.7	90.5	6.2
X^2(df)/F		17.908(12)									4.1*(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00.0 (283)	0.4	0.0	0.4	0.7	4.6	8.5	15.9	70.3	94.7	6.5
만1세 (12-24개월 미만)	100.0 (419)	0.5	0.2	0.5	1.2	4.5	11.0	15.0	68.3	94.3	6.4
만2세 (24-36개월 미만)	100.0 (382)	0.8	0.0	0.5	1.3	5.0	9.2	16.2	68.3	93.7	6.4
만3세 (36-44개월 미만)	100.0 (316)	0.3	0.0	1.6	1.9	5.1	11.4	18.4	63.3	93.0	6.4
X^2(df)/F		12.239(18)									1.1
모 취업 상태											
취업	100.0 (542)	0.4	0.0	0.9	1.3	4.8	11.1	15.3	67.5	93.9	6.4
휴직	100.0 (255)	0.0	0.0	0.4	0.4	5.1	9.4	16.1	69.0	94.5	6.5
학업	100.0 (17)	0.0	0.0	0.0	0.0	11.8	5.9	0.0	82.4	88.2	6.5
미취업	100.0 (586)	0.9	0.2	0.7	1.7	4.4	9.6	17.7	66.6	93.9	6.4
X^2(df)/F		12.833(18)									0.4

주: 1) 1(필요성 낮음) ~ 7(필요성 높음)의 7점 척도에 응답한 결과임.
2)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지원 확대, 직장의 근로문화 개선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13〉 영아 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자녀 양육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계	필요성 낮음 ①	②	③	①+②+③	④	⑤	⑥	필요성 높음 ⑦	⑤+⑥+⑦	평균
전체	100.0 (1,400)	0.5	0.1	0.7	1.3	4.8	10.1	16.3	67.6	93.9	6.4
지역 크기											
대도시	100.0 (560)	0.9	0.2	0.9	2.0	5.4	9.6	18.6	64.5	92.7	6.4
중소도시	100.0 (595)	0.3	0.0	0.7	1.0	4.7	10.1	14.5	69.7	94.3	6.5
읍면지역	100.0 (245)	0.0	0.0	0.4	0.4	3.7	11.0	15.5	69.4	95.9	6.5
X^2(df)/F		11.154(12)									2.3(a)
자녀 수											
1명	100.0 (601)	0.3	0.0	0.7	1.0	3.5	9.5	16.8	69.2	95.5	6.5
2명	100.0 (631)	0.5	0.2	0.8	1.4	5.2	10.6	14.1	68.6	93.3	6.4
3명 이상	100.0 (168)	1.2	0.0	0.6	1.8	7.7	10.1	22.6	57.7	90.5	6.2
X^2(df)/F		17.908(12)									4.1*(a)
막내 자녀 연령											
만0세 (1~12개월 미만)	100.0 (283)	0.4	0.0	0.4	0.7	4.6	8.5	15.9	70.3	94.7	6.5
만1세 (12-24개월 미만)	100.0 (419)	0.5	0.2	0.5	1.2	4.5	11.0	15.0	68.3	94.3	6.4
만2세 (24-36개월 미만)	100.0 (382)	0.8	0.0	0.5	1.3	5.0	9.2	16.2	68.3	93.7	6.4
만3세 (36-47개월 미만)	100.0 (316)	0.3	0.0	1.6	1.9	5.1	11.4	18.4	63.3	93.0	6.4
X^2(df)/F		12.239(18)									1.1
모 취업 상태											
취업	100.0 (542)	0.4	0.0	0.9	1.3	4.8	11.1	15.3	67.5	93.9	6.4
휴직	100.0 (255)	0.0	0.0	0.4	0.4	5.1	9.4	16.1	69.0	94.5	6.5
학업	100.0 (17)	0.0	0.0	0.0	0.0	11.8	5.9	0.0	82.4	88.2	6.5
미취업	100.0 (586)	0.9	0.2	0.7	1.7	4.4	9.6	17.7	66.6	93.9	6.4
X^2(df)/F		12.833(18)									0.4

주: 1) 1(필요성 낮음) ~ 7(필요성 높음)의 7점 척도에 응답한 결과임.
2) 영유아 검진비 지원 확대, 국가예방접종비 지원확대, 어린이전공 공공병원 확대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Ⅴ-14〉 자녀의 주+보조 양육형태(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문화센터 등)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 직접 돌봄	기타
전체	(1,400)	58.6	2.6	8.6	5.5	4.6	2.3	37.2	5.8	77.2	2.2
모 취업 상태											
취업	(542)	79.5	3.7	5.9	6.8	6.6	4.1	50.4	7.7	59.0	1.1
휴직	(255)	39.6	1.6	9.0	5.1	6.3	2.0	45.1	6.7	86.3	1.6
학업	(17)	70.6	5.9	5.9	5.9	0.0	0.0	17.6	5.9	82.4	0.0
미취업	(586)	47.3	1.9	10.9	4.4	2.2	0.9	22.2	3.6	89.9	3.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	52.0	0.0	8.0	0.0	8.0	4.0	28.0	16.0	80.0	4.0
200만원-350만원 미만	(433)	50.3	1.8	6.5	5.1	3.2	1.4	30.3	3.5	86.8	2.5
350만원-500만원 미만	(433)	55.7	1.8	10.2	4.8	5.1	1.6	29.8	6.0	81.8	2.5
500만원-650만원 미만	(348)	66.1	4.0	9.2	6.3	3.7	1.7	49.1	6.0	68.7	2.3
650만원-800만원 미만	(89)	78.7	4.5	11.2	10.1	5.6	5.6	51.7	5.6	53.9	0.0
800만원 이상	(72)	68.1	2.8	5.6	4.2	12.5	9.7	51.4	13.9	61.1	0.0

〈부록 표 Ⅴ-15〉 자녀의 연령별 선호하는 주+보조 양육형태: 만0세(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문화센터 등)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 직접 돌봄	기타
전체	(1,400)	34.4	8.5	14.4	13.4	15.9	5.7	33.8	4.8	80.6	1.4
모 취업 상태											
취업	(542)	43.7	8.7	10.1	12.9	16.1	5.7	39.9	4.6	73.8	1.7
휴직	(255)	32.2	12.2	15.7	16.1	19.2	7.5	31.4	5.5	82.7	2.0
학업	(17)	35.3	11.8	17.6	5.9	11.8	5.9	23.5	11.8	82.4	0.0
미취업	(586)	26.6	6.7	17.6	13.0	14.5	4.9	29.5	4.4	86.0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	52.0	4.0	4.0	20.0	16.0	8.0	24.0	16.0	92.0	0.0
200만원-350만원 미만	(433)	30.0	5.8	15.2	11.1	15.5	5.1	29.6	4.2	83.8	1.4
350만원-500만원 미만	(433)	34.6	9.9	16.2	14.8	15.9	4.4	29.8	4.4	81.5	1.2
500만원-650만원 미만	(348)	34.5	10.6	13.5	14.4	15.5	6.0	42.2	4.3	79.6	2.0
650만원-800만원 미만	(89)	49.4	10.1	13.5	16.9	15.7	5.6	33.7	4.5	70.8	0.0
800만원 이상	(72)	33.3	5.6	6.9	8.3	20.8	15.3	45.8	9.7	69.4	1.4

〈부록 표 Ⅴ-16〉 자녀의 연령별 선호하는 주+보조 양육형태: 만1세(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문화센터 등)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 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 직접 돌봄	기타
전체	(1,400)	54.3	13.6	20.1	16.9	15.1	3.9	28.6	4.6	74.1	1.1
모 취업 상태											
취업	(542)	62.0	14.9	14.8	14.6	16.1	4.2	33.9	4.6	69.6	0.7
휴직	(255)	55.3	14.9	21.2	17.3	15.3	3.1	29.4	4.7	73.3	1.2
학업	(17)	52.9	11.8	11.8	17.6	11.8	5.9	23.5	11.8	82.4	0.0
미취업	(586)	46.8	11.9	24.7	18.9	14.3	3.9	23.5	4.3	78.5	1.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	56.0	8.0	4.0	28.0	16.0	4.0	32.0	16.0	68.0	0.0
200만원-350만원 미만	(433)	51.5	13.2	22.6	18.7	12.2	3.2	23.6	3.2	77.4	1.6
350만원-500만원 미만	(433)	53.3	12.5	19.9	17.6	17.8	3.9	26.3	4.4	75.1	0.9
500만원-650만원 미만	(348)	57.2	17.0	18.7	13.8	15.2	3.7	33.0	5.2	72.7	0.9
650만원-800만원 미만	(89)	62.9	11.2	20.2	16.9	15.7	4.5	36.0	4.5	64.0	0.0
800만원 이상	(72)	51.4	12.5	18.1	13.9	15.3	8.3	41.7	6.9	70.8	2.8

〈부록 표 Ⅴ-17〉 자녀의 연령별 선호하는 주+보조 양육형태: 만2세(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문화센터 등)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사설 베이비시터	조부모	기타 친인척	부모 직접 돌봄	기타
전체	(1,400)	124.9	7.9	11.1	13.1	5.6	2.1	9.7	1.9	69.3	1.7
모 취업 상태											
취업	(542)	133.6	10.1	8.1	12.5	5.7	3.0	13.5	2.0	57.4	0.0
휴직	(255)	123.9	10.6	12.5	12.2	5.1	2.4	9.8	3.9	69.8	0.8
학업	(17)	164.7	0.0	11.8	0.0	0.0	0.0	0.0	5.9	47.1	0.0
미취업	(586)	116.0	4.8	13.1	14.3	6.0	1.4	6.5	0.7	80.7	3.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	128.0	8.0	4.0	20.0	16.0	4.0	20.0	12.0	68.0	0.0
200만원-350만원 미만	(433)	115.5	7.9	13.6	12.9	6.0	1.4	7.2	1.4	77.1	3.7
350만원-500만원 미만	(433)	124.7	8.1	9.9	12.2	4.8	1.2	7.9	1.4	71.8	1.2
500만원-650만원 미만	(348)	133.3	8.9	9.5	14.4	4.9	3.2	12.4	2.3	62.1	0.9
650만원-800만원 미만	(89)	143.8	4.5	11.2	11.2	6.7	0.0	12.4	1.1	50.6	0.0
800만원 이상	(72)	116.7	5.6	12.5	12.5	6.9	9.7	16.7	2.8	65.3	0.0

〈부록 표 Ⅶ-1〉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1,2(1)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정책 이용 만족도	영유아 보육료 이용 만족도	가정양육 수당 이용 만족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이용 만족도	시간제 보육 이용 만족도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족도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부모교육 이용 만족도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 만족도
유형1											
1	3.9 (11)	2.5 (7)	9.8 (5)	12.9 (4)	2.1 (6)	0.0 (0)	1.1 (1)	3.2 (4)	3.6 (1)	2.9 (1)	0.0 (0)
2	7.8 (22)	3.9 (11)	13.7 (7)	9.7 (3)	1.1 (3)	16.7 (4)	3.3 (3)	7.3 (9)	3.6 (1)	11.4 (4)	7.7 (1)
3	31.7 (89)	14.0 (39)	35.3 (18)	45.2 (14)	13.8 (39)	20.8 (5)	24.2 (22)	29.8 (37)	39.3 (11)	45.7 (16)	38.5 (5)
4	30.6 (86)	26.2 (73)	21.6 (11)	16.1 (5)	34.8 (98)	33.3 (8)	25.3 (23)	41.1 (51)	35.7 (10)	25.7 (9)	30.8 (4)
5	26.0 (73)	53.4 (149)	19.6 (10)	16.1 (5)	48.2 (136)	29.2 (7)	46.2 (42)	18.6 (23)	17.9 (5)	14.3 (5)	23.1 (3)
전체	100.0 (281)	100.0 (279)	100.0 (51)	100.0 (31)	100.0 (282)	100.0 (24)	100.0 (91)	100.0 (124)	100.0 (28)	100.0 (35)	100.0 (13)
유형2											
1	1.7 (1)	0.0 (0)	6.1 (3)	0.0 (0)	1.7 (1)	0.0 (0)	0.0 (0)	3.9 (1)	8.3 (1)	9.1 (1)	0.0 (0)
2	15.3 (9)	9.5 (2)	18.4 (9)	16.7 (2)	6.9 (4)	12.5 (1)	40.0 (2)	15.4 (4)	0.0 (0)	0.0 (0)	0.0 (0)
3	25.4 (15)	23.8 (5)	28.6 (14)	33.3 (4)	10.3 (6)	62.5 (5)	0.0 (0)	34.6 (9)	33.3 (4)	63.6 (7)	57.1 (4)
4	32.2 (19)	28.6 (6)	28.6 (14)	41.7 (5)	29.3 (17)	0.0 (0)	60.0 (3)	34.6 (9)	41.7 (5)	27.3 (3)	28.6 (2)
5	25.4 (15)	38.1 (8)	18.4 (9)	8.3 (1)	51.7 (30)	25.0 (2)	0.0 (0)	11.5 (3)	16.7 (2)	0.0 (0)	14.3 (1)
전체	100.0 (59)	100.0 (21)	100.0 (49)	100.0 (12)	100.0 (58)	100.0 (8)	100.0 (5)	100.0 (26)	100.0 (12)	100.0 (11)	100.0 (7)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부록 표 Ⅶ-2〉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1,2(2)

단위: %(명)

구분	출산전후 휴가 이용 만족도	배우자 출산 휴가 이용 만족도	육아휴직 만족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만족도	유연근무제 이용 만족도	부모직접돌봄의 경우 양육형태 만족도	어린이집 양육에 대한 만족도	아이돌봄 서비스/사설 베이비시터/조부모/기타친인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유형1								
1	4.1(9)	16.1(15)	2.9(5)	4.4(3)	4.0(2)	0.0(0)	2.6(7)	14.3(1)
2	9.5(21)	17.2(16)	12.2(21)	16.2(11)	6.0(3)	0.0(0)	13.1(36)	14.3(1)
3	22.5(50)	17.2(16)	19.8(34)	14.7(10)	22.0(11)	50.0(3)	38.2(105)	0.0(0)
4	32.4(72)	28.0(26)	33.1(57)	27.9(19)	24.0(12)	33.3(2)	34.6(95)	28.6(2)
5	31.5(70)	21.5(20)	32.0(55)	36.8(25)	44.0(22)	16.7(1)	11.6(32)	42.9(3)
전체	100.0(222)	100.0(93)	100.0(172)	100.0(68)	100.0(50)	100.0(6)	100.0(275)	100.0(7)
유형2								
1	9.8(5)	15.4(4)	8.6(3)	7.7(1)	0.0(0)	0.0(0)	0.0(0)	0.0(0)
2	9.8(5)	11.5(3)	14.3(5)	15.4(2)	0.0(0)	4.8(1)	0.0(0)	10.3(4)
3	21.6(11)	26.9(7)	28.6(10)	7.7(1)	20.0(3)	47.6(10)	0.0(0)	38.5(15)
4	31.4(16)	15.4(4)	25.7(9)	23.1(3)	33.3(5)	33.3(7)	0.0(0)	30.8(12)
5	27.5(14)	30.8(8)	22.9(8)	46.2(6)	46.7(7)	14.3(3)	0.0(0)	20.5(8)
전체	100.0(51)	100.0(26)	100.0(35)	100.0(13)	100.0(15)	100.0(21)	0.0(0)	100.0(39)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부록 표 Ⅷ-3〉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3,4(1)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정책 이용 만족도	영유아 보육료 이용 만족도	가정양육 수당 이용 만족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이용 만족도	시간제 보육 이용 만족도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족도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부모교육 이용 만족도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 만족도
유형3											
1	2.9 (2)	1.5 (1)	11.1 (1)	0.0 (0)	0.0 (0)	6.7 (1)	0.0 (0)	3.5 (1)	0.0 (0)	5.0 (1)	0.0 (0)
2	11.8 (8)	5.9 (4)	22.2 (2)	0.0 (0)	3.0 (2)	13.3 (2)	10.0 (3)	13.8 (4)	0.0 (0)	5.0 (1)	0.0 (0)
3	30.9 (21)	25.0 (17)	33.3 (3)	80.0 (4)	16.7 (11)	26.7 (4)	23.3 (7)	6.9 (2)	22.2 (2)	30.0 (6)	0.0 (0)
4	30.9 (21)	29.4 (20)	11.1 (1)	20.0 (1)	36.4 (24)	33.3 (5)	30.0 (9)	44.8 (13)	44.4 (4)	35.0 (7)	66.7 (4)
5	23.5 (16)	38.2 (26)	22.2 (2)	0.0 (0)	43.9 (29)	20.0 (3)	36.7 (11)	31.0 (9)	33.3 (3)	25.0 (5)	33.3 (2)
전체	100.0 (68)	100.0 (68)	100.0 (9)	100.0 (5)	100.0 (66)	100.0 (15)	100.0 (30)	100.0 (29)	100.0 (9)	100.0 (20)	100.0 (6)
유형4											
1	0.0 (0)	0.0 (0)	7.1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2	7.1 (1)	0.0 (0)	7.1 (1)	0.0 (0)	0.0 (0)	0.0 (0)	50.0 (1)	28.6 (2)	20.0 (1)	0.0 (0)	0.0 (0)
3	42.9 (6)	33.3 (1)	35.7 (5)	0.0 (0)	14.3 (2)	0.0 (0)	0.0 (0)	14.3 (1)	20.0 (1)	66.7 (2)	0.0 (0)
4	35.7 (5)	0.0 (0)	28.6 (4)	0.0 (0)	28.6 (4)	0.0 (0)	0.0 (0)	14.3 (1)	20.0 (1)	0.0 (0)	50.0 (2)
5	14.3 (2)	66.7 (2)	21.4 (3)	100.0 (1)	57.1 (8)	0.0 (0)	50.0 (1)	42.9 (3)	40.0 (2)	33.3 (1)	50.0 (2)
전체	100.0 (14)	100.0 (3)	100.0 (14)	100.0 (1)	100.0 (14)	0.0 (0)	100.0 (2)	100.0 (7)	100.0 (5)	100.0 (3)	100.0 (4)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부록 표 Ⅶ-4〉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3,4(2)

단위: %(명)

구분	출산전후 휴가 이용 만족도	배우자 출산 휴가 이용 만족도	육아휴직 만족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만족도	유연근무제 이용 만족도	부모직접돌봄의 경우 양육형태 만족도	어린이집 양육에 대한 만족도	아이돌봄 서비스/사설 베이비시터/조부모/기타친인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유형3								
1	11.8(2)	23.3(7)	14.3(2)	0.0(0)	0.0(0)	0.0(0)	3.2(2)	0.0(0)
2	5.9(1)	20.0(6)	0.0(0)	10.0(1)	6.7(1)	0.0(0)	12.9(8)	0.0(0)
3	17.7(3)	16.7(5)	14.3(2)	20.0(2)	20.0(3)	25.0(1)	35.5(22)	0.0(0)
4	47.1(8)	16.7(5)	35.7(5)	50.0(5)	40.0(6)	50.0(2)	33.9(21)	100.0(1)
5	17.7(3)	23.3(7)	35.7(5)	20.0(2)	33.3(5)	25.0(1)	14.5(9)	0.0(0)
전체	100.0(17)	100.0(30)	100.0(14)	100.0(10)	100.0(15)	100.0(4)	100.0(62)	100.0(1)
유형4								
1	0.0(0)	20.0(1)	0.0(0)	0.0(0)	0.0(0)	0.0(0)	0.0(0)	0.0(0)
2	0.0(0)	40.0(2)	25.0(1)	0.0(0)	0.0(0)	0.0(0)	0.0(0)	0.0(0)
3	40.0(2)	40.0(2)	0.0(0)	0.0(0)	0.0(0)	70.0(7)	0.0(0)	33.3(1)
4	0.0(0)	0.0(0)	0.0(0)	0.0(0)	100.0(1)	10.0(1)	0.0(0)	66.7(2)
5	60.0(3)	0.0(0)	75.0(3)	100.0(1)	0.0(0)	20.0(2)	0.0(0)	0.0(0)
전체	100.0(5)	100.0(5)	100.0(4)	100.0(1)	100.0(1)	100.0(10)	0.0(0)	100.0(3)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부록 표 Ⅷ-5〉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5,6(1)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정책 이용 만족도	영유아 보육료 이용 만족도	가정양육 수당 이용 만족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이용 만족도	시간제 보육 이용 만족도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족도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부모교육 이용 만족도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 만족도
유형5											
1	5.9 (2)	2.8 (1)	0.0 (0)	0.0 (0)	2.8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2	11.8 (4)	11.1 (4)	50.0 (2)	0.0 (0)	0.0 (0)	0.0 (0)	7.1 (1)	13.3 (2)	0.0 (0)	0.0 (0)	0.0 (0)
3	17.7 (6)	19.4 (7)	25.0 (1)	25.0 (1)	33.3 (12)	100.0 (3)	35.7 (5)	40.0 (6)	100.0 (3)	66.7 (6)	0.0 (0)
4	38.2 (13)	27.8 (10)	25.0 (1)	25.0 (1)	27.8 (10)	0.0 (0)	28.6 (4)	33.3 (5)	0.0 (0)	22.2 (2)	50.0 (1)
5	26.5 (9)	38.9 (14)	0.0 (0)	50.0 (2)	36.1 (13)	0.0 (0)	28.6 (4)	13.3 (2)	0.0 (0)	11.1 (1)	50.0 (1)
total	100.0 (34)	100.0 (36)	100.0 (4)	100.0 (4)	100.0 (36)	100.0 (3)	100.0 (14)	100.0 (15)	100.0 (3)	100.0 (9)	100.0 (2)
유형6											
1	0.0 (0)	0.0 (0)	0.0 (0)	0.0 (0)	11.1 (1)	100.0 (1)	50.0 (1)	20.0 (1)	0.0 (0)	0.0 (0)	0.0 (0)
2	0.0 (0)	50.0 (1)	10.0 (1)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1)	50.0 (1)	0.0 (0)
3	54.6 (6)	0.0 (0)	40.0 (4)	0.0 (0)	11.1 (1)	0.0 (0)	0.0 (0)	20.0 (1)	0.0 (0)	50.0 (1)	0.0 (0)
4	36.4 (4)	50.0 (1)	30.0 (3)	0.0 (0)	0.0 (0)	0.0 (0)	50.0 (1)	60.0 (3)	0.0 (0)	0.0 (0)	100.0 (1)
5	9.1 (1)	0.0 (0)	10.0 (1)	0.0 (0)	77.8 (7)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total	100.0 (11)	100.0 (2)	100.0 (10)	0.0 (0)	100.0 (9)	100.0 (1)	100.0 (2)	100.0 (5)	100.0 (1)	100.0 (2)	100.0 (1)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부록 표 Ⅶ-6〉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5,6(2)

단위: %(명)

구분	출산전후 휴가 이용 만족도	배우자 출산 휴가 이용 만족도	육아휴직 만족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만족도	유연근무제 이용 만족도	부모직접돌봄의 경우 양육형태 만족도	어린이집 양육에 대한 만족도	아이돌봄 서비스/사설 베이비시터/조부모/기타친인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유형5								
1	0.0(0)	7.7(1)	0.0(0)	0.0(0)	0.0(0)	0.0(0)	0.0(0)	0.0(0)
2	33.3(4)	30.8(4)	22.2(2)	0.0(0)	20.0(1)	0.0(0)	6.1(2)	0.0(0)
3	33.3(4)	38.5(5)	11.1(1)	0.0(0)	0.0(0)	50.0(1)	42.4(14)	0.0(0)
4	8.3(1)	7.7(1)	44.4(4)	100.0(1)	0.0(0)	50.0(1)	27.3(9)	0.0(0)
5	25.0(3)	15.4(2)	22.2(2)	0.0(0)	80.0(4)	0.0(0)	24.2(8)	100.0(1)
total	100.0(12)	100.0(13)	100.0(9)	100.0(1)	100.0(5)	100.0(2)	100.0(33)	100.0(1)
유형6								
1	0.0(0)	0.0(0)	0.0(0)	50.0(1)	0.0(0)	0.0(0)	0.0(0)	0.0(0)
2	0.0(0)	50.0(1)	0.0(0)	0.0(0)	33.3(1)	11.1(1)	0.0(0)	0.0(0)
3	0.0(0)	0.0(0)	0.0(0)	50.0(1)	33.3(1)	22.2(2)	0.0(0)	0.0(0)
4	100.0(1)	50.0(1)	0.0(0)	0.0(0)	0.0(0)	55.6(5)	0.0(0)	100.0(3)
5	0.0(0)	0.0(0)	0.0(0)	0.0(0)	33.3(1)	11.1(1)	0.0(0)	0.0(0)
total	100.0(1)	100.0(2)	0.0(0)	100.0(2)	100.0(3)	100.0(9)	0.0(0)	100.0(3)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부록 표 Ⅷ-7〉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7,8(1)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정책 이용 만족도	영유아 보육료 이용 만족도	가정양육 수당 이용 만족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이용 만족도	시간제 보육 이용 만족도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족도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부모교육 이용 만족도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 만족도
유형7											
1	4.5 (19)	4.4 (18)	9.3 (12)	9.1 (3)	1.9 (8)	7.7 (5)	6.4 (10)	3.3 (6)	11.8 (4)	0.0 (0)	0.0 (0)
2	9.3 (39)	6.6 (27)	16.3 (21)	21.2 (7)	4.7 (20)	12.3 (8)	8.3 (13)	4.9 (9)	2.9 (1)	5.2 (4)	5.3 (1)
3	31.2 (131)	20.6 (84)	22.5 (29)	36.4 (12)	16.0 (68)	38.5 (25)	23.1 (36)	21.2 (39)	26.5 (9)	28.6 (22)	31.6 (6)
4	31.2 (131)	35.1 (143)	29.5 (38)	18.2 (6)	31.1 (132)	21.5 (14)	32.1 (50)	40.8 (75)	41.2 (14)	41.6 (32)	47.4 (9)
5	23.8 (100)	33.3 (136)	22.5 (29)	15.2 (5)	46.4 (197)	20.0 (13)	30.1 (47)	29.9 (55)	17.7 (6)	24.7 (19)	15.8 (3)
total	100.0 (420)	100.0 (408)	100.0 (129)	100.0 (33)	100.0 (425)	100.0 (65)	100.0 (156)	100.0 (184)	100.0 (34)	100.0 (77)	100.0 (19)
유형8											
1	4.0 (19)	6.3 (9)	7.2 (32)	11.8 (2)	1.1 (5)	20.0 (5)	11.4 (4)	7.2 (14)	7.5 (3)	2.2 (1)	17.7 (6)
2	9.9 (47)	7.8 (11)	13.9 (62)	17.7 (3)	3.0 (14)	8.0 (2)	8.6 (3)	11.9 (23)	10.0 (4)	2.2 (1)	5.9 (2)
3	34.9 (165)	28.2 (40)	32.8 (146)	17.7 (3)	16.1 (75)	20.0 (5)	31.4 (11)	17.0 (33)	25.0 (10)	53.3 (24)	26.5 (9)
4	29.6 (140)	23.9 (34)	27.0 (120)	23.5 (4)	32.8 (153)	28.0 (7)	28.6 (10)	38.7 (75)	35.0 (14)	31.1 (14)	26.5 (9)
5	21.6 (102)	33.8 (48)	19.1 (85)	29.4 (5)	47.1 (220)	24.0 (6)	20.0 (7)	25.3 (49)	22.5 (9)	11.1 (5)	23.5 (8)
total	100.0 (473)	100.0 (142)	100.0 (445)	100.0 (17)	100.0 (467)	100.0 (25)	100.0 (35)	100.0 (194)	100.0 (40)	100.0 (45)	100.0 (34)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부록 표 Ⅶ-8〉 수요자 근로유형에 따른 정책만족도: 유형 7,8(2)

단위: %(명)

구분	출산전후 휴가 이용 만족도	배우자 출산 휴가 이용 만족도	육아휴직 만족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만족도	유연근무제 이용 만족도	부모직접돌봄의 경우 양육형태 만족도	어린이집 양육에 대한 만족도	아이돌봄 서비스/사설 베이비시터/조부모/기타친인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유형7								
1	4.7(7)	18.7(23)	4.6(6)	8.3(2)	6.7(2)	0.0(0)	2.3(9)	0.0(0)
2	11.5(17)	20.3(25)	14.5(19)	33.3(8)	20.0(6)	7.7(3)	9.8(38)	0.0(0)
3	16.2(24)	21.1(26)	18.3(24)	12.5(3)	10.0(3)	30.8(12)	41.3(160)	100.0(1)
4	37.8(56)	25.2(31)	32.1(42)	8.3(2)	33.3(10)	46.2(18)	34.4(133)	0.0(0)
5	29.7(44)	14.6(18)	30.5(40)	37.5(9)	30.0(9)	15.4(6)	12.1(47)	0.0(0)
total	100.0(148)	100.0(123)	100.0(131)	100.0(24)	100.0(30)	100.0(39)	100.0(387)	100.0(1)
유형8								
1	7.3(10)	17.1(32)	9.0(11)	8.6(3)	4.9(2)	4.0(18)	0.0(0)	0.0(0)
2	10.9(15)	24.6(46)	14.8(18)	8.6(3)	4.9(2)	12.7(57)	0.0(0)	11.1(2)
3	18.8(26)	24.1(45)	18.9(23)	20.0(7)	26.8(11)	38.8(174)	0.0(0)	50.0(9)
4	31.2(43)	18.2(34)	27.9(34)	17.1(6)	39.0(16)	33.7(151)	0.0(0)	33.3(6)
5	31.9(44)	16.0(30)	29.5(36)	45.7(16)	24.4(10)	10.7(48)	0.0(0)	5.6(1)
total	100.0(138)	100.0(187)	100.0(122)	100.0(35)	100.0(41)	100.0(448)	0.0(0)	100.0(18)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부록 3. 각 지역 간략(일부) 예산서

〈부록 표 Ⅶ-9〉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건소(지방 N시)

단위: 천 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보건소		10,791,805
	국	767,923
	지	136,337
	기	2,454,087
	도	875,290
	시	6,558,168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 사업		**911,700**
모자보건사업		**10,500**
임산부 건강관리		**10,500**
201 일반운영비		3,000
01 사무관리		2,550
대여용 모유수유 유축기 소모품 구입		2,550
02 공공운영비		450
대여용 모유수유 유축기 수리 및 살균세척		450
307 민간이전		7,500
01 의료 및 구료비		7,500
기형아 검사비		7,500
출산지원사업		**878,000**
출산장려금 지원		**820,500**
301 일반 보상금		807,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807,000
출산지원금		637,000
· 출산지원금(첫째아) 500,000원		115,000
· 출산지원금(둘째아) 1,000,000원		200,000
· 출산지원금(셋째아) 3,000,000원		270,000
· 출산지원금(넷째이상) 4,000,000원		52,00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70,000
·본인부담금(바우처)		50,000
·본인부담금(일반)		120,000
307 민간이전		13,500
01 의료 및 구료비		13,500
전통의약 난임치료비 지원금		13,500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45,000**
201 일반운영비		9,000
01 사무관리비		5,000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구입		5,000
03 행사운영비		4,000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		4,000
301 일반보상금		36,000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11 기타보상금		36,000
신생아 탄생축하 사진 액자 제작		4,000
아기 N시민증 제작 구입		2,000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30,000
출산장려 지원		**12,500**
	도	2,500
	시	10,000
307 민간이전		12,500
	도	2,500
	시	1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구운동본부 운영		10,000
	도	2,000
	시	8,0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2,500
육아용품 지급		2,500
	도	500
	시	2,000
산모 건강관리		**23,200**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13,200**
301 일반보상금		3,200
09 행사실비보상금		800
부부출산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800
11 기타보상금		2,400
부부출산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400
307 민간이전		10,000
01 의료 및 구료비		10,000
임산부 영양제 구입		10,000

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2018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수집하여 재구성함.

〈부록 표 Ⅶ-10〉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건소(서울시 K구)

단위: 천 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1.출산 양육 지원		**1,311,500**
301 일반보상금		1,311,5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311,500
1)출산축하용품 지원(첫째 자녀)		136,500
2)첫째 50,000원		136,500
1)출산양육지원금 지원(둘째 자녀 이상)		1,175,000
2)둘째 500,000원		754,000
2)셋째 1,000,000원		262,000
2)넷째 이후 3,000,000원		159,000
2.가족행복 지원 및 인구교육 추진		**40,702**
201 일반운영비		38,102
01 사무관리비		502
1)가족행복 지원 및 인구교육 행사		502
03 행사운영비		37,600
1)가족행복 지원을 위한 캠페인		1,600
1)강남구 출산장려정책 홍보 리플릿 제작		7,700
1)캠페인 홍보물품 제작		11,000
1)인구교육 강사료		14,000
1)인구교육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3,300
203 업무추진비		1,6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
1)가족행복지원 캠페인 및 인구교육 추진		1,600
301 일반보상금		1,000
09 행사실비보상금		1,000
1)가족행복지원 캠페인 및 인구교육 등 행사참여		1,000
3.가족학교 운영 지원	시	33,060
307 민간이전	시	33,060
05 민감위탁금		33,060
1)인건비	시	27,310
1)예비, 신혼부부교실		3,750
2)강사비	시	3,000
2)진행비	시	700
2)운영비(문자홍보)	시	50
1)아동기 부모교실		2,000
2)강사비	시	1,500
2)진행비	시	490
2)운영비(문구비)	시	10
4.산모건강관리		**166,748**
201 일반운영비		69,178
01 사무관리비		37,130
1)산후조리원 안전점검 수수료		1,400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1)유축기 대여 소모품 등	14,700
2)유축기소모품 등	14,700
2)신생아청각선별검사기기 등	3,630
3)신생아청각선별검사기기 등 수리비	3,000
3)소모품 등	630
1)산모건강관리	17,400
2)모자보건실 운영소모품	1,200
2)산모건강관리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13,700
3)리플릿 등	3,200
3)홍보물	10,500
2)가임기여성 건강관리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	2,500
02 공공운영비	4,048
1)모자보건사업 우편료	4,048
03 행사운영비	28,000
1)임산부 교실 및 모유수유 교육	26,000
2)강사수당(일반2급) 기본	6,000
2)강사수당(일반2급) 초과	5,000
2)1:1 모유수유 교육 강사료	14,520
2)산모교실 등 운영비	480
1)임산부의 날 등 행사운영	2,000
2)임산부의 날 및 모유수유주간 행사	2,000
203 업무추진비	67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70
1)산모건강관리 업무추진	150
1)모유수유 교육 및 캠페인 관련 업무추진	150
1)임산부의 날 행사관련 업무추진	370
301 일반보상금	4,000
09 행사실비보상금	4,000
1)산모교실 등 운영(다과 등)	3,300
1)임산부의 날 및 모유수유주간 행사 운영(다과 등)	700
307 민간이전	89,300
01 의료 및 구료비	89,300
1)임산부건강관리	89,300
2)기형아 검사	27,000
2)풍진검사	20,000
2)당뇨검사 시약 등	1,200
2)여성결혼 이민자, 허약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11,200
2)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철분제 등 지원	29,900
405 자산취득비	3,600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00
1)유축기	3,000
2)문서세단기	600

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2018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수집하여 재구성함.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87 952985
ISBN 979-11-87952-98-5